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을자치 모형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지역 향약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김 일 순

2020년 8월

#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을자치 모형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지역 향약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황 경 수

김 일 순

이 논문을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6월

김일순의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0년 6월

A Study on Village Self-rule Model  
for Regional Revitalization

- Focusing on Eup·Myeon Regional Village Code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Il-Soon Kim

(Directed by professor Kyung-Soo Hwa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ublic Administration

2020 . 8 .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b>제 1 장 서 론</b> .....	<b>1</b>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 배경 .....	1
2. 연구 목적 .....	4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5
1. 연구 범위 .....	5
2. 연구 방법 .....	6
3. 연구의 흐름 .....	7
<b>제 2 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b> .....	<b>10</b>
제 1 절 마을자치 개념과 형태 .....	10
1. 마을자치의 의의 및 필요성 .....	10
2. 마을자치의 효과와 제모형 .....	18
제 2 절 해외의 마을(근린)자치 사례 .....	22
1. 미국의 마을(근린)자치 .....	22
2. 영국의 마을(근린)자치 .....	27
3. 일본의 마을(근린)자치 .....	30
제 3 절 근린자치 선행연구 .....	35
1. 마을(근린)자치 선행연구 .....	35
2. 제도상의 주민자치 선행연구 .....	40
3. 본 연구와 관련한 함의 .....	42
<b>제 3 장 연구 설계 및 분석방법</b> .....	<b>44</b>
제1절 연구 설계 및 분석틀 .....	44
제2절 분석방법 .....	46

1. 향약 내용분석 방향과 분석틀 .....	46
2. 심층면접조사 분석방향 .....	47
3. 설문조사 분석방향 .....	48
4. 조사범위와 대상 .....	50
<b>제 4 장 제주지역 마을현황과 마을향약 특성 분석 .....</b>	<b>51</b>
제 1 절 제주지역 행정체계 및 향약 수집현황 .....	51
1. 행정구역 및 인구 .....	51
2. 읍·면지역 마을별 현황 .....	53
3. 읍·면지역 마을 향약 수집현황 .....	63
제 2 절 제주지역 마을단위 향약 분석 .....	67
1. 리민의 자격 .....	67
2. 리민의 권리 .....	79
3. 리민의 의무 .....	101
4. 마을 의사결정 기구 .....	123
5. 마을 자치 조직 .....	139
6. 리장후보자 출마자격 및 선출방법 .....	153
7. 향약 제·개정 현황 .....	174
8. 제주지역 마을자치 특성 .....	189
<b>제 5 장 제주지역 마을자치 실증 조사 .....</b>	<b>191</b>
제 1 절 제주형 마을자치 운영전문가 리장 심층면접 .....	191
1. 조사개요 .....	191
2. 면접조사 결과 .....	193
3. 합의 .....	207
제 2 절 제주형 마을운영 및 마을자치 설문조사 .....	210
1. 조사개요 .....	210
2. 내용 분석 .....	212

3. 연령 및 거주년수 교차분석 .....	226
4. 성별, 거주지역 집단별 차이 분석 .....	242
5. 합의 .....	244
<b>제 6 장 정책제언 및 결론 .....</b>	<b>247</b>
제 1 절 제주형 마을자치 모형 설정 안 제안 .....	247
1. 협력형 마을자치 모형 .....	247
2. 위임형 마을자치 모형 .....	249
3. 통합형 마을자치 모형 .....	251
제 2 절 마을자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	253
1. 통·리 단위 주민자치회 설치를 위한 주민자치 관련법 제·개정 .....	253
2.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	254
3.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부서 일원화 및 공동체지원 중간조직 설립 .....	255
4. 향약표준안 마련 .....	256
5. 읍·면·동장 주민 추천제 확대 시행 .....	265
6. 주민자치회 도입 .....	266
7. 마을 변호사제도 활용 및 적극 홍보 .....	267
제 3 절 마을내부 정비를 위한 정책제언 .....	268
1. 여성 및 청년 참여비율 제도화 .....	268
2. 마을총회 참여권 확대 .....	268
3. 리민의 권리 중 자산청구권 규정 명시 .....	269
4. 이주민에 대한 마을참여권 부여 .....	270
5. 향약의 정비 및 정보공개 .....	271
제 4 절 결 론 .....	272
<b>참고문헌 .....</b>	<b>278</b>
<b>ABSTRACT .....</b>	<b>289</b>
<b>&lt;부 록&gt; 설문지 .....</b>	<b>294</b>

## 표 목 차

<표 2-1> 근린규모 유형 .....	16
<표 2-2> 자치의 공간규모에 따른 민주성과 효율성의 관계 .....	18
<표 2-3> 근린자치의 네 가지 모형 .....	19
<표 2-4> 미국의 근린참여제도 .....	23
<표 2-5> 뉴욕시 커뮤니티 위원회의 주요 내용 .....	26
<표 2-6> 근린자치 선행연구 .....	38
<표 2-7> 마을(동네)자치 선행연구 .....	40
<표 2-8> 주민자치 선행연구 .....	42
<표 3-1> 심층면접 조사 질문문항 .....	48
<표 3-2> 설문조사 질문문항 .....	49
<표 3-3> 전문가 및 설문조사 대상 .....	50
<표 4-1> 행정구역 현황 .....	51
<표 4-2> 인구현황 .....	52
<표 4-3> 행정시 읍·면·동별 인구현황 .....	52
<표 4-4> 한림읍 지역 마을별 현황 .....	53
<표 4-5> 애월읍 지역 마을별 현황 .....	54
<표 4-6> 구좌읍 지역 마을별 현황 .....	55
<표 4-7> 조천읍 지역 마을별 현황 .....	56
<표 4-8> 한경면 지역 마을별 현황 .....	57
<표 4-9> 추자면 지역 마을별 현황 .....	58
<표 4-10> 우도면 지역 마을별 현황 .....	58
<표 4-11> 대정읍 지역 마을별 현황 .....	59
<표 4-12> 남원읍 지역 마을별 현황 .....	60
<표 4-13> 성산읍 지역 마을별 현황 .....	61



<표 4-14> 안덕면 지역 마을별 현황 .....	62
<표 4-15> 표선면 지역 마을별 현황 .....	63
<표 4-16>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향약 수집현황 .....	64
<표 4-17> 제주시 읍·면지역 마을 향약 수집현황 .....	65
<표 4-18> 서귀포시 읍·면지역 마을 향약 수집현황 .....	66
<표 4-19> 한림읍 마을별 리민의 자격부여 현황 .....	68
<표 4-20> 애월읍 마을별 리민의 자격부여 현황 .....	69
<표 4-21> 구좌읍 마을별 리민의 자격부여 현황 .....	70
<표 4-22> 조천읍 마을별 리민의 자격부여 현황 .....	70
<표 4-23> 한경면 마을별 리민의 자격부여 현황 .....	71
<표 4-24> 추자면 마을별 리민의 자격부여 현황 .....	72
<표 4-25> 우도면 마을별 리민의 자격부여 현황 .....	72
<표 4-26> 대정읍 마을별 리민의 자격부여 현황 .....	74
<표 4-27> 남원읍 마을별 리민의 자격부여 현황 .....	75
<표 4-28> 성산읍 마을별 리민의 자격부여 현황 .....	76
<표 4-29> 안덕면 마을별 리민의 자격부여 현황 .....	77
<표 4-30> 표선면 마을별 리민의 자격부여 현황 .....	78
<표 4-31>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마을별 리민의 자격부여 현황 .....	78
<표 4-32> 한림읍 마을별 리민의 권리 .....	80
<표 4-33> 애월읍 마을별 리민의 권리 .....	82
<표 4-34> 구좌읍 마을별 리민의 권리 .....	85
<표 4-35> 조천읍 마을별 리민의 권리 .....	86
<표 4-36> 한경면 마을별 리민의 권리 .....	88
<표 4-37> 추자면 마을별 리민의 권리 .....	89
<표 4-38> 우도면 마을별 리민의 권리 .....	90
<표 4-39> 대정읍 마을별 리민의 권리 .....	92
<표 4-40> 남원읍 마을별 리민의 권리 .....	94
<표 4-41> 성산읍 마을별 리민의 권리 .....	95
<표 4-42> 안덕면 마을별 리민의 권리 .....	97

<표 4-43> 표선면 마을별 리민의 권리 .....	98
<표 4-44>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마을별 자산청구권 .....	99
<표 4-45>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마을별 총회 참여권 .....	100
<표 4-46>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마을별 선거권 및 선거유형 .....	101
<표 4-47>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마을별 선거권자 거주기간 .....	101
<표 4-48> 한림읍 마을별 리민의 의무 및 리 운영비 납부현황 .....	103
<표 4-49> 애월읍 마을별 리민의 의무 및 리 운영비 납부현황 .....	107
<표 4-50> 구좌읍 마을별 리민의 의무 및 리 운영비 납부현황 .....	108
<표 4-51> 조천읍 마을별 리민의 의무 및 리 운영비 납부현황 .....	110
<표 4-52> 한경면 마을별 리민의 의무 및 리 운영비 납부현황 .....	112
<표 4-53> 추자면 마을별 리민의 의무 및 리 운영비 납부현황 .....	113
<표 4-54> 우도면 마을별 리민의 의무 및 리 운영비 납부현황 .....	114
<표 4-55> 대정읍 마을별 리민의 의무 및 리 운영비 납부현황 .....	116
<표 4-56> 남원읍 마을별 리민의 의무 및 리 운영비 납부현황 .....	117
<표 4-57> 성산읍 마을별 리민의 의무 및 리 운영비 납부현황 .....	119
<표 4-58> 안덕면 마을별 리민의 의무 및 리 운영비 납부현황 .....	120
<표 4-59> 표선면 마을별 리민의 의무 및 리 운영비 납부현황 .....	121
<표 4-60>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마을별 리민의 의무 및 리 운영비 납부 현황 .....	123
<표 4-61> 한림읍 마을별 회의기구 .....	125
<표 4-62> 애월읍 마을별 회의기구 .....	126
<표 4-63> 구좌읍 마을별 회의기구 .....	128
<표 4-64> 조천읍 마을별 회의기구 .....	129
<표 4-65> 한경면 마을별 회의기구 .....	130
<표 4-66> 추자면 마을별 회의기구 .....	131
<표 4-67> 우도면 마을별 회의기구 .....	131
<표 4-68> 대정읍 마을별 회의기구 .....	133
<표 4-69> 남원읍 마을별 회의기구 .....	135
<표 4-70> 성산읍 마을별 회의기구 .....	136
<표 4-71> 안덕면 마을별 회의기구 .....	137

<표 4-72> 표선면 마을별 회의기구 .....	138
<표 4-73>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마을별 회의기구 .....	139
<표 4-74> 마을별 자치조직 구성도 .....	141
<표 4-75> 한림읍 마을별 자치조직 .....	142
<표 4-76> 애월읍 마을별 자치조직 .....	143
<표 4-77> 구좌읍 마을별 자치조직 .....	144
<표 4-78> 조천읍 마을별 자치조직 .....	145
<표 4-79> 한경면 마을별 자치조직 .....	146
<표 4-80> 추자면 마을별 자치조직 .....	146
<표 4-81> 우도면 마을별 자치조직 .....	147
<표 4-82> 대정읍 마을별 자치조직 .....	148
<표 4-83> 남원읍 마을별 자치조직 .....	149
<표 4-84> 성산읍 마을별 자치조직 .....	150
<표 4-85> 안덕면 마을별 자치조직 .....	151
<표 4-86> 표선면 마을별 자치조직 .....	152
<표 4-87>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마을별 자치조직 .....	153
<표 4-88> 한림읍 마을별 리장후보자 출마자격 및 선출방법 .....	155
<표 4-89> 애월읍 마을별 리장후보자 출마자격 및 선출방법 .....	157
<표 4-90> 구좌읍 마을별 리장후보자 출마자격 및 선출방법 .....	158
<표 4-91> 조천읍 마을별 리장후보자 출마자격 및 선출방법 .....	159
<표 4-92> 한경면 마을별 리장후보자 출마자격 및 선출방법 .....	161
<표 4-93> 추자면 마을별 리장후보자 출마자격 및 선출방법 .....	162
<표 4-94> 우도면 마을별 리장후보자 출마자격 및 선출방법 .....	163
<표 4-95> 대정읍 마을별 리장후보자 출마자격 및 선출방법 .....	165
<표 4-96> 남원읍 마을별 리장후보자 출마자격 및 선출방법 .....	167
<표 4-97> 성산읍 마을별 리장후보자 출마자격 및 선출방법 .....	168
<표 4-98> 안덕면 마을별 리장후보자 출마자격 및 선출방법 .....	169
<표 4-99> 표선면 마을별 리장후보자 출마자격 및 선출방법 .....	171
<표 4-100>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리장후보자 거주기간 .....	172

<표 4-101>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리장후보자 나이 .....	173
<표 4-102>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리장 임기 및 선출방법 .....	174
<표 4-103> 한림읍 마을별 향약 제·개정 현황 .....	176
<표 4-104> 애월읍 마을별 향약 제·개정 현황 .....	177
<표 4-105> 구좌읍 마을별 향약 제·개정 현황 .....	179
<표 4-106> 조천읍 마을별 향약 제·개정 현황 .....	180
<표 4-107> 한경면 마을별 향약 제·개정 현황 .....	181
<표 4-108> 추자면 마을별 향약 제·개정 현황 .....	182
<표 4-109> 우도면 마을별 향약 제·개정 현황 .....	182
<표 4-110> 대정읍 마을별 향약 제·개정 현황 .....	184
<표 4-111> 남원읍 마을별 향약 제·개정 현황 .....	185
<표 4-112> 성산읍 마을별 향약 제·개정 현황 .....	186
<표 4-113> 안덕면 마을별 향약 제·개정 현황 .....	187
<표 4-114> 표선면 마을별 향약 제·개정 현황 .....	188
<표 4-115>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마을향약 제·개정 현황 .....	189
<표 5-1> 면접조사 대상지역 및 대상 .....	192
<표 5-2>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	210
<표 5-3> 인구통계학적 특성 .....	211
<표 5-4> 마을총회 참석연령 확대 .....	212
<표 5-5> 마을 주요의사결정 청소년 참여 적정나이 .....	213
<표 5-6> 마을리장 겸직의견 .....	213
<표 5-7> 이주민 리민자격부여 기준 .....	215
<표 5-8> 마을리장 선출방법 .....	216
<표 5-9> 마을리장 임기제도 .....	217
<표 5-10> 마을총회 및 리장선거 1인 1표제 개정 .....	218
<표 5-11> 마을운영기금 확보 필요성 .....	218
<표 5-12> 마을운영 기금마련 방법 .....	219
<표 5-13> 리 운영비 납부 필요성 .....	220

<표 5-14> 리 운영비 납부의향 .....	220
<표 5-15> 마을자치 활성화 개선분야 .....	221
<표 5-16> 연령에 따른 마을총회 참석연령 확대 .....	227
<표 5-17> 연령에 따른 마을 주요의사결정 청소년 참여 적정나이 .....	228
<표 5-18> 연령에 따른 마을리장 겸직의견 .....	228
<표 5-19> 연령에 따른 이주민 리민자격부여 기준 .....	230
<표 5-20> 연령에 따른 마을리장 선출 방법 .....	231
<표 5-21> 연령에 따른 마을리장 임기제도 .....	232
<표 5-22> 연령에 따른 마을운영 기금마련 방법 .....	233
<표 5-23> 연령에 따른 리 운영비 납부의향 .....	233
<표 5-24> 연령에 따른 마을자치 활성화 개선분야 선호 차이 .....	235
<표 5-25> 거주년수에 따른 마을총회 참석연령 확대 .....	235
<표 5-26> 거주년수에 따른 마을 주요의사결정 청소년 참여 적정나이 .....	236
<표 5-27> 거주년수에 따른 마을리장 겸직의견 .....	237
<표 5-28> 거주년수에 따른 이주민 리민자격부여 기준 .....	238
<표 5-29> 거주년수에 따른 마을리장 선출 방법 .....	239
<표 5-30> 거주년수에 따른 마을리장 임기제도 .....	239
<표 5-31> 거주년수에 따른 마을운영 기금마련 방법 .....	240
<표 5-32> 거주년수에 따른 리 운영비 납부의향 .....	241
<표 5-33> 거주년수에 따른 마을자치 활성화 개선분야 선호 차이 .....	242
<표 5-34> 지역별 응답자 특성별 마을총회 및 리장선거 1인 1표제 개정 차이 .....	243
<표 5-35> 지역별 응답자 특성별 마을운영기금 확보 필요성 차이 .....	243
<표 5-36> 지역별 응답자 특성별 리 운영비 납부 필요성 차이 .....	244

##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	9
(그림 2-1) 근린의 공적·사적 공간의 경계넘기 .....	11
(그림 2-2) 지방자치와 관련된 주체간 개념도 .....	14
(그림 2-3) 일본의 주민자치회 구조 .....	33
(그림 3-1) 연구분석 틀 .....	46
(그림 3-2) 마을별 향약 내용분석 틀 .....	47
(그림 5-1) 협력형 마을자치 모형 .....	249
(그림 5-2) 위임형 마을자치 모형 .....	251
(그림 5-3) 통합형 마을자치 모형 .....	252

## 국문초록

근대국가가 형성되기 이전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는 중앙권력의 통제가 지방까지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각 지역단위에서는 마을규약인 향약을 제정하여 그 향약을 근간으로 마을자치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마을규약은 근린자치의 원형을 이룬다. 특히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의 특수성으로 마을마다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읍·면지역에 속해 있는 행정리의 마을들은 전통적인 마을규약인 향약을 마을운영의 기조로 삼고 있다.

제주의 읍·면지역 마을향약은 마을회 규약, 회칙, 정관, 규칙 등 다양한 명칭으로 그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제정취지를 비롯해서 마을단위 조직, 마을주민의 구성, 권리와 의무, 선거권, 피선거권, 재산관리, 회의체계, 상·벌규정 등 세부적인 마을운영 규칙을 망라하고 있고 이러한 향약의 규정들을 마을주민들 스스로 준수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마을향약이 어떤 논의구조를 거치며 어떻게 정당화되고, 운영방식은 어떤지, 마을마다 그 구조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마을단위의 자치행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을자치 모형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향약수집은 각 마을에서 매해 1월 ~ 2월에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전반기 임시총회에서 향약 개정안이 다뤄지는 점을 감안하여 2019년 1월 ~ 2019년 8월까지로 한정하였으며, 읍·면지역 172개 마을 중 146개 마을의 향약을 수집하였다.

연구방법은 마을자치의 개념과 형태, 해외의 마을자치 사례, 마을자치 선행연구 등 마을단위 자치행정에서의 주요요인을 파악하는 문헌연구와 향약 내용분석, 마을리장을 대상으로 한 마을자치 제도화를 위한 심층면접 조사 등의 질적연구, 마을회 임원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마을운영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설문조사인 양적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향약 내용분석은 리민의 자격, 리민의 권리와 의무, 마을의사 결정구조, 마을의 자치조직, 마을자치회 대표인 리장 선거, 향약정비 현황 등 마을자치 제도 및 체계, 의사결정 구조를 분석하여 제주지역 마을자치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제주지역 마을자치의 특성은 국가의 운영형태를 띤 가장 작은 정부라 할 수 있다. 국가에서 일정연령이 되면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세금을 징수하듯 제주의 읍·면지역 마을에서도 일정기간 거주하여 리민의 자격이 주어지면 마을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 피선거권, 참여권, 청구권 등 권리와 리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마을운동을 위한 재원이 필요한 경우 리 운영비를 징수하고 마을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유치하여 공동체를 유지해 간다. 그 외에도 마을출생자가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준리민이라는 제도를 두어 마을발전을 위한 자문과 애항심을 갖도록 하고 있고 각 마을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조직과 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즉 마을의 일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해결해 가는 규모가 작은 정부라 할 수 있다.

마을자치 모형은 향약 내용분석 및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마을 주민수, 의사결정 체계, 마을운영 재원, 리장 선출방법 등 지역적 특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협력형 마을자치 모형, 위임형 마을자치 모형, 통합형 마을자치 모형 등 세가지 유형을 제안하였다. 협력형 마을자치 모형은 마을거주 인원이 2,000명 이상 되는 비교적 규모가 큰 마을로 마을운동을 위한 일정한 소득원이 있고, 마을회의의 구조 또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리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기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마을자치회 대표인 리장은 주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위임형 마을자치 모형은 마을거주 인원이 2,000명 미만 500명 이상인 마을로 마을의 모든 권한을 마을자치회 대표인 리장에게 위임하는 형태의 마을이다.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는 리장의 업무처리 능력에 따라 추대를 통해 리장직을 연임하여 수행하기도 하고,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형태를 병행하고 있다. 마을회의의 구조는 심의기능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갖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형 마을자치 모형은 마을거주 인원이 500명 미만인 마을로 마을규모가 작고 마을회의의 구조 또한 발의·심의·집행기능을 통합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을자치회 대표인 리장은 추대로 선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마을자치 모형은 마을의 일반화 및 표준화 마을자치 모형으로 각 마을의 특성을 모두 담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문헌연구, 전문가조사, 마을리장이 면접조사를 통해 일반화된 표준모형을 제시할 수 있었다.

향약분석 및 마을자치 전문가와 설문조사내용을 종합한 정책제언은 행정과 마을



에서의 개선사항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행정에서의 제도개선 사항은 첫째, 근린자치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의의 조속한 도입과 현재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설치단위로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통·리에서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개정을 제안하였다. 둘째, 마을의 규모와 실정을 감안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매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민간보조금 기준보조를 개정을 제안하였다. 셋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개별법에 따라 각 부처가 제각각 추진하다 보니 중복지원 방지 및 통일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지원부서 일원화 및 개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중간조직을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중간조직 설치를 제안하였다. 넷째, 향약내용 중 불합리한 조항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향약표준안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마을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읍·면·동장의 개방형직위와 지역을 확대하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확대를 제안하였다. 여섯째, 마을 안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마을공동체에서 토론과 조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 제도의 적극 홍보와 활용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마을내부 개선사항은 첫째, 마을의 일을 논의하기 위한 의결기구에 여성 및 청년 참여비율 제도화를 제안하였다. 둘째, 마을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총회에 청소년 등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회 참여권 확대를 제안하였다. 셋째, 마을재산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자산청구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제안하였다. 넷째, 리민의 자격을 갖기 전 재능기부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주민에 대한 참여권 부여를 제안하였다. 다섯째, 향약의 불평등 요소를 정비하고 마을의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주민들이 제주문화를 이해하고 공동체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향약 재정비 및 정보공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동지역 마을을 포함한 제주지역 마을 전체의 향약을 수집하지 못한 점, 마을자치와 관련된 제도적 측면만 분석한 점,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못한 점, 마을자치 모형 일반화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마을의 행태, 환경, 역사와 향약과의 상관성을 연구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마을문화를 복원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향약, 마을자치, 협력형(큰 마을) 마을자치 모형, 위임형(중간 마을) 마을자치 모형, 통합형(작은 마을) 마을자치 모형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마을 자치는 거주하는 공간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 행태로 거주하는 마을 단위의 공간을 전제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정치적(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였다. 인간은 유일적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사람은 혼자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은 집단 즉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지역이라는 마을을 기준으로 볼 때 생활하는 공간에서 거주민들 간의 밀접한 관계성을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 한다.

우리나라는 생활 거주환경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가까이 지내는 형태의 관계적 친밀도를 나타내는 말로 이웃과의 관계를 ‘이웃사촌’으로 표현한다. 이는 거주공간인 마을에 속해 있는 주민들 간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거주공간과 지역을 기준으로 마을의 범위가 작은 지역에서는 친밀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마을단위의 규모가 큰 도시지역일수록 그 정도는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거주공간의 크기에 따라 친밀도의 강도는 변화하나, 이웃과의 관계는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간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주민들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갈등 혹은 현안문제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 구성원들의 모여 논의하는 마을회의, 반사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해결하는 것을 마을 자치라 할 수 있다. 즉 마을자치는 그 마을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구성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관습을 만

들어 운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지역 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물리적인 공간에 사람, 행정기관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현대민주주의는 적절한 수준의 자율권이 확보된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의사가 지방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유효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를 두어 대의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부 지배집단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주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 민주정치 체제는 주민의 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다.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참여 즉 근린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이다.(이승종 외, 2015)<sup>1)</sup>

주민의 참여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지역사회 역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제주의 경우 지역주민들이 뽑은 마을 리장을 놓고 해임과 선거무효 소송이 진행되는 등 리장선거 이후 갈등이 발생한 마을도 있고 마을마다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각종 개발사업 유치 여부를 놓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마을마다 리장의 권한이 커지고, 해수욕장, 공동목장, 농업직불제 등의 수익사업과 마을재산 관리·결정 권한이 리장에게 주어지는 등 리장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리장 선거의 경쟁률이 치열해진 점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리장 선출과 해임을 놓고 고소·맞고소로 법적 다툼이 진행되면서 지역주민들 사이에도 갈등과 반목이 계속돼 마을이 양분화되고 각종 현안이 해결되지 않아 마을 행정에 공백이 나타나는 마을도 있다. 이 외에도 마을로 전입해 오는 이주민이 많아지면서 수백 년을 이어 온 농촌 고유지명을 이주민이 카페 이름으로 상표권을 등록해 주민들과 분쟁을 겪은 바 있고, 문화와 사고방식 차이로 주차문제, 쓰레기문제 등 기존 마을주민과 이주민들 간에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타 지역의 경우도 대규모 투자와 개발이 예상되거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이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마을 리장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하고 마을 리장 자리가 단순 봉사직이라는 얘기는 옛말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리장의 권한과 역할을 둘러싼 갈등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서류상 공동소유자로 등재한 마을주민이 사망하면서 채

---

1) 일반적으로 지역공간은 규모에 따라 지역(region), 지방(locale), 지역사회(communit), 근린사회(neighborhood) 순으로 불린다. 여기서 근린이라는 용어를 엄격하게 사용하기보다는 지역사회와 혼용되면서 기초자치단체 하부구역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경우 근린은 읍·면·동, 통·리, 마을, 부락 등을 통칭하게 된다(이승종 외(2015), 근린자치제도론, 박영사).

무변제로 경매에 들어가 같은 토지를 마을회에서 다시 구입해야 하는 등 마을공동 재산을 둘러싼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다변화된 환경 속에서 이주민 문제, 마을대표 선정문제, 마을재산 관리등 내부갈등과 법적분쟁등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사회의 문제를 외부 힘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주민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합의를 통해 조화롭게 풀어갈 수 있는 마을 단위의 자치규정 수립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근대국가가 형성되기 이전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는 중앙권력이 지방까지 통제하지 못하는 공간적 범위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각 지역 단위에서 마을규약인 향약을 제정하여 그 향약을 근간으로 마을자치를 시행하고 있었다. 마을향약은 근린자치의 원형을 이루는 것이다. 향약에는 공간을 규정하는 구역, 조직, 회의운영, 향원(리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징과 각 마을 단위 특색이 달라 마을마다 마을규약(향약)이 많이 남아 있다.

제주지역은 43개 읍·면에 172개의 행정리 단위 마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읍·면지역에 속해 있는 행정리의 마을들은 전통적인 마을규약인 향약을 마을운영의 기초로 삼고 있다. 향약은 마을에 따라 마을회 규약, 마을회 회칙, 마을회 정관, 마을회 향약, 마을회 규칙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정취지를 비롯해 마을단위 조직, 마을주민의 권리와 의무, 선거권과 피선거권, 마을회의, 재산관리, 상·벌규정 등 세부적인 마을 운영방식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마을공동체를 운영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

마을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마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향약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다. 이에 마을 향약이 어떤 논의구조를 거치면서 어떻게 정당화되는지, 운영방식은 어떠한지, 마을마다 그 구조는 어떻게 다른지, 마을단위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치행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마을단위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치행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모형을 구축하고, 마을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제주지역 마을은 마을 자치규약인 향약을 중심으로 마을자치를 실현하고 있다. 마을자치는 마을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조직된 주민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마을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마을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치행정은 각각의 마을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다. 마을의 특색과 환경이 반영된 마을자치 규약인 향약이 지역단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제주지역은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마을단위 조직들이 새로운 변화의 계기에 직면해 있다. 제주로 이주하는 이주민이 마을에 늘어남에 따라 마을주민의 자격과 권리를 부여하는 일에서부터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마을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마을에서는 마을자치 규약인 향약을 통해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현재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주민간의 갈등문제, 환경적 문제, 마을공동체 문제, 마을자산 문제, 복지서비스 문제, 마을 구성원 문제 등 시대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향약은 마을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든 마을자치규범이다. 공동체 구성에서부터 마을재산의 분배, 마을주민의 권리 등 마을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 규칙을 정해 놓은 것이다. 이는 유럽 및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근린자치의 개념과 동일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Lowndes Sullivan, 2008; 소진광, 2012).

제주지역 향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을단위 조직, 마을주민의 구성, 권리와 의무, 선거권, 피선거권, 마을회의 발언권, 의사결정권, 공간을 규정하는 구역, 임원의 성격 및 선출, 선거 방법, 회의 종류, 마을사업의 종류, 재산관리, 마을자산, 향약 개정, 상·벌규정, 회계규정 등 세부적인 마을운영 규칙을 망라하고 있다.

향약의 규정들은 마을 주민들 스스로 준수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주지역 마을단위의 향약은 그 시대와 생활수준에 맞게 수많은 변화와 개정을 통해 지금에 이르렀다. 마을의 회로애락을 함께하고 마을주민과 같은 공간에서 변화되고 계승되고 있는 각 마을의 전통 규범인 것이다. 또한 향약을 기준으로 마을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역사적 사료이기도 하다.

향약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발전을 근간으로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보조수단이자 마을단위에서 규정하는 규범이다. 마을주민들의 기본 욕구와 규범을 적절히 혼합하여 그 규정들을 정리하고 있는 향약을 제주도 읍·면지역과 서귀포시 읍·면지역별로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마을단위 자치행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이 이 연구가 추구하고 있는 중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1. 연구 범위

제주지역 마을자치는 향약을 기준으로 읍·면단위 행정리에서 시행되고 있다. 제주지역 향약은 각 마을별로 차이가 있으나 수집된 향약에 의하면 1930대에 제정된 기록을 갖고 있는 마을도 있다. 향약 제정 이후 각 마을에서는 수정·보완하는 개정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사회에서 향약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연구하였다. 각 마을별 사회제도 및 공동체 구성 등 향약이 마을의 자치규범으로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 1)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제주의 마을향약을 분석하여 마을단위 자치행정체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마을자치 활성화와 효율적인 마을자치 모형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읍·면 단위에 속해 있는 행정리 단위의 마을 향약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마을향약에 규정되어 있는 리민의 권리 및 의무, 마을공동체 규정, 회의규정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마을자치를 활성화하

기 위한 정책제언 및 마을자치모형 제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인구 유입에 따른 갈등 요소 해결을 위한 향약정비 현황을 분석하여 마을향약이 주민들의 약속을 담은 규정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 2)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제주의 읍·면지역 행정리로 한정하였다. 이는 제주지역 읍·면 단위 조직인 행정리에서 향약을 보유하고 있는 빈도가 높고 마을운영의 기초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단위 마을은 도시화가 되어 있어 향약을 근간으로 생활하는 환경을 찾기 어렵고, 각 동에 속해 있는 자연마을의 수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시 동지역 및 서귀포시 동지역의 자연마을은 제외하였다.

## 3) 시간적 범위

본 연구에서 시간적 범위는 향약을 수집한 시기인 2019년 1월 ~ 2019년 8월까지로 한정하였다. 이는 각 마을에서 연 1회 개최하는 정기총회를 1~2월에 개최하고 있고, 임시총회도 전반기에 개최하고 있는 마을들이 많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향약이 정기총회 혹은 전반기 임시총회에서 개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향약의 수집 시기를 전반기 임시총회가 종료하는 8월로 한정하였다. 향약수집과 동시에 향약분석 및 마을자치 요소를 찾기 위해 관련 전문가 면담을 2019년 9월 ~ 2019년 10월까지 2회 실시하였다. 마을자치 제도화에 대한 리장과의 심층면접조사는 2019년 11월 ~ 2019년 12월까지 2개월간 실시하였고 정책제언 및 마을자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20년 1월 ~ 2020년 2월까지 2개월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마을자치 활성화와 마을자치 모형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문헌연구와 개인면접을 통해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심층면접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양적연구 방법을 병행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관련 분야의 국·내외 문헌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론을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의 목적 및 방향을 제시하고 마을단위 자치행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요인을 파악하였다.

둘째, 근린자치 및 지방자치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해외의 근린자치 사례를 분석하여 제주지역 마을자치의 특성과 비교하였다.

셋째,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기법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분석해 보지 못한 읍·면 지역에 속해 있는 행정리 단위 마을별 향약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하여 제주지역 마을별 향약의 구성현황 및 권리 등 세부적인 연구 과제를 도출하였다.

넷째, 향약 분석을 토대로 자치행정 연구학자,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sup>2)</sup> 분석을 통하여 마을자치 모형의 요인을 찾아내고 마을자치회 대표인 리장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진행하였는데 1차 조사는 델파이 기법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고, 2차 질문 문항은 1차 개방형 질문을 근거로 구조화된 폐쇄형 2차 질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다섯째, 향약분석 및 심층면접조사를 바탕으로 마을자치 운영실태와 정책제언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마을자치 모형을 제안하고 마을자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정책제언 및 향후 미래 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 등을 정리하였다.

### 3. 연구의 흐름

본 연구는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모형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로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모형을 제안하기 위해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하였다. 둘째, 마을향약의 수집시기와 수집대상을 명확히 하고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 방법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문헌고찰을 통하여 마을자치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자치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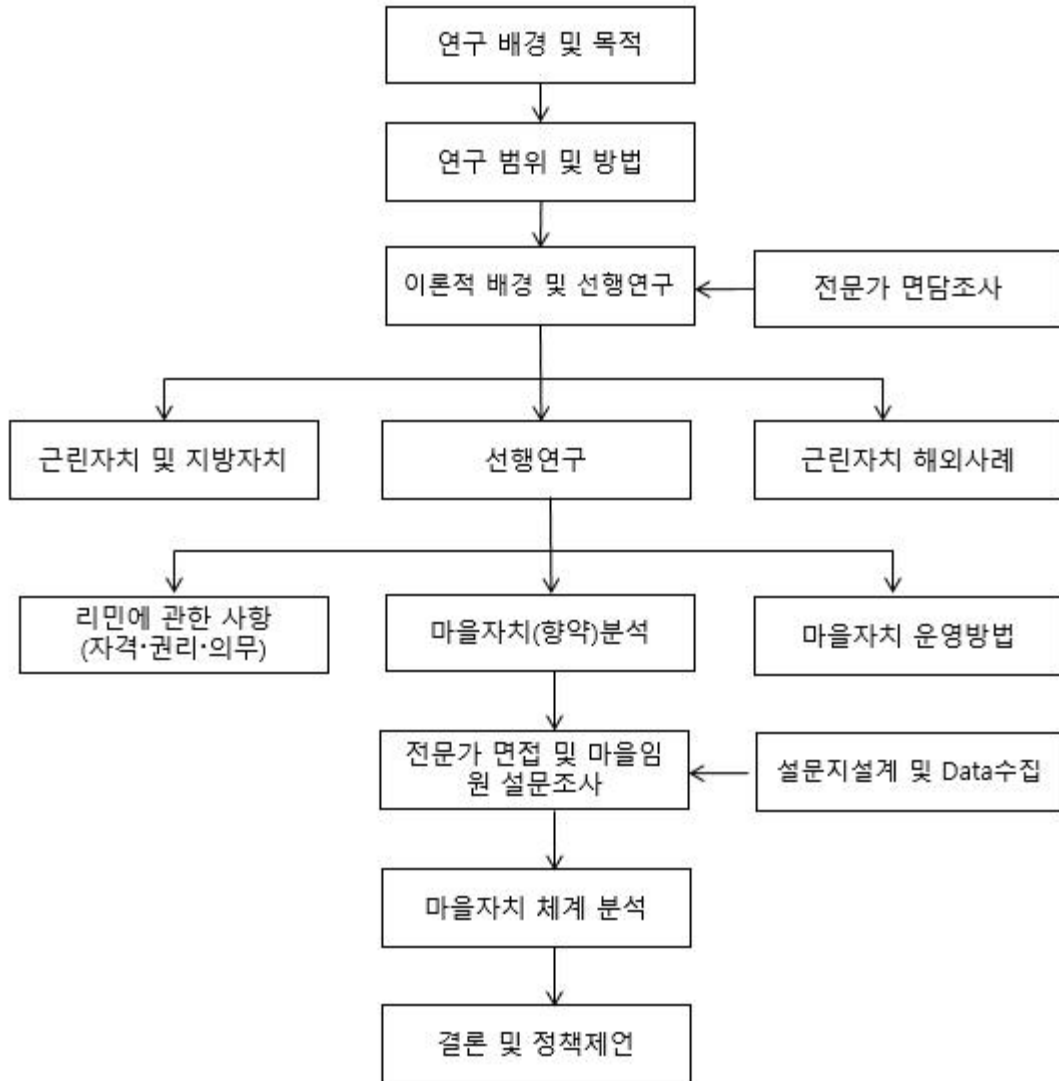
---

2)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은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통한 문제해결 및 미래예측을 위한 기법이다. 전문가 합의법이라고도 하며 IT분야, 연구개발 분야, 교육 분야, 군사 분야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위키백과 사전).



학계, 자치행정 담당공무원, 마을리장을 대상으로 마을자치 제도화를 위한 요소를 찾기 위해 전문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넷째, 선행연구를 통해 근린자치의 해외 사례 및 근린자치와 지방자치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리민의 권리와 의무, 마을자치 운영현황 등 향약을 통한 마을자치 현황을 분석하였다. 여섯째, 마을자치 전문가인 리장을 대상으로 마을자치 제도화에 대한 심층면접조사와 마을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마을자치 활성화와 마을자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마을자치모형을 제시하고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근거의 연구진행 흐름도는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 제 2 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 제 1 절 마을자치<sup>3)</sup> 개념과 형태

#### 1. 마을자치의 의의 및 필요성

##### 1) 마을(근린)자치의 의의

마을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의 모여 사는 곳’으로 장소에 바탕을 둔다. 즉 마을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 범위와 사회적 범위를 모두 포함하는 곳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마을이란 단어의 어원은 농경시대 농사를 짓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소에서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을을 이루는 촌락단위 마을리(里)의 한자를 살펴보면 리(里)는 밭전(田)자와 흙토(土)자로 이루어진 글자이다. ‘마을’은 순우리말이다. 마을단위 명칭은 땅과 지형지물, 모래, 들판 등 주로 지형지물을 반영했음을 알 수 있다. 마을이름을 살펴보면 감나무골, 배나무골, 어등포(임금이 들어온 포구, 제주의 행원리 포구를 지칭함), 상덕천(윗마을), 하덕천(아랫마을)등으로 들 수 있다. 마을은 촌락, 고을, 동네, 부락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마을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또한 학자들에 의하면 마을은 근린(Neighbourhood)이란 이름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근린이란 ‘일정한 주거공간의 인접성을 기반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비공식적 또는 대면적 교류에 관여하는 거주지 주변 장소를 말한다(곽현근,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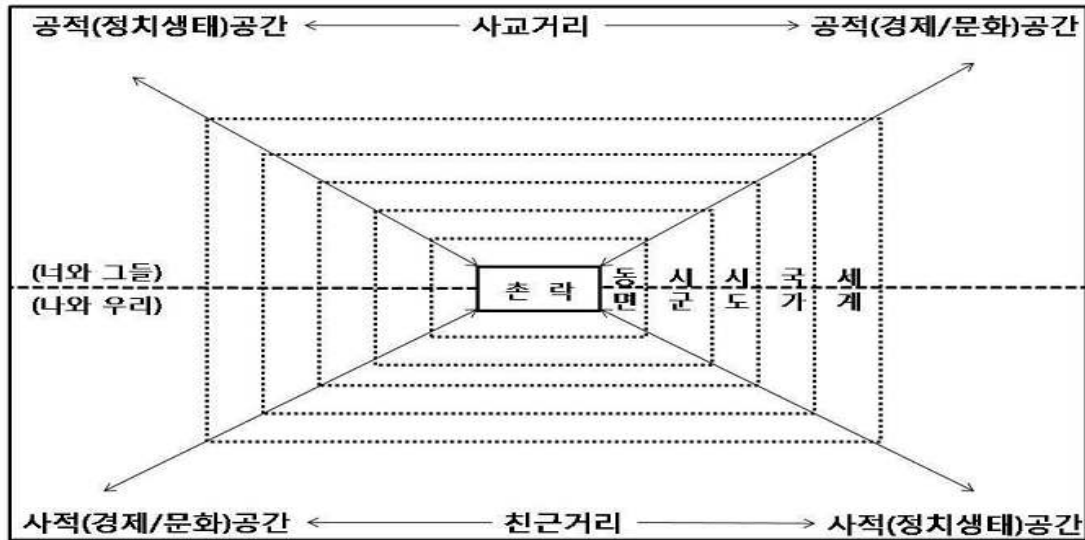
사람들의 거주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사람들 스스로 거주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보완하는 것이 근린자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근린자치란 마을이라는 공간적인 속성과 사람이라는 사회적 속성의 결합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지리적 단위와 생활방식으로 형성된 인간적인 관계의 대상까지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소진광, 2012).

따라서 근린자치는 지역 하위 단위에서 공공서비스 및 집합적 의사결정을 하기

3) 본 논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읍·면지역에 속해 있는 행정리 마을을 근린으로 한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을이란 개념은 근린이라는 개념과 같은 맥락으로 쓰고 있다.

위한 것으로 정치 및 행정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Lowndes Sullivan, 2008). 이를 종합하면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근린의 공적·사적 공간의 경계넘기



자료: 심광택(2009: 514) 인용

또한 마을자치는 풀뿌리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정치에서 소수의 엘리트 계급에 의해 국민들의 지배되는 엘리트주의를 멀리하는 것이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곧,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생활을 변화시키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조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선출한 의원들은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주민의 참여하는 지역참여예산제 등의 풀뿌리민주주의의 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위키백과).

우리나라에서 풀뿌리민주주의는 우리사회의 기초자치단체수준의 지방자치를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풀뿌리민주주의는 1912년에 미국 공화당에서 분리된 진보당이 내건 이념 중 하나이며 1935년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의회제에 의한 간접민주주의를 반대하면서, 시민운동·주민운동 등을 통한 참여민주주의를 강조한데서

유래한 개념으로 지금은 일반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풀뿌리민주주의는 정당과 같은 거대 조직의 움직임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 또는 민초들이 조직화하여 참여하는 정치과정을 말하는 것이다(곽현근, 2017).

풀뿌리가 상징하는 것은 건강하게 자라 뿌리를 내린 풀은 서로 강하게 얽혀있어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풀의 뿌리는 무리로부터 분리되면서 가졌던 힘과 성격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한 지역의 구성원들이 항상 상호연결망과 유대를 형성했을 때 그 지역은 집단적 역량을 갖추고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외부로부터의 위협이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Conn, 2011).

풀뿌리민주주의는 각각의 주민들의 관계 속에서 집단적 역량을 키운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그 집단의 바람과 요구들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집단역량을 갖춘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게 되면서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좋은 정부’를 만들게 된다는 논리를 말하는 것이다.

마을자치는 단순한 대의민주제의 선거 참여의 의미를 넘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 단위에서 정치적 참여와 지방정부의 정치행정과정에서 주민참여까지 영향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는 마을자치를 단순히 지역단위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활동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행정과정에 참여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 2) 지방자치와 마을자치의 관계

자치란 사전적 의미로는 자기 일을 스스로 다스림, 혹은 ‘저절로 다스려짐’을 의미한다. 법률적인 의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다스림의 주체와 객체가 따로 있지 않다는 말이다. 마을자치는 지방자치와 지방자치정부의 원리로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구분되고 이해될 필요가 있다. 단체자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수직적이고 하향적인 관계에 초점을 두면서 정부의 권한과 책임의 배분 문제가 일차적 관심사가 될 수

있다. 단체자치를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면 중앙정부 즉 국가와 다른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지위, 권한 등을 인정받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일정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책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주민자치는 지역사회 문제를 그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스스로 결정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과에 책임을 진다는 민주주의 철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지역에 공식 권한을 갖는 통치기구는 주민 대표적 성격을 띠어야 한다는 것이다(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7).

1985년 유럽평의회<sup>4)</sup>가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기본정신을 천명하기 위해 유럽지방자치헌장을 제시하였다. 이 헌장의 제3조 1항은 지방자치는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정부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사무를 법률의 정해주는 범위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제3조 2항을 통해 지방정부가 가질 수 있는 자치권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여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구나 집행기구를 말한다 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직접참여에 의해 행사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지방자치헌장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 자치권능에 관한 문제로 지방자치는 자치사무와 자치권 그리고 자치능력을 바탕으로 성립됨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자치권 행사의 주체에 관한 문제로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자유의지에 의해 성립된 자치정부에 의해 또는 주민의 직접참여에 의해 운영되는 현상임을 명기하고 있다. 셋째, 국가와의 관계에 관한 문제로 지방자치는 국가체계를 떠나 존재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자치권 행사가 국가에 의해 일정한 지리적 경계와 권한의 한계가 지워진 지방정부 그리고 그 주민에 의해 이루어짐을 규정하고 있다(김병준, 2009).

이기우(1995)는 지방자치란 주민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욕구를 적절히 수용시켜 줌으로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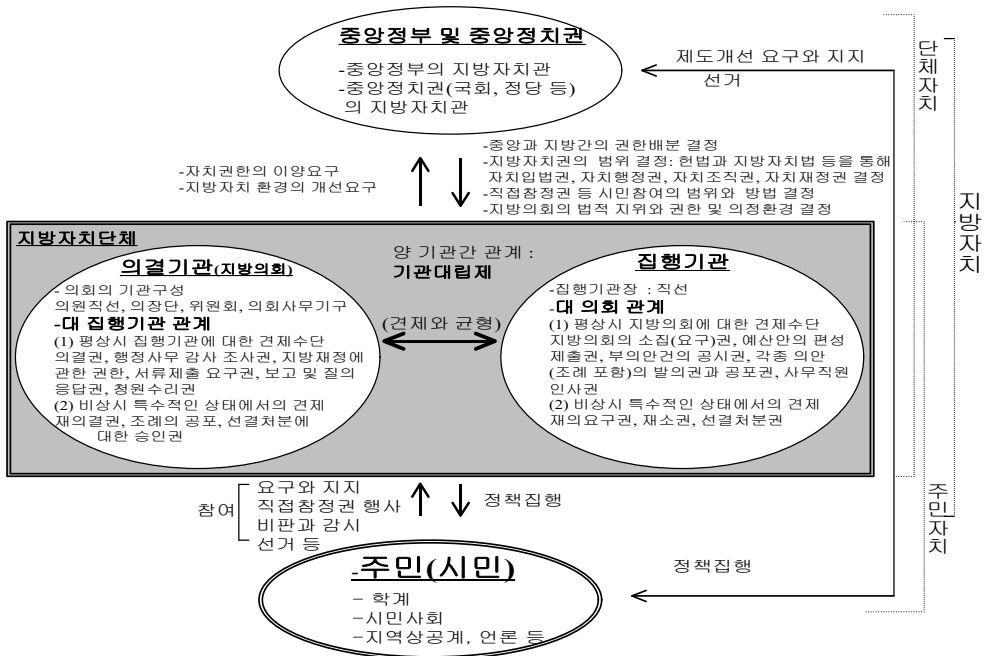
---

4)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는 1949년 유럽 내 국가들의 인권신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창설된 유럽의 국제기구다. 유럽 통합을 위해 기능하는 가장 오래된 기구 중의 하나로 유럽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국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 공동의 이상과 원칙을 지지하고 있으며 국방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점진적인 유럽 통합을 지향한다. 2008년 몬테네그로를 마지막으로 현재 47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1993년 창설된 유럽연합과는 다른 별도의 기구이며, 그 일부도 아니다. 두 기구는 상호보완적이며 상호협력적이다.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구조를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지방자치단체 내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 그리고 시민과 지방정부의 관계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고 제도의 미비로 시민의 지방정치에 참여 기능이 약하며, 지방의회와 시민간의 연계성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마을 자치는 주거지 주변 즉 마을의 공간단위를 매개로 하여 해당 지역의 지방정부 및 주민, 이해당사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서비스를 위한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장소에 기초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공간은 집합적 행위자 형성을 위한 중요한 사회·공간적 단위로 인식된다(Cars, 2004). 근린자치는 근린단위로써 통치하고 있는 정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 방식이 통치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맥락으로 논의될 수 있다(곽현근, 2012). 여러 학자들의 연구의 맥락 관계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지방자치와 관련된 주체간 개념도



자료 : 송광태(2013: 15) 인용

마을자치에서 핵심이 되는 거버넌스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 주민조직, 민간 파트너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종류는 세가지 형태로 분류가 될 수 있다. 첫 번째, 계층적 거버넌스이다. 이는 리더가 다른 구성원을 통제하는 과정으로 하향적 거버넌스로 정의할 수 있다. 두 번째, 자율 거버넌스이다. 근린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스스로 집단을 형성하여 대표하는 상향적 거버넌스를 말하는 것이다. 세 번째, 공동거버넌스이다. 문제를 결정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과 협력적으로 일하는 방식이다. 협력방식에서는 평등과 상호 존중의 원칙에 기초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Kooiman, 2000).

마을자치에 따른 근린규모의 유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 500명미만의 함께 모여 사는 작은 집단을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500 ~ 3,000명 미만이 거주하는 이름이 붙은 가장 작은 단위의 거주지를 말할 수 있다. 세 번째, 3,000명 ~ 20,000명 미만의 최소단위 정부가 관할 하는 거주지를 말할 수 있다. 네 번째, 20,000명 이상이 지속가능한 최소단위 거주지를 말할 수 있다. 이는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근린규모 유형

근린 규모	정체성	특징	주민수
1	함께 모여사는 작은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웃과의 일상적 접촉으로 형성된 정감, 친사회적인 행동 등으로 특정됨.</li> <li>- 작은 공식적 조정이나 규제를 필요로 하지 않음.</li> <li>- 근린의 형태이지만 다른 영역에서 근린을 대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li> </ul>	500명 미만
2	이름이 붙은 가장 작은 단위의 거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규모의 중요한 속성은 정체성으로 이웃들 사이의 관계가 집단, 지위, 계급, 인종, 연령 등과 관련된 정체성을 통해서 매개 됨.</li> <li>- 지역사회결사체, 근린주거조직, 소규모 스포츠 동호회와 같은 조직화 동인이 작동함.</li> <li>- 근린을 대표하는 조직을 가질 규모가 되며, 주민들 전체가 참여하고 숙의할 수 있는 포럼 형태의 ‘자율거버넌스’가 가능함.</li> <li>- 근린조직이 다른 근린이나 더 높은 규모에서 해당 근린을 대표할 수 있음</li> </ul>	500 ~ 3,000명
3	최소단위 정부가 관할하는 거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가 이 규모에서 학교, 치안, 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좀 더 제도화된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됨.</li> <li>- 영국의 패리쉬, 타운의회나 프랑스의 코민 등 지방정부의 일차 계층의 형태.</li> <li>- 선출직 공직자들이 근린 형성을 지배하는 ‘계층적 거버넌스’의 성격을 띠.</li> <li>- 많은 주민조직들이 이 단위에서 활동하지만 전체 근린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움.</li> <li>- 최근 이 규모에서 정부와 비정부조직 사이의 파트너십에 관여하는 주민 추세가 늘어남.</li> </ul>	3,000명~ 20,000명
4	지속가능한 최소단위 거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 대학교 등의 요소가 가미되며, 근린이기보다는 도시적 성격을 띠.</li> <li>- 경제적 차원이 강조되며, 세계화에 따른 도시 간 경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li> </ul>	20,000명 이상

자료 : 광현근(2011: 19)을 인용하여 연구자 재구성

### 3) 마을자치의 필요성

마을자치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지방행정의 보조차원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서 일부 사무와 기능을 재분배하는 식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근린자치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제를 보완하고 정부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는 행정에 종속되기 보다는 대의민주주의의 보조적 수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90년대말 신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근린단위까지의 분권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 중심으로 다양한 근린자치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2010년 보수당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기능은 더욱 강화되었다(소진광, 2012). 마을은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하여 정부의 책임성을 실현할 수 있는 민주적 제도로 인식되어 왔다. 지방정부와 민간조직의 역할 분담 관점에서 마을자치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근린은 사람이 생활하는 환경으로 지속적인 회복작업을 위한 장소이자 치유의 장소라고 말하고 있다. 생활환경 속에서 이웃과 꾸미지 않은 상태에서 접촉하고 거주하는 생활환경으로 인간의 삶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곳이다. 두 번째, 공공재를 효과적으로 공급해주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이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공공재를 생산하고 이를 전달하는 과정이 일어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마을자치를 시행하면서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수혜자의 협상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자치를 강화하면 지역사회 완전성이 강화된다. 이 과정에서 평균적 분배논리, 배분적 조화로 전환되어 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자치 공간 규모의 효율성과 공정성은 자치규모가 커지면 재정투입의 효율성은 증가하고 이에 반해 근린자치는 불가능하다. 반대로 자치의 공간규모가 작아지면, 근린자치가 활성화 되는데 반해 효율성이 감소될 수 있다. 그런데 자치의 공간규모가 작아지는 경우에서 근린자치의 활성화가 전제된다면 재정의 효율성은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다음 <표 2-2>와 같다. 자치 공간의 규모를 작게 하면 민주성은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 경우에는 마을자치를 활성화시키면 지역 서비스 및 효율성도 증가 될 수 있다. 마을 자치 활성화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생산과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

<표 2-2> 자치의 공간규모에 따른 민주성과 효율성의 관계

구분	자치의 공간규모	
	커질 경우	작아질 경우
편익배분의 민주성	감소함	증대됨
재정투자의 효율성	증대될 수 있음	감소할 수 있음

자료 : 소진광(2012: 5) 인용

## 2. 마을자치의 효과와 제모형

### 1) 근린(마을)자치의 효과

근린자치의 효과는 다음과 같은 맥락으로 접근할 수 있다. 첫 번째, 일반적인 지방정부의 전통을 보완하고 주민자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2006년 노무현 정부를 시작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분권화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어 왔다. 이는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주민자치의 체감의 질은 매우 낮았다. 일부 영역에서 민원 행정만 개선한 것에 국한되었다. 이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적 대응성 부문과 민주적 투명성 부문이 체감도가 대단히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생활자치의 중심적인 지역공동체 회복도 매우 부진하였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자치는 행정 편의적인 관점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 주민자치는 주민들 스스로 차별화의 이점을 통해 주민들이 선택의 폭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주민들의 선택은 다양성을 기초하고 있고, 주민들이 선택의 폭을 확대하게 되면 주민들은 공공재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참여하게 된다. 이처럼 근린자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동생산자로 전환시킨다.

두 번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축적하고 근린자치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신뢰와 규범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수단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협력과 거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근린 사회에 존재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Putnam, 1993). 또한 사

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는 신뢰, 참여, 네트워크, 규범준수, 이타적 성향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소진광, 2012).

사회적 자본의 신뢰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신뢰와 개인간의 신뢰로 구분될 수 있다. 참여는 지역행사 및 투표참여율, 지역공공기관 이용횟수 등으로 측정될 수 있다. 네트워크는 지역 자생단체와 지역사회단체 가입의 수, 이웃의 범위, 지역사회의 리더십으로 구분된다. 규범의 준수는 지역사회 규범에 대한 인지정도, 범법행위 신고율, 청소년 선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타주의는 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 기부, 불우이웃 배려, 포용력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전반적인 사회활동과 개인적인 심리나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지역발전에 중요한 척도로 인식되고 있다.

세 번째, 근린자치의 경제적 효과이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생산과 분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치안, 방범, 교육과 같은 공공재 서비스를 공동 생산하는 방식에 의해 효율화를 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분의 생산이란 수혜층 시민들의 자신들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또한 이 참여방식은 수혜자가 본인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달방식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정책에 영향을 받지만 시민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하여 서비스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2) 근린자치의 모형

Lowndes Sullivan(2008)은 영국의 사례를 통해 근린자치 역량강화, 근린파트너십, 근린정부, 근린관리 등 네 가지 모형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다음 <표 2-3>과 같다.

<표 2-3> 근린자치의 네 가지 모형

구분	역량강화 모형	파트너십 모형	정부 모형	관리 모형
주요논리	시민성(civic)	사회성(social)	정치성(political)	경제성(economic)
주요목표	적극적 시민과 응집적 커뮤니티	시민웰빙재생	의사결정에의 대응성과 책무성	효과적인 지역서비스 전달

민주주의 형태	참여민주주의	이해관계자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시장민주주의
시민역할	시민:주장(voice)	파트너:충성	유권자:투표	소비자:선택
리더쉽 역할	참여독려추진자 및 촉진자	중개인, 의장	의원(councilor) 소시장(mini-mayor)	기업가, 감독자
제도형태 (영국)	포럼,공동생산	서비스위원회, 소규모 전략적 파트너십(LSP)	타운회의, 지역위원회	계약, 현장

자료 : Lowndes and Sullivan(2008) 인용

근린역량강화(Neighbourhood Empowerment)모형은 시민이 직접 참여기회를 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근린은 시민들의 공식·비공식적으로 자주 만나고, 대화하는 지역 수준이기 때문에 관습적인 지역 정치에서 대중의 참여가 쇠퇴하는 상황에서 시민의 참여 증진을 위한 가장 적절한 공간이 될 수 있다. 공간의 근접성과 연계성은 시민참여의 잠재적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근린 수준에서 참여 민주주의 형태를 발전시킴으로써 시민들의 주장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을 구현할 수 있다. 이 모형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참여의 양적 크기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외된 집단들을 참여시키는 참여의 배분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근린파트너십(Neighbourhood Partnership)모형은 근린자치의 사회적 원리를 적용한 유형이다. 근린은 시민의 후생(wellbeing)을 시민 전체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혁신을 위한 장을 마련하기에 가장 적절한 수준이다. 근린파트너십은 공공서비스 위원회나 전략적 포럼을 통해 주요 서비스 공급자 및 의사결정자들을 소집하고, 집합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원, 위험, 성과 등을 분석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목적을 달성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린정부(Neighbourhood Government)모형은 근린자치의 정치적 구조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의사결정에서 보다 대응적이고 책무성 있는 대의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민은 직접적인 역량강화보다는 대표해 줄 지역 위원들을 선출하고, 그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 시민이 지닌 핵심자원은 투표권이다. 의원은 유권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옹호하고, 지역 업무를 잘 도출하며,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로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의 확대가 필요하다. 근린정치의 근접성과 관련성은 선출직 정치인들과 대의민주주

의 제도에 대한 신뢰 재건의 기반이 된다.

근린관리(Neighbourhood Government)모형은 지역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편익에 초점을 맞춘 경제적 원리에 기반한다. 일선 관리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그들이 시민의 수요에 더 잘 대응하고 분리된 서비스를 결합함으로써 분배적 효율성을 개선하며,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낡은 전달방식은 폐지한다. 근린관리는 서비스 관리자들과 이용자들의 서로 접근성이 높은 근린에 함께 위치함으로써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범위의 경제를 발생시키며, 서비스의 공동생산이 가능해진다. 이 모형에서 중요한 리더십은 고객 중심의 관점을 지니고, 혁신과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기업가적 기술이다. 시민은 세금을 지불하는 소비자이므로 생산자는 시민선호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는 시장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하다(이승중 외, 2015).

## 제 2 절 해외의 마을(근린)자치 사례

### 1. 미국의 마을(근린)자치

미국의 정부구조를 살펴보면 연방정부 아래 50개의 주정부가 있고, 주정부 아래 다양한 형태의 지방정부가 존재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일반목적 지방정부와 특별목적 지방정부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목적 지방정부는 39,044개로 3,033개의 카운티(County)와 36,011개의 카운티 하위정부(Sub-County Government)가 있다. 카운티 하위정부에는 19,492개의 지방자치단체와 16,519개의 타운 및 타운십이라는 주민자치조직이 존재하고 있다. 특별목적의 지방정부는 14,561개의 교육자치구(School District)와 37,381개의 특별자치구(Special District)가 존재하고 있다.

미국의 대도시에서 근린참여제도가 활성화된 계기는 1930년 대공황시절의 뉴딜정책과 1960년 ‘위대한 사회’를 지향하던 ‘빈곤과의 전쟁’ (The War on Poverty)에서 나타난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마을 참여제도가 활성화되게 된다. 이 두 번의 어려운 시절을 통해 연방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것은 미국의 오랜 전통인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일탈을 의미했다.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의 ‘뉴 프론티어’(Now Frontier)로부터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에 의해 미국사회의 개혁의 시도된 시기이다(김덕호, 1997).

존슨 대통령은 지방수준에서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CAP(Community Action Program)를 구체화하여 추진하게 된다. 이는 각각의 지역에서 집단 구성원들의 최대한 협력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과 서비스를 받는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개발하고 집행하는 행정권한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강력한 시민참여를 유도하였다. 이 시기에 연방정부 지원과 함께 많은 도시에서 마을의회(Neighbourhood Councils), 의제선정위원회(Priority Boards) 혹은 마을 실천위원회(Neighbourhood Action Committee)와 같은 공식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시 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민들에게 부여하였다. 이후 각각의 도시의 마을자치에 지원되던 연방정부 프로그램이 끝나고 지방정부의 자금배분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서 1980년대 일부 마을참여제도들이 쇠퇴했지만, 1990년까지 많은 체계들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7).

<표 2-4> 미국의 근린참여제도

유형	정보제공형	서비스 제공형	소극적 협의형			적극적 협의형	의사결정형	
			Los Angeles	Eugene	Seattle		Birmingham	St. Paul
도시	San Antonio	Daytoy	Los Angeles	Eugene	Seattle	Portland	Birmingham	St. Paul
도입시기	1970년 초반	1970년대 중반	2000년	1973년	1987년	1974년	1970년 중반	1970년대 중반
인구범위 (명)			13,819 ~ 85,913	386 ~ 22,689	44,000 (중위인구)	70 ~ 14,000		7,000 ~ 28,000
근린조직수		90	100여개	21		90여개	93	
참여제도	공공서비스 커뮤니티	근린과 의제선정 위원회의 이원화	근린 의회, 전체근린집회	근린조직, 근린지도자 협의회	시단위 근린의회	자율적 근린조직, 지역구연합 위원회, 예산자문 위원회	근린조직, 지역사회, 시민자문 위원회	지역구 의회, 자본증진예산위원회
경제설정	자율적 조정, 경제 중복 허용, 전체인구의 30%만을 커버	자율적 조정, 경제 중복 불허	자율적 조정, 경제 중복 불허	자율적 조정, 경제 중복 불허	자율적 조정, 경제 중복 불허	자율적 조정, 경제 중복 불허	자율적 조정, 경제 중복 불허	자율적 조정, 경제 중복 불허
기능	정보제공	정보제공, 서비스제공	행정정보 제공(시-근린), 시책사전 협의와 조율	정보제공, 자문	전반적인 시정에 대한 자문	행정부야별 자문과 구체적협의	정보제공, 의사결정 참여	자문, 의사결정 참여
주요사업	도시전체회의, 시정부에 대한 시위, 히스패닉 지역의 목소리 대변	리더쉽 훈련, 월 별 위 원 회, 근린욕구 성명서, 근린기획, 발의권, 자조프로그램	주민 참여 기반 조성, 조기통보 시스템, 시장·시의회·시행정 부서에 대한 자문		매칭펀드 프로그램, 지역서비스 센터 훈련 프로그램, 사회적보존 프로그램	근린욕구분석, 범죄 예방사업, 토지이용 및 종합지역계획, 자조개발 보조금, 시민중재프로그램	월간소식지 전달, 지역사회 발전보조금	조기통보시스템, 지역발전계획·도시계획 과정 지원, 커뮤니티센터
직원관리	시정부와는 독립적으로 운영	시청에서 1차 선발된 후보자 중 의제선정위원회가선발	주로 자원 봉사에 의존			지역구연합 위원회 가 직접 직원 고용관리	시 정부 가 직원 고용 관리	지역구위원회가 직접 직원 고용 관리
시정부와의 관계	모든 측면에서 시정부와는 독립적	상호협력	상호협력	시정부 우위의 상호 협력	상호협력	근린조직 독립적 상호협력	상호협력	독립적
정부형태	강 시장제	강 시장제	강 시장제		강 시장제	순수 커미션형	강 시장제	강 시장제

자료 : 이승중 외(2015: 43) 인용

미국의 근린조직은 자신들의 살고 있는 지역을 개선 하고자하는 주민, 이해관계자, 비즈니스 대표 등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근린조직은 특정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공무원 혹은 개발업자 등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 근린조직들은 대부분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근린 참여제도의 특징은 정당정치와 관계되지 않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근린조직은 기본적으로 모든 유형이 사람들을 대표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보면 위의 표 <표 2-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 미국 지방정부의 다양한 근린 주민공동체

미국 지방정부가 지원하여 설립하는 근린참여 조직은 자치단체가 아니며 법인격이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근린공동체는 지역마다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다.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는 구역의회라고 부르고, 오리건주의 포트랜드시는 근린협의회로 부르고 있다. 또 어떤 주민자치회는 지구연합위원회로 부르기도 한다(충남발전연구원, 2013). 일부도시에서는 각각의 근린조직을 연합한 조직을 두고 있으며 데이콘시의 경우 7개의 의제선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근린참여조직의 위원은 지역주민, 사업체 경영인, 지역의 이해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위원의 임기, 선출 방식, 위원의 수 등은 다양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이승중 외, 2015).

### 2) 기능 및 재원

미국 근린참여조직의 주요 역할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지방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일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역의 교통, 토지이용, 쓰레기 문제, 도시계획,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종합하여 지방정부의 의견 제출의 기회를 갖는다. 곧 지역주민이 대표성을 위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시 전역의 근린공동체와 연결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린참여조직의 재원은 주민들의 협력에 의해 마련된다. 이는 창립기금, 회비, 기부금,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등으로 조달된

다. 보조금은 조직 활동을 위한 자체 재원의 부족한 경우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근린조직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칭 펀드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오레건주 유진시의 경우는 근린조직에서 출자하고 정부 보조금을 더해 재원으로 활용되는 근린매칭 교부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에 효과적인 근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담당하고 있다. 근린차원에서의 지역개선계획 및 공동체 형성 활동 자금 등에 쓰이고 있다. 시 정부는 프로젝트 자금의 반 이상은 지원하지 않으며, 나머지는 주민의 노력봉사나 기부금 같은 재원을 활용하여야 한다(이승중 외, 2015).

### 3) 다양한 미국 근린참여 사례

#### (1) 뉴욕시 커뮤니티 위원회(Community Boards)

뉴욕시는 1898년 맨해튼 등 5개 지역에 대해 자치구를 구성하였다. 뉴욕시 주민들은 의회를 설치하지 않고, 직접 4년 임기의 구청장을 선출하였다. 약 50년 후인 1951년 맨해튼 구청장에 의해 12개의 커뮤니티 위원회가 관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설치된 커뮤니티 위원회는 15 ~ 20명으로 구성되어 지역계획 수립과 예산 선정에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후 1963년 뉴욕시 헌장에 의해 62개의 커뮤니티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75년 주민투표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 시 헌장에 의하면 주민 수 10만명 ~ 25만 명에 이르는 59개 지역 커뮤니티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예산 및 서비스 배분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뉴욕주의 브룩클린(Brooklyn), 스테이튼 아일랜드(Staten Island), 브롱스(Bronx), 맨해튼(Manhattan), 퀸즈(Queens)등 5개 자치구에서는 주민 직선 구청장을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대신 커뮤니티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뉴욕시 커뮤니티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뉴욕시 헌장에 의해 그 범위가 결정되는데 주로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지역수요의 파악이다. 둘째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에 관련한 행정기관과의 협의, 자문, 지원, 및 공청회 개최 등이다. 셋째, 커뮤니티 관리인의 임명 등이다. 넷째,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홍보 등이다. 다섯째,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 구체적 사업계획의

준비 등이다. 여섯째, 시의 예산, 사업계획, 투자우선순위 등에 대한 검토, 자문, 협의, 권고, 지역에 제공된 서비스의 양·질에 대한 평가이다. 일곱째, 시의 서비스 및 사업에 관한 정보의 전파, 지역주민의 고충, 요구, 질의의 처리와 같은 주민복지 등이다(이승중 외, 2015).

<표 2-5> 뉴욕시 커뮤니티 위원회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개요		- 뉴욕시 자치구 주민참여제도(59개) - 비영리법인체로 등록(지방자치단체 설정 구역과 조건 충족)
특징		- 대도시의 주민대표성 강화 - 행정업무 부담 완화 - 주민자생조직(연합)
구역설정		- 역사적·지리적 공통성 - 시의 행정서비스 제공 권역 - 인구균등화 : 평균 25만명
구성원		- 관할구역 거주자, 사업장
기관 구성	내부	- 구청장이 무보수명예직 위원 50명 지명, 지방의원 추천자, 지역구 지방위원 전문가 등(임기 2년) 출석률 낮은 위원 퇴출
	직원	- 유급사무원 배치 - 시에서 조정관 파견
기능		- 지역계획수립, 예산편성자문
재원		- (자주) 주민회비, 기부금 - (의존) 보조금
행정과의 관계		- 자치현장 제정으로 자율성 보장 - 시장 직속 업무지원팀 설치(기술적, 재정적 지원)

자료 : 이승중 외(2015: 56) 인용

## (2) 플로리다 주 탬파시(City of Tampa)

탬파시의 행정부에서는 근린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근린주민공동체 참여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린공동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근린주민공동체 참여실은 탬파시 행정부의 근린주민공동체의 한 부서로 시장과 주민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시의회를 대변하는 부서로 기획되어 운영되고 있다. 근린주민공동체 참여실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객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부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지역개발, 인구현황 통계자료, 지역에 토지사용계획, 지역지도, 지역의 자치조직 운영실태 등의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커뮤니티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최병학 외, 2013).

#### 4) 최근 미국 지방정부의 근린주민공동체 운영체계의 변화

미국의 지방정부에서 주민자치회 관할은 국 단위에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버지니아 주의 페어팩스 카운티시 및 미네아폴리스 지방정부에서는 근린주민공동체 서비스국을 설치하여 시에 있는 근린자치조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원은 근린자치조직 운영에 필요한 예산, 물자등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근린주민공동체 서비스국은 성인 및 청소년, 근린공동체 지원, 기타업무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들 기관은 시 산하기관 주민들의 편의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청소년복지센터, 정화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최병학 외, 2013).

## 2. 영국의 마을(근린)자치

영국의 기초자치단체는 런던 지역의 Borough(국왕에 의해 창설된 도시법인 형태), 대도시의 Metropolitan District와 City, 시골지역의 County가 있다. 그리고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는 작은 규모의 패리쉬<sup>5)</sup>가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람들의 거주지 형성이 오랜 지역에서 패리쉬를 볼 수 있다. 이는 영국의 자치단체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지역공동체를 구성하고 주민자치조직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이다. 영국의 패리쉬 카운슬(Parish Council)은 기능면에서 볼 때, 하나의 준자치단체적 성격을 가지는 단체이다. 계층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읍·면·동 단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권한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읍·면·동보다 주민자치적 성격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패리쉬는 선거에 의한 집행조직을 가지고 있

5) 영국의 패리쉬는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는 종교 교구(패리쉬)이다. 둘째는 자치조직으로서의 패리쉬이다. 영국의 모든 성공회 교회는 패리쉬 조직을 보유하고 있고, 천주교도 패리쉬를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종교 교구로서 자치조직으로서의 패리쉬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으며, 제한적인 조세 부과권을 가지고 있다. 패리쉬에 해당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1,600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 패리쉬는 영국의 주요 자치단체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층에 있는 조직으로서 패리쉬 카운슬은 법상으로 1894년 지방정부법에 의해서 수립되었다.

## 1) 패리쉬의 구성

영국의 패리쉬는 원래 교회교구를 의미한다. 명칭은 라틴어 *parochia*에서 유래되었다. 15세기경부터 카운티 및 버러와 더불어 중요한 주민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활용된다. 영국의 패리쉬는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와 기능을 모두 수용한다고 볼 수 없지만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준 자치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1888년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카운티가 설치되면서 패리쉬의 기능은 축소되었다.

패리쉬는 영국 비도시권에 존재하는 자치조직이라 말할 수 있다. 영국내 패리쉬는 총 10,600여개가 설치되었다. 지역별로 잉글랜드 8,700개, 스코틀랜드 1,150개, 웨일즈 750개이고 대부분 농촌 및 소도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설치 지역의 인구규모는 최소 35명에서 최대 71,758명으로 100여명을 기준으로 하는 마을단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최병학 외, 2013).

1997년 지방정부법에 의하여 중앙부처 장관이 패리쉬 유권자들의 10% 이상이 청원에 의하여 새로운 패리쉬를 창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 제도변화가 이루어져 패리쉬의 상급단체인 District나 Unitary Authority 등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이관되었다. 패리쉬 카운슬의 권한은 첫째, 지방커뮤니티 대표 기능이다. 둘째, 지방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제공이다. 셋째, 주민 삶의 질과 커뮤니티 웰빙을 개선하기 위한 기능이다.

## 2) 패리쉬의 기능과 역할

패리쉬는 법적 권한이 제약되어 있어 주민 중심의 준자치단체로 볼 수 있다. 과세권이 없고, 그 기능이 제한적으로 상급자치단체의 업무를 공유하도록 되어 있다. 주요기능은 주민의사를 전달하고 지역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패리쉬의 사무는 마

을에 소속된 경작지 할당(1972년 자치법개정), 마을회관의 유지관리, 여가시설 및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지역의 야간 통행을 위한 가로등, 지역의 주차장시설, 지역의 커뮤니티 광장 보수, 공공화장실, 지역이 보도블럭 등의 설치와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는 District정부와 공유하게 되어있다.

패리쉬가 없는 지역에서는 주민자치를 위한 지역포럼을 결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역포럼은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행정과 협의하는 지역대표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지역포럼의 역할과 권한은 정책결정위원회가 주민의견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지역 행정직원으로부터 그 지역에 대한 서비스 공급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에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 환경의 개선, 주민홀이나 커뮤니티센터의 운영,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과의 상담·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7).

### 3) 패리쉬의 재원

패리쉬의 재원확보는 공공시설 이용요금과 임대수익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이들 예산은 단체가 사용할 때 부과되는 복지시설 사용료, 건물의 주차장 임대료, 회의시설 대관료, 커뮤니티 센터 사용료 등을 합해서 16%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패리쉬는 의존재원의 확보를 위해 관할 자치단체에 신청하고 자치단체는 패리쉬 운영예산이 70%정도를 지원하고 있다(최병학외 2013). 영국의 패리쉬에는 26,400명 정도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1/3은 자원봉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가 아닌 경우에도 2/3은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며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이는 비용이 일부를 주민들의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 4) 패리쉬 의회의 대외관계

패리쉬 의회는 자원봉사의 성격이 강하다. 4년 임기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있다. 의회 구성은 인구 150명 이상이 패리쉬에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한 150명 미만의 지역이라도 임의로 설치할 수 있다. 150명 미만의 의회가 없는 지역에서는

전체주민의 참가할 수 있는 주민총회가 설치된다. 주민총회는 매년 3월 ~ 6월 중 1회 개최를 의무화 하고 있다. 지역주민 150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의회에 주민의 의해 선출되는 의원은 5명 ~ 20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의회운영은 정기회 연 1회, 임시회 연 3회 내외로 개최한다. 의회를 보좌하는 유급사무원과 비상근 직원을 두어 운영하고 이들은 여러지역의 패리쉬 의회를 공동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주민의 대표자로 선출된 자원봉사자가 의원을 보조하는 경우도 있다(최병학 외, 2013).

### 3. 일본의 마을(근린)자치

일본의 근린자치는 1500년대 주민관리체제의 일환으로 처음 등장하였다. 전통적 마을조직으로서 자치회는 메이지 시대인 1898년 해체되었다. 이는 근대적인 지방자치제도라고 할 수 있는 시정촌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정촌 제도가 부활한 것은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이다. 부활 목적은 태평양 전쟁물자 조달, 마을의 인력을 동원하기 위한 전시동원체제, 지역방위체제 정비를 위해 조직되었다.

이후 전쟁이 끝나고 1947년 미군정시대의 자치회는 군국주의 상징으로 간주되어 해체되었다. 그러나 시정촌의 홍보위원회, 방법연락위원회, 위생조합의 형식으로 명맥이 유지된다. 자치회가 전국적으로 공식화되어 부활한 것은 1951년 미일안보조약<sup>6)</sup> 체결 이후이다. 일본의 자치회는 우리나라의 반상회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역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지역자치조직으로 정회, 정내회, 자치회, 구회, 지역진흥회, 부락회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1952년 발생한 이토만 태풍은 시정촌의 주민자치조직을 세분화시키고, 주민자치모체가 되는 정내회(町内會)가 설치되었다. 정내회는 재해대책기본법을 통한 지역마을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자주적인 방재조직이었다.

1970년 이후 자치회에 대한 반발로 마치쭈쿠리, 커뮤니티 비즈니스 운동이 확산되어 자치회의 활동 및 위상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지방자치법 등의 개

6) 미일안보조약의 정식명칭은 일본과 미국간의 안전 보장 조약이다. 일본의 안전 보장을 위해 미국이 참여하고 미군을 일본에 주둔시키는 것 등을 정한 양국 간 조약이다. 소위 구 미일안보조약이라는 것이다. 1951년 9월 8일 일본과의 평화조약의 날에 서명되었다. 이후 1960년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보장 조약(신미일안보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효력을 상실했다.

정으로 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격을 지닌 단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자치회의 법적 지위가 강화되고 회관건설비용의 장기저리 융자, 운영보조금의 지급, 인력 파견 등 각종 지원정책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자치회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7).

## 1) 자치회의 성격 및 특징

일본의 마을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들의 조직은 정내회 및 자치회이다. 자치회는 도심지역의 아파트단지나 주택단지에서 사용하는 명칭이고, 정내회는 전통적으로 사용된 명칭으로 주로 비도심지역에서 사용되는 명칭이라 할 수 있다(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7). 이 조직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화합과 그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한다. 즉 주민들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 혹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법인 단체이다. 이들 자치회는 주민들의 생활지원 및 지역환경을 변화시키고 정주환경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거주지역의 편리성을 증대하고 있다. 주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

자치회는 마을의 공동시설을 관리하고 정비하는 것에서부터 행정과의 협력을 통해 마을자치를 실현하고 있다. 일본의 자치회는 우리나라의 행정동의 통과 읍·면 지역의 리단위 수준에서 결성되어 있다. 또한 이들 자치회는 자치회 연합회를 중심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있고, 이들 자치회연합회는 각각의 주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주민협의회를 결성하고 있다. 주민협의회는 시민커뮤니티 센터를 중심으로 사회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다.

일본의 자치회는 다른 나라의 자치조직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 첫째, 가입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규모는 50세대부터 200세대까지 다양하게 가입하고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200세대 ~ 300세대의 자치회도 있다. 이는 인구밀집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체에도 단체회원으로 가입이 개방되어 있다. 지역의 모든 세대가 강제적으로 가입되지만, 특이한 점은 타 지역의 자치회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다른 나라의 주민자치조직은 참여자의 회비(이는 제주지역의 리 운영비 납



부), 민간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기부금으로 이루어지는 반해, 일본은 자치회 활동을 통한 자체 수입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축제, 폐품수집, 유치원을 운영한 수익 등으로 자치회를 운영한다는 점이 다른 나라와 차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김상봉, 2016).

## 2) 자치회의 역할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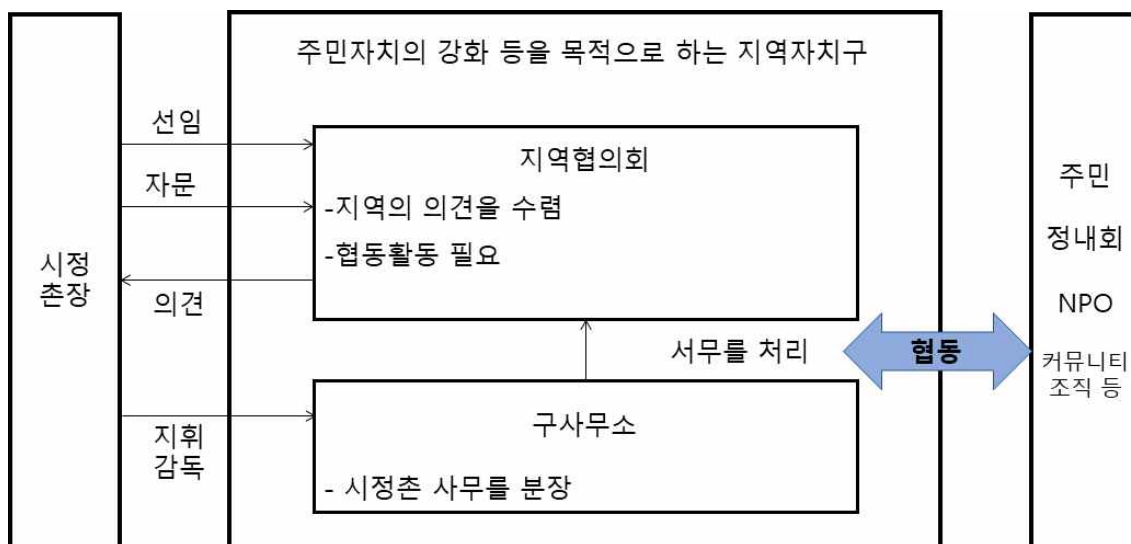
일본의 자치회는 지역을 기준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민총회를 통해 만들어진 단체이며,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주민자치조직이다. 자치회는 그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자치회의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한다. 이는 지역의 방범활동, 방재, 교통안전, 청소년의 안전, 지역주민의 복지, 지역 환경정비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 등이다. 둘째, 지역주민들의 화합이다. 친목행사(경로잔치, 바자회 등) 개최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마을만들기 사업이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서로 출선수범하여 마을을 가꾸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지역의 문화적 특성에 맞는 마을 만들기를 통해 지역 상권의 수익 극대화, 공동체 복원, 마을수수료를 통한 자치회 운영자산 마련이다(김병국, 2011).

일본의 자치회는 지방자치법 제260조의 2에 의한 지연에 의한 단체의 하나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정촌내의 일정한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의 지연(지역)에 기초해서 형성된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연단체의 인가는 총무성령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고, 규약에는 단체 설립의 목적, 명칭, 구역, 사무소의 소재지, 구성원 자격, 대표자에 관한 사항, 회의, 자산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자치회 조직은 회장, 회계담당, 감사, 간사 등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회장은 지역주민의 직접 선출하고 있고 자치회는 시정촌 등에서 자치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자치단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자치회의 활동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 3) 대외관계

일본의 자치회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는 고령화 사회 지역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시정촌의 병합 등으로 행정공백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본의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인 자치회에 행정사무를 위탁하면서부터 지역의 행정공백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자치회의 행정업무 대행이다. 자치회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사무를 위탁받고 있다. 이는 홍보지와 회람문 배포에서부터 건강보험 혹은 국민연금 증서 교부와 선거용 사무 대행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둘째, 시민단체와의 관계이다. 시정촌 합병으로 관공서와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회가 다양한 시민단체·NGO 등과 연계하여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다음 (그림 2-3)과 같다.

(그림 2-3) 일본의 주민자치회 구조



자료 : 이승중 외 (2015: 133) 일본 총무성자료 재인용

주민자치에 대한 주요 선진국들의 추진사례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근린 참여제도의 특징은 시민단체의 협의회 방식 혹은 시정부와 연계를 통한 지역 주민자치센터에 기반을 두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근린조직은 기본적으로 모든 유형이 사람들을 대표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근린참여 조직은 자치단체가 아니며

법인격이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미국 근린참여조직의 주요 역할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상위 의회의 의견 제출 기회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무의 내용은 그 도시의 성격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주민의 자발적 봉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근린참여조직의 재원은 창립기금, 보조금, 회비, 기부금 등으로 조달된다. 자체 재원이 부족한 경우 시 정부의 보조금을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영국의 패리쉬는 과세권과 예산심의권이 없는 하나의 준자치단체적 성격을 가지는 단체이다. 계층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읍·면·동 단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권한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읍·면·동보다 주민자치적 성격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패리쉬는 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특이한 점은 주민 직접선거 형태의 주민총회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자치회는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정촌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이다. 이들은 지역의 안전과 정주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편리성을 증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다. 활동재원은 지역주민들이 납부하는 회비와 별도로 지역의 문화적 특성에 맞는 마을 만들기를 통해 운영되는 사업의 마을수수료, 자치사무 위탁에 따른 자치단체의 수수료 수입을 통해 자치회 운영자산을 마련하고 있다.

해외 마을자치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마을자치의 중심에는 지역사회 봉사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봉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해주거나 지역의 필요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하는 등의 주민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역할을 대신해줌으로써 지역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마을자치 조직은 순수한 봉사단체로써 자발적인 모금 활동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함으로써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선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부

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 다양한 조직이 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제주지역은 조선시대 지방자치의 근간인 향약이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다. 각 읍·면에 속해 있는 마을은 향약을 근간으로 마을의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마을은 각국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을주민이면 누구나 리 운영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는 마을별 차이가 있으나 상징적으로 리 운영비를 부과하여 마을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높이고 있다. 부과 재원은 사무인력 인건비 지원, 마을사업 재원 및 주민세 혹은 적십자회비 대납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었다. 지금은 적십자회비 대납은 없어졌다. 마을의 재원은 마을의 공동재산인 마을목장, 바다공동사업, 공유재산 임대료 등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부족한 재원은 마을만들기 및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행정에서 보조해주고 있다. 마을에서는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영농조합, 해녀회, 어촌계, 문고회 등의 자생단체를 통해 마을주민들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마을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제 3 절 근린자치 선행연구

#### 1. 마을(근린)자치 선행연구

##### 1) 근린자치 선행연구

근린자치에 대한 연구는 첫째, 근린에 대한 정의. 둘째, 근린의 규모. 셋째, 근린조직. 넷째, 근린자치 필요성. 다섯째, 근린자치 활성화. 여섯째, 근린자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맥락별로 살펴보면 첫째, 학문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근린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고 근린에 대한 용어도 동네 또는 마을이라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는 지리·공간적 관점이나 물리적인 상징적 경계선, 지리적 실체, 사람의 교류공간 등 다양한 맥락에서 하나의 개념 근린으로 사용하고 있다(곽현근, 2012; 남재결, 2014; Galster, 2001; Keller, 1968; 문황진, 2017; Morris & Hess, 1975; Blockland, 2003; 소진광·곽현근·배준구·이종수, 2011; Jacobs, 1993; 김필두, 2013; 김필두·한부영, 2016; 이준건, 2012; Hallman, 1984; Warren, 1981;

Downs, 1981; Lancaster, 1966).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근린이란 공간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도시민들의 단위를 매개로 한 공간의 가치로 정의하는 것을 맥락으로 하고 있다

둘째, 근린을 규모의 기준으로 파악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과 읍·면·통·반을 기준으로 하는 구역 단위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거지 인접성에 기초하여 사람들이 이웃과 비공식 또는 대면적 교류하는 공간’으로서 근린을 연구하였다(김준석, 2013; 곽현근, 2011; Somerville, 2011; 김필두, 2013). 이는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인 맥락은 근린의 규모를 주민들의 실제 생활하고 있는 공간을 기준으로 하여 스스로 자치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시행하는 최소 공간의 구조로 정의하고자 하였다.

셋째, 근린조직 연구를 살펴보면 세 가지 범위에서 연구가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① 단일 아파트단지를 근린의 최소 조직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최재송, 2007). ② 지역의 소규모 조직으로 보는 관점이다(조순제, 1999). ③ 읍·면·동에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연구이다(김수연, 2019; 전대욱, 2017; 장교식, 2018; 강기홍, 2018; 신윤창·손진아, 2017). 이처럼 근린조직에 관한 연구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근린단위 지역에 속해 있는 소규모 조직에 주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근린은 주민 대다수가 생활하는 공간으로 지역의 정체성, 다양성,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 조직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근린자치 필요성은 네 가지 맥락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① 읍·면·동 근린자치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다. 이는 지방자치의 변화, 지방행정체계 변화, 지역실정을 고려한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근린자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김필두, 2013). ② 지역주민의 수요 증대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다. 이는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한 주민들의 주거단위 근린자치 욕구 증대에서 그 필요성의 맥락을 찾고 있다(신윤창·손진아, 2017). ③ 지역주민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다. 이는 지역주민들 스스로 현장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전대욱, 2017). ④ 지역단위 근린자치 필요성이다. 지역 내 다양한 의견들을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구성들이 서로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이준건, 2012). 근린자치에 필요성에 대한 연구들은 지역단위

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민자치를 실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근린자치는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상호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로써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근린자치의 활성화 연구는 주민과 자치단체의 관계, 즉 행정과 주민의 관계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참여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민자치운영에 대한 표준안 및 주민자치법 제정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이 연구되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주민자치위원회 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제도를 지원하고 행정과 파트너십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김필두, 2013; 김준석, 2013; 남재걸, 2014; 문황진, 2017; 최재송, 2007; 조순재, 1999; 김익식, 2011; 광현근, 2011; 배준구, 2011; 오재일, 2016). ②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자치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이준건, 2012; 장교식, 2018). ③ 주민자치 운영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어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있다(진동섭, 2019). 이처럼 근린자치는 큰 틀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연구, 주민이 참여하고 주인이 되는 근린자치 연구, 근린자치 활동의 표준안 및 법제화 연구 등 근린자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다. 여섯째, 근린자치를 통한 지역경제발전 관련 연구는 근린자치를 통한 지역자원 재발견은 내발적·내생적 발전방안 모색 가능, 조직화 집단학습을 통한 공동문제 해결가능, 지역간 갈등 완화, 불필요한 정치비용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이 강화 된다는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였다(이성근, 2011; 소진광, 2011).

이러한 근린자치는 지역 간 갈등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정치비용을 절감하며, 정부 투명성을 높여 결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근린자치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였다.

근린자치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의 맥락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연구에 중심에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 주민들의 삶과 연관된 생활자치와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을 가꾸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근린자치의 전체적인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음 <표 2-6>과 같다.

<표 2-6> 근린자치 선행연구

구분	내용
근린의 정의	지리·공간적 관점이나 물리적인 상징적 경계선, 지리적 실체, 사람의 교류공간 등의 다양한 맥락에서 하나의 개념 근린으로 사용하고 있다.
근린의 규모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과 읍·면·통·반을 기준으로 하는 구역 단위 관점에서 주거지 인접성에 기초하여 사람들이 이웃과 비공식 또는 대면적 교류하는 공간이다.
근린의 조직	근린은 주민 대다수가 생활하는 공간으로 지역의 정체성, 다양성,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 조직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근린의 필요성	지역단위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는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상호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를 말할 수 있다.
근린자치 활성화	주민과 자치단체의 관계 즉 행정과 주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참여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민자치운영에 대한 표준안 및 주민자치 관련법 제정을 통해 활성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근린자치 지역경제발전	지역자원의 재발견은 내발적·내생적 발전방안 모색 가능, 조직화 집단학습을 통한 공동문제 해결가능, 지역간 갈등 완화, 불필요한 정치비용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이 강화는 경제적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 2) 마을(동네)자치 선행연구

마을자치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마을자치 또한 맥락적인 구성이 근린자치와 비슷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첫째, 동네를 기준으로 한 공간의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공간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조직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둘째, 마을단위 향약에 관한 연구이다. 향약은 전통적인 마을의 규약 및 관습에 따른 규범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셋째, 마을공동체이다. 이 연구에서 마을을 운영하고 마을을 발전시키는 주체의 역할에서 공동체를 주목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근린자치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지만 주민자치의 관점을 마을이라는 요소를 매개체로 한 공간단위 연구와 관련해서는 동네조직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조직 활성화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곽현근, 2005; 안성호, 2014; 권병욱·이준우, 2014; 권병욱, 2008; 김찬동, 2019; 안성호·곽현근, 2013).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최소의 전략적 공간 단위를 동네로 보고 있다. 이는 구체적·물리적·상징적 공간을 지리적 장소로 구분하여 마을자치의 공간구조를 연구하고자 한 것이다.

둘째, 마을자치에 근간이 되는 향약 연구는 다섯 가지 체계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① 향약의 제정목적 연구이다. 이 연구는 주민들이 향약을 만들게 된 계기, 목적, 향약이 담고 있는 도덕과 관습 등이 연구가 있다(김필두, 2015; 김일순·황경수·양정철, 2015; 유정선, 2005; 이수형, 2018; 이근명, 2002; 김필동, 2000; 박병현, 2010; 김명진, 1978). ② 향약의 기능과 역할이다. 이 연구는 향약이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것들을 사회적 관습에 의해 지켜야 하는지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연구이다(이명호, 2016; 김영돈, 1995; 곽효문, 2003; 장채천, 2007; 윤인숙, 2011; 오환일, 1989; 김신열, 2009; 이연, 2000; 이광모, 2010; 최문형, 2002; 한미라, 2015; 신병주, 2011; 우홍준, 2012; 이훈, 1986). ③ 향약의 핵심가치 연구이다. 이 연구는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협동정신과 공동체 의식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김진수, 2017; 최문형, 2002; 김명진, 1977; 김영돈, 1995; 이완영, 2000). ④ 사회복지 측면의 향약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구성원들의 연대성과 상부상조 등의 공동체가 지켜야 할 연대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다(김신열, 2009; 나병균, 1986; 곽효문, 2003; 이연, 2000). ⑤ 향약 공동체에 관한 연구이다. 이는 마을공동체의 운영 및 특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다(김홍주, 2013; 곽진주, 2008). 이러한 향약 연구는 지역의 공동가치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공동체가 가지는 가치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는 근린자치의 원형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마을(동네)자치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조직인 인적, 물적 자원과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주민자치체계를 복원하고 이를 통한 공동체의 정서적 교감과 마을자치 리더십 함양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김광남, 2015; 전상식, 2015; 김찬동, 2015; 황종규, 2019; 이해준, 2016; 안성호, 2011; 김찬동, 2019). 공동체 연구는 마을의 유형 및 무형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치조직을 구성하여 마을자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마을자치는 마을을 하나의 공간으로 보고 그 공간 속에서 규범과 규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주민들의 공동체 자치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는 다음 <표 2-7>과 같다.

<표 2-7> 마을(동네)자치 선행연구

구분	내 용
마을 공간 구조	지역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최소의 전략적 공간 단위를 동네로 보고, 구체적이고 물리적·상징적 공간을 지리적 장소로 구분하여 마을(동네)자치의 공간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마을향약	마을자치의 원형이며 지역주민들의 공동가치를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마을공동체의 약속이다.
마을 공동체	마을자치에서 마을의 유형·무형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치조직을 구성하여 마을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 2. 제도상의 주민자치 선행연구

제도상의 주민자치에 관한 연구는 지방분권과 자치사무의 권한 부분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첫째는 주민자치의 개념정립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서비스 확대이다. 둘째는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자치사무 중 일정한 부분을 지역주민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셋째는 대의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는 주민자치의 필요성이다. 넷째는 주민자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주민주권 강화이다.

학자들이 정의한 주민자치의 개념을 종합하면 주민자치란 지역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집합적인 의사결정과 지역공공서비스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곽현근, 2016; 안성호·곽현근, 2013; 김필두·김병국, 2011; 김영인, 2005; 강기홍, 2018; 임승빈, 2016; 김찬동, 2019; 송광태, 2016).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의 자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자치제도를

만들고 권한을 확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맥락으로 하고 있다.

주민자치 강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는 지방분권과 연결된 자치사무 중 일정한 부분을 지역주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시키는 것을 맥락으로 하고 있다(김필두·유아영, 2008; 김순은, 2016; 임승빈, 2016; 유영훈·전상직·김태철·박찬영·박철, 2013; 신용인, 2018; 이승중, 2017; 이세정, 2018; 장교식, 2018; 심익섭, 2017; 신윤창·손진아, 2017; 김찬동, 2019). 즉 주민자치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맞는 주민자치회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리더 양성, 지방자치제도 및 법체계 보완 등이 필요할 것이다.

주민자치 필요성 및 참여방안 연구에서는 첫째, 주민자치가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더 큰 맥락에서 지역주민이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안성호·곽현근, 2013; 심익섭, 2012; 서울특별시의회, 2017; 고경훈·김보은, 2015; 김필두·한부영, 2016; 장교식, 2018). 둘째, 자발적인 참여방법인 반사회 및 각 지역의 단체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의 연구가 진행되었다(하정봉·길종백, 2013; 양석진, 2005; 박혜자, 2002; 정원식, 2003; 배용규, 2007; 심익섭, 2005; 김홍식, 2005; 김필두, 2013; 김광수, 1999; 정운수, 2000; 서울특별시의회, 2017; 김필두·류영아·전성훈, 2012). 이러한 연구에서 본다면 주민자치 필요성 및 참여방안 활성화는 주민자치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와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주민주권은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시켜 주민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결국에는 지방분권의 한계를 보완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주민주권 강화방안 연구에서는 지방분권으로써 작은 규모의 공동체 형성을 통한 근린자치 강화, 지방자치법률 및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시행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참여 민주주의 확대를 통한 주민주권 강화, 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를 통한 주민주권 강화를 제시하였다(김병국·최철호, 2012; 최진혁, 2012; 한상우, 2013; 김순은, 2012).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 생활자치를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는 다음 <표 2-8>과 같다.

<표 2-8> 주민자치 선행연구

구분	내용
주민자치 정의	주민자치란 지역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집합적인 의사결정과 지역공공서비스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민자치 강화 및 활성화	지방분권과 연결된 자치사무 중 일정한 부분을 지역주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시키는 것을 맥락으로 하고 있다.
주민자치 필요성 및 참여방안	주민자치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와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주권 강화방안	지방분권으로써 작은 규모의 공동체 형성을 통한 근린자치 강화, 지방자치법률 및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시행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참여민주주의 확대를 통한 주민주권 강화, 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를 통한 주민주권 강화를 들 수 있다.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 3. 본 연구와 관련한 함의

마을자치와 근린자치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다. 마을자치에 대한 정의 및 조직, 마을자치 활성화, 마을자치를 통한 경제발전 등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마을자치는 동네라는 공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학자들의 연구에서 마을단위에 속해 있는 주민공동체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 마을발전 주체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들이었다. 주민자치 제도는 지방분권 및 자치사무를 지역주민들에게 일정한 부분 주민들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들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작은 단위 동네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제주를 기준으로 동네는 마을 행정리를 말하는 것이다. 제주지역 행

정리는 마을자치규약을 토대로 마을이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제주지역에 남아 있는 향약을 분석하여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맥락을 찾아내고자 한다. 이들 향약은 제주지역의 읍·면단위 행정리에서 자치규약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향약은 지역 공동체 구성 및 운영, 지역 자치사무, 지역지도자 선출, 지역주민의 권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법체계를 기록해 놓은 규약이다. 제주지역 마을은 이 향약을 토대로 지역을 운영하고 있다. 향약은 읍·면지역에 속해있는 행정리에서 대부분 보존되고 있어 이를 토대로 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한 향약의 원형을 분석하여 세부적으로 그 기능들을 제시해봄으로써 마을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3 장 연구 설계 및 분석방법

### 제1절 연구 설계 및 분석틀

본 연구는 제주지역 마을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치행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모형을 구축하고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질적·양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에서는 첫째, 향약내용을 분석했다. 향약은 공간을 규정하는 구역을 시작으로 마을단위 조직, 마을주민 구성, 권리와 의무, 선거권과 피선거권, 마을회의 발언권, 의사결정권, 임원의 성격 및 선출, 선거 방법, 회의 종류, 마을사업의 종류, 마을 재산관리, 상·벌규정, 회계규정 등 세부적인 마을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망라하여 정해 놓고 있다. 즉 마을 자체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향약의 내용 중 마을자치 제도화를 위한 요소를 찾아 분석하였다. 첫째, 마을자치의 제도적 특성이다. 마을별 향약 보유여부와 향약을 보유하고 있다면 마을자치 조직 및 활동상황, 마을자치회 마을임원 구성 및 선출방법, 의사결정을 위한 기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마을자치의 개념을 정립할 수 있었다.

둘째, 마을운영 사무 및 자치체계 분석이다. 마을을 운영함에 있어 어떤 기준으로 리민임을 인정하고, 리민으로 인정되면 어떤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리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의 권리 제한 및 징계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외 마을운영을 위한 재정·재산관리, 마을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향약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향약 제·개정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마을단위 자치행정에서 시행되고 있는 마을자치 체계를 분석할 수 있었다.

셋째, 마을자치회 의사결정구조 분석이다. 이는 마을공동체가 마을을 운영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마을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총회, 불요불급시 개최하는 임시총회, 마을 여론 반영 및 마을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개발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각 자연마을의 대표로 구성된 동장회의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마을의 중요안건 등에 대한 의결방식 등 의사결정구조를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심층면접조사 의한 질적연구방법은 마을리장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다. 자치 관련 전문가의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질문 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반구조화 된 설문지를 구성하여 마을리장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지향이 제주지역 향약을 토대로 마을자치의 성격, 구조,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을 조사하는 도식화된 설문조사를 통해 도식화, 계량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마을자치회 대표인 리장을 역임한 분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라는 질적 조사방법을 적용하였다.

양적 연구방법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SSPS-20을 활용하여 기초통계, 교차분석, t검정을 실시하였다. 양적 연구는 마을리장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를 바탕으로 마을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마을주민 중 개발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 자생단체 임원등 마을자치에 참여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을 파악해 봄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마을운영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법들은 제주형 마을단위 자치행정 모형을 만들어 내고 마을자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분석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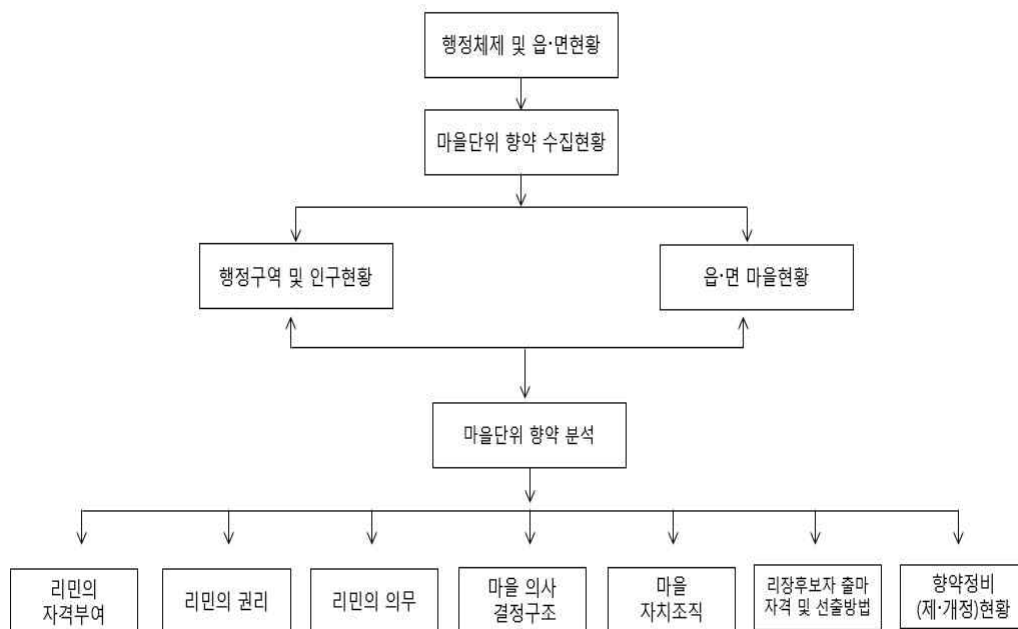


## 제2절 분석방법

### 1. 향약 내용분석 방향과 분석틀

제주지역 마을향약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첫째, 제주지역 행정체계 및 읍·면지역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는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읍·면지역 마을현황 등을 파악하여 마을을 분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둘째, 제주의 읍·면지역에 속해 있는 172개 마을을 대상으로 향약 수집현황을 분석하였다. 셋째, 제주지역 마을단위 향약의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는 마을자치 제도 및 체계,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하는 것으로 리민의 자격부여, 리민의 권리, 리민의 의무, 마을의사 결정구조, 마을의 자치조직, 마을별 리장후보자 출마자격 및 선출방법, 마을별 향약정비(제·개정)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이는 다음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마을별 향약 내용분석 틀



## 2. 심층면접조사 분석방향

심층면접방법은 1대 1 개인 면접을 통해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말한다.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와 응답자 사이의 소통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면접은 일정한 공간에서 연구자와 응답자 간의 면대면 상호작용을 통한 응답자의 태도, 신념, 느낌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개인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남궁근, 2007).

심층면접조사는 제주지역 각 마을별 자치회 대표인 리장을 대상으로 마을자치제도화에 대한 반 구조화된 총 6개 영역 8개 문항을 구성하였고, 질문의 깊이와 난이도를 감안하여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향약분석 및 전문가 조사를 대상으로 작성된 제주지역 마을자치모형 표준안에 대한 의견이다. 둘째,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이다. 셋째, 마을자치에 주민 참여 활성화에 대한 의견이다. 넷째, 마을자치에 청년 및 여성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한 의견이다. 다섯째, 마을에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조직(청년회·부녀회·노인회 등) 활성화를 위한 의견이다. 여섯째, 마을운영을 위한 재정확보방안이다. 일곱째, 마을자치에서 이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여덟째,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는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심층면접 조사 질문문항

분야	하위질문
마을자치 모형	- 제주지역 마을자치모형 표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
마을자치 활성화	- 마을자치 활성화에 대한 의견 수렴 - 마을자치에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의견 - 마을자치에 청년 및 여성 참여비율 높이기 위한 의견 수렴
마을공동체 활성화	- 지역마을에 소속된 공동체조직 활성화에 대한 의견
마을자치 재원 확보	- 마을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방안에 대한 의견(문제 및 개선의견)
마을자치 이주민 참여	- 마을자치에 이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마을자치 제도개선	- 행정에서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 3 설문조사 분석방향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각 마을 리장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면접조사에서 도출된 마을운영 및 마을자치 관련 중요한 요인을 총 3개 영역 2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대상 지역은 제주의 전 지역으로 12개 읍·면지역 172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마을운영 및 마을자치 관련 설문내용 중 마을 자치 활동 참여 경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마을자치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생단체 임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마을자치에 중요한 요인에 대해 빈도 분석, 집단별 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에서는 각 문항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집단별 분석에서는 성별, 거주지역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교차분석에서는 연령별, 지역마을에 거주한 거주년수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다음 <표 3-2>와 같다.

<표 3-2> 설문조사 질문문항

분야	하위질문
마을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마을의 연간 회의 구성</li> <li>2. 마을회의 필요성 및 연간 개최 횟수</li> <li>3. 총회 참석연령 확대</li> <li>4. 마을의 주요의사 참여 청소년 적정연령</li> <li>5. 리장의 개발위원장 겸직</li> <li>6. 리민의 자격</li> <li>7. 리장선출방법 및 임기</li> <li>8. 마을 운영기금 및 마련</li> <li>9. 마을운영을 위한 리운영비 필요성 및 납부의향</li> </ol>
마을자치 활성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마을 단체 소속여부</li> <li>2. 마을자치활성화 여부</li> <li>3. 마을자치 개선여부</li> <li>4. 민원발생 기관방문</li> <li>5. 마을사무 행정 숙지정도</li> <li>6. 행정서비스 향상</li> <li>7. 이주민 갈등해결방안 및 개선방안</li> <li>8. 마을공동체 사업지원 장·단점</li> <li>9. 마을자생단체 활성화방안</li> <li>10. 마을자치 개선방안</li> <li>11. 향약 개선방안</li> <li>12. 마을회의 운영체계 장·단점</li> </ol>
주민자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읍·면 주민자치제도</li> <li>2. 주민자치위원회 제도 개선방안</li> <li>3.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방안</li> </ol>

#### 4. 조사범위와 대상

본 연구는 2019년 1월 ~ 2019년 8월까지 수집된 제주의 읍·면지역 마을향약을 분석하여 마을자치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각 마을별 공통사항 및 지역별 특이사항을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전문가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전문가 면접 회의는 마을자치에 대한 심층 면접 문항을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1차 면접회의는 2019년 9월 자치관련 학계, 마을자치 담당공무원, 역대 마을리장 및 주민자치 위원장 등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차 면접회의는 2019년 10월 자치관련 학계, 마을자치 공무원, 역대리장 등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심층 면접조사에 필요한 면접 문항을 작성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마을향약 분석 및 문헌연구를 통해 얻은 자치행정 요소를 보완하여 제주지역 마을자치 모형의 근간을 유형화하였다. 유형화된 모형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 ~ 2019년 12월까지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면접시 제시된 8개 항목에 대해 마을자치 운영전문가인 리장 3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조사 대상지역 선정은 마을인구, 마을운영 조직, 리장 선출방법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된 해당모형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마을을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전문가 면접 조사시 도출된 중요요인을 도출하여 정책제언 및 마을자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읍·면지역 전체마을의 마을자치회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 전문가 및 설문조사 대상

구분	조사분야	대상	조사 및 설문대상
2019년 9월	1차 전문가조사	지방자치학계, 마을자치담당 공무원, 역대리장, 역대 주민자치위원	8명
2019년 10월	2차 전문가조사	지방자치 학계, 마을자치담당 공무원, 역대리장	5명
2019년 11월 ~ 12월	마을자치 운영전문가 심층면접조사	해당모형 마을리장 면접조사	30명
2020년 1월 ~ 2월	설문조사	읍·면지역 마을회 임원	478명

## 제 4 장 제주지역 마을현황과 마을향약 특성 분석

### 제 1 절 제주지역 행정체계 및 향약 수집현황

#### 1. 행정구역 및 인구

제주특별자치도는 1946년 도제(道制) 실시로 전남 관할에서 벗어나(2군 1읍 12면), 1955년 9월 1일 제주읍이 시로 승격하였다(1시 2군 12면). 1956년에는 서귀·대정·한림 등 3면이 읍으로 승격됨과 동시에 한경면이 신설되었다(1시 2군 3읍 10면). 1980년 애월·구좌·성산·남원 등 4면이 읍으로 승격했으며, 1981년 서귀읍과 중문면을 합해 서귀포시로 승격했다. 1985년 조천면이 읍으로, 1986년 구좌읍 연평출장소가 우도면으로 승격하여 2시 2군 7읍 5면이 되었다.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서, 북제주군이 제주시로 통합되고, 남제주군이 서귀포시로 통합되어, 현재 2행정시 7읍 5면 31동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행정이 말단 조직에 537개 통, 172개 리, 5,465개 반이 조직되어 있으며 자연·지리적 위치에 의해 조성된 566개 자연마을이 있다. 그 현황은 <표 4-1>과 같다.

<표 4-1> 행정구역 현황

(단위:개)

구분	행정시	읍·면·동				통·리			반	자연마을
		계	읍	면	동	계	통	리		
계	2	43	7	5	31	709	537	172	5,465	566
제주시	1	26	4	3	19	568	472	96	4,212	362
서귀포시	1	17	3	2	12	141	65	76	1,253	204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주요행정통계(2019: 59) 인용

지역별 인구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을 제외하여 2018년 12월 31일 기준 667,191명이다. 제주시가 485,946명 서귀포시가 181,245명으로 제주시의 인구가 도 전체인구의 72.8%를 차지하고 있다. 읍·면 지역 인구는 189,374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28.4%이며 동지역 인구는 477,817명이다. 그 현황은 <표 4-2>와 같다.

<표 4-2> 인구현황

(단위:명)

구분	행정시	계	읍·면			동
			소계	읍	면	
계	2	667,191	189,374	152,388	36,986	477,817
제주시	1	485,946	109,281	96,536	12,745	376,665
서귀포시	1	181,245	80,093	55,852	24,241	101,152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8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2019) 인용하여 연구자 재구성

그리고 외국인을 제외하여 행정시 읍·면·동별 인구를 살펴보면 제주시는 노형동 인구가 54,00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이도2동 49,456명, 연동 41,397명, 애월읍 35,451명, 일도2동 34,388명 순이다. 애월읍은 도내 읍·면지역 중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읍·면지역 인구의 18.7%를 차지하고 있다. 섬지역인 추자면과 우도면은 도내 읍·면지역 인구의 1.9%인 3,656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추자면 1,804명, 우도면 1,852명이다. 서귀포시 지역은 동홍동 인구가 22,88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대정읍 21,364명, 남원읍 19,038명, 성산읍 15,450명, 대륜동 13,958명 순이다. 제주시 지역과는 달리 동지역보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다. 그 현황은 <표 4-3>과 같다.

<표 4-3> 행정시 읍·면·동별 인구현황

(단위:명, %)

읍·면	인구		읍·면	인구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제주시	485,946	100	서귀포시	181,245	100
한림읍	21,309	4.4	대정읍	21,364	11.8
애월읍	35,451	7.3	남원읍	19,038	10.5
구좌읍	15,670	3.2	성산읍	15,450	8.5
조천읍	24,106	5.0	안덕면	11,867	6.5
한경면	9,089	1.9	표선면	12,374	6.8
추자면	1,804	0.4	송산동	4,417	2.4
우도면	1,852	0.4	정방동	2,333	1.3
일도1동	2,884	0.6	중앙동	3,879	2.1
일도2동	34,388	7.1	천지동	3,570	2.0
이도1동	7,851	1.6	효돈동	5,278	3.0
이도2동	49,456	10.2	영천동	5,292	3.0
삼도1동	14,190	2.9	동홍동	22,885	12.6

삼도2동	8,397	1.7	서흥동	10,570	5.8
용담1동	7,527	1.5	대륜동	13,958	7.7
용담2동	15,426	3.2	대천동	13,675	7.5
건입동	9,610	2.0	중문동	11,159	6.2
화북동	24,985	5.1	예래동	4,136	2.3
삼양동	24,897	5.1		이하여백	
봉개동	4,842	1.0			
아라동	33,099	6.8			
오라동	14,673	3.0			
연동	41,397	8.5			
노형동	54,002	11.1			
외도동	21,445	4.4			
이호동	4,495	1.0			
도두동	3,101	0.6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8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2019) 인용하여 연구자 재구성

## 2. 읍·면지역 마을별 현황<sup>7)</sup>

### 1) 제주시 읍·면지역 마을별 현황

제주시 읍·면지역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종전 북제주군 4읍 3면이 새로운 행정시인 제주시에 통합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림읍은 1956년 7월 8일 법률 제393호로 한림읍으로 승격된 후 한림리가 한림 1·2·3 및 강구리로, 귀덕리가 귀덕 1·2·3리로, 협재리가 협재리와 비양리로 분리되었다. 현재 21개 행정리, 57개 자연마을, 350개 반, 인구는 21,309명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마을은 한림1리로 3,004명이며 인구가 가장 적은 마을은 비양리 166명이다. 마을별 인구 및 현황은 <표 4-4>와 같다.

<표 4-4> 한림읍 지역 마을별 현황

마을명	인구 (명)	자 연 마을수	반	자연마을명
계	21,309	57	350	
한림1리	3,004	6	44	북동, 사가동, 한성동, 문화동, 한근동, 문교동
한림2리	2,306	4	25	내동, 연동, 명랑동, 남동
한림3리	168	-	5	

7) 읍·면지역 마을별 현황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통계연보, 읍·면 홈페이지 인용 연구자가 재구성함.

강구리	252	-	5	
귀덕1리	1,204	5	35	사동, 하동, 중동, 성로동, 신서동
귀덕2리	623	3	15	장흥동, 장라동, 라신동
귀덕3리	276	-	9	
수원리	1,101	8	26	상동, 중동, 하동, 대수동, 전동, 신성동, 수전동, 용운동
대림리	2,195	5	31	입전동, 중동, 서광이동, 동하동, 서동
한수리	549	2	13	모살동, 비석동
상대리	322	3	4	본동, 서동, 하동
금능리	1,139	4	20	근로동, 자조동, 자립동, 협동동
동명리	1,474	4	11	진근동, 남문동, 한천동, 문수동
명월리	796	3	15	상동, 중동, 하동
상명리	489	3	12	동동, 서동, 조성동
월림리	395	-	11	
월령리	357	-	6	
협재리	1,951	4	21	재천동, 금산동, 중앙동, 해안동
비양리	166	-	2	
금악리	1,105	-	18	
용포리	1,437	3	22	대화동, 중화동, 서화동

애월읍은 1935년 신우면을 애월면으로 개칭하면서 19개리로 편제되었다. 그 후 1952년 신엄리를 신엄·중엄·용흥리로, 1953년 광령리를 광령 1·2·3리로 분리하여 23개 리 체제였다. 1980년 12월 대통령령 제10050호로 읍으로 승격되었고 1992년 9월 5일 동귀리와 귀일리를 다시 합쳐 하귀리로, 1993년 4월 어도리를 봉성리로, 1995년 1월 하귀리를 하귀 1·2리로, 1996년 1월 금덕리를 유수암리로, 1998년 1월 고성리를 고성 1·2리로 분리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26개리로 편제되었다. 현재 26개 행정리, 75개 자연마을, 339개 반, 인구는 35,451명이다.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마을은 하귀1리로 6,024명이며 인구가 가장 적은 마을은 어음1리로 255명이다. 마을별 인구 및 현황은 <표 4-5>와 같다.

<표 4-5> 애월읍 지역 마을별 현황

마을명	인구 (명)	자연 마을수	반	자연마을명
계	35,451	75	339	
애월리	2,306	7	24	동광동, 동상동, 서상동, 동하동, 서하동, 용해동, 한담동
곽지리	1,288	2	14	상동, 하동
금성리	393	2	11	상동, 하동
봉성리	1,228	6	15	구물동, 신명동, 중화동, 서성동, 동개동, 화전동
어음1리	255	2	7	부면동, 계원동

어음2리	301	2	7	본동, 서동
납읍리	1,498	6	21	동상동, 동중동, 동하동, 서상동, 서중동, 서하동
상가리	789	3	11	본동, 서동, 원동
하가리	796	1	12	본동
소길리	687	1	6	본동
장전리	823	2	7	본동, 양전동
유수암리	1,877	3	7	본동, 거문덕이, 상동
용흥리	337	2	7	상동, 하동
신읍리	1,355	3	14	본동, 서동, 윤남동
중읍리	787	1	17	본동
구읍리	1,156	4	11	상동, 하동, 모감동, 대흥동
고내리	1,169	2	12	본동, 서동
하귀1리	6,024	6	34	관전동, 고수동, 군량동, 안남동, 신시동, 비석동,
하귀2리	3,533	5	30	미수동, 가문동, 번대동, 답동, 학원동
상귀리	961	3	5	소앵동, 광식동, 신상동
수산리	1,353	4	15	예원동, 상동, 당동, 하동
고성1리	1,349	1	11	본동
고성2리	449	1	3	본동
광령1리	2,995	4	29	본동, 사라동, 남죽동, 해원동
광령2리	1,153	1	5	본동
광령3리	589	1	4	본동

구좌읍은 1874년(고종 11년) 좌면이 신좌면과 구좌면으로 분리되었으며, 당시 행정구역은 동북리, 동김녕리, 서김녕리, 덕천리, 월정리, 행원리, 한동리, 평대리, 송당리, 세화리, 상도리, 하도리, 종달리, 연평리 등 14개 리였다. 그 후 1946년 전라남도 관할에서 벗어나 제주도 북제주군 행정구역에 속하게 되었고 1980년 12월 1일 구좌읍으로 승격되었다. 이 후 1986년 연평리가 우도면으로 승격 분리되고 2000년 1월 1일 지역 주민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동·서 김녕리를 합하여 김녕리로 통합하는 등의 변화를 거쳤다. 현재 12개 행정리, 60개 자연마을, 220개 반, 인구는 15,670명이다.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마을은 8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진 김녕리로 2,872명이고 인구가 가장 적은 마을은 덕천리로 333명이 거주하고 있다. 마을별 인구 및 현황은 <표 4-6>과 같다.

<표 4-6> 구좌읍 지역 마을별 현황

마을명	인구 (명)	자연 마을수	반	자연마을명
계	15,670	60	220	
동북리	809	4	4	서상동, 서하동, 동상동, 동하동



김녕리	2,872	8	40	청수동, 신산동, 동성동, 봉지동, 남흘동, 한수동, 용두동, 대충동
덕천리	333	2	4	하동, 상동
월정리	750	7	7	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7동
행원리	1,196	6	12	동동, 중동, 중앙동, 상동, 하동, 서동
한동리	1,227	3	17	상동, 서동, 동동
평대리	1,541	3	31	동동, 서동, 중동
송당리	1,061	4	12	상동, 서동, 동동, 대천동
세화리	2,305	6	17	전향동, 통향동, 합전동, 중앙동, 시장1동, 시장2동
상도리	409	5	5	1동, 2동, 3동, 4동, 5동
하도리	1,824	7	36	면수동, 창흥동, 서문동, 동동, 굴동, 신동, 서동
종달리	1,343	5	35	서동, 중동, 동동, 동중동, 전수동

조천읍은 1935년 4월 1일 조천면으로 개칭 당시 행정구역은 10개 리였다. 그 후 1961년 8월 6일 대흘리를 대흘 1·2리로, 1972년 4월 8일 선흘리를 선흘 1·2리로 분리되었고, 1985년 10월 1일 면에서 읍으로 승격되어 현재 12개 행정리, 50개 자연마을, 244개 반, 인구는 24,106명이다.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마을은 해수욕장이 위치한 함덕리로 7,066명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가장 많은 11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진 신촌리는 4,921명이 거주하고 있고 인구가 가장 적은 마을은 대흘2리로 399명이다. 마을별 인구 및 현황은 <표 4-7>과 같다.

<표 4-7> 조천읍 지역 마을별 현황

마을명	인구 (명)	자 연 마을수	반	자연마을명
계	24,106	50	244	
신촌리	4,921	11	42	동동, 중동, 중상동, 대수동, 서상동, 신연동, 서하동, 서원동, 벽수동, 영목동, 동수동
조천리	5,075	7	63	상동, 중상동, 중동, 하동, 양천동, 신안동, 봉소동
신흥리	538	3	9	동동, 중동, 서동
함덕리	7,066	5	80	1구, 2구, 3구, 4구, 5구
북촌리	1,506	6	13	1동, 2동, 3동, 해동, 억수동, 한사동
선흘1리	875	4	12	본동, 낙선동, 신선동, 묵선동
선흘2리	762	4	4	선진동, 선화동, 선인동, 우진동
와산리	724	1	3	본동
대흘1리	699	1	2	본동
대흘2리	399	1	3	본동
와흘리	1,106	5	11	본동, 상동, 고평동, 초록동, 전원동
교래리	435	2	2	상동, 하동

한경면은 1956년 7월 8일 법률 제393호로 한림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한림면에 속해 있던 한경지역이 한경면으로 분리되었다. 당시 행정구역은 판포리, 금등리, 두모리, 한원리, 신창리, 용수리, 용당리, 고산리, 조수리, 청수리, 산양리, 낙천리, 저지리 등 13개 리였다. 그 후 조수리가 조수 1·2리로, 고산리가 고산 1·2로 분리되어 현재 15개 행정리, 51개 자연마을, 187개 반, 인구는 9,089명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중 섬지역인 추자면과 우도면을 제외하고 가장 적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1,000명 이상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은 저지리와 고산1리 2개 마을로 저지리 1,243명, 고산1리 1,562명이다. 인구가 가장 적은 마을은 조수2리로 150명이 거주하고 있다. 마을별 인구 및 현황은 <표 4-8>과 같다.

<표 4-8> 한경면 지역 마을별 현황

마을명	인구 (명)	자 연 마을수	반	자연마을명
계	9,089	51	187	
금등리	182	2	4	본동, 수장동
신창리	823	4	13	하동, 중동, 상동, 신흥동
두모리	488	2	15	동동, 서동
판포리	609	7	20	신명동, 중동, 신동, 상동, 전동, 수장동, 화동
한원리	395	2	8	본동, 복호동
용당리	228	2	9	본동, 주전동
낙천리	281	2	7	본동, 강월동
저지리	1,243	5	17	수동, 중동, 남동, 명이동, 성전동
청수리	761	2	12	본동, 평화동
용수리	531	2	11	본동, 법기동
산양리	451	3	10	연화동, 수룡동, 월광동
조수1리	809	4	20	중동, 신동, 한양동, 대동
조수2리	150	1	5	신성동
고산1리	1,562	7	25	한장동, 중하동, 당가동, 영도동, 중상동, 하동, 상동
고산2리	576	6	11	천내동, 천외동, 신동, 신수동, 칠전동, 전답동

추자면은 1891년 전라남도 영암군에 편입되어 상추자면·하추자면 체제였다. 이후 1896년 전라남도 완도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4월 1일 완도군 상·하추자면과 보길면 횡간도를 추자면으로 통합해 제주도(島)에 귀속 추자면으로 개칭되었다. 그 후 1946년 8월 1일 제주도(道)제 실시로 북제주군에 귀속된 후 1988년 1월 1일 산양리가 산양 1·2리로 분리되어 현재 6개 행정리, 9개 자연마을, 44개 반, 인구는 1,804

명이다.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은 대서리로 761명이며 인구가 가장 적은 마을은 신양2리로 94명이다. 마을별 인구 및 현황은 <표 4-9>와 같다.

<표 4-9> 추자면 지역 마을별 현황

마을명	인구 (명)	자 연 마을수	반	자연마을명
계	1,804	9	44	
대서리	761	2	15	본동, 횡간도
영흥리	360	1	8	본동
묵리	166	1	6	본동
예초리	149	2	5	본동, 추포도
신양1리	274	2	7	신하리, 신상리
신양2리	94	1	3	장작리

우도면은 1927년 행정구역을 연평리 2개구(1구, 2구)로 분구한 후 1931년 2개구를 연평리로 통합하였다. 그 후 1951년 7월 1일 구좌면 연평출장소로 편제된 후 1980년 12월 1일 구좌읍 승격으로 구좌읍 연평출장소로 개칭, 1986년 4월 1일 우도면으로 승격되어 현재 4개 행정리, 12개 자연마을, 20개 반, 인구는 1,852명이다. 4개 마을 모두 비슷한 인구규모로 오봉리가 579명으로 가장 많고 천진리가 338명으로 가장 적다. 마을별 인구 및 현황은 <표 4-10>과 같다.

<표 4-10> 우도면 지역 마을별 현황

마을명	인구 (명)	자 연 마을수	반	자연마을명
계	1,852	12	20	
서광리	474	3	4	중앙동, 상우목동, 하우목동
천진리	338	2	4	서천진동, 동천진동
조일리	461	2	6	영일동, 비양동
오봉리	579	5	6	주흥동, 전흥동, 삼양동, 상고수동, 하고수동

## 2) 서귀포시 지역 마을별 현황

서귀포시 읍·면지역도 제주시 읍·면지역과 마찬가지로 2006년 7월 1일 제주특

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종전 남제주군 3읍 2면이 새로운 행정시인 서귀포시에 통합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정읍은 1946년 도(道)제 실시로 남제주군 대정면으로 개칭된 후 1956년 7월 8일 대정읍으로 승격되었다. 승격 당시 18개 리에서 1985년 8월 1일 상모리를 상모 1·2·3리로, 하모리를 하모 1·2·3리로, 1987년 7월 1일 동일리를 동일 1·2리로 분리하여 23개 리로 구성되었다.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가 있는 지역으로 현재 23개 행정리, 50개 자연마을, 240개 반, 인구는 21,364명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마을은 영어교육도시가 위치한 보성리로 3,815명이며 인구가 가장 적은 마을은 동일2리로 87명이 거주하고 있다. 마을별 인구 및 현황은 <표 4-11>과 같다.

<표 4-11> 대정읍 지역 마을별 현황

마을명	인구 (명)	자 연 마을수	반	자연마을명
계	21,364	50	240	
상모1리	765	2	10	산이수동, 이교동
상모2리	2,029	2	18	대동, 서상동
상모3리	1,152	2	11	중하동, 서하동
하모1리	613	1	6	하동
하모2리	2,285	2	30	당전동, 영수동
하모3리	3,144	4	39	상동, 서상동, 중하동, 돈지동
동일1리	643	2	15	홍수동, 배리왓동
동일2리	87	1	2	천미동
일과1리	420	2	6	본동, 대수동
일과2리	527	2	11	상동, 하동
인성리	529	2	9	서부락, 동부락
안성리	489	1	4	본동
보성리	3,815	2	8	상동, 하동
신평리	460	2	6	상동, 하동
구역리	1,360	2	4	상동, 하동
가파리	233	2	7	상동, 하동
마라리	115	1	2	본동
영락리	645	4	17	중동, 독고동, 사통, 하동
무릉1리	664	4	13	전지동, 사장동, 서동, 동동
무릉2리	535	3	6	인향동, 평지동, 좌기동
신도1리	368	2	7	상동, 하동
신도2리	258	3	5	앞동, 방앗동, 하동
신도3리	228	2	4	비자동, 대거동

남원읍은 1935년 4월 1일 서중면이 남원면으로 개칭되었다. 그 후 1946년 8월 1일 도(道)제가 실시되면서 남제주군 남원면으로 개칭된 후 1980년 12월 1일 대통령령 제10050호로 남원읍으로 승격되어 현재 17개 행정리, 48개 자연마을, 192개 반, 인구는 19,038명이다.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마을은 읍사무소가 소재한 남원1리로 4,583명이며 인구가 가장 적은 마을은 태흥3리와 위미3리로 태흥3리 422명, 위미3리 420명이다. 마을별 인구 및 현황은 <표 4-12>와 같다.

<표 4-12> 남원읍 지역 마을별 현황

마을명	인구 (명)	자 연 마을수	반	자연마을명
계	19,038	48	192	
남원1리	4,583	4	31	비안동, 신성동, 광지동, 중앙동
남원2리	605	3	7	서의동, 월산동, 수은동
태흥1리	807	4	10	진은동, 가원동, 서소동, 이엄동
태흥2리	1,122	5	11	금성동, 뒤못동, 무도동, 조치명동, 가시물통
태흥3리	422	1	6	삼덕동
위미1리	1,812	5	23	명륜동, 대화1동, 대화2동, 서성동, 상위미동
위미2리	2,285	5	21	세천동, 대원상동, 대원하동, 상원동, 대성동
위미3리	420	1	4	중정동
하례1리	1,133	3	12	태성동, 장성동, 망장포
하례2리	568	1	7	학림동
신례1리	1,387	4	12	역원동, 부전동, 만지동, 사가동
신례2리	505	2	7	공천포, 황학동
한남리	456	1	4	대천동
수망리	440	1	4	향사동
의귀리	1,149	3	12	월산동, 산하동, 중앙동
신흥1리	806	3	13	방구동, 취락구조, 보말동
신흥2리	538	2	8	고수동, 석수동

성산읍은 1946년 8월 1일 도(道)제가 실시되면서 남제주군 성산면으로 개칭되었고 1980년 12월 1일 대통령령 제10050호로 성산읍으로 승격되었다. 1961년 군자치제 실시 당시부터 14개 행정구역이 변함이 없는데 현재 14개 행정리, 29개 자연마을, 153개 반, 인구는 15,450명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마을은 읍사무소가 소재한 고성리로 3,709명이며 인구가 가장 적은 마을은 삼달2리로 248명이다. 마을별 인구 및 현황은 <표 4-13>과 같다.

<표 4-13> 성산읍 지역 마을별 현황

마을명	인구 (명)	자 연 마을수	반	자연마을명
계	15,450	29	153	
성산리	1,612	2	15	오정계, 수마포
오조리	1,254	2	14	상동, 하동
시흥리	1,148	2	11	상동, 하동
고성리	3,709	3	23	큰동네, 장만이동, 동남동
신양리	910	2	13	동동, 서동
수산1리	1,012	3	8	동동, 서동, 중동
수산2리	420	1	3	하천동
온평리	1,494	3	18	상동, 하동, 중동
신산리	1,212	3	16	상동, 하동, 서동
삼달1리	458	1	7	와깁이
삼달2리	248	1	3	주어동
신평리	731	2	7	본동, 큰개동
신천리	665	2	7	상동, 하동
난산리	577	2	8	상동, 하동

안덕면은 1935년 4월 1일 제주도 중면에서 안덕면으로 개칭되었고 그 후 1946년 8월 1일 도(道)제가 실시되면서 남제주군 안덕면으로 개칭되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서귀포시 안덕면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61년 군자치제 실시당시 행정구역은 11개 리였으나 서광리가 서광동리와 서광서리로 분리되어 현재 12개 행정리, 19개 자연마을 121개 반, 인구는 11,867명이다.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은 해수욕장이 위치한 화순리로 2,838명이며 인구가 가장 적은 마을은 광평리로 81명이다. 마을별 인구 및 현황은 <표 4-14>와 같다.

<표 4-14> 안덕면 지역 마을별 현황

마을명	인구 (명)	자 연 마을수	반	자연마을명
계	11,867	19	121	
화순리	2,838	2	26	본동, 곤물동
창천리	646	1	8	본동
대평리	611	1	9	본동
감산리	882	2	12	본동, 한밭
상창리	521	2	3	본동, 신남동
사계리	2,345	3	28	대진동, 송죽동, 용해동
덕수리	1,245	2	13	동부락, 서부락
서광서리	1,277	1	8	본동
서광동리	634	1	7	본동
동광리	624	2	5	본동, 양잠단지
광평리	81	1	1	본동
상천리	163	1	1	본동

표선면은 1935년 전라남도령으로 제주도 동중면에서 표선면으로 개칭되었고 면소재지를 성읍리에서 표선리로 이전하였다. 그 후 1946년 8월 1일 도(道)제 시행과 더불어 군제가 실시됨에 따라 남제주군 표선면으로 개칭,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서귀포시 표선면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현재 10개 행정리, 30개 자연마을, 94개 반, 인구는 12,374명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마을은 해수욕장이 위치한 표선리로 5,643명이며 인구가 가장 적은 마을은 세화3리로 158명이다. 마을별 인구 및 현황은 <표 4-15>와 같다.

<표 4-15> 표선면 지역 마을별 현황

마을명	인구 (명)	자 연 마을수	반	자연마을명
계	12,374	30	94	
표선리	5,643	6	40	동상동, 동하동, 서상동, 서하동, 당포동, 한지동
하천리	1,161	3	8	상동, 중동, 하동
성읍1리	1,332	4	7	서상동, 서하동, 동상동, 동하동
성읍2리	241	2	2	구룡동, 안보동
가시리	1,269	6	8	중동, 안좌동, 두리동, 폭남동, 동상동, 역지동
세화1리	729	3	6	서상동, 동상동, 동하동
세화2리	747	2	7	본동, 중동
세화3리	158	1	3	강화동
토산1리	459	2	6	본동, 월지동
토산2리	635	1	7	본동

### 3. 읍·면지역 마을 향약 수집현황

향약은 오랜 역사를 지닌 리민 통합과 리민들끼리 마련한 가치 지향적 약속으로 마을회 향약, 마을회 정관, 마을회 회칙, 마을회 규약, 마을회 규칙 등의 명칭으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도시화가 되면서 시내 중심동은 사라지고 시내 외곽동 및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보존·활용되고 있어서 주민들에 의해 '리장(里長)'을 직접 선출하고 있는 읍·면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마을 향약은 공개하지 않은 마을이 많아 수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마을 향약이 개정중에 있다, 마을 주민이 아니다, 연구 목적으로는 더욱 줄 수 없다고 거절해서 수차례 방문했음에도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여 일부 읍·면지역 마을향약은 수집이 어려웠으나 리장들의 협조로 제주의 12개 읍·면지역 172개 마을 중 84.9%인 146개 마을의 향약을 연구자료로 수집할 수 있었다. 제주시 지역은 96개 마을 중 89개 마을의 향약을 수집하여 92.7%를 수집하였고 서귀포시 지역은 76개 마을 중 75%인 57개 마을의 향약을 수집하였다. 그 현황은 <표 4-16>과 같다.



<표 4-16>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향약 수집현황

구분	마을수	수집마을	수집비율(%)
<b>합계</b>	<b>172</b>	<b>146</b>	<b>84.9</b>
제주시	96	89	92.7
한림읍	21	21	100
애월읍	26	26	100
구좌읍	12	6	50
조천읍	12	12	100
한경면	15	14	93.3
추자면	6	6	100
우도면	4	4	100
서귀포시	76	57	75.0
대정읍	23	22	95.7
남원읍	17	8	47.1
성산읍	14	12	85.7
안덕면	12	5	41.7
표선면	10	10	100

1) 제주시 읍·면지역 마을 향약 수집현황

제주시 읍·면 지역은 96개 마을 중 7개 마을을 제외한 89개 마을의 향약을 수집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림읍은 한림1리, 한림2리, 한림3리, 강구리, 귀덕1리, 귀덕2리, 귀덕3리, 수원리, 대림리, 한수리, 상대리, 금능리, 동명리, 명월리, 상명리, 월림리, 월령리, 협재리, 비양리, 금악리, 용포리 등 21개 마을 전체의 향약을 수집하였다. 애월읍은 애월리, 팍지리, 금성리, 봉성리, 어음1리, 어음2리, 남읍리, 상가리, 하가리, 소길리, 장전리, 유수암리, 용흥리, 신엄리, 중엄리, 구엄리, 고내리, 하귀1리, 하귀2리, 상귀리, 수산리, 고성1리, 고성2리, 광령1리, 광령2리, 광령3리 등 26개 마을 전체의 향약을 수집하였다. 구좌읍은 12개 마을 중 동북리, 덕천리, 행원리, 한동리, 송당리, 하도리 등 6개 마을을 제외한 김녕리, 월정리, 평대리, 세화리, 상도리, 종달리 등 6개 마을의 향약을 수집하였다. 조천읍은 신촌리, 조천리, 신흥리, 함덕리, 북촌리, 와산리, 교래리, 와흘리, 선흘1리, 선흘2리, 대흘1리, 대흘2리 등 12개 마을 전체의 향약을 수집하였다. 한경면은 15개 마을 중 고산2리를 제외한 금등리, 신창리, 두모리, 판포리, 한원리, 용당리, 낙천리, 저지리, 청수리, 용수리, 산양리, 조수1리,

조수2리, 고산1리 등 14개 마을의 향약을 수집하였다. 추자면은 대서리, 영흥리, 묵리, 예초리, 신양1리, 신양2리 등 6개 마을 전체의 향약을 수집하였다. 우도면은 천진리, 서광리, 조일리, 오봉리 등 4개 마을 전체의 향약을 수집하였다. 마을별 향약 수집현황은 <표 4-17>과 같다.

<표 4-17> 제주시 읍·면지역 마을 향약 수집현황

읍·면	전체 마을수	수집 마을수	수집 마을 명
	96	89	
한림읍	21	21	한림1리, 한림2리, 한림3리, 강구리, 귀덕1리, 귀덕2리, 귀덕3리, 수원리, 대림리, 한수리, 상대리, 금능리, 동명리, 명월리, 상명리, 월림리, 월령리, 협재리, 비양리, 금악리, 옹포리
애월읍	26	26	애월리, 괭지리, 금성리, 봉성리, 어음1리, 어음2리, 납읍리, 상가리, 하가리, 소길리, 장전리, 유수암리, 용흥리, 신엄리, 중엄리, 구엄리, 고내리, 하귀1리, 하귀2리, 상귀리, 수산리, 고성1리, 고성2리, 광령1리, 광령2리, 광령3리
구좌읍	12	6	김녕리, 월정리, 평대리, 세화리, 상도리, 종달리
조천읍	12	12	신촌리, 조천리, 신흥리, 함덕리, 북촌리, 와산리, 교래리, 와흘리, 선흘1리, 선흘2리, 대흘1리, 대흘2리
한경면	15	14	금등리, 신창리, 두모리, 판포리, 한원리, 용당리, 낙천리, 저지리, 청수리, 용수리, 산양리, 조수1리, 조수2리, 고산1리
추자면	6	6	대서리, 영흥리, 묵리, 예초리, 신양1리, 신양2리
우도면	4	4	천진리, 서광리, 조일리, 오봉리

## 2) 서귀포시 읍·면지역 마을 향약 수집현황

서귀포시 읍·면 지역은 76개 마을 중 19개 마을을 제외한 57개 마을의 향약을 수집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정읍은 23개 마을 중 신도2리를 제외한 상모1리, 상모2리, 상모3리, 하모1리, 하모2리, 하모3리, 안성리, 인성리, 일과1리, 일과2리, 무릉1리, 무릉2리, 가파리, 마라리, 신평리, 동일1리, 동일2리, 보성리, 영락리, 구역리, 신도1리, 신도3리 등 22개 마을의 향약을 수집하였다. 남원읍은 17개 마을 중 남원2리, 태흥1리, 위미2리, 위미3리, 하례1리, 하례2리, 신례2리, 한남리, 신흥1리 등 9개 마을을 제외한 남원1리, 태흥2리, 태흥3리, 위미1리, 신례1리, 수망리, 의귀리, 신

흥2리 등 8개 마을의 향약을 수집하였다. 성산읍은 14개 마을 중 삼달1리와 삼달2리 2개 마을을 제외한 성산리, 오조리, 시흥리, 고성리, 신양리, 수산1리, 수산2리, 온평리, 신산리, 신평리, 신천리, 난산리 등 12개 마을의 향약을 수집하였다. 안덕면은 12개 마을 중 화순리, 상창리, 덕수리, 서광서리, 동광리, 광평리, 상천리 등 7개 마을을 제외한 창천리, 대평리, 감산리, 사계리, 서광동리 등 5개 마을의 향약을 수집하였다. 표선면은 표선리, 하천리, 성읍1리, 성읍2리, 가시리, 세화1리, 세화2리, 세화3리, 토산1리, 토산2리 등 10개 마을 전체의 향약을 수집하였다. 마을별 향약 수집 현황은 <표 4-18>과 같다.

<표 4-18> 서귀포시 읍·면지역 마을 향약 수집현황

읍·면	전 체	수 집	수 집 마을 명
	마을수	마을수	
	76	57	
대정읍	23	22	상모1리, 상모2리, 상모3리, 하모1리, 하모2리, 하모3리, 안성리, 인성리, 일과1리, 일과2리, 무릉1리, 무릉2리, 가파리, 마라리, 신평리, 동일1리, 동일2리, 보성리, 영락리, 구역리, 신도1리, 신도3리
남원읍	17	8	남원1리, 태흥2리, 태흥3리, 위미1리, 신례1리, 수망리, 의귀리, 신흥2리
성산읍	14	12	성산리, 오조리, 시흥리, 고성리, 신양리, 수산1리, 수산2리, 온평리, 신산리, 신평리, 신천리, 난산리
안덕면	12	5	창천리, 대평리, 감산리, 사계리, 서광동리,
표선면	10	10	표선리, 하천리, 성읍1리, 성읍2리, 가시리, 세화1리, 세화2리, 세화3리, 토산1리, 토산2리

## 제 2 절 제주지역 마을단위 향약 분석

마을운영 기초가 되고 있는 각 마을 향약의 주요내용은 제·개정 취지를 기재한 전문을 비롯해서 명칭과 목적을 기재한 총칙, 리민의 자격·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마을운영 조직, 자기결정권과 주민주권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마을회의, 재정 및 회계, 재산관리, 상·벌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그 외에 선거관리, 감사관리, 리사무장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별도 규정으로 두어 운영하고 있다. 이에 근린자치의 근간이 되는 리민에 관한 사항, 마을운영 조직,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기구, 마을의 리더를 선출하는 리장 선거, 향약 제·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1. 리민의 자격

마을별 리민의 자격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하면 마을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자격이 주어지나 일부마을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해당마을에 본적을 두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준리민 또는 명예리민으로 인정하여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 마을도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 전출, 위장전입자 등은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 1) 제주시 읍·면지역 마을별 리민의 자격

제주시 읍·면 지역은 다수 마을이 주민등록 전입 후 실제 거주하면 리민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한림읍, 구좌읍, 추자면, 우도면 등 4개 지역을 제외하고 준리민 또는 명예리민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림읍은 한림1리, 한림2리, 한림3리, 강구리, 귀덕1리, 귀덕2리, 귀덕3리, 대림리, 한수리, 상대리, 금능리, 동명리, 명월리, 상명리, 월림리, 월령리, 협재리, 금악리 등 18개 마을은 주민등록 전입 후 실제 거주하면 리민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 마을 중 귀덕3리는 세대주, 동명리는 19세 이상자만 자격이 부여된다. 일정기간 경과해야 자격이 부여되는 마을은 수원리와 비양리이나 수원리는 주민등록 전입 후 3년, 비양리는 주민등록 전입 후 2년이 경과해야 리민의 자격을 갖는다. 그 외 옹포리는 리민에 대한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 현황은 <표 4-19>와 같다.

<표 4-19> 한림읍 마을별 리민의 자격부여 현황

마을명	주민등록 전입 및 실거주자	주민등록 전입 후 일정기간 경과자	준리민 (명예리민)	참고사항
한림1리	○			
한림2리	○			
한림3리	○			
강구리	○			
귀덕1리	○			
귀덕2리	○			
귀덕3리	○ (세대주)			
수원리		○ (3년)		
대림리	○			
한수리	○			
상대리	○			
금능리	○			
동명리	○(19세이상자)			
명월리	○			
상명리	○			
월림리	○			
월령리	○			
협재리	○			
비양리		○ (2년)		
금악리	○			
용포리	규정없음			

애월읍은 광지리, 금성리, 봉성리, 납읍리, 상가리, 하가리, 소길리, 장전리, 용흥리, 중엄리, 구엄리, 하귀1리, 하귀2리, 상귀리, 수산리, 고성1리, 고성2리, 광령1리, 광령2리, 광령3리 등 20개 마을은 주민등록 전입 후 실제 거주하면 리민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 마을 중 금성리와 광령3리는 19세 이상자, 광령1리는 세대주만 자격을 부여받고 있다. 일정기간 경과해야 자격이 부여되는 마을 중 애월리는 주민등록 전입 후 5년 이상 경과자, 어음1리와 신엄리는 1년 이상 경과자. 고내리는 6개월 이상 경과자, 유수암리는 1년이상 리 운영비 납부자, 어음2리는 해당마을 출생자는 주민등록 전입 후 1년, 타지역출생 전입자는 자가 소유의 주택이 있고 5년이상 거주해야 리민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애월리, 광지리, 금성리, 유수암리, 신엄리, 고내리, 하귀1리 등 7개 마을은 해당마을에 본적을 두고 타지역에 거주하는 출향자를 준리민, 마을발전 기여자는

명예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 외에 상가리는 리민자격 제명자는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리민으로서의 권리를 갖지 못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 현황은 <표 4-20>과 같다.

<표 4-20> 애월읍 마을별 리민의 자격부여 현황

마을명	주민등록 전입 및 실거주자	주민등록 전입 후 일정기간 경과자	준리민 (명예리민)	참고사항
애월리		○(5년)	○(준향원)	준향원: 본적을 둔 출향자
곽지리	○		○(준리민)	준리민: 본적을 둔 출향자
금성리	○(19세)		○(준회원)	준회원: 본적을 둔 출향자
봉성리	○			
어음1리		○(1년)		
어음2리		○ (분리출생: 1년) (타지역출생전입자: 자가 소유 5년)		
납읍리	○			
상가리	○			리민 제명시 5년 경과해야 리민자격 재취득 가능
하가리	○			
소길리	○			
장전리	○			
유수암리		○ (1년상리운영비납부자)	○(명예회원)	명예회원: 분리 발전 기여자
용흥리	○			
신엄리		○(1년)	○(준향원)	준향원: 본적을 둔 출향자
중엄리	○			
구엄리	○			
고내리		○(6개월)	○(준리민)	준리민: 본적을 둔 출향자
하귀1리	○		○(준리민)	준리민: 본적을 둔 출향자
하귀2리	○			
상귀리	○			
수산리	○			
고성1리	○			
고성2리	○			
광령1리	○(세대주)			
광령2리	○			
광령3리	○(19세)			

구좌읍은 김녕리, 평대리, 세화리, 상도리, 종달리 등 5개 마을은 주민등록 전입 후 실제 거주하면 리민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월정리는 주민등록 전입 후 10년이

경과해야 리민의 자격을 갖는다. 그 현황은 <표 4-21>과 같다.

<표 4-21> 구좌읍 마을별 리민의 자격부여 현황

마을명	주민등록 전입 및 실거주자	주민등록 전입 후 일정기간 경과자	준리민 (명예리민)	참고사항
김녕리	○			
월정리		○ (10년)		
평대리	○			
세화리	○			
상도리	○			
종달리	○			

조천읍은 신촌리, 조천리, 신흥리, 함덕리, 북촌리, 와산리, 와흘리, 선흘1리, 선흘2리, 대흘1리, 대흘2리 등 11개 마을은 주민등록 전입 후 실제 거주하면 리민의 자격이 부여되나 교래리는 주민등록 전입 후 3개월이 경과해야 리민의 자격 갖는다. 그리고 와산리와 교래리는 해당마을 출생자 중 타지역 거주자를 준리민으로 인정하고 있고 신촌리와 북촌리는 마을발전 및 특별재능을 기부한 외부인사에게 명예리민으로 인정하여 명예리민증 수여와 함께 마을의 각종 행사에 초청하는 등 특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 현황은 <표 4-22>와 같다.

<표 4-22> 조천읍 마을별 리민의 자격부여 현황

마을명	주민등록 전입 및 실거주자	주민등록 전입 후 일정기간 경과자	준리민 (명예리민)	참고사항
신촌리	○		○(명예리민)	명예리민: 리발전 공로자
조천리	○			
신흥리	○			
함덕리	○			
북촌리	○		○(명예리민)	명예리민: 재능기부 및 리 발전 공로자
와산리	○		○(준리민)	준리민: 본리출생자중 타지거주자
교래리		○(3개월)	○(준리민)	준리민: 본리출생자중 타지거주자
와흘리	○			
선흘1리	○			
선흘2리	○			
대흘1리	○			
대흘2리	○			

한경면은 금등리, 신창리, 한원리, 저지리, 청수리, 산양리, 조수2리, 고산1리 등 8개 마을은 주민등록 전입 후 실제 거주하면 리민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 외 용수리는 주민등록 전입 후 6개월, 두모리, 판포리, 조수1리 등 3개 마을은 주민등록 전입 후 3년, 낙천리는 주민등록 전입 후 10년, 용당리는 리민에 대한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저지리와 청수리는 마을발전 공로자를 명예리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황은 <표 4-23>과 같다.

<표 4-23> 한경면 마을별 리민의 자격부여 현황

마을명	주민등록 전입 및 실거주자	주민등록 전입 후 일정기간 경과자	준리민 (명예리민)	참고사항
금등리	○			
신창리	○			
두모리		○ (3년)		
판포리		○ (3년)		
한원리	○			
용당리	규정없음			
낙천리		○ (10년)		
저지리	○		○(명예리민)	명예리민 : 리 발전공로자
청수리	○		○(명예리민)	명예리민 : 리 발전공로자
용수리		○ (6개월)		
산양리	○			
조수1리		○ (3년)		
조수2리	○			
고산1리	○			

추자면은 묵리, 예초리, 신양1리, 신양2리 등 4개 마을은 주민등록 전입 후 실제 거주하면 리민의 자격이 부여되나 묵리와 신양2리는 세대주만 자격을 부여받고 있는데 세대주가 회원이 될 수 없는 경우 세대주가 지명한 세대내의 성인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일정기간 경과해야 자격이 부여되는 마을은 대서리와 영흥리이나 대서리는 주민등록 전입 후 3년, 영흥리는 1년 이상 거주한 30세 이상 주민 중 1세대 1명만 자격을 갖는다. 그 현황은 <표 4-24>와 같다.



<표 4-24> 추자면 마을별 리민의 자격부여 현황

마을명	주민등록 전입 및 실거주자	주민등록 전입 후 일정기간 경과자	준리민 (명예리민)	참고사항
대서리		○ (3년)		
영흥리		○(1년, 30세이상) (1세대 1명)		
묵리	○ (세대주)			세대주가 회원이 될수없는 경우 세대주가자명한세대내위 상년차
예초리	○			
신양1리	○			
신양2리	○ (세대주)			세대주가 회원이 될수없는 경우 세대주가자명한세대내위 상년차

우도면은 천진리, 서광리, 조일리 등 3개 마을은 주민등록 전입 후 6개월이 경과해야 리민의 자격이 부여되나 오봉리는 주민등록 전입 후 실제 거주하면 리민의 자격을 갖는다. 그 현황은 <표 4-25>와 같다.

<표 4-25> 우도면 마을별 리민의 자격부여 현황

마을명	주민등록 전입 및 실거주자	주민등록 전입 후 일정기간 경과자	준리민 (명예리민)	참고사항
천진리		○ (6개월)		
서광리		○ (6개월)		
조일리		○ (6개월)		
오봉리	○			

## 2) 서귀포시 읍·면지역 마을별 리민의 자격

서귀포시 읍·면지역은 해당마을 출생자와 타지역출생 전입자를 구분하여 리민의 자격을 부여하는 등 제주시 읍·면지역보다 리민이 되기 위한 조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정읍은 상모1리, 상모2리, 상모3리, 하모1리, 하모2리, 하모3리, 인성리, 일과1리, 일과2리, 무릉1리, 동일1리, 동일2리, 보성리, 신도1리, 신도3리 등 15개 마을은 주민등록 전입 후 실제 거주하면 리민의 자격이 부여

된다. 이 마을 중 동일2리는 세대주 및 직계가족, 인성리는 리 운영비 납부자, 일과2리, 무릉1리, 신도1리 등 3개 마을은 세대주만 자격을 부여받고 있는데 무릉1리와 신도1리는 세대주가 회원이 될 수 없는 경우 세대주가 정한 세대내의 성인인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주민등록 전입 후 일정기간 경과해야 자격이 부여되는 마을은 안성리, 무릉2리, 가파리, 마라리, 신평리, 영락리, 구역리 등 7개 마을이다. 이 마을 중 영락리는 주민등록 전입 후 1년, 안성리는 해당마을 출생자는 1950년 1월 1일 이전 출생하거나 당시 거주자와 후손, 타지역출생 전입자는 30년 이상 경과해야 리민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신평리도 안성리와 같으나 19세 이상자로 한정하고 있다. 무릉2리는 21세 이상자로 한정하여 해당마을 출생자는 1960년 이전 출생하거나 당시 거주자와 후손, 타지역출생 전입자는 20년이 경과해야 리민의 자격을 부여받고 있다.

가파리는 해당마을 출생자는 주민등록 전입 후 2년, 타지역출생 전입자는 5년이 경과된 자로서 1년에 70일 이상 마을에 거주해야 자격을 갖는다. 구역리는 10년 이상 거주한 세대 중 리 운영비를 납부한 자에게 회원가입 신청에 의해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매해 12월 회원명부를 작성 관리하고 있다. 마라리는 해당마을 출생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민등록 전입 후 2년, 타인소유 주택거주자는 5년이 경과해야 리민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그리고 타지역출생 전입자는 주민등록 전입 후 10년 경과해야 리민의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데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만 인정하고 있다.

그 외 준리민을 인정하고 있는 마을은 하모1리, 하모2리, 일과2리, 마라리, 동일2리 등 5개 마을이다. 이 마을 중 하모1리는 해당마을에 본적 또는 주소를 두고 타지역에 거주하거나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마을에 거주하는 자를 준리민, 하모2리는 해당마을에 본적을 두고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준리민, 해당마을에 사무소 및 사업장을 가진 자는 특별리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과2리는 주민등록 전입 없이 장기 거주한 정회원이 아닌 자를 준회원, 해당마을 출생자 중 타지역거주자 및 마을발전 기여자는 명예회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마라리는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정회원이 되기까지 거주기간 미 경과자를 준리민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개발위원회에서 매년 리민의 자격을 심사하여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동일2리는 지역발전 공로자를 특별회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현황은 <표 4-26>과 같다.

<표 4-26> 대정읍 마을별 리민의 자격부여 현황

마을명	주민등록 전입 및 실거주자	주민등록 전입 후 일정기간 경과자	준리민 (명예리민)	참고사항
상모1리	○			
상모2리	○			
상모3리	○			
하모1리	○		○(준리민)	준리민분리에 본적 또는 주소를 두고 타지역거주자, 타지에 주소를 두고 본리거주자
하모2리	○		○ (준리민) (특별리민)	준리민 : 본적을 둔 출향자 특별리민 : 리에 사무소 및 사업장을 가진 자
하모3리	○			
안성리		○(30년) (본리출신:1950년1월1 월 이전 출생 및 당시 거주자), (타지역출생 전입자 : 30년)		
인성리	○ (리 운영비납부자)			
일과1리	○			
일과2리	○ (세대주)		○ (준회원) (명예회원)	준회원: 장기 거주한 정회원야차 명예회원 : 본리출신 타지역 거주자, 마을발전 기여자
무릉1리	○ (세대주)			대주가 회원이 될 수 없는 경우 세대주가 자명한 세대의 상촌자
무릉2리		○ (20년, 21세이상자) (본리출신:1960년이전 출생 및 당시거주자), (타지역출생 전입자: 20년)		
가파리		○(5년) (본리출생:2년) (타지역출생 전입자: 5년)		타지역출생전입자 : 연 70일 이상 거주해야 함
마라리		○ (10년) (본리출신: 전입후 본인 소유주택 거주자 2년, 타인소유주택거주자 5년) (타지역출생 전입자:본 인 소유주택 거주 10년)	○(준리민)	준리민 :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거주기간 미경과자 *개발위원회에서 매년 정리민자격 심사 명단 공지

신평리		○ (30년, 19세이상자) (본리출신 1950년1월1월 이전 출생 및 당시 거주자), (타지역출생 전입자: 30년)		
동일1리	○			
동일2리	○ (세대주및직계가족)		○ (특별회원)	특별회원 : 지역발전기여자
보성리	○			
영락리		○ (1년)		
구역리		○ (10년) (리 운영비 납부 세대)		회원 가입신청에 의함. 매년 12월 회원명부작성
신도1리	○ (세대주)			세대주가 회원이 될 수 없는 경우 세대주가 자명한 세대의 상촌차
신도3리	○			

남원읍은 남원1리, 태흥2리, 태흥3리, 위미1리, 신례1리, 의귀리, 신흥2리 등 7개 마을은 주민등록 전입 후 실제 거주하면 리민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 마을 중 남원1리는 세대주만 자격을 갖는다. 수망리는 20세 이상 세대주로 한정하여 본리 출생자는 1980년 12월 31일을 기준 당시 마을에 거주했던 자에게 자격이 부여하고 있으나 타지역출생 전입자는 20년이 경과해야 자격이 부여된다. 그 현황은 <표 4-27>과 같다.

<표 4-27> 남원읍 마을별 리민의 자격부여 현황

마을명	주민등록 전입 및 실거주자	주민등록 전입 후 일정기간 경과자	준리민 (명예리민)	참고사항
남원1리	○ (세대주)			
태흥2리	○			
태흥3리	○			
위미1리	○			
신례1리	○			
수망리		○ (20년, 20세이상세대주) (본리출산: 1980,12,31이전 거주자), (타지역출생전입자: 20년)		
의귀리	○			
신흥2리	○			

성산읍은 오조리, 시흥리, 고성리, 신양리, 수산1리, 수산2리, 난산리, 신천리 등 8개 마을은 주민등록 전입 후 실제 거주하는 자에게 리민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 마을 중 수산2리는 리 운영비 납부자만 자격을 갖는다. 주민등록 전입 후 일정기간 경과해야 자격이 부여되는 마을은 성산리, 온평리, 신산리 등 3개 마을이다. 이 마을 중 성산리는 10년, 온평리는 1년, 신산리는 5년이 경과해야 리민의 자격을 갖는다. 그 외 신흥리는 타지역출생 전입자에 대한 리민의 자격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20세 이상자에 한하여 1957년 이전 부모 또는 조부모가 신흥리에 본적을 둔 직계가족으로 주소가 신흥리인 자에게 리민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수산1리는 해당마을 출생자 중 타지역 거주자를 준리민으로 인정하고 있고 난산리는 회원과 리민을 분리하여 회원은 본적이 난산리인 거주자, 리민은 전입자로 일정기간 거주한 자에게 회원자격이 주어지고 있는데 거주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 현황은 <표 4-28>과 같다.

<표 4-28> 성산읍 마을별 리민의 자격부여 현황

마을명	주민등록 전입 및 실거주자	주민등록 전입 후 일정기간 경과자	준리민 (명예리민)	참고사항
성산리		○ (10년)		
오조리	○			
시흥리	○			
고성리	○			
신양리	○			
수산1리	○		○(준리민)	준리민: 본리출생자중 타지거주자
수산2리	○(리 운영비납부자)			
온평리		○ (1년)		
신산리		○ (5년)		
신흥리		○20세 이상자 (1957년이전 부모(조부모) 가 신흥리에 본적을 두고 직계가족으로 신흥리에 주소를 둔 자)		전입자에 대한 회원자격 기준 없음
신천리	○			
난산리	○			회원: 본적을 두고 거주하는 자 리민: 전입자

안덕면은 창천리, 대평리, 감산리, 사계리 등 4개 마을은 주민등록 전입 후 실제 거주하면 리민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 마을 중 대평리는 19세 이상자, 사계리는 20세 이상인 세대주만 자격을 갖는다. 그 외 서광동리는 주민등록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리민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창천리, 감산리, 사계리 등 3개 마을은 해당마을 출생자 중 타지역거주자를 준리민으로 인정하고 있고 서광동리는 마을발전 기여자에게 명예주민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마을총회에 3회 이상 불참하면 리민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 현황은 <표 4-29>와 같다.

<표 4-29> 안덕면 마을별 리민의 자격부여 현황

마을명	주민등록 전입 및 실거주자	주민등록 전입 후 일정기간 경과자	준리민 (명예리민)	참고사항
창천리	○		○(준리민)	준리민: 본마을출생자중 타지역거주자
대평리	○ (19세이상자)			
감산리	○		○(준리민)	준리민: 본마을출생자중 타지역거주자
사계리	○ (20세이상세대주)		○(준회원)	준회원: 본마을출생자중 타지역거주자
서광동리		○ (6개월)	○(명예주민)	명예주민: 마을발전 기여자 *마을총회 3회이상 불참시 리민자격 상실

표선면은 표선리, 하천리, 성읍1리, 성읍2리, 가시리, 세화1리, 세화2리, 세화3리, 토산1리, 토산2리 등 10개 마을 모두 주민등록 전입 후 실제 거주하면 리민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하천리, 성읍1리, 세화1리, 토산1리 등 4개 마을은 명예리민을 인정하고 있는데 하천리는 마을발전기여자, 성읍1리와 세화1리는 마을발전 기여자 및 본적지 또는 거소지가 해당마을인 자, 토산1리는 마을발전 기여자 및 타지역에 거주하는 마을출생자를 명예리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현황은 <표 4-30>과 같다.

<표 4-30> 표선면 마을별 리민의 자격부여 현황

마을명	주민등록 전입 및 실거주자	주민등록 전입 후 일정기간 경과자	준리민 (명예리민)	참고사항
표선리	○			
하천리	○		○(명예리민)	명예리민 : 마을발전 기여자
성읍1리	○		○(명예리민)	명예리민 : 마을발전 기여자 및 본적 또는 거소가 성읍리인 자
성읍2리	○			
가시리	○			
세화1리	○		○(명예리민)	명예리민 : 마을발전 기여자 및 본적 또는 거소가 세화리인 자
세화2리	○			
세화3리	○			
토산1리	○		○(명예리민)	명예리민 : 마을발전 기여자 및 타지역 거주자
토산2리	○			

제주의 읍·면지역 마을별 리민의 자격을 종합해보면 146개 마을 중 76%에 해당하는 111개 마을이 주민등록 전입 후 실제 거주하면 리민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 전입 후 5년이상 경과해야 리민으로 인정하는 마을이 12개 마을로 8.2%를 차지하고 있고 서귀포 읍·면지역 4개 마을은 20년이상 거주해야 리민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외 리민의 자격에 대한 기준이 없는 마을은 3개 마을이다. 준리민이나 명예리민을 두고 있는 마을은 제주시 13개 마을, 서귀포시 14개 마을로 서귀포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현황은 <표 4-31>과 같다.

<표 4-31>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마을별 리민의 자격부여 현황

(단위:마을수)

구분	계	전입 후 실제거주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규정 없음	준 리민
계	146	111	1	6	7	1	5	3	5	2	2	3	27
제주시	89	67	1	5	5	1	5	1	2	0	0	2	13
서귀포시	57	44	0	1	2	0	0	2	3	2	2	1	14

## 2. 리민의 권리

리민의 자격을 가진 자는 리정 전반에 대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고 리장 등 임원선출에 있어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리 소유 재산에 대하여 참여 및 청구권을 갖는다. 그러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자, 해당마을에 피해 또는 손해를 가하여 총회 의결로 자격이 박탈되거나 제한된 자, 실제 거주기간이 현저하게 짧은 경우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는 마을은 리 운영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선거권을 비롯해서 피선거권, 의결권 등 모든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 1) 제주시 읍·면지역 마을별 리민의 권리

한림읍은 리민의 권리 중 마을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명시되어 있는 마을은 한림1리, 한림2리, 귀덕2리, 귀덕3리, 수원리, 대림리, 금능리, 상명리, 월령리, 협재리, 비양리, 옹포리 등 12개 마을이다. 이 마을 중 한림1리, 한림2리, 수원리 등 3개 마을은 누구도 청구할 수 없고, 귀덕2리, 금능리, 비양리 등 3개 마을은 전입자는 청구권이 없다.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권을 명시한 마을 중 대림리는 1950년 12월 30일 이전 거주자와 후손 중 대림리 거주자, 상명리는 1975년 1월 1일 이전 거주자와 후손, 월령리는 1950년 12월 30일 이전 거주자, 옹포리는 1965년 이전 거주자와 후손만 청구권이 있다. 그 외 귀덕3리는 리 형성 후 지속 되어 온 재산은 대를 이어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리민, 기타 재산은 취득 및 수익발생 시점 기준 5년 이상 거주자, 협재리는 해당마을 출생자는 5년이상 거주자, 타지역출생 전입자는 30년이 경과해야 청구권이 있다. 그 외 한림3리, 강구리, 귀덕1리, 한수리, 상대리, 동명리, 명월리, 월림리, 금악리 등 9개 마을은 청구권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총회 참여권은 총회를 대의원회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은 한림1리이다. 나이를 기준으로 19세 이상자만 참여권이 있는 마을은 귀덕3리, 수원리, 대림리, 상대리, 금능리, 명월리, 상명리, 금악리, 옹포리 등 9개 마을이나 이 마을 중 귀덕3리는 세대원 중 1명, 명월리는 세대원 중 1명이나 총회 유회시 개발위원회가 대신한다. 상대리와 금악리는 주민등록 전입 후 1년이 경과해야 총회 참여권이 있다. 20세 이상자만 총



회 참여권이 마을은 한림3리, 강구리, 귀덕2리, 월령리, 비양리 등 5개 마을이나 이 마을 중 한림3리와 강구리는 세대주만 참여권이 있는데 세대주가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세대내 20세 이상자가 총회 참여권을 갖는다. 회원만 총회 참여권이 있는 마을은 동명리이나 19세 이상자만 참여할 수 있다. 리민이면 누구나 총회 참여권이 있는 마을은 한림2리, 귀덕1리, 한수리, 월림리, 협재리 등 5개 마을이나 월림리는 총회 유회시 각반장과 개발위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대신한다.

리장 선거권은 한림3리, 강구리, 귀덕3리 등 3개 마을을 제외하고 1인 1표제로 리장을 선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림1리는 각 마을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을 통해서 리장을 선출하고 있다. 19세 이상자만 선거권이 있는 마을은 한림2리, 귀덕1리, 귀덕3리, 수원리, 대림리, 한수리, 상대리, 금능리, 동명리, 명월리, 상명리, 월림리, 협재리, 금악리, 옹포리 등 15개 마을이다. 이 마을 중 귀덕3리는 세대원 중 1명, 협재리는 1년이상 거주자, 상대리와 금악리는 주민등록 전입 후 1년이상 거주한 총회 참석자, 대림리는 주민등록 전입 후 2년이상 거주자, 금능리는 해당마을 출생자는 주민등록 전입 후 3개월, 타지역출생 전입자는 주민등록 전입 후 3년이 경과해야 선거권이 있다. 20세 이상자만 선거권이 있는 마을은 한림3리, 강구리, 귀덕2리, 월령리, 비양리 등 5개 마을이나 한림3리와 강구리는 세대원 중 1명만 선거권이 있다. 그 현황은 <표 4-32>와 같다.

<표 4-32> 한림읍 마을별 리민의 권리

마을명	자산청구권	총회구성원 (나이)	리장선거권 (나이)	선거유형	참고사항
한림1리	불가	대의원	대의원	1인 1표 (대의원)	
한림2리	불가	리민	19	1인 1표	
한림3리		20 (세대주)	20 (1세대 1명)	1세대 1표	총회: 세대주 유고시 세대내 20세 이상자 참여가능
강구리		20 (세대주)	20 (1세대 1명)	1세대 1표	총회: 세대주 유고시 세대내 20세 이상자 참여가능
귀덕1리		리민	19	1인 1표	
귀덕2리	전입자 불가	20	20	1인 1표	
귀덕3리	진래재산:본리 출생 거주자 기타재산:5년	19 (1세대 1명)	19 (1세대 1명)	1세대 1표	기타재산청구권:취득및수익발생시점기준 5년이상 거주자

수원리	불가	19	19	1인 1표	
대림리	1950년 12월 31일 이전 거주자 후손 중 대림리 거주자	19	19 (2년이상 거주자)	1인 1표	
한수리		리민	19	1인 1표	
상대리		19 (1년이상 거주자)	19 (1년이상 거주자) (총회 참석자)	1인 1표 (총회참석자)	선거권 : 선거당일 참석자
금능리	전입자 불가	19	19 (본리출신: 3월) (타지역출생 전입자: 3년)	1인 1표	
동명리		회원 (19)	19	1인 1표	
명월리		19 (1세대 1명)	19	1인 1표	총회유회시 개발위원회가 대행가능
상명리	1975년 1월 1일 이전 거주자 후손	19	19	1인 1표	
월림리		리민	19	1인 1표	총회유회시 대의원회가 대행함.
월령리	1950년 12월 31일 이전 거주자	20	20	1인 1표	
협재리	30년 (본리출산 5년) (타지역출생 전입자: 30년)	리민	19 (1년이상 거주자)	1인 1표	
비양리	전입자 불가	20	20	1인 1표	
금악리		19 (1년이상거주자)	19 (1년이상 거주자) (총회 참석자)	1인 1표 (총회참석자)	선거권 : 선거당일 참석자
옹포리	1965년이전 거주자와 후손	19	19	1인 1표	

애월읍은 리민의 권리 중 마을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명시되어 있는 마을은 상가리, 신엄리, 중엄리 등 3개 마을이다. 이 마을 중 상가리는 20년이상 거주자 및 해당마을에 본적을 둔 자, 신엄리는 전입자 포함 누구도 청구할 수 없고, 중엄리는 10년이상 거주한 자에게만 청구권이 있다. 그 외 23개 마을은 청구권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총회 참여권은 18세만 참여권이 있는 마을은 유수암리와 용흥리이며, 19세 이상

은 애월리, 납읍리, 신엄리, 하귀2리, 고성2리, 광령3리 등 6개마을이나 이 마을 중 고성2리는 세대대표자 1명만 총회 참여권이 있다. 20세 이상은 상가리, 하가리, 구엄리, 고내리, 하귀1리 등 5개 마을, 25세 이상은 소길리와 광령2리등 2개 마을, 회원만 총회 참여가 가능한 마을은 금성리, 어음2리, 중엄리, 상귀리 등 4개 마을이나 금성리는 회원 중 19세 이상자만 총회 참여권이 있다. 리민이면 누구나 총회 참여권이 있는 마을은 광지리, 봉성리, 어음1리, 장전리 등 4개 마을이며 수산리는 리 운영비 납부세대 중 1명, 고성1리는 리 운영비 납부세대 중 19세 이상자, 광령1리는 세대주만 총회 참여권이 있다.

리장 선거권은 납읍리, 소길리, 장전리, 상귀리, 수산리, 고성1리, 고성2리, 광령1리, 광령2리 등 9개 마을을 제외하고 1인 1표제로 리장을 선출하고 있다. 18세 이상자에게 선거권이 있는 마을은 용흥리이며, 19세 이상은 애월리, 광지리, 금성리, 봉성리, 어음1리, 어음2리, 납읍리, 장전리, 유수암리, 신엄리, 하귀2리, 고성2리 등 12개 마을이다. 이 마을중 납읍리와 하귀2리는 3개월이상 거주자, 유수암리는 2년이상 거주자, 금성리는 총회참석자, 고성2리는 세대원중 1명만 선거권이 있다.

20세 이상자에게 선거권이 있는 마을은 상가리, 하가리, 중엄리, 구엄리, 고내리, 하귀1리, 광령1리등 7개 마을이다. 이 마을중 중엄리는 리 운영비 납부세대중 총회참석자, 구엄리는 총회참석자, 광령1리는 3년이상 거주한 세대원중 1명만 선거권이 있다. 광령2리는 1년이상 거주한 25세 이상자에게 선거권이 있으나 세대원중 1명만 선거권이 있다. 상귀리, 수산리, 고성1리는 리 운영비 납부세대 세대원중 1명만 선거권이 있다. 그 외 광령3리는 선거권과 선거유형을 확인하지 못했다.

기타 특이사항으로 신엄리는 해당마을 출생자가 박사학위, 사무관 승진, 학교장, 장관이상 표창수여 등 마을의 경사시는 마을에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신문광고를 통해 축하하는 규정을 별도 두고 있다. 그 현황은 <표 4-33>과 같다.

<표 4-33> 애월읍 마을별 리민의 권리

마을명	자산청구권	총회구성원 (나이)	리장선거권 (나이)	선거유형	참고사항
애월리		19	19	1인 1표	
광지리		리민	19	1인 1표	

금성리		회원 (19)	19 (총회참석자)	1인 1표 (총회참석자)	선거권 : 선거당일 참석자
봉성리		리민	19	1인 1표	
어음1리		리민	19	1인 1표	
어음2리		회원 (19)	19	1인 1표	
남읍리		19	19 (3개월이상거주자)	1세대 1표	
상가리	20년이상 거주자 및 본적을 둔자	20	20	1인 1표	
하가리		20	20	1인 1표	
소길리		25	25 (세대주)	1세대 1표	
장전리		리민	19 (1세대1명)	1세대 1표	
유수암리		18	19 (2년이상 거주자)	1인 1표	
용흥리		18	18	1인 1표	
신엄리	불가	19	19	1인 1표	경사(표창, 학위, 고시, 학 교장등)시 마을에서 현수 막 및 신문광고 축하
중엄리	10년	회원	20 (리 운영비납부세대 (총회 참석자)	1인 1표 (총회참석자)	선거권 : 선거당일 참석자
구엄리		20	20 (총회참석자)	1인 1표 (총회참석자)	선거권 : 선거당일 참석자
고내리		20	20	1인 1표	
하귀1리		20	20	1인 1표	
하귀2리		19	19 (90일이상 거주자)	1인 1표	
상귀리		회원	1년간 리 운영비 납부자 (1세대1명)	1세대 1표	
수산리		리 운영비 납부 세대 (1세대1명)	리 운영비 납부 세대 (1세대1명)	1세대 1표	
고성1리		리 운영비 납부 세대 (19)	리 운영비 납부 세대 (1세대1명)	1세대 1표	
고성2리		19 (세대 대표자)	19 (1세대1명)	1세대 1표	
광령1리		세대주	20 (3년이상거주자 (1세대1명)	1세대 1표	

광령2리		25	25 (1년이상 거주자) (1세대1명)	1세대 1표	
광령3리		19	확인불가	확인불가	추대

구좌읍은 리민의 권리 중 마을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명시되어 있는 마을은 평대리와 세화리이나 주민등록 전입 후 10년이상 거주해야 청구권이 있다. 그 외 김녕리, 월정리, 상도리, 종달리 등 4개 마을은 청구권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총회 참여권은 총회를 대의원회로 운영하는 마을은 김녕리와 세화리이다. 20세 이상자만 총회 참여권이 있는 마을은 평대리이며, 월정리는 나이 기준 없이 자생단체장 및 각 조합장, 개발위원, 감사포함 리민 30명이면 총회 개최가 가능하다. 상도리는 리 운영비 납부세대주, 종달리는 나이기준 없이 개발위원 2/1이상 포함 리민 60명으로 하고 있다.

리장 선거권은 상도리를 제외하고 모든 마을이 1인 1표제로 리장을 선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9세 이상자만 선거권이 있는 마을은 김녕리. 월정리, 종달리 등 3개 마을이나 김녕리와 월정리는 주민등록 전입 후 1년이상 거주자, 종달리는 주민등록 전입 후 6개월이상 거주자만 선거권이 있다. 평대리는 20세 이상자, 세화리는 25세 이상이면 선거권이 있으나 2년간 리 운영비를 납부해야 한다. 상도리는 선거없이 추대에 의해 리장이 선출하고 있어서 선거권과 선거유형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 현황은 <표 4-34>와 같다.

<표 4-34> 구좌읍 마을별 리민의 권리

마을명	자산청구권	총회구성원 (나이)	리장선거권 (나이)	선거유형	참고사항
김녕리		대의원	19 (1년이상 거주자)	1인 1표	
월정리		자생단체장 및 각조합장, 개발위원, 감사 포함 리 민30명	19 (1년이상 거주자)	1인 1표	
평대리	10년	20	20	1인 1표	
세화리	10년	대의원	25 (2년간 리 운영비 납부자)	1인 1표	
상도리		리 운영비 납부세대주	확인불가	확인불가	추대
종달리		개발위원 21 이상 포함리 민 60명	19 (6개월이상 거주자)	1인 1표	

조천읍은 리민의 권리 중 마을재산에 대한 청구권은 다른 읍·면에 비해 비교적 잘 명시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입과 동시에 청구권이 있는 마을은 신촌리이며 교래리는 주민등록 전입 후 3년, 조천리, 와산리, 대흘2리 등 3개 마을은 10년, 신흥리는 15년, 대흘1리는 해당마을 출생자는 전입과 동시에 청구권이 있으나 타지역출생 전입자는 20년이 경과해야 청구권이 있다. 북촌리는 1983년 8월이전 거주자, 와흘리는 재산취득당시 거주리민만 청구권이 있다. 그 외 함덕리, 신흥1리, 신흥2리 등 3개 마을은 청구권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총회 참여권은 총회를 대의원회로 운영하는 마을은 신촌리와 함덕리이다. 19세 이상자만 총회 참여권이 있는 마을은 북촌리이나 해당마을 출생자는 주민등록 전입 후 1년, 타지역출생 전입자는 5년이상 경과해야 총회 참여권이 있다. 20세 이상자만 총회 참여권이 있는 마을은 와산리와 신흥2리이다. 리민이면 누구나 총회 참석이 가능한 마을은 신흥리, 와흘리, 신흥1리 등 3개 마을이나 신흥1리는 주민등록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자, 신흥리와 와흘리는 정해진 시간에 참석한 인원으로서 총회를 개최한다. 세대주만 총회 참여권이 있는 마을은 교래리와 대흘2리이나 교래리는 세대주 중에서도 가정을 갖고 있는 세대주로 한정하고 있다. 회원만 총회참석이 가능한

마을은 조천리와 대흘1리이다.

리장 선거권은 교래리와 선흘1리를 제외하고 1인 1표제로 리장을 선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9세 이상자만 선거권이 있는 마을은 신촌리, 조천리, 신흥리, 함덕리, 북촌리, 와흘리, 선흘1리, 대흘1리, 대흘2리 등 9개 마을이다. 이 마을 중 선흘1리는 세대원 중 1명, 조천리는 6개월 이상 거주자, 대흘2리는 1년이상 거주자, 신촌리는 5년이상 거주자, 북촌리는 해당마을 출생자는 1년, 타지역출생 전입자는 5년이상 경과해야 선거권이 있다. 20세 이상자만 선거권이 있는 마을은 와산리와 선흘2리이나 선흘2리는 주민등록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자만 선거권이 있고 교래리는 가정을 갖고 있는 세대주만 선거권이 있다. 기타 특이사항으로 신촌리는 마을을 상징하는 마을기가 정해져 있고 해당마을 출생자가 대통령표창, 박사학위, 훈장수여, 세계대회 메달수여, 사법·행정·외무고시·국가대표 발탁, 사무관 승진 및 읍·면동장 취임 등 마을 경사시는 마을에서 현수막을 게시해서 축하하는 규정도 별도 두고 있다. 그 현황은 <표 4-35>와 같다.

<표 4-35> 조천읍 마을별 리민의 권리

마을명	자산청구권	총회구성원 (나이)	리장선거권 (나이)	선거유형	참고사항
신촌리	가능	대의원	19 (5년이상 거주자)	1인 1표	마을기 제정. 표창, 학위, 고시, 사무관승진시 마을에서 현수막 게시 축하
조천리	10년	회원	19 (6개월이상 거주자)	1인 1표	
신흥리	15년	리민	19	1인 1표	총회: 인원수에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 참석자
함덕리		대의원	19	1인 1표	
북촌리	1983년 8월 이전거주자	19 (본리출신:1년 (타지역출생 전입자: 5년)	19 (본리출신:1년 (타지역출생 전입자: 5년)	1인 1표	
와산리	10년	20	20	1인 1표	
교래리	3년	가정을 갖고 있는 세대주	가정을 갖고 있는 세대주 (1세대1명)	1세대 1표	
와흘리	재산취득 당시 거주리민	리민	19	1인 1표	총회: 인원수에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 참석자

선홍1리		리민 (1년이상거주자)	19 (1세대 1명)	1세대 1표	
선홍2리		20	20 (1년이상거주자)	1인 1표	
대홍1리	20년 (본리출신: 전입과 동시), (타지역 출 생전입자:20년)	회원	19	1인 1표	
대홍2리	10년	세대주	19 (1년이상거주자)	1인 1표	

한경면은 리민의 권리 중 마을재산에 대한 청구권은 조수1리만 본적을 둔 회원자격을 가진자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 외 마을은 청구권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총회 참여권은 총회를 대의원회로 운영하는 마을은 고산1리이다. 18세 이상자만 총회 참여권이 있는 마을은 금등리, 두모리, 한원리, 청수리 등 4개 마을이나 두모리는 세대원 중 1명만 총회 참여권이 있다. 19세 이상자만 총회 참여권이 있는 마을은 신창리, 용당리, 저지리, 조수1리 등 4개 마을이나 용당리는 세대원 중 1명, 조수1리는 3년이상 거주한 세대원 중 1명만 총회 참여권이 있다. 20세 이상자만 총회 참여권이 있는 마을은 용수리이다. 산양리는 나이 규정없이 총회시 참석자, 조수2리는 리 운영비 납부가구이나 세대원 중 1명만 총회 참여권이 있다. 판포리와 낙천리는 회원만 총회 참여권이 있다.

선거권은 금등리, 신창리, 판포리, 낙천리, 저지리, 용수리, 고산1리 등 7개 마을은 1인 1표제로 리장을 선출하고 있고 그 외 마을은 세대원 중 1명만 선거권이 있다. 저지리와 고산1리는 대의원회에서 리장을 선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8세 이상자만 선거권이 있는 마을은 금등리, 두모리, 한원리, 청수리 등 4개 마을이나 금등리와 두모리는 총회 참석자, 한원리와 청수리는 세대원 중 1명만 선거권이 있다. 19세 이상자만 선거권이 있는 마을은 신창리, 판포리, 용당리, 조수1리 등 4개 마을이다. 이 마을 중 용당리는 주민등록 전입 후 2년이상 거주한 세대원 중 1명, 조수1리는 주민등록 전입 후 3년 이상 거주한 세대원 중 1명이나 총회 참석자만 선거권이 있다. 20세 이상자만 선거권이 있는 마을은 낙천리와 용수리이다. 조수2리는 리 운영비 납부 가구 세대원 중 1명만 선거권이 있는데 총회 당일 참석자에 한하고



있다. 산양리는 자연마을 동별로 윤선하여 선거없이 추대로 리장을 선출하고 있어서 선거권과 선거유형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 현황은 <표 4-36>과 같다.

<표 4-36> 한경면 마을별 리민의 권리

마을명	자산청구권	총회구성원 (나이)	리장선거권 (나이)	선거유형	참고사항
금등리		18	18 (총회참석자)	1인 1표 (총회참석자)	선거권 : 총회 참석자
신창리		19	19	1인 1표	
두모리		18 (1세대 1명)	18 (총회참석자) (1세대 1명)	1세대표 (총회참석자)	선거권 : 총회 참석자
판포리		회원	19	1인 1표	
한원리		18	18 (1세대 1명)	1세대 1표	
용당리		19 (1세대 1명)	19 (2년이상거주자) (1세대 1명)	1세대 1표	
낙천리		회원	20	1인 1표	
저지리		19	대의원	1인 1표	선출직 임원을 선거하기 위한 대의원회를 둠.
청수리		18	18 (1세대 1명)	1세대 1표	
용수리		20	20	1인 1표	
산양리		총회시 출석인원	확인불가	확인불가	추대 리장: 동별로 윤선
조수1리	조수1리에 본적을 둔 회원	19 (3년이상거주자) (1세대 1명)	19 (3년이상거주자) (1세대 1명) (총회참석자)	1세대1표 (총회참석자)	선거권 : 선거당일 참석자
조수2리		리 운영비 납부가구 (1세대 1명)	리 운영비 납부가구 (1세대 1명) (총회참석자)	1세대1표 (총회참석자)	선거권 : 선거당일 참석자
고산1리		대의원	대의원	1인 1표 (대의원)	

추자면은 6개 마을 모두 자산 청구권에 대한 명시된 내용은 없다. 총회 참여권은 총회를 운영위원회로 운영하는 마을은 예초리와 신양1리이며 회원만 총회 참여권이 있는 마을은 대서리와 영흥리이다. 묵리와 신양2리는 세대주만 총회 참여권이 있다.

선거권은 대서리, 영흥리, 묵리, 예초리, 신양1리, 신양2리 등 6개 마을 모두 19세 이상, 세대원 중 1명만 선거권이 있다. 이 마을 중 예초리는 주민등록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자, 신양1리는 해당마을 출생자는 주민등록 전입 후 6개월이상 거주자, 타 지역출생 전입자는 주민등록 전입 후 1년이 경과해야 선거권이 있다. 그 현황은 <표 4-37>과 같다.

<표 4-37> 추자면 마을별 리민의 권리

마을명	자산청구권	총회구성원 (나이)	리장선거권 (나이)	선거유형	참고사항
대서리		회원	19 (1세대 1명)	1세대 1표	
영흥리		회원	19 (1세대 1명)	1세대 1표	
묵리		세대주	19 (1세대 1명)	1세대 1표	
예초리		운영위원회	19 (1년이상거주자) (1세대 1명)	1세대 1표	
신양1리		운영위원회	19 (본리출신:6월) (타지역출생전입자:1년) (1세대 1명)	1세대 1표	
신양2리		세대주	19 (1세대 1명)	1세대 1표	

우도면도 추자면과 마찬가지로 자산청구권에 대해서는 4개 마을 모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총회 참여권은 총회를 대의원회로 운영하는 마을은 천진리와 오봉리이며, 조일리는 대의원과 개발위원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리민이면 누구나 총회 참여권이 있는 마을은 서광리이다.

선거권은 천진리, 서광리, 조일리, 오봉리 등 4개 마을 모두 세대원 중 1명만 선거권이 있다. 19세 이상자만 선거권이 있는 마을은 천진리, 서광리, 오봉리 등 3개

마을이나 서광리는 리 운영비 납부세대로 한정하고 있다. 조일리는 20세 이상자에게 선거권이 있는데 세대주가 투표를 못 할 경우 위임된 직계가족이 대리투표가 가능하다. 그 현황은 <표 4-38>과 같다.

<표 4-38> 우도면 마을별 리민의 권리

마을명	자산청구권	총회구성원 (나이)	리장선거권 (나이)	선거유형	참고사항
천진리		대의원	19 (1세대 1명)	1세대 1표	
서광리		리민	19 (리운영비납부세대 (1세대 1명))	1세대 1표	
조일리		대의원·개발위원	20 (1세대 1명)	1세대 1표	선거 : 직계가족 대리투표 가능
오봉리		대의원	19 (1세대 1명)	1세대 1표	

## 2) 서귀포시 읍·면지역 마을별 리민의 권리

대정읍은 리민의 권리 중 자산청구권에 대한 내용이 명시된 마을은 상모1리, 안성리, 구역리 등 3개 마을이나 상모1리와 안성리는 30년이상 거주해야 자산청구권이 있고 구역리는 누구도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총회 참여권은 18세 이상자만 참여권이 있는 마을은 가파리이나 주민등록 전입 후 2년 경과 해야 한다. 영락리는 20세 이상자만 총회 참여권이 있다. 마을회 회원만 총회 참여권이 있는 마을은 상모1리, 상모2리, 상모3리, 안성리, 일과2리, 무릉1리, 무릉2리, 신평리, 구역리 등 9개 마을이나 일과2리는 회원 유고시 회원 배우자 및 20세 이상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는 세대주를 대신하여 총회 참석이 가능하다. 리 운영비 납부세대만 총회 참여권이 있는 마을은 하모2리, 인성리, 신도3리 등 3개 마을이나 신도3리는 세대원 중 1명만 총회 참여권이 있다. 리민이면 누구나 총회 참여권이 있는 마을은 하모1리, 하모3리, 일과1리, 동일1리, 보성리 등 5개 마을이나 동일1리는 세대원 중 1명만 총회 참여권이 있다. 세대주만 총회참여권이 있는 마을은 신도1리와 동일2리이나 동일2리는 세대주 및 직계가족만 참여권이 있다. 마

라리는 정리민만 총회 참여권이 있다.

리장 선거권은 하모3리, 안성리, 무릉2리, 가파리, 마라리, 신평리, 보성리, 구억리 등 8개 마을은 1인 1표제로 리장을 선출하고 있고 그 외 14개 마을은 세대원 중 1명만 선거권이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8세 이상자만 선거권이 있는 마을은 가파리이나 주민등록 전입 후 2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19세 이상자만 선거권이 있는 마을은 상모1리, 하모1리, 안성리, 인성리, 일과1리, 무릉1리, 신평리, 보성리 등 8개 마을이나 상모1리, 무릉1리, 인성리 등 3개 마을은 세대원 중 1명, 하모1리는 주민등록 전입 후 3년 이상 경과한 세대원 중 1명, 일과1리는 3개월이상 거주한 세대원 중 1명, 보성리는 영어교육도시 편입으로 기존 보성 리민,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회원으로 1년이상 활동한 자로 한정하여 총회에 참석 서명한 자만 선거권이 있다.

20세 이상자만 선거권이 있는 마을은 일과2리, 동일1리, 영락리 등 3개 마을이나 세대원 중 1명만 선거권이 있다. 회원만 선거권이 있는 마을은 무릉2리와 구억리이나 무릉2리는 21세이상인 총회 참석자, 구억리는 1년이상 거주한 25세이상인 자에게 선거권이 있다. 리 운영비 납부세대만 선거권이 있는 마을은 상모3리, 하모2리, 하모3리, 신도3리 등 4개 마을이나 상모3리는 세대원 중 1명, 신도3리는 세대원 중 1명이나 총회참석자, 하모3리는 3년이상 리 운영비를 납부한 세대주 및 배우자에게 선거권이 있다. 마라리는 정리민만 선거권이 있다. 추대로 리장을 선출하고 있는 상모2리, 동일2리, 신도1리 등 3개 마을은 선거권과 선거유형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 외 특이사항으로 상모1리와 상모3리는 본리 출생자 중 박사 학위 취득, 서기관 승진, 학교장 및 기관 단체장 취임, 훈·포장 수상 등 마을을 빛낸 자에게는 마을에서 상훈 광고를 하고 있고 가파리는 지역상권 및 환경보호 조항을 두어 타지에서 전입한 자는 지역주민이 경영중인 사업과 경쟁하는 동종사업을 개업할 수 없고 주민에게 위압감을 주는 건축물 또는 유흥업을 할 시에는 마을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두고 있다. 영락리 또한 주택 증·개축시 마을경관을 해치거나 공동생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은 총회의 동의를 거쳐야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 현황은 <표 4-39>와 같다.

<표 4-39> 대정읍 마을별 리민의 권리

마을명	자산청구권	총회구성원 (나이)	리장선거권 (나이)	선거유형	참고사항
상모1리	30년	회원	19 (1세대 1명)	1세대 1표	박사,서기관이상,훈·포장 수여자 마을명의로 축하 상훈 광고
상모2리		회원	확인불가	확인불가	추대(동별로 윤선)
상모3리		회원	리 운영비 납부세대 (1세대 1명)	1세대 1표	박사,서기관이상,훈·포장 수여자 마을명의로 축하 상훈 광고
하모1리		리민	19 (3년이상거주자) (1세대 1명)	1세대 1표	
하모2리		리 운영비 납부세대	리 운영비 납부세대 (1세대 1명)	1세대 1표	
하모3리		리민	3년이상리운영 비 납부 세대주 및 배우자	1인 1표	
안성리	30년	회원	19	1인 1표	
인성리		리 운영비 납부세대	19 (1세대 1명)	1세대 1표	
일과1리		리민	19 (3개월이상거주자) (1세대 1명)	1세대 1표	
일과2리		회원	20 (1세대 1명)	1세대 1표	총회:정회원 배우자 및 20세이상 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세대주를 대신하여 총회참석 가능
무릉1리		회원	19 (1세대 1명)	1세대 1표	
무릉2리		회원	회원 (2) (총회참석자)	1인 1표 (총회참석자)	선거권: 선거당일 참석자
가파리		18 (2년이상거주자)	18 (2년이상 거주자)	1인 1표	지역상권 및 환경보존 조항명시(위압감 주는 건축물, 유흥업은 전주 민 동의), 타지역전입자 현재 경영중인 동종 사업 개업 안됨.
마라리		정리민	정리민	1인 1표	
신평리		회원	19	1인 1표	

동일1리		리민 (1세대 1명)	20 (1세대 1명)	1세대 1표	
동일2리		세대주및 직계가족	확인불가	확인불가	추대
보성리		리민	19 리민, 노인·청 년·부녀회원으 로 1년이상 활 동한 자 (총회참석자)	1인 1표 (총회참석자)	선거권: 선거당일 참석자
영락리		20	20 (1세대 1명)	1세대 1표	주택 증·개축시 마을경 관을 해치거나 공동생활 에 지장을 주는 행위등 은 총회동의 필요
구역리	불가	회원	회원(25) (1년이상거주자)	1인 1표	
신도1리		세대주	확인불가	확인불가	추대
신도3리		리 운영비 납부세대 (1세대 1명)	리 운영비 납부세대 (1세대 1명) (총회참석자)	1세대 1표 (총회참석자)	선거권: 선거당일 참석자

남원읍은 리민의 권리 중 자산 청구권은 8개 마을 모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총회 참여권은 회원만 가능한 마을은 태흥2리, 태흥3리, 위미1리, 신례1리, 수망리 등 5개 마을이나 위미1리는 1년이상 거주한 19세 이상자, 신례1리는 20세 이상자, 수망리는 회원유고시 배우자가 참여권을 갖는다. 리민이면 누구나 총회 참여가 가능한 마을은 남원1리와 의귀리이나 세대당 1명만 참여권이 있다. 신흥2리는 세대주에게만 참여권이 있는데 세대주 유고시 세대내의 성인자가 총회 참여권을 갖는다.

선거권은 태흥2리와 위미1리를 제외하고 세대원 중 1명만 선거권이 있다. 19세 이상자만 선거권이 있는 마을은 남원1리, 태흥2리, 위미1리, 의귀리, 신흥2리 등 5개 마을이나 의귀리는 세대주, 남원1리와 신흥2리는 세대원 중 1명, 위미1리는 주민등록 전입 후 5년이상 거주해야 선거권이 있다. 20세 이상자만 선거권이 있는 마을은 신례1리와 수망리이나 세대원 중 1명만 선거권이 있다. 태흥3리는 선거없이 추대로 리장을 선출하고 있어서 선거권과 선거유형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외 특이사항으로 수망리는 마을회 장학금 및 복지지원사업 규정을 두어 고등

학교와 대학입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70세 이상 회원 및 배우자에게는 매월 60,000원의 복지금을 지급하고 있다. 의귀리는 마을출생자가 서기관, 도단위기관장 취임 등 경사시에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기타 부이사관, 경무관, 군장성 승진등 경사시는 신문광고를 통해 축하를 해 주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 현황은 <표 4-40>과 같다.

<표 4-40> 남원읍 마을별 리민의 권리

마을명	자산청구권	총회구성원 (나이)	리장선거권 (나이)	선거유형	참고사항
남원1리		리민 (1세대 1명)	19 (1세대 1명)	1세대 1표	
태흥2리		회원	19	1인 1표	
태흥3리		회원	확인불가	확인불가	추대
위미1리		회원 (1년이상 거주한 19세이상자)	19 (5년이상 거주자)	1인 1표	
신례1리		회원 (20세이상자)	20 (1세대 1명)	1세대 1표	
수망리		회원 *회원유고시 배우자대행	20 (1세대 1명)	1세대 1표	마을회 장학금 및 복지 지원사업 규정 있음. 장학금 : 고·대학입학자 복지금 : 70세이상인 회원 및 배우자(매월 60,000지원)
의귀리		리민 (1세대 1명)	19 (세대주)	1세대 1표	서기관 도단위 기관장등 경사시 현수막 게시 기타 부이사관 경무관 군장성 승진시는 신문광고
신흥2리		세대주	19 (1세대 1명)	1세대 1표	총회 : 세대주유고시 세대내의 성년자중 참석가능

성산읍은 리민의 권리 중 자산청구권은 성산리, 오조리, 신양리, 수산1리, 온평리, 신산리, 신천리, 난산리 등 8개 마을이 명시되어 있다. 이 마을 중 성산리와 신산리는 누구도 청구할 수 없고, 오조리는 마을출생자는 주민등록 전입 후 3년, 타지역출생 전입자는 30년 이상 거주한 자, 신양리는 마을출생자는 5년, 타지역출생 전입자는 30년 이상 거주한 자, 수산1리는 호적 주소지에 30년이상 거주자, 온평리는 해당

마을출생자는 주민등록 전입 후 5년, 타지역출생 전입자는 매도된 재산 취득시점 이전 거주자만 청구권이 있다. 신천리는 50년이상 거주자 중 전입 후 취득한 재산에 한하여 청구권이 있다. 난산리는 본적이 난산리인 2년이상 거주자만 청구권이 있다. 그 외 시흥리, 고성리, 수산2리, 신평리 등 4개 마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총회 참여권은 총회를 대의원회로 운영하는 마을은 성산리와 신산리이며 시흥리는 대의원 및 개발위원만 총회 참여권이 있다. 온평리는 20세 이상자, 수산2리는 25세 이상자만 총회 참여권이 있다. 리민이면 누구나 총회 참여권이 있는 마을은 오조리, 신양리, 수산1리, 난산리등 4개 마을, 신천리는 세대주만 총회 참여권이 있다. 고성리와 신평리는 마을회 회원만 총회 참여권이 있다.

리장 선거권은 신천리를 제외한 8개 마을이 1인 1표제로 리장을 선출하고 있다. 18세 이상자만 선거권이 있는 마을은 난산리이나 주민등록 전입 후 3년이상 거주한 해당마을 출생자만 선거권이 있다. 19세 이상자만 선거권이 있는 마을은 오조리, 시흥리, 고성리, 신양리, 신천리 등 5개 마을이나 시흥리는 주민등록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자, 신천리는 주민등록 전입 후 1년이상 거주한 세대원 중 1명, 오조리와 고성리는 주민등록 전입 후 3년 이상 거주자, 신양리는 세대주가 2년이상 리 운영비를 납부해야 선거권이 있다. 20세 이상자만 선거권이 있는 마을은 성산리, 신산리, 신평리 등 3개 마을이나 신평리는 주민등록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자, 신산리는 주민등록 전입 후 5년이상 거주자, 성산리는 선거일 6개월전부터 주소를 두고 10년 이상 거주해야 선거권 있다. 특히 성산리는 선거권이 있는 자가 10년이상 거주한 증명을 갖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 신청을 해야 선거할 수 있다. 그 외 수산1리, 수산2리, 온평리는 선거없이 추대로 리장이 선출되고 있어서 선거권과 선거유형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 현황은 <표 4-41>과 같다.

<표 4-41> 성산읍 마을별 리민의 권리

마을명	자산청구권	총회구성원 (나이)	리장선거권 (나이)	선거유형	참고사항
성산리	불가	대의원	20 (선거일 6개월 전부터 주소를 둔 10년 이상 거주자)	1인 1표	선거인명부: 선거권이 있는자가 10년이상 거 주한 증명을 갖고 선 관위에 선거인 신청



오조리	30년 (본리출신 : 3년) (타지역출생 전입자:30년)	리민	19 (3년이상 거주자)	1인 1표	
시흥리		대의원및 개발위원	19 (6개월이상거주자)	1인 1표	
고성리		회원	19 (3년이상 거주자)	1인 1표	
신양리	30년 (본리출신 : 5년) (타지역출생전입 자: 30년)	리민	19 (세대주가 2년이상 리 운영비 납부 )	1인 1표	
수산1리	호적주소지에 30 년이상 거주자	리민	확인불가	확인불가	추대
수산2리		25	확인불가	확인불가	추대
온평리	본리출신: 5년 타지역출생전입자 : 매도된 재산 취득 시점 이전 거주자	20	확인불가	확인불가	추대
신산리	불가	대의원	20 (5년이상 거주자)	1인 1표	
신평리		회원	20 (1년이상 거주자)	1인 1표	
신탄리	50년 (전입 후 취득한 재산에 한함)	세대주	19 (1년이상 거주자) (1세대 1명)	1세대 1표	
난산리	본적이 난산리인 2년이상 거주자	리민	18 (3년이상 거주한 해당마을 출생자)	1인 1표	

안덕면은 리민의 권리중 자산청구권은 5개 마을 중 사계리만 명시되어 있는데 1957년 이전 거주자만 청구할 수 있다. 총회 참여권은 18세 이상자만 총회 참여권이 있는 마을은 서광동리이나 18세 미만자는 참관만 허용하고 발언권과 의결권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19세 이상자만 총회 참여권이 있는 마을은 창천리이다. 회원만 총회 참여권이 있는 마을은 대평리와 사계리이나 대평리는 19세 이상자, 사계리는 20세 이상자다. 감산리는 리민이면 누구나 총회 참여가 가능하다.

리장 선거권은 서광동리만 세대원 중 1명, 그 외 마을은 1인 1표제로 리장을 선출하고 있다. 18세 이상자만 선거권이 있는 마을은 서광동리이나 주민등록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원 중 1명만 선거권이 있다. 19세 이상자만 선거권이 있는 마을은 창천리, 대평리, 감산리 등 3개 마을이나 창천리는 주민등록 전입 후 2년이 경과해야 선거권이 있다. 20세 이상자만 선거권이 있는 마을은 사계리다. 기타 특이 사항으로 사계리는 학자금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마을의 중·고등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서광동리는 주택 증·개축등으로 마을경관을 해치거나 가축사육 등으로 공동 주거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은 마을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현황은 <표 4-42>와 같다.

<표 4-42> 안덕면 마을별 리민의 권리

마을명	자산청구권	총회구성원 (나이)	리장선거권 (나이)	선거유형	참고사항
창천리		19	19 (2년이상거주자)	1인 1표	
대평리		회원 (19세 이상)	19	1인 1표	
감산리		리민	19	1인 1표	
사계리	1957년 이전 거주자	회원 (20세 이상)	20	1인 1표	학자금 지원 기준 있음.(중·고등학생)
서광동리		18 *18세미만 참관만허용	18 (6개월이상거주자) (1세대 1명)	1세대 1표	주택 증·개축등 마을 경관을 해치거나 가축 사육등으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은 마을회 동의 필요

표선면은 리민의 권리중 자산청구권은 10개 마을 모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총회 참여권은 총회를 대의원회로 운영하는 마을은 가시리이나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 못할 경우 위임은 가능하나 의결권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20세 이상자만 총회 참여권이 있는 마을은 하천리이나 주민등록 전입 후 5년이 경과해야 한다. 리민이면 누구나 총회 참여권이 있는 마을은 표선리, 성읍1리, 성읍2리, 세화1리, 세화2리, 토산1리, 토산2리 등 7개 마을이나 성읍1리는 19세 이상자, 세화2리는 세대원 중 1명만 총회 참여권이 있다. 세화3리는 회원만 총회참여권이 있다.

리장 선거권은 표선리, 하천리, 성읍1리, 토산2리 등 4개 마을을 제외하고 세대원 중 1명만 선거권이 있다. 18세 이상자만 선거권이 있는 마을은 세화2리이나 주민등

록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한 세대원 중 1명만 선거권이 있다. 19세 이상자만 선거권이 있는 마을은 표선리, 성읍1리, 세화1리 등 3개 마을이나 표선리는 주민등록 전입 후 2년이상 거주자, 세화1리는 주민등록 전입 후 3년이상 거주한 세대주만 선거권이 있다. 20세 이상자만 선거권이 있는 마을은 하천리, 성읍2리, 가시리, 토산1리, 토산2리 등 5개 마을이나 하천리는 주민등록 전입 후 5년이상 거주자, 성읍2리와 가시리는 세대원 중 1명, 토산2리는 주민등록 전입 후 1년이상 거주한 총회 참석자, 토산1리는 주민등록 전입 후 1년이상 거주한 세대주만 선거권이 있는데 세대주 유고시는 세대내의 다른 성년자에게 선거권이 있다. 세화3리는 1년이상 거주한 리 운영비 납부 세대주에게 선거권이 있다. 그 현황은 <표 4-43>과 같다.

<표 4-43> 표선면 마을별 리민의 권리

마을명	자산청구권	총회구성원 (나이)	리장선거권 (나이)	선거유형	참고사항
표선리		리민	19 (2년이상 거주자)	1인 1표	
하천리		20 (5년이상 거주자)	20 (5년이상 거주자)	1인 1표	
성읍1리		리민 (19세이상)	19	1인 1표	
성읍2리		리민	20 (1세대1명)	1세대 1표	
가시리		대의원	20 (1세대1명)	1세대 1표	대의원이 총회참석을 위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음
세화1리		리민	19 (3년이상 거주한 세대주) (1세대1명)	1세대 1표	
세화2리		리민 (1세대 1명)	18 (2년이상 거주자) (1세대 1명)	1세대 1표	
세화3리		회원	리 운영비 납부 세대주 (1년이상 거주자) (1세대1명)	1세대 1표	
토산1리		리민	20 (1년이상 거주한 세대주) (1세대1명)	1세대 1표	세대주 유고시 세대내 1인 투표가능

토산2리		리민	20 (1년이상 거주자) (총회참석자)	1인 1표 (총회참석자)	선거권 : 선거당일 참석자
------	--	----	-----------------------------	------------------	----------------

제주의 읍·면지역 마을별 리민의 권리중 자산청구권을 종합해보면 146개 마을 중 73.3%에 해당하는 107개 마을이 청구권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자산청구가 가능한 마을은 29개 마을이나 마을거주자면 누구나 청구가 가능한 마을은 1개 마을 뿐이다. 일정시점 이전 거주자만 청구가 가능한 8개 마을, 전입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청구가 가능한 마을은 12개 마을, 해당마을 출생자와 타지역출생 전입자를 구분 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설정하여 청구권이 있는 마을은 8개 마을이다. 그리고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마을은 10개 마을이나 이중 마을거주자를 비롯해서 누구도 청구할 수 없는 마을은 7개 마을, 전입자만 청구권이 없는 마을은 3개 마을이다.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전입자가 많아지면서 마을재산에 대한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산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현황은 <표 4-44>와 같다.

<표 4-44>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마을별 자산청구권

(단위: 마을수)

구분	계	청구가능				청구불가		명시 안됨
		마을 거주자	일정시점 이전 거주자	전입 후 일정 기간 경과자	해당마을출생자와 전입자 구분	마을 거주자	전입자	
계	146	1	8	12	8	7	3	107
제주시	89	1	6	9	4	4	3	62
서귀포시	57	0	2	3	4	3	0	45

리민의 권리중 총회 참여권은 거주기간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146개 마을 중 마을 거주 리민이면 누구나 총회 참석 가능한 마을이 33개 마을로 가장 많고 대의원이나 마을의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가 총회를 대신하는 마을은 14개 마을이다.

나이 기준으로는 19세 이상자가 총회 참여권이 있는 마을은 21개 마을, 20세 이상은 20개 마을, 18세 이상 8개 마을 순이다. 그 외 세대주와 회원등 특정 거주자만 총회 참여권이 있는 마을은 50개 마을로 전체 마을의 34.2%를 차지하고 있는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다음 <표 4-45>와 같다.

<표 4-45>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마을별 총회 참여권

(단위:마을수)

구분	계	18세이상	19세이상	20세이상	세대주	회원	리민	대의원 (운영위)	기타
계	146	8	21	20	10	32	33	14	8
제주시	89	6	20	16	6	11	14	11	5
서귀포시	57	2	1	4	4	21	19	3	3

리민의 권리중 선거권은 19세 이상자만 선거권이 있는 마을은 전체마을의 52.1%에 해당하는 76개 마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세 이상자 36개 마을, 18세 이상자 9개 마을 순이며, 대의원이 리장을 선출하는 마을은 3개 마을이나 저지리는 선출직 임원선출을 위한 대의원회가 별도 구성되어 있다. 기타 리 운영비 납부가구, 세대주등에게만 선거권이 있는 마을은 12개 마을, 추대의 방법으로 리장을 선출하는 10개의 마을은 선거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선거유형은 1인 1투표 유형이 다수이나 146개 마을 중 35.6%에 해당하는 52개 마을이 세대원 중 1명만 선거권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추대 방법으로 리장을 선출하고 있는 13개 마을은 선거유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 현황은 <표 4-46>과 같다.

<표 4-46>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마을별 선거권 및 선거유형

(단위: 마을수)

구분	계	18세 이상	19세 이상	20세 이상	대의원	기타	확인 불가	1인 1표	1세대 1표	확인 불가
계	146	9	76	36	3	12	10	81	52	13
제주시	89	5	52	21	3	5	3	55	30	4
서귀포시	57	4	24	15	0	7	7	26	22	9

그리고 마을별 선거권 연령 비중이 큰 19세와 20세를 대상으로 거주기간을 분석한 결과 주민등록 전입 후 일정기간 경과 없이 해당 나이만 되면 선거권이 있는 마을 중 19세이상은 47개 마을, 20세이상은 26개 마을로 비중이 크나 전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선거권을 부여하는 마을이 19세와 20세에서 39개 마을이다. 이는 마을에 거주하며 지역주민을 알고 선택하도록 하는 차원이라 할 수 있다. 그 현황은 <표 4-47>과 같다.

<표 4-47>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마을별 선거권자 거주기간

(단위: 마을수)

구분	계	19세						20세					
		거주자	3월 이상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거주자	3월 이상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계	112	47	6	9	5	6	3	26	0	5	0	1	4
제주시	73	33	4	8	3	2	2	18	0	2	0	1	0
서귀포시	39	14	2	1	2	4	1	8	0	3	0	0	4

### 3. 리민의 의무

마을 리민의 자격을 가진 자는 의결권, 청구권, 선거권, 피선거권등의 권리를 갖게 됨은 물론 리민으로써 지켜야 할 의무도 주어진다. 리민의 의무는 향약 준수, 마을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자치운영에 필요한 리 운영비 납부, 리 개발을 위한 동원 부역 참여, 마을 재산보호 등 마을별로 다양하게 부여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항목을 유형화하여 분류하였다. 자치운영에 필요한 리 운영비와 부역 참여는 심의를 거쳐 일정나이 이상, 생계곤란자, 노약자들은 면제해 주고 있다. 면제내용은 사회복지 관련법 개정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와는 다른 향약의 내용 그대로 작성하였다. 리 운영비는 연 5,000원 ~ 120,000까지 세대단위로 납부하고 있으며 마을의 재정여건에 따라 총회의 결정에 의해 한시적으로 중단하여 징수하지 않을 때도 있고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등의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 1) 제주시 읍·면지역 마을 리민의 의무

제주시 읍·면지역은 다수 마을이 향약준수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림읍은 귀덕2리, 수원리, 동명리, 명월리, 비양리, 금악리등 6개 마을을 제외하고 모든 마을이 향약준수를 의무로 정하고 있고 리 운영비는 마을 전체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림1리는 향약준수, 한림2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 한림3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동원부역 참여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으나 생계곤란자 및 노약자는 면제 조항을 두고 있다. 강구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동원부역 참여,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으나 생계 곤란자와 노약자는 동원부역 및 리 운영비 면제조항을 두고 있다.

귀덕1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각종회의 의결사항 이행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 귀덕2리와 수원리는 약정사항만 있을 뿐 리민의 지켜야 할 의무는 정하지 않고 있는데 70세 이상자 및 생계곤란자는 동원부역 및 리 운영비를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귀덕3리는 향약준수, 리 운영비 납부, 환경보호, 향토문화 보존, 검소한 생활, 리행정발전 도모, 행정 지시사항 이행 외에 한림읍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화합단결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으나 80세 이상자 및 생계곤란자는 면제조항을 두고 있다. 대림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리 운영비 납부, 행정 지시사항 이행, 마을발전 저해행위 금지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으나 고령세대 및 수급자는 리 운영비 면제조

항을 두고 있다.

한수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동원부역 참여, 리 운영비 납부, 행정지시사항 이행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 상대리는 향약준수, 리 운영비 납부, 가정의례 준수, 환경보호, 향토문화 보존, 검소한 생활, 행정지시 사항 이행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으나 70세 이상자 및 생계 곤란자는 면제조항을 두고 있다. 금능리는 향약준수, 동원부역 참여, 리 운영비 납부, 행정지시 사항 이행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으나 70세 이상자 및 수급자는 동원부역 및 리 운영비 면제조항을 두고 있다.

동명리와 명월리는 의무사항으로 정한 내용이 없다. 상명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리 운영비 납부, 환경보호, 향토문화 보존, 행정지시사항 이행, 마을발전 저해행위 금지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으나 75세 이상자 및 생계곤란자는 면제조항을 두고 있다.

월림리는 향약준수, 리 운영비 납부, 월령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의결사항 이행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 협재리는 향약준수, 리 운영비 납부외에 한림읍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마을사업 적극 참여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비양리는 약정사항만 있을 뿐 리민의 지켜야 할 의무는 정하지 않고 있는데 65세 이상 고령 및 생계곤란자는 동원부역 및 리 운영비를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금악리는 리 운영비 납부, 가정의례 준수, 환경보호, 향토문화 보존, 검소한 생활, 리행정 발전 도모, 행정지시사항 이행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으나 70세 이상자 및 생계 곤란자는 리 운영비 면제조항을 두고 있다. 옹포리는 향약준수만 리민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그 현황은 <표 4-48>과 같다.

<표 4-48> 한림읍 마을별 리민의 의무 및 리 운영비 납부현황

마을명	향약준수	회의의결사항이행	총회참여	동원부역참여	리운영비납부	가정의례준수	환경보호	향토문화보존	검소한생활	리발전도모	화합단결	행정지시이행	마을발전저해위금지	마을사업적극참여	미풍양속수호	실제거주의무	마을재산보호	건강의식함양	리 운영비	
																			납부	면제내용
한림1리	○																			





사항 이행, 동원부역 참여, 금성리는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총회참여. 마을재산 보호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봉성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동원부역 참여,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80세 이상자는 면제하고 있다.

어음1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리 운영비 납부, 환경보호를 의무로 정하고 있으나 리 운영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다. 어음2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동원부역 참여, 리 운영비 납부, 환경보호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80세 이상자는 동원부역 및 리 운영비를 면제하고 있다. 납읍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80세 이상자는 면제하고 있다. 상가리는 향약준수, 동원부역 참여,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80세 이상자는 동원부역 및 리 운영비를 면제하고 있다. 하가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동원부역 참여,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으나 리 운영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다. 소길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동원부역 참여,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90세 이상자는 동원부역 및 리 운영비를 면제하고 있다.

장전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동원부역 참여,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80세 이상자는 동원부역과 리 운영비를 면제하고 있다. 유수암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리 운영비 납부, 환경보호, 리 발전 도모, 마을사업 적극 참여, 미풍양속 수호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80세 이상자는 면제하고 있다. 용흥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동원부역 참여,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80세 이상자는 동원부역 및 리 운영비를 면제하고 있다.

신엄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동원부역 참여,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70세 이상자는 동원부역 및 리 운영비를 면제하고 있다. 중엄리는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총회 및 동원부역 참여,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75세 이상자는 동원부역 및 리 운영비를 면제하고 있다. 구엄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

의 의결사항 이행, 동원부역 참여,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75세 이상자는 동원부역 및 리 운영비를 면제하고 있다. 고내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동원부역 참여, 리 운영비 납부, 환경보호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으나 70세 이상자는 동원부역 및 리 운영비를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하귀1리와 하귀2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동원부역 참여, 리 운영비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70세 이상자는 동원부역 및 리 운영비를 면제하고 있다. 상귀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동원부역 참여,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80세 이상자, 리장, 개발위원장은 리 운영비를 면제하고 있다. 수산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동원부역 참여,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80세 이상자는 동원부역 및 리 운영비를 면제하고 있다.

고성1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동원부역 참여, 리 운영비 납부, 환경보호, 마을재산 보호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80세 이상자는 동원부역과 리 운영비를 면제하고 있다. 고성2리는 의무사항으로 정한 사항은 없으나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고 80세 이상자는 면제하고 있다. 광령1리는 향약준수, 동원부역 참여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80세 이상자는 면제하고 있다. 광령2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동원부역 참여,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80세 이상자는 동원부역 및 리 운영비를 면제하고 있다. 광령3리는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동원부역 참여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75세 이상자는 리 운영비를 면제하고 있다. 그 현황은 <표 4-49>와 같다.

<표 4-49> 애월읍 마을별 리민의 의무 및 리 운영비 납부현황

마을명	향약준수	회의의결사항이행	총회참여	동원부역참여	리운영비납부	가정의례준수	환경보호	향토문화보존	검소한생활	리발전도모	화합단결	행정지시이행	마을발전저해위금지	마을사업적극참여	미풍양속수호	실제거주의무	마을재산보호	건전의식함양	리 운영비	
																			납부	면제내용
애월리	○	○			○		○													70세 이상
곽지리	○	○		○																
금성리		○	○														○			
봉성리	○	○		○	○														○	80세 이상
어음1리	○	○			○		○													
어음2리	○	○		○	○		○												○	80세 이상
납읍리	○	○			○														○	80세 이상
상가리	○			○	○														○	80세 이상
하가리	○	○		○	○															
소길리	○	○		○	○														○	90세 이상
장전리	○	○		○	○														○	80세 이상
유수암리	○	○			○		○			○				○	○				○	80세 이상
용흥리	○	○		○	○														○	80세 이상
신엄리	○	○		○	○														○	70세 이상
중엄리		○	○	○	○														○	75세 이상
구엄리	○	○		○	○														○	75세 이상
고내리	○	○		○	○		○													70세 이상
하귀1리	○	○		○	○														○	70세 이상
하귀2리	○	○		○	○														○	70세 이상
상귀리	○	○		○	○														○	80세 이상 리장 개발위원장
수산리	○	○		○	○														○	80세 이상
고성1리	○	○		○	○		○										○		○	80세 이상
고성2리																			○	80세 이상
광령1리	○			○															○	80세 이상
광령2리	○	○		○	○														○	80세 이상
광령3리		○		○															○	75세 이상

구좌읍은 평대리를 제외하고 향약준수를 의무로 정하고 있고 김녕리, 월정리, 평대리, 세화리, 상도리, 종달리 등 6개 마을 모두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김녕리는 향약준수, 리 운영비 납부, 환경보호, 향토문화 보존, 화합단결, 주소지 실제 거주, 마을재산 보호를 의무로 정하고 있으나 리 운영비

는 납부하지 않고 있다. 월정리는 향약준수, 리 운영비 납부, 환경보호, 화합단결, 주소지 실제거주, 마을재산 보호를 의무로 정하고 있으나 리 운영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다.

평대리는 동원부역 참여, 리 운영비 납부, 환경보호, 마을사업 적극 참여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80세 이상자는 동원부역 및 리 운영비를 면제하고 있다. 세화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동원부역 참여,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다른 마을과는 달리 납부된 리 운영비는 각 동으로 환원되어 동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리 운영비 면제자는 80세이상자,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 2급이상자다. 상도리는 향약준수, 동원부역 참여, 리 운영비납부, 미풍양속 수호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80세 이상자는 동원부역 및 리 운영비를 면제하고 있다. 특히 상도리는 리 운영비 면제대상을 지역실정을 잘 아는 자연마을 동장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종달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리 운영비 납부, 환경보호, 향토문화 보존, 미풍양속 수호, 마을재산 보호를 의무로 하고 있으나 리 운영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 현황은 <표 4-50>과 같다.

<표 4-50> 구좌읍 마을별 리민의 의무 및 리 운영비 납부현황

마을명	향약준수	회의의결사항이행	총회참여	동원부역참여	리운영비납부	가정의례준수	환경보호	향토문화보존	검소한생활	리발전도모	화합단결	행정지시이행	마을발전저해위급금지	마을사업적극참여	미풍양속수호	실제거주의무	마을재산보호	건강의식함양	리 운영비		
																			납부	면제내용	
김녕리	○				○	○	○				○					○	○				
월정리	○				○	○	○				○					○	○				
평대리				○	○	○								○						○	80세 이상
세화리	○	○		○	○															○	80세이상 수급자, 차상위, 장애 2급 이상
상도리	○			○	○										○					○	80세 이상
종달리	○	○			○	○	○								○		○				

조천읍은 신흥리, 와산리, 선흥1리 등 3개 마을을 제외한 9개 마을이 향약준수를 의무로 정하고 있고 신흥리와 선흥1리를 제외한 10개 마을이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촌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리 운영비 납부, 환경보호, 향토문화 보존, 검소한 생활, 리 발전 도모, 미풍양속 수호, 마을재산 보호, 건전의식 함양 등 비교적 많은 사항을 의무로 정하고 있으나 리 운영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다. 조천리는 향약준수, 리 운영비 납부, 환경보호, 향토문화 보존, 화합단결, 주소지 실제 거주, 마을재산 보호를 의무로 정하고 있고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다.

신흥리는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동원부역 참여, 가정의례 준수, 건전의식 함양, 함덕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리 운영비 납부, 환경보호, 화합단결, 마을재산 보호를 의무로 정하고 있으나 리 운영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다. 북촌리는 향약준수, 동원부역 참여, 리 운영비 납부, 향토문화 보존, 화합단결, 마을재산 보호, 건전의식 함양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80세 이상 단독세대주 및 생활보호 대상자는 동원부역 및 리 운영비를 면제하고 있다.

와산리는 동원부역 참여, 리 운영비 납부, 리 발전 도모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으나 70세 이상자, 극빈세대는 동원부역 및 리 운영비 면제조항을 두고 있고 다른 마을에 없는 공동투자 및 출자의무를 별도로 두고 있다. 교래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동원부역 참여, 리 운영비 납부, 리 발전 도모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자, 극빈세대는 동원부역 및 리 운영비를 면제하고 있고 와산리와 마찬가지로 공동투자 및 출자의무를 별도로 두고 있다.

와흘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리 운영비 납부, 환경보호, 향토문화 보존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80세 이상자, 극빈세대, 장애3급 이상은 리 운영비를 면제하고 있다. 특히 리 운영비 등급산정은 노인회장, 개발위원, 각 반장으로 구성하여 심의·결정하고 있다. 선흥1리는 의무로 정한 사항은 없지만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고 80세 이상 단독 세대주, 한부모가정,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은 면제하고 있다. 선흥2리는 향약준수, 동원부역 참여, 리 운영비 납부, 리 발전 도모 외에 조천읍에서는 유일하게 마을사업 참여를 의

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70세 이상자 및 수급자, 조손가족은 동원부역 및 리 운영비를 면제하고 있다.

대흘1리는 향약준수, 리 운영비 납부, 환경보호, 향토문화 보존, 화합단결, 주소지 실제 거주, 마을재산 보호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리 운영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다. 대흘2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리 운영비 납부, 환경보호, 리 발전 도모, 화합단결, 마을재산 보호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으나 65세이상자 및 극빈세대, 장애인은 면제조항을 두고 있다. 그 현황은 <표 4-51>과 같다.

<표 4-51> 조천읍 마을별 리민의 의무 및 리 운영비 납부현황

마을명	향약준수	회의의결사항이행	총회참여	동원부역참여	리운영비납부	가정의례준수	환경보호	향토문화보존	검소한생활	리발전도모	화합단결	행정지시이행	마을발전저해위금지	마을사업적극참여	미풍양속수호	실제거주의무	마을재산보호	건전의식함양	리 운영비	
																			납부	면제내용
신촌리	○	○			○		○	○	○	○					○		○	○		
조천리	○				○		○	○			○					○	○			○
신흥리		○		○	○													○		
함덕리	○	○			○		○				○						○			
북촌리	○			○	○			○			○						○	○	○	80세 이상 단독세대주, 생활보호대상자
와산리				○	○					○										70세 이상, 극빈세대, *추가 의무: 공동투자, 출자 의무
교래리	○	○		○	○					○									○	65세 이상, 극빈세대 *추가 의무: 공동투자, 출자 의무
와흘리	○	○			○		○	○											○	80세 이상, 극빈세대, 장애 3급 이상
선흘1리																			○	80세 이상 단독세대주, 한부모 가정,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선흘2리	○			○	○					○				○				○	70세이상 수급자, 가족, 70세이상 및 조손
대흘1리	○				○		○	○		○							○	○	
대흘2리	○	○			○		○			○	○							○	65세이상및극빈세대, 장애인

한경면은 신창리, 용당리, 용수리, 조수1리 등 4개 마을을 제외하고 향약준수를 의무로 정하고 있고 용당리, 용수리, 저지리등 3개 마을을 제외한 11개 마을이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등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총회 및 동원부역 참여,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으나 80세 이상자는 동원부역 및 리 운영비 면제조항을 두고 있다. 신창리는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리 운영비 납부, 환경보호, 향토문화 보존, 검소한 생활, 리행정 발전 도모, 화합단결을 의무로 정하고 있으나 리 운영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다. 두모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총회 및 동원부역 참여,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으나 75세 이상자는 동원부역 및 리 운영비 면제조항을 두고 있다. 판포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동원부역 참여, 리 운영비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80세 이상자는 동원부역 및 리 운영비를 면제하고 있다.

한원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리 운영비 납부, 마을사업 참여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80세 이상자는 면제하고 있다. 용당리는 리민의 의무로 정한 사항은 없으나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80세 이상자는 면제하고 있다.

낙천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동원부역 참여,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으나 리 운영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다. 저지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마을발전 저해행위 금지, 마을사업 참여, 미풍양속 수호, 마을재산 보호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청수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리 운영비 납부, 마을발전 저해행위 금지, 마을사업 참여, 미풍양속 수호, 마을재산 보호를 의무로 정하고 있으나 리 운영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다. 용수리는 약정사항만 있을 뿐 리민의 지켜야 할 의무는 정하지 않고 있으나 리 운영비를 납



부하고 있고 부부 공히 75세 이상자는 면제하고 있다. 산양리는 향약준수, 리 운영비 납부, 마을사업 참여를 의무로 정하고 있지만 리 운영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다. 조수1리는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리 운영비 납부, 화합단결, 마을사업 참여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80세 이상자는 면제하고 있다.

조수2리는 향약준수, 리 운영비 납부, 마을사업 참여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80세 이상자는 면제하고 있다. 고산1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으나 리 운영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 현황은 <표 4-52>와 같다.

<표 4-52> 한경면 마을별 리민의 의무 및 리 운영비 납부현황

마을명	향약준수	회의의결사항이행	총회참여	동원부역참여	리운영비납부	가정의례준수	환경보호	향토문화보존	검소한생활	리발전도모	화합단결	행정지시이행	마을발전저해위금지	마을사업적극참여	미풍양속수호	실제거주의무	마을재산보호	건전의식함양	리 운영비	
																			납부	면제내용
금등리	○	○	○	○	○															80세 이상
신창리		○			○		○	○	○	○	○									
두모리	○	○	○	○	○															75세 이상
관포리	○	○		○	○														○	80세 이상
한원리	○	○			○									○					○	80세 이상
용당리																			○	80세 이상
낙천리	○	○		○	○															
저지리	○	○											○	○	○		○			
청수리	○	○			○								○	○	○		○			
용수리																			○	75세 이상
산양리	○				○									○						
조수1리		○			○						○			○					○	80세 이상
조수2리	○				○									○					○	80세 이상
고산1리	○	○			○															

추자면은 향약준수를 의무로 정한 마을은 없고 대서리를 제외하고 5개 마을이 총회 등 회의의결사항 이행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도 6개 마을 모두 납부하지 않고 있고 면제에 대한 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서리는 리민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영흥리는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동원부역 참여,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으나 리 운영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다. 묵리는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동원부역 참여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예초리와 신양1리는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 신양2리는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동원부역 참여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그 현황은 <표 4-53>과 같다.

<표 4-53> 추자면 마을별 리민의 의무 및 리 운영비 납부현황

마을명	향약준수	회의의결사항이행	총회참여	동원부역참여	리운영비납부	가정의례준수	환경보호	향토문화보존	검소한생활	리발전도모	화합단결	행정지시이행	마을발전저해위금지	마을사업적극참여	미풍양속수호	실제거주의무	마을재산보호	건전의식함양	리 운영비	
																			납부	면제내용
대서리																				
영흥리		○		○	○															
묵리		○		○																
예초리		○																		
신양1리		○																		
신양2리		○		○																

우도면은 서광리와 조일리를 제외하고 리민의 의무를 정하지 않고 있으나 리 운영비는 모든 마을이 납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천진리는 리민의 의무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다. 서광리는 향약준수만을 의무로 정하고 있으나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다. 조일리는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리 운영비 납부, 리 발전 도모, 마을사업 참여를 의무로 정하고 있고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다. 오봉리는 리민의 의무에 대한 명시된 사항은 없으나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다. 그 현황은 <표 4-54>와 같다.

<표 4-54> 우도면 마을별 리민의 의무 및 리 운영비 납부현황

마을명	향약준수	회의의결사항이행	총회참여	동원부역참여	리운영비납부	가정의례준수	환경보호	향토문화보존	검소한생활	리발전도모	화합단결	행정지시이행	마을발전저해위금지	마을사업적극참여	미풍양속수호	실제거주의무	마을재산보호	건전의식함양	리 운영비		
																			납부	면제내용	
천진리																			○		
서광리	○																			○	
조일리		○			○										○					○	
오봉리																				○	

## 2) 서귀포시지역 읍·면지역 마을 리민의 의무

서귀포시 읍·면지역 마을은 제주시 지역과는 달리 향약준수를 의무로 정한 마을은 많지 않고 다수 마을이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정읍 상모1리는 마을사업 참여만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고 75세 이상자는 면제하고 있다. 상모2리는 총회 및 마을사업 참여,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고 75세 이상자는 면제하고 있다. 상모3리는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동원부역 참여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고 71세 이상자는 면제하고 있다.

하모1리는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총회 및 마을사업 참여,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으나 세대주와 마을에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어 거주하는 리민도 납부대상이다. 하모2리는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총회 및 마을사업 참여,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고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다. 하모3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총회 및 마을사업 참여,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고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다. 안성리는 총회 및 동원부역 참여, 마을사업 참여,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으나 리 운영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성리는 리 운영비 납부와 마을사업 참여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고 75세 이상자는 면제하고 있다.

일과1리는 향약준수, 마을사업 참여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고 80세 이상자는 면제하고 있다. 일과2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고 70세 이상자는 면제하고 있다. 무릉1리는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동원부역 참여,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으나 리 운영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다. 무릉2리는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동원부역 참여, 리 운영비 납부, 가정의례 준수, 마을사업 참여, 미풍양속 수호, 건전의식 함양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고 80세 이상자는 동원부역 및 리 운영비를 면제하고 있다.

가과리는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만 의무로 정하고 있고 리 운영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다. 마라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총회 및 동원부역 참여, 환경보호, 리 발전도모, 화합단결, 마을사업 참여등 대정읍 내에서는 지켜야 할 의무가 많다. 리 운영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으나 70세 이상자는 동원부역을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신평리는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동원부역 참여,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고 70세 이상자는 동원부역 및 리 운영비를 면제하고 있다.

동일1리는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총회 및 마을사업 참여,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고 75세 이상자는 면제하고 있다. 동일2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보성리는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동원부역 참여, 영락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미풍양속 수호, 대정읍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마을재산 보호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구억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고 세대원이 없는 70세 이상 단독 세대주는 리 운영비를 면제하고 있다.

신도1리는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동원 부역 참여를 의무로 정하고 있지만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다. 신도3리는 약정사항만 있을 뿐 리민의 지켜야 할 의무는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데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고 부부모두 70세 이상자에 한해 리 운영비를 면제하고 있다. 그 현황은 <표 4-55>와 같다.

<표 4-55> 대정읍 마을별 리민의 의무 및 리 운영비 납부현황

마을명	향약준수	회의의결사항이행	총회참여	동원부역참여	리운영비납부	가정의례준수	환경보호	향토문화보존	검소한생활	리발전도모	화합단결	행정지시이행	마을발전재해위금지	마을사업적극참여	미풍양속수호	실제거주의무	마을재산보호	건전의식함양	리 운영비	
																			납부	면제내용
상모1리														○					○	75세 이상
상모2리			○		○									○					○	75세 이상
상모3리		○		○															○	71세 이상
하모1리		○	○		○									○						*추가납부대상 :리소재사무소 및 사업장을 둔자
하모2리		○	○		○									○					○	
하모3리	○	○	○		○									○					○	
안성리			○	○	○									○						
인성리					○									○					○	75세 이상
일과1리	○													○					○	80세 이상
일과2리	○	○																	○	70세 이상
무릉1리		○		○	○															
무릉2리		○		○	○	○								○	○			○	○	80세이상
가파리		○																		
마라리	○	○	○	○			○				○	○		○						70세 이상
신평리		○		○	○														○	70세 이상
동일1리		○	○		○									○					○	75세 이상
동일2리	○	○																		
보성리		○		○																
영락리	○	○													○		○			
구역리	○	○			○														○	70세이상 단독세대주
신도1리		○		○															○	
신도3리																			○	부부 모두 70세 이상

남원읍은 향약준수를 의무사항으로 정한 마을은 남원1리뿐이며 남원1리, 태흥2리, 태흥3리, 위미1리, 신례1리, 수망리, 의귀리, 신흥2리 등 8개 마을이 총회 등 회의의결사항 이행,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원1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의결사항 이행, 리 운영비 납부, 마을사업 참여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고 70세 이상자는 면제하고 있다. 태흥2리는 총회 등 회의의결사항 이행, 리 운영비 납부, 향

토문화 보존, 마을사업 참여, 미풍양속 수호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고 면제대상은 70세 이상자, 생활보호대상자, 리장, 새마을지도자, 반장등이다. 태흥3리는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리 운영비 납부, 환경보호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고 70세 이상자는 면제하고 있다.

위미1리는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리 운영비 납부, 리 발전 도모에 추가하여 남원읍에서는 유일하게 총회참여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으나 70세 이상자는 면제조항을 두고 있다. 신례1리는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동원부역 및 마을사업 참여,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고 면제대상은 70세 이상자, 생활보호대상자, 리장,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등이다.

수망리는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동원부역 및 마을사업 참여, 리 운영비 납부, 환경보호, 미풍양속 수호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고 75세 이상자는 면제하고 있다. 의귀리는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리 운영비 납부, 마을사업 참여, 미풍양속 수호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고 70세 이상자는 면제하고 있다. 신흥2리는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동원부역 및 마을사업 참여, 리 운영비 납부, 환경보호, 미풍양속 수호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고 70세 이상자는 면제하고 있다. 그 현황은 <표 4-56>과 같다.

<표 4-56> 남원읍 마을별 리민의 의무 및 리 운영비 납부현황

마을명	향약 준수	회의 의결사항 이행	총회 참여	동원부역 참여	리 운영비 납부	가정의례 준수	환경보호	향토문화 보존	검소한 생활	리 발전 도모	화합 단결	행정지시 이행	마을발전저해위금지	마을사업적극참여	미풍양속수호	실제거주의무	마을재산보호	건전의식 함양	리 운영비		
																			납부	면제내용	
남원1리	○	○			○									○						○	70세 이상
태흥2리		○			○			○							○	○				○	70세이상, 리장, 새마을 지도자, 반장, 생활보호 대상자
태흥3리		○			○		○													○	70세 이상

위미1리		○	○		○					○											70세 이상	
신례1리			○			○	○														○	70세이상,생활보 호대상자, 리장, 새마을지도자, 노인·청년·부 녀회장
수망리			○			○	○														○	75세 이상
의귀리			○			○															○	70세 이상
신흥2리			○			○	○														○	70세 이상

성산읍은 온평리와 난산리만 향약준수를 의무로 정하고 있고 리 운영비 납부는 성산리와 난산리를 제외하여 10개 마을이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산리는 의무로 정한 사항은 없고 리 운영비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오조리는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동원부역 참여,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고 75세 이상자 및 수급자는 면제하고 있다. 시흥리와 고성리는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동원부역 참여,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으나 리 운영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다. 신양리는 리 운영비 납부만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고 70세 이상자는 면제하고 있으나 세대주와 마을에 소재한 단체와 기업도 리 운영비납부 대상이다.

수산1리는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동원부역 참여,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으나 리 운영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다. 수산2리는 리 운영비 납부와 마을 사업 참여를 의무로 정하고 있으나 리 운영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다. 온평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고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다.

신산리는 리 운영비 납부, 리 발전 도모, 마을사업 참여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으나 70세 이상자 및 생활보호 대상자는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신평리와 신천리는 동원부역 참여와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으나 리 운영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난산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으나 80세 이상자는 면제조항을 두고 있다. 그 현황은 <표 4-57>과 같다.

<표 4-57> 성산읍 마을별 리민의 의무 및 리 운영비 납부현황

마을명	향약준수	회의의결사항이행	총회참여	동원부역참여	리운영비납부	가정의례준수	환경보호	향토문화보존	검소한생활	리발전도모	화합단결	행정지시이행	마을발전저해행위금지	마을사업적극참여	미풍양속수호	실제거주의무	마을재산보호	건전의식함양	리 운영비	
																			납부	면제내용
성산리																				
오조리		○		○	○														○	75세 이상, 수급자
시흥리		○		○	○															
고성리		○		○	○															
신양리					○														○	70세 이상 *추가납부대상: 리소재 단체 및 기업체
수산1리		○		○	○															
수산2리					○										○					
온평리	○	○			○														○	
신산리					○					○					○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신평리				○	○															
신천리				○	○															
난산리	○	○																		80세 이상

안덕면은 창천리를 제외하고 대평리, 감산리, 사계리, 서광동리 등 4개 마을이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창천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고 75세 이상자 및 생활보호대상자는 면제하고 있는데 여성 세대주는 70세부터 면제하고 있다. 대평리는 리 운영비 납부만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고 수급자는 면제하고 있다. 감산리는 리 운영비 납부, 마을사업 참여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고 70세 이상자는 면제하고 있다. 사계리는 리 운영비 납부, 마을사업 참여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고 70세 이상자는 면제하고 있다. 서광동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리 운영비 납부, 미풍양속 수호, 마을발전 저해행위 금지, 마을재산 보호를 의무로 정하고 있고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다. 그 현황은 <표 4-58>과 같다.



<표 4-58> 안덕면 마을별 리민의 의무 및 리 운영비 납부현황

마을명	향약준수	회의의결사항이행	총회참여	동원부역참여	리운영비납부	가정의례준수	환경보호	향토문화보존	김소환생활	리발전도모	화합단결	행정지시이행	마을발전저해위금지	마을사업적극참여	미풍양속수호	실제거주의무	마을재산보호	건강의식함양	리 운영비	
																			납부	면제내용
창천리	○	○																	○	75세(여70세) 이상 및 생활 보호대상자
대평리					○														○	수급자
감산리					○									○					○	70세 이상
사계리					○									○					○	70세 이상
서광동리	○	○			○								○		○		○		○	

표선면은 모든 마을이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고 표선리, 세화1리, 세화3리, 토산2리 등 4개 마을은 세대주외에 마을에 소재하는 5인이상 기업체 및 영리업체도 리 운영비 납부대상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선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리 운영비 납부, 환경보호, 향토문화 보존, 화합단결, 주소지 실제거주, 마을재산 보호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세대주는 물론 리 소재 5인이상 종사자가 있는 기업체도 납부대상이다. 면제대상은 70세 이상자 및 장애인이다. 하천리는 리 발전 도모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성읍1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동원부역 참여,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고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다. 성읍2리는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리 운영비 납부, 미풍양속 수호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고 70세 이상자는 면제하고 있다. 가시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리 운영비 납부, 미풍양속 수호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고 70세 이상자는 면제하고 있다.

세화1리는 동원부역 참여,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고 75세 이상자는 면제하고 있으나 리에 소재하고 있는 영리업체도 납부대상이다. 세화2리는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리 운영비 납부, 미풍양속 수호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고 70세 이상자, 수급자, 장애인은

면제하고 있다. 세화3리는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동원부역 참여 및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으나 75세 이상자는 면제조항을 두고 있고 리에 소재하고 있는 영리업체도 리 운영비 납부 대상이다.

토산1리는 향약준수,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으나 리 운영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다. 토산2리는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동원부역 참여, 리 운영비 납부, 환경보호, 미풍양속 수호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고 80세 이상자 및 수급자는 면제하고 있는데 60세~80세 여성 세대주는 일부 감액하여 징수하고 있고 리에 소재한 영리업체도 납부대상이다. 그 현황은 <표 4-59>와 같다.

<표 4-59> 표선면 마을별 리민의 의무 및 리 운영비 납부현황

마을명	향약준수	회의의결사항이행	총회참여	동원부역참여	리운영비납부	가정의례준수	환경보호	향토문화보존	검소한생활	리발전도모	화합단결	행정지시이행	마을발전저해위금지	마을사업적극참여	미풍양속수호	실제거주의무	마을재산보호	건강의식함양	리 운영비		
																			납부	면제내용	
표선리	○	○			○		○	○								○	○		○	70세이상, 장애인 *추가납부대상: 리소재 5인 이상기업체	
하천리										○											
성읍1리	○	○			○	○														○	
성읍2리		○			○										○					○	70세 이상
가시리	○	○			○										○					○	70세 이상
세화1리					○	○														○	75세 이상 *추가납부대상: 리소재 영리업체
세화2리		○			○										○					○	70세 이상, 수급자, 장애인
세화3리		○			○	○															75세 이상 *추가납부대상: 리소재 영리업체



<표 4-60>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마을별 리민의 의무 및 리 운영비 납부 현황

(단위:마을수)

구분	항약준수	회의의결사항이행	총회참여	동원부역참여	리운영비납부	가정의례준수	환경보호	향토문화보존	검소한생활	리발전도모	화합단결	행정지시이행	마을발전저해행위금지	마을사업적극참여	미풍양속수호	실제거주의무	마을재산보호	건전의식함양	의무규정없음	리운영비납부마을
계	77	94	12	60	101	4	26	14	5	14	12	7	5	32	17	5	16	6	14	75
제주시	61	55	4	39	59	3	20	12	5	10	10	7	4	11	6	4	13	4	12	39
서귀포시	16	39	8	21	42	1	6	2	0	4	2	0	1	21	11	1	3	2	2	36

#### 4. 마을 의사결정 기구

향약에서 정하고 있는 마을내의 의사결정 기구는 마을총회, 개발위원회, 운영위원회, 대의원회, 자문위원회, 동장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재산관리 위원회 등이 있다. 그 외 마을 역량강화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구성을 위해 마을발전추진위원회등 각종 위원회를 두어 마을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위원회 기능을 살펴보면 마을총회는 마을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전체주민 참여가 어려운 경우 대의원회가 대신하며 세대주 또는 일정나이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다. 개발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리민의 여론을 리에 반영시키고 마을 발전을 위한 자문, 지원, 공조, 견제역할을 하며 마을총회에 상정할 안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대의원회는 마을 자생단체장을 비롯하여 자연마을별로 균등하게 마을을 대표하는 인원으로 구성되며 마을총회 및 리장선출 등을 대신하는데 모든 결정은 리민 의결로 간주한다. 자문위원회는 리정에 다년간 경험을 쌓은 전직리장, 지역유지 및 전문직 인사, 원로 등으로 구성하여 리정 전반에 걸쳐 자문을 받고 마을 발전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동장회의는 리 산하에 있는 자연마을 책임자로 동을 운영하고 리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리장 후보자의 자격심사 선거인명부 작성·열람·교부 및 선거인 확정, 투표·개표에 관한사항 등 리장선거를 총괄한다. 재산관리위

원회는 리 공유의 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로 자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리민의 자격 등도 결정한다.

### 1) 제주시 읍·면지역별 마을 회의 기구

한림읍은 마을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회가 조직되어 있는 마을은 한림1리와 월림리이나 월림리는 마을총회 유회시만 운영되고 있다. 마을총회 상정 전 주요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는 대부분 개발위원회이나 한림2리, 귀덕1리, 귀덕3리, 대림리, 동명리, 월령리, 협재리, 옹포리 등 8개 마을은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자문위원회는 한수리, 금능리, 비양리, 옹포리 등 4개 마을에 조직되어 있으며 동장회의는 한림3리, 강구리, 귀덕3리, 월림리, 월령리, 비양리, 금악리 등 7개 마을을 제외한 14개 마을에 조직 조직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한림1리, 한림2리, 귀덕2리, 귀덕3리 수원리, 상대리, 금능리, 명월리, 월림리, 월령리, 협재리, 비양리, 금악리, 옹포리 등 14개 마을, 재산관리위원회는 한림1리, 한림2리, 강구리, 귀덕2리, 귀덕3리, 수원리, 대림리, 금능리, 월령리, 협재리, 비양리 등 11개 마을에 조직되어 있다.

그 외 마을역량강화 사업추진을 위해 한림3리는 마을발전위원회, 대림리는 마을사업 추진위원회, 상명리는 마을가꾸기 추진위원회, 풍력발전소추진위원회,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월림리는 징계위원회를 두어서 향약을 위반하거나 마을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심의하고 징계하는 역할을 한다. 기타 특이사항으로 귀덕1리와 협재리는 의결권을 갖고 있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불참시 해촉이 가능하며 비양리는 개발위원중 여성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 현황은 <표 4-61>과 같다.

<표 4-61> 한림읍 마을별 회의기구

마을명	마을총회	개발위원회	운영위원회	대의원회	자문위원회	동장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재산관리위원회	기타위원회	참고사항
한림1리	○	○		○		○	○	○		
한림2리	○		○			○	○	○		
한림3리	○	○							마을발전추진위원회	
강구리	○	○						○		
귀덕1리	○		○			○				운영위원: 연 2회 이상 회의불참시 해촉가능
귀덕2리	○	○				○	○	○		
귀덕3리	○		○				○	○		
수원리	○	○				○	○	○		
대림리	○		○			○		○	마을사업추진위원회	
한수리	○	○			○	○				
상대리	○	○				○	○			
금능리	○	○			○	○	○	○		
동명리	○		○			○				
명월리	○	○				○	○			
상명리	○	○				○			풍력발전소추진위원회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 마을가꾸기추진위원회	
월림리	○	○		○			○		징계위원회	대의원회: 총회유회사 위임 및 의결 가능
월령리	○		○				○	○		
협재리	○		○			○	○	○		운영위원: 연 3회 이상 회의불참시 해촉가능
비양리	○	○			○		○	○		개발위원: 여성위원 포함원칙
금악리	○	○					○			
옹포리	○		○		○	○	○			

애월읍은 마을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회가 조직되어 있는 마을은 없다. 마을총회 전 마을안전 심의·의결기구로 광령2리와 광령3리는 운영위원회, 그 외 24개 마을은 개발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자문위원회는 애월리와 중엄리에 조직되어 있다. 동장회의는 하가리, 소길리, 중엄리, 고성1리, 고성2리, 광령2리, 광령3리 등 7개 마을을 제외하여 19개 마을에 조직되어 있고, 재산관리위원회는 꼭지리, 상가리, 신엄리 등 3개 마을에 조직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애월리, 금성리, 어음1리, 하가리, 유수암리, 하귀리, 상귀리, 고성2리, 광령3리 등 9개 마을을 제외한 17개 마을에 조직되어 있다. 그 외 애월리, 어음2리, 납읍리, 상가리, 고내리, 고성1리 등 6개 마을은 마을사업을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광지리, 용흥리, 수산리, 광령1리 등 4개 마을은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용흥리는 향토발전위원회와 용흥리운동장관리위원회, 광령1리는 체육관 건립추진위원회와 양돈장반대대책위원회, 고성1리는 향약개정위원회와, 위령비추진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그 외 애월리, 어음2리, 고내리 등 3개 마을은 마을회 임원이 연 3회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 불참시 제명이 가능하며 고성1리는 임원회의가 구성되어 개발위원회 상정안건 등을 검토한다. 그 현황은 <표 4-62>와 같다.

<표 4-62> 애월읍 마을별 회의기구

마을명	마을총회	개발위원회	운영위원회	대의원회	자문위원회	동장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재산관리위원회	기타위원회	참고사항
애월리	○	○			○	○			특별위원회	개발위원: 연3회이상 회의불참시 제명가능
광지리	○	○				○	○	○	마을만들기사업단	
금성리	○	○				○				
봉성리	○	○				○	○			
어음1리	○	○				○				
어음2리	○	○				○	○		특별위원회	개발위원: 연 3회이상 회의 불참시 해임가능
납읍리	○	○				○	○		특별위원회	
상가리	○	○				○	○	○	특별위원회	
하가리	○	○								
소길리	○	○					○			
장전리	○	○				○	○			
유수암리	○	○				○				
용흥리	○	○				○	○		향토발전위원회 마을만들기위원회 용흥리운동장관리위원회	
신엄리	○	○				○	○	○		
중엄리	○	○			○		○			
구엄리	○	○				○	○			

고내리	○	○				○	○	특별위원회	개발위원 : 연 3회이상 회의 불참시 해임가능
하귀1리	○	○				○			
하귀2리	○	○				○	○		
상귀리	○	○				○			
수산리	○	○				○	○	마을민들기추진위원회	
고성1리	○	○					○	특별위원회 향약개정위원회 위령비추진위원회	임원회의: 개발위원회 부의안건등 심의
고성2리	○	○							
광령1리	○	○				○	○	마을민들기추진위원회 체육관건립추진위원회 양돈장반대대책위원회	
광령2리	○		○				○		
광령3리	○		○						

구좌읍은 김녕리와 세화리가 마을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마을총회 전 마을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개발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 마을은 김녕리, 월정리, 평대리, 세화리, 상도리, 종달리 등 6개 마을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김녕리는 위원회 활동이 활발한 마을로 개발위원회 상위기구로 마을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고 운영위원회 산하에 행정·농업추진위원회, 복지추진위원회, 사업추진위원회, 조건직불제추진위원회등 소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향약 시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향약·규정등 분쟁소청 심의위원회와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자문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 마을은 김녕리, 세화리, 종달리 등 3개 마을이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상도리를 제외하고 김녕리, 월정리, 평대리, 세화리, 종달리 등 5개 마을에 조직되어 있다. 동장회의는 6개 마을 모두 조직되어 있으며 재산관리 위원회는 김녕리와 세화리에 조직되어 있다. 그 외 평대리는 마을발전추진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대의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세화리는 동추천 대의원 중 20%는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며 김녕리, 세화리, 종달리 등 3개 마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 회의 불참시 제명이 가능하다. 그 현황은 <표 4-63>과 같다.



<표 4-63> 구좌읍 마을별 회의기구

마을명	마을총회	개발위원회	운영위원회	대의원회	자문위원회	동장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재산관리위원회	기타위원회	참고사항
김녕리	○	○	○	○	○	○	○	○	행정·농업추진위원회, 복지추진위원회, 사업추진위원회, 조건직불제위원회, 향약·규정등분쟁소청심의위원회,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연 5회 회의 불참시 위원 자격 상실
월정리	○	○				○	○			
평대리	○	○				○	○		마을발전 추진위원회	
세화리	○	○		○	○	○	○	○		대의원 : 동추천 10인 중 20%는 여성할당 개발위원 : 연2회이상 회의 불참시 교체가능
상도리	○	○				○				
종달리	○	○			○	○	○			위원: 연3회 이상 회의 불참시 제명가능

조천읍은 신촌리와 함덕리가 마을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마을총회 전 마을안전 심의·의결 기구로 12개 마을 모두 개발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자문위원회는 조천리, 함덕리, 선흥1리 등 3개 마을, 재산관리위원회는 신촌리, 조천리, 신흥리, 북촌리, 와산리, 대흥2리 등 6개 마을에 조직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와산리와 와흘리를 제외하고 10개 마을에 조직되어 있고 동장회의는 와산리, 대흥1리, 대흥2리 등 3개 마을을 제외한 9개 마을에 조직되어 있다. 그 외 상·별 사항과 징계등의 운영을 위해 신촌리는 인사위원회, 신흥리는 공적심사 및 징계위원회, 함덕리는 상·별심의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북촌리는 향약개정위원회, 와흘리는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선흥1리는 생태관광위원회, 선흥2리는 대명동물테마파크 반대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교래리, 선흥2리, 대흥1리 등 3개 마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 회의 불참시 해임이 가능하며 함덕리는 각 구별 여성위원 1명을 선출직 개발위원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 현황은 <표 4-64>와 같다.

<표 4-64> 조천읍 마을별 회의기구

마을명	마을총회	개발위원회	운영위원회	대의원회	자문위원회	동장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재산관리위원회	기타위원회	참고사항
신촌리	○	○		○		○	○	○	인사위원회	
조천리	○	○			○	○	○	○		
신흥리	○	○				○	○	○	공적심사및장계위원회	
함덕리	○	○		○	○	○	○		상벌심의위원회	개발위원 : 여성위원 1명 의무적 선출
북촌리	○	○				○	○	○	향약개정위원회	
와산리	○	○						○		
교래리	○	○				○	○			개발위원: 연3회이상 회의 불참시 해임가능
와흘리	○	○				○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선흘1리	○	○			○	○	○		생태관광위원회	
선흘2리	○	○				○	○		대명동물테마파크 반대위원회	개발위원: 연3회이상 회의불참시 해임가능
대흘1리	○	○					○			개발위원: 연3회이상 회의 불참시 해임가능
대흘2리	○	○					○	○		

한경면은 저지리와 고산1리가 마을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마을총회 전 마을안전 심의·의결기구는 14개 마을 모두 개발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자문위원이 조직되어 있는 마을은 두모리와 청수리이며 조수1리를 제외한 모든 마을이 동장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두모리, 판포리, 한원리, 용당리, 낙천리, 저지리, 용수리, 조수1리, 고산1리 등 9개 마을, 재산관리위원회는 신창리, 청수리, 용수리 등 3개 마을에 조직되어 있다.

그 외 금등리와 두모리는 장례위원회가 조직되어 마을발전 공로자 사망시 리민장을 거행하고 있는데 특히 두모리는 모든 임원은 75세이하로 한다는 연령제한을 두고 있다. 신창리는 풍력발전기금운영위원회, 한원리는 마을발전위원회, 낙천리는 아홉굿마을영농조합법인 운영위원회, 저지리는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청수리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그 현황은 <표 4-65>와 같다.

<표 4-65> 한경면 마을별 회의기구

마을명	마을총회	개발위원회	운영위원회	대의원회	자문위원회	동장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재산관리위원회	기타위원회	참고사항
금등리	○	○				○			장례위원회	
신창리	○	○				○		○	풍력발전기금운영위원회	
두모리	○	○			○	○	○		장례위원회	모든임원 75세 이하로 연령제한
판포리	○	○				○	○			
한원리	○	○				○	○		마을발전위원회	
용당리	○	○				○	○			
낙천리	○	○				○	○		아홉굿마을영농조합법인 운영위원회	
저지리	○	○		○		○	○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	
청수리	○	○			○	○		○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위원회	
용수리	○	○				○	○	○		
산양리	○	○				○				
조수1리	○	○					○			
조수2리	○	○				○				
고산1리	○	○		○		○	○			

추자면은 마을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회가 조직되어 있는 마을은 없으나 예초리와 신양1리는 운영위원회가 마을총회를 대신하고 있다. 마을총회 전 마을안전 심의·의결기구로 대서리, 영흥리, 묵리, 신양2리 등 4개 마을은 개발위원회, 예초리와 신양1리는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자문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재산관리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 마을도 없다. 대서리, 예초리, 신양1리 등 3개 마을은 동장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흥리는 영흥리마을기업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그 외 대서리는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그 현황은 <표 4-66>과 같다.

<표 4-66> 추자면 마을별 회의기구

마을명	마을총회	개발위원회	운영위원회	대의원회	자문위원회	동장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재산관리위원회	기타위원회	참고사항
대서리	○	○				○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	
영흥리	○	○							영흥리마을기업위원회	
묵리	○	○								
예초리	○		○			○				
신양1리	○		○			○				
신양2리	○	○								

우도면은 서광리를 제외하고 천진리, 조일리, 오봉리 등 3개 마을이 마을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마을총회 전 마을안전 심의·의결기구인 4개 마을 모두 개발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자문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재산관리위원회는 4개 마을 모두 조직되어 있지 않고 다른 마을에 없는 자연마을단위의 동예동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그 외 천진리는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 서광리는 청년회가 주관하는 선도위원회가 조직되어 청소년선도 등 마을의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현황은 <표 4-67>과 같다.

<표 4-67> 우도면 마을별 회의기구

마을명	마을총회	개발위원회	운영위원회	대의원회	자문위원회	동장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재산관리위원회	기타위원회	참고사항
천진리	○	○		○		○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	동운영위원회
서광리	○	○				○			선도위원회	동운영위원회.
조일리	○	○		○		○				동운영위원회
오봉리	○	○		○		○				동운영위원회

## 2) 서귀포시 읍·면지역별 마을 회의 기구

대정읍은 마을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회가 조직되어 있는 마을은 없다. 그리고 동일2리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개발위원회 없이 마을총회만 운영하고 있다. 마을총회 전 마을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신평리만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그 외 21개 마을은 개발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마을은 하모1리, 재산관리위원회는 하모1리, 하모2리, 무릉2리, 신평리 등 4개 마을, 선거관리위원회는 상모1리, 상모3리, 하모2리, 하모3리, 안성리, 일과1리, 일과2리, 무릉1리, 무릉2리, 가파리, 마라리, 보성리, 영락리 등 13개 마을, 동장회의는 하모1리, 안성리, 마라리, 동일2리 등 4개 마을을 제외한 18개 마을이 운영하고 있다.

그 외 마을축제와 관련하여 안성리는 추사문화예술축제위원회, 가파리는 청보리축제위원회, 구억리는 용기축제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마을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을 위한 마을발전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 마을은 하모3리, 무릉2리, 영락리이며 상모리는 상모1·2·3리가 합해서 상모발전추진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영락리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마을 공동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마을공동시설운영관리위원회가 추가 조직되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된 안성리는 기록원운영위원회, 무릉2리와 구억리는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하모2리, 하모3리, 일과2리 등 3개 마을은 임원회의를 두어 마을총회 위임안건 등을 심의하고 있고 신평리는 운영위원이 연 2회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불참시 자격상실 조항을 두고 있다. 그 현황은 <표 4-68>과 같다.

<표 4-68> 대정읍 마을별 회의기구

마을명	마을총회	개발위원회	운영위원회	대의원회	자문위원회	동장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재산관리위원회	기타위원회	참고사항
상모1리	○	○				○	○		상모발전추진위원회	
상모2리	○	○				○				
상모3리	○	○				○	○			
하모1리	○	○			○			○		
하모2리	○	○				○	○	○		임원회의총회위임안 건 및 기타사항심의
하모3리	○	○				○	○		마을발전추진위원회	임원회의총회위임안 건 및 기타사항심의
안성리	○	○					○		기록원운영위원회 추사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	
인성리	○	○				○				
일과1리	○	○				○	○			
일과2리	○	○				○	○			임원회의총회위임안 건 및 기타사항심의
무릉1리	○	○				○	○			
무릉2리	○	○				○	○	○	마을사업추진위원회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	
가과리	○	○				○	○		청년축제를추진위원회	
마라리	○	○					○			
신평리	○		○			○		○		운영위원:연2회이상 불참시 자격상실
동일1리	○	○				○				
동일2리	○									개발위원회 없음
보성리	○	○				○	○			
영락리	○	○				○	○		마을발전추진위원회 마을공동시설운영 관리위원회	
구역리	○	○				○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 옹기축제위원회	
신도1리	○	○				○				
신도3리	○	○				○				

남원읍도 대정읍과 마찬가지로 마을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회가 조직되어 있는 마을은 없다. 마을총회 전 마을안전 심의·의결기구인 남원1리, 태흥2리, 태흥3리, 위미1리, 신례1리, 수망리, 의귀리, 신흥2리 등 8개 마을 모두 개발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자문위원회는 위미1리와 신례1리에 조직되어 있으며 재산관리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 마을은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태흥3리를 제외하고 남원1리, 태흥2리, 위미1리, 신례1리, 수망리, 의귀리, 신흥2리 등 7개 마을에 조직되어 있고 동장회의는 태흥3리와 수망리를 제외한 6개 마을에 조직되어 있다.

그 외 마을 역량강화 및 마을사업을 발굴을 위해 남원1리는 남원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추진위원회, 태흥2리는 마을활성화사업추진위원회, 위미1리는 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수망리는 마을기금 관리를 위한 기금관리위원회, 의귀리는 체험마을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태흥2리와 태흥3리는 임원회의를 두고 있는데 태흥2리는 마을총회 및 개발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있고 태흥3리는 마을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항이나 마을총회에 부의 하여야 할 사항 등을 처리하고 있다. 신례1리는 개발위원 중 여성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 현황은 <표 4-69>와 같다.

<표 4-69> 남원읍 마을별 회의기구

마을명	마을총회	개발위원회	운영위원회	대의원회	자문위원회	동장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재산관리위원회	기타위원회	참고사항
남원1리	○	○				○	○		남원읍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추진위 원회	
태흥2리	○	○				○	○		마을활성화사업추 진위원회	임원회의:총회 및 개발위원회 위임사항등심의
태흥3리	○	○								임원회의: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 급한 사항 및 총 회 부의사항 심의
위미1리	○	○			○	○	○		마을민들기추진위원회	
신례1리	○	○			○	○	○			개발위원중여성1 명이상 포함원칙
수망리	○	○					○		기금관리위원회	
의귀리	○	○				○	○		의귀체험마을운영 위원회	
신흥2리	○	○				○	○			

성산읍은 성산리와 시흥리가 마을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마을총회 전 마을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신산리와 신흥리는 운영위원회, 그 외 10개 마을은 개발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자문위원회는 성산리, 고성리, 신산리, 신흥리 등 4개 마을, 재산관리위원회는 온평리, 신흥리, 난산리 등 3개 마을을 제외한 9개 마을에 조직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산2리, 온평리, 난산리 등 3개 마을을 제외한 9개 마을에 조직되어 있으며 동장회의는 수산2리를 제외한 11개 마을에 조직되어 있다.

특히 성산리는 개발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는데 개발위원회는 마을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하고 운영위원회는 마을총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성산포항주차장운영위원회도 추가로 조직되어 있다. 난산리는 개발위원회 보조기구로 소위원회를 두어 개발위원회 상정 전 의안을 검토하고 있고 마을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사업개발과 운영방침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발전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 마을은 수산1리이며 신산리는 리장을 보좌하기 위한 리부위원장, 마을 행사시 진행 및 의전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뒤서 운영하고 있다. 그 현황은 <표 4-70>과 같다.

<표 4-70> 성산읍 마을별 회의기구

마을명	마을총회	개발위원회	운영위원회	대의원회	자문위원회	동장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재산관리위원회	기타위원회	참고사항
성산리	○	○	○	○	○	○	○	○	성산향우회, 주민자치위원회	
오조리	○	○				○	○	○		
시흥리	○	○		○		○	○	○		
고성리	○	○			○	○	○	○		
신양리	○	○				○	○	○		
수산1리	○	○				○	○	○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	
수산2리	○	○						○		
온평리	○	○				○				
신산리	○		○		○	○	○	○		리부위원장, 사무국장제 운영
신평리	○		○			○	○	○		
신천리	○	○			○	○	○			
난산리	○	○				○			소위원회, 발전위원회	

안덕면은 마을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회가 조직되어 있는 마을은 없으며 마을총회 전 마을안전 심의·의결기구로 창천리, 대평리, 감산리, 사계리, 서광동리 등 5개 마을이 개발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자문위원회는 창천리, 감산리, 사계리 등 3개 마을, 재산관리위원회는 사계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창천리, 감산리, 사계리, 서광동리 등 4개 마을, 동장회의는 감산리와 사계리에 조직되어 있다. 그 외 감산리는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 서광동리는 마을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단위개발추진위원회, 농촌마을개발추진위원회, 창조적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 마을 공동시설 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시설운영관리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마을회 정관에 정한 조직외에 다른

조직은 결정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개발위원회 상정전 의안검토 등을 위해 감산리와 사계리는 임원회의가 구성되어 있다. 특히 사계리는 여성개발위원 25%이상 포함, 개발위원 연 3회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불참시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 현황은 <표 4-71>과 같다.

<표 4-71> 안덕면 마을별 회의기구

마을명	마을총회	개발위원회	운영위원회	대의원회	자문위원회	동장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재산관리위원회	기타위원회	참고사항
창천리	○	○			○		○			
대평리	○	○								
감산리	○	○			○	○	○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	임원회의:개발위원회 상정전 의안검토
사계리	○	○			○	○	○	○		임원회의:개발위원회 상정전 의안검토 개발위원:여성위원 25%이상포함 개발위원:연3회이상 회의불참시 제명가능
서광동리	○	○					○		마을단위개발추진위원회 농촌마을개발추진위원회 창조적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 마을공동시설 관리위원회	마을정관에 정한 조직외에 다른 조직 결성 금지

표선면은 가시리가 마을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10개 마을 모두 마을총회 상정 전 마을의 안건을 심의·의결기구로 개발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특히 가시리는 개발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는데 개발위원회는 마을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하고 운영위원회는 개발위원회 상정 전 안건등을 검토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자문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 마을은 성읍1리, 재산관리위원회는 가시리와 세화2리에 조직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하천리, 성읍2리를 제외하고 8개 마을에 조직되어 있으며 동장

회의는 세화3리와 토산2리를 제외한 8개 마을에 조직되어 있다. 그 외 표선리는 마을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마을축제와 관련하여 가시리는 유채꽃축제추진위원회, 표선리는 축제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마을역량 강화와 마을사업을 발굴을 위해 세화1리는 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 세화2리는 마을발전위원회, 세화3리는 마을발전추진위원회, 토산1리는 마을만들기운영위원회, 토산2리는 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학교살리기추진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 마을은 성읍1리와 세화2리이며 성읍1리는 성읍민속마을보존회, 세화2리는 인재양성장학위원회가 추가 조직되어 있다. 그 현황은 <표 4-72>와 같다.

<표 4-72> 표선면 마을별 회의기구

마을명	마을총회	개발위원회	운영위원회	대의원회	자문위원회	동장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재산관리위원회	기타위원회	참고사항
표선리	○	○				○	○		제도개선위원회 축제위원회	
하천리	○	○				○				
성읍1리	○	○			○	○	○		학교살리기 추진위원회 성읍민속마을보존회	
성읍2리	○	○				○				
가시리	○	○	○	○		○	○	○	유채꽃축제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개발위원회 상정안 검토
세화1리	○	○				○	○		마을만들기위원회	
세화2리	○	○				○	○	○	인재양성장학위원회 마을발전위원회, 학교살리기추진위원회	
세화3리	○	○					○		마을발전추진위원회	
토산1리	○	○				○	○		마을만들기운영위원회	
토산2리	○	○					○		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	

제주의 읍·면지역 마을별 회의기구를 종합해보면 146개 마을 중 마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마을총회는 모든 마을에 조직되어 있고 마을안전 심의·의결 기구는

개발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운영되는데 개발위원회로 운영되는 마을은 130개 마을, 운영위원회로 운영되는 마을은 18개 마을이다. 그리고 개발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모두 조직되어 있는 마을은 3개 마을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46개 마을 중 68.5%에 해당하는 96개 마을, 재산관리위원회는 41개 마을에 조직되어 있다. 대정읍 동일 2리는 다른 위원회 없이 마을총회로만 운영되고 있다. 마을역량 강화조직으로 마을만들기 관련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 마을은 26개 마을이며 기타 정보화마을운영, 마을축제, 향약위반에 따른 심의위원회등 38개 위원회가 조직되어 마을의 의사결정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그 현황은 <표 4-73>과 같다.

<표 4-73>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마을별 회의기구

(단위 : 마을수)

구분	마을총회	개발위원회	운영위원회	개발·운영위원회	대표위원회	자문위원회	동장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재산관리위원회	기타위원회	
										마을만들기	기타
계	146	130	18	3	12	19	113	96	41	26	38
제주시	89	77	13	1	9	8	68	55	25	9	25
서귀포시	57	53	5	2	3	11	45	41	16	17	13

## 5. 마을 자치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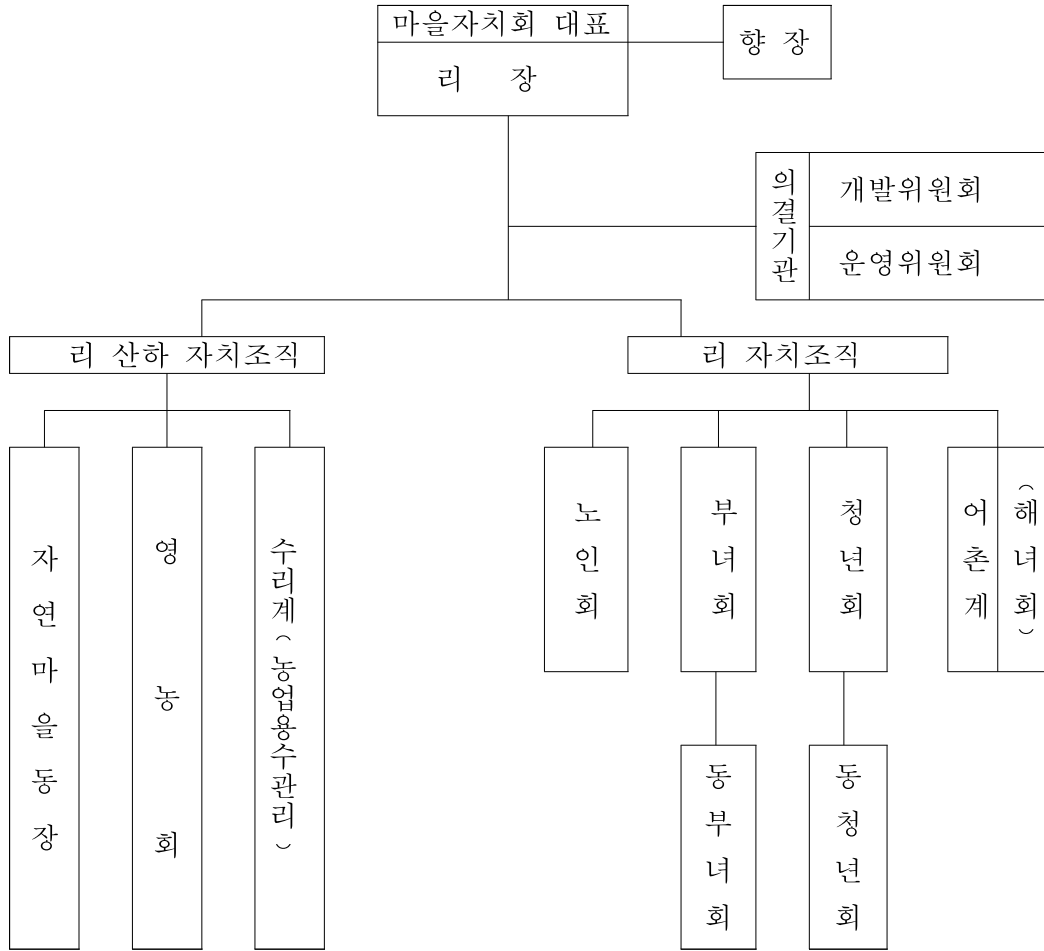
마을의 자치조직은 마을자치회 대표인 리장을 중심으로 리 단위 자치조직과 리 산하 자치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리 단위 자치조직은 개발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어촌계 등 마을공동체 조직이 있으며 부녀회와 청년회는 자연마을의 각 동별로 별도 구성되어 있다. 리 산하 자치조직은 영농회, 수리계, 각 마을의 동장조직이 있다.

자치조직별 활동내용을 보면 리장은 마을을 대표하고 마을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회계 및 재산관리 책임을 지며 마을총회의 의장이 된다. 개발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마을의 여론을 리정에 반영시키고 마을의 제반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마을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마을운영에 적극 참여한다. 노인회는 건강강좌등 어르신  
의 삶이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및 경로당을 운영한다. 부녀회는 마을 행사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부녀회원들 간의 단합을 도모하며 어버이날 행사등을 통해 노  
인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청년회는 야간 자율방범 활동, 마을 주변 잡초제거  
및 정화활동 등을 실시하며 각종 마을행사시 교통정리 등 자원봉사활동을 한다. 동  
장은 동을 대표하여 동민의 여론을 리정에 반영하고 리장의 대외활동에 협조한다.  
어촌계는 공동어장 관리 및 수산업 활동을 통한 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하고 있는데  
어촌계내에 여성들로만 구성된 해녀회 조직을 두고 있다.

리 산하 자치조직인 영농회는 농협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농업인들에게 행정적 업  
무 및 농협에서 위임한 업무 등을 지원한다. 수리계는 농어촌정비법과 제주특별자  
치도 수리계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조직으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농  
업용수 공급, 고장수리, 요금부과 등을 처리한다. 그리고 일부마을에서는 해당마을  
에서 태어난 덕망이 있는 자를 향장으로 인준하여 미풍양속 전수 및 마을의 불화  
등을 조정하고 있다. 마을별 자치조직 구성도는 <표 4-74>와 같다.

<표 4-74> 마을별 자치조직 구성도



### 1) 제주도 읍·면지역별 마을 자치조직

한림읍은 각 마을마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외에 비양리를 제외한 20개 마을에 영농회가 조직되어 있다. 어촌계가 조직되어 있는 마을은 한림1리, 귀덕1리, 귀덕2리, 수원리, 한수리, 금능리, 월령리, 협재리, 비양리, 옹포리 등 10개 마을이다. 이중 수원리에는 수원어촌계와 용운어촌계가 조직되어 있다.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수리계는 한림1리와 비양리를 제외하고 19개 마을에 조직되어 있다. 마을동장은 한림3리, 강구리, 귀덕3리, 월림리, 월령리, 비양리, 금악리 등 7개 마을을 제외하고 14개 마을에 조직되어 있다. 그 외에 금능리는 마을문고회와 작은

도서관회, 상명리는 목장조합회와 작목반, 한수리는 원로회, 옹포리는 장학회, 월림리는 70세 이상 월림리에서 태어난 덕망이 있는 자를 향장으로 인준하여 미풍양속 전수 등 마을의 불화 등을 조정하고 있다. 그 현황은 <표 4-75>와 같다.

<표 4-75> 한림읍 마을별 자치조직

마을명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어촌계 (해녀회)	영농회	수리계	마을동장	기타단체	참고 사항
한림1리	○	○	○	○	○		○		
한림2리	○	○	○		○	○	○		
한림3리	○	○	○		○	○			
강구리	○	○	○		○	○			
귀덕1리	○	○	○	○	○	○	○		
귀덕2리	○	○	○	○	○	○	○		
귀덕3리	○	○	○		○	○			
수원리	○	○	○	○	○	○	○		
대림리	○	○	○		○	○	○		
한수리	○	○	○	○	○	○	○	원로회	
상대리	○	○	○		○	○	○		
금능리	○	○	○	○	○	○	○	마을문학회, 직업자반	
동명리	○	○	○		○	○	○		
명월리	○	○	○		○	○	○		
상명리	○	○	○		○	○	○	목장조합회, 작목반	
월림리	○	○	○		○	○			향장
월령리	○	○	○	○	○	○			
협재리	○	○	○	○	○	○	○		
비양리	○	○	○	○					
금악리	○	○	○		○	○			
옹포리	○	○	○	○	○	○	○	장학회	

애월읍은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를 기본조직으로 26개 모든 마을에 영농회와 수리계가 조직되었다. 어촌계는 해안마을을 중심으로 애월리, 광지리, 신엄리, 구엄리, 고내리, 하귀1리, 하귀2리 등 7개 마을에 조직되어 있으며 마을동장은 하가리, 소길리, 중엄리, 고성1리와 고성2리, 광령2리, 광령3리 등 7개 마을을 제외하고 19개 마을에 조직되어 있다. 목장조합회가 조직되어 있는 마을은 봉성리, 어음1리, 어음2리, 납읍리, 상가리, 소길리, 장전리, 유수암리, 신엄리, 상귀리, 광령1리, 광령2리, 광령3리 등 13개 마을이다.

지역원로들의 조직인 원로회를 두고 있는 마을은 납읍리, 하귀2리, 수산리 등 3개

마을이며, 봉성리, 소길리, 고성1리, 광령2리 등 4개 마을은 향장을 두어 마을문제에 대한 자문을 얻고 있다. 문고회가 조직되어 있는 마을은 하가리, 유수암리, 고성1리 등 3개 마을, 작목반이 조직되어 있는 마을은 소길리, 유수암리, 용흥리, 신엄리 등 4개 마을이다. 향우회가 조직되어 있는 마을은 소길리, 용흥리, 하귀1리, 광령2리, 광령3리 등 5개 마을, 재향군인회가 조직되어 있는 마을은 신엄리와 고성1리이다. 체육회가 조직되어 있는 마을은 하귀1리, 하귀2리, 광령2리 등 3개 마을이며 용흥리는 공설묘지회, 고내리는 어촌지역의 생활기반정비를 위한 뉴딜300지역추진협의회가 조직되어 있다. 그 외 추가 조직으로 어음2리는 마을만들기 체험사업운영을 위한 어름비영농조합법인, 하귀1리는 하귀발전협의회, 하귀2리는 민속보존회가 조직되어 있다. 그 현황은 <표 4-76>과 같다.

<표 4-76> 애월읍 마을별 자치조직

마을명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어촌계 (해녀회)	영농회	수리계	마을동장	기타단체	참고 사항
애월리	○	○	○	○	○	○	○		
곽지리	○	○	○	○	○	○	○		
금성리	○	○	○		○	○	○		
봉성리	○	○	○		○	○	○	목장조합회	향장
어음1리	○	○	○		○	○	○	목장조합회	
어음2리	○	○	○		○	○	○	목장조합회 어름비영농법인	
납읍리	○	○	○		○	○	○	목장조합회, 원로회	
상가리	○	○	○		○	○	○	목장조합회	
하가리	○	○	○		○	○		문고회	
소길리	○	○	○		○	○		목장조합회, 작목반, 향우회	향장
장진리	○	○	○		○	○	○	목장조합회	
유수암리	○	○	○		○	○	○	목장조합회, 마을문 고회 감귤작목반	
용흥리	○	○	○		○	○	○	공설묘지회 향우회, 작목반	
신엄리	○	○	○	○	○	○	○	목장조합회, 재향 군인회, 작목반	
중엄리	○	○	○		○	○			
구엄리	○	○	○	○	○	○	○		
고내리	○	○	○	○	○	○	○	뉴딜300지역 추 진협의회	
하귀1리	○	○	○	○	○	○	○	하귀발전협의회, 향민회, 체육회	



하귀2리	○	○	○	○	○	○	○	원로회, 체육회 민속보존회	
상귀리	○	○	○		○	○	○	목장조합	
수산리	○	○	○		○	○	○	원로회	
고성1리	○	○	○		○	○		재향군인회, 문고회	향장
고성2리	○	○	○		○	○			
광령1리	○	○	○		○	○	○	목장조합회	
광령2리	○	○	○		○	○		목장조합회, 향우회, 체육회	향장
광령3리	○	○	○		○	○		목장조합회, 향우회	

구좌읍은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를 기본조직으로 영농회와 수리계가 6개 모든 마을에 조직되어 있다. 어촌계는 상도리를 제외한 김녕리, 월정리, 평대리, 세화리, 종달리 등 5개 마을에 조직되어 있고 마을동장은 김녕리, 월정리, 평대리, 세화리, 상도리, 종달리 등 6개 모든 마을에 조직되어 있다. 평대리, 상도리, 종달리 등 3개 마을은 축산계, 세화리는 마을공동체 사업 협의·조정을 위한 마을협의회, 협동조합, 공동목장 축산조합 등이 조직되어 있다. 문고회가 조직되어 있는 마을은 상도리와 종달리이나 종달리는 마을환경지킴이, 작목반 협의회가 추가 조직되어 있다. 그 현황은 <표 4-77>과 같다.

<표 4-77> 구좌읍 마을별 자치조직

마을명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어촌계 (해녀회)	영농회	수리계	마을동장	기타단체	참고사항
김녕리	○	○	○	○	○	○	○		
월정리	○	○	○	○	○	○	○		
평대리	○	○	○	○	○	○	○	축산계,	
세화리	○	○	○	○	○	○	○	마을협의회, 협동조합, 공동목장 축산조합	
상도리	○	○	○		○	○	○	축산계, 문고회	
종달리	○	○	○	○	○	○	○	축산계, 문고회, 마을환경지킴이, 작목반협의회	

조천읍은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를 기본조직으로 영농회가 12개 모든 마을에 조직되어 있고 수리계는 교래리를 제외하여 11개 마을에 조직되어 있다. 해안가에 접

해 있는 신촌리, 조천리, 신흥리, 함덕리, 북촌리 등 5개 마을에는 어촌계가 조직되어 있고 마을동장은 대흘1리와 대흘2리를 제외하고 10개 마을에 조직되어 있다. 그 외 문고회가 조직되어 있는 마을은 신촌리, 조천리, 대흘2리 등 3개 마을이나 신촌리는 소방대, 노인자원봉사회, 해병전우회, 마을포제연구회 등 다양한 조직이 추가 조직되어 있다. 조천리도 문고회외에 소방대와 적십자봉사회, 함덕리는 장학회, 북촌리는 4·3유족회, 교래리는 생활체육협의회, 와흘리는 생활개선회, 선흘1리는 생태계의 보고인 꽃자왈 동백동산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곳이 조직되어 있다. 그 현황은 <표 4-78>과 같다.

<표 4-78> 조천읍 마을별 자치조직

마을명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어촌계 (해녀회)	영농회	수리계	마을동장	기타단체	참고 사항
신촌리	○	○	○	○	○	○	○	새마을문고회, 노인자원봉사회, 해병전우회, 포제 연구회, 소방대	
조천리	○	○	○	○	○	○	○	마을문고회, 소방 대, 적십자봉사회	
신흥리	○	○	○	○	○	○	○		
함덕리	○	○	○	○	○	○	○	함덕장학회	
북촌리	○	○	○	○	○	○	○	4.3유족회	
와산리	○	○	○		○	○			
교래리	○	○	○		○		○	생활체육협의회	
와흘리	○	○	○		○	○	○	생활개선회,	
선흘1리	○	○	○		○	○	○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곳	
선흘2리	○	○	○		○	○	○		
대흘1리	○	○	○		○	○			
대흘2리	○	○	○		○	○		새마을문고회	

한경면은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조직외에 영농회와 수리계는 모든 마을에 조직되어 있고 마을동장조직은 조수1리를 제외한 13개 마을에 조직되어 있다. 어촌계는 금등리, 신창리, 두모리, 판포리, 용당리, 용수리, 고산1리 등 7개 마을에 조직되어 있다. 그 외 두모리는 문고회와 농지계, 낙천리는 목장조합, 저지리는 새생활개선회, 작목반, 저지리새마을영농조합법인, 청수리는 청수물영농조합법인, 용수리는 농지계가 조직되어 있다. 그 현황은 <표 4-79>와 같다.

<표 4-79> 한경면 마을별 자치조직

마을명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어촌계 (해녀회)	영농회	수리계	마을동장	기타단체	참고 사항
금등리	○	○	○	○	○	○	○		
신창리	○	○	○	○	○	○	○		
두모리	○	○	○	○	○	○	○	문고회, 농지계	
관포리	○	○	○	○	○	○	○		
한원리	○	○	○		○	○	○		
용당리	○	○	○	○	○	○	○		
낙천리	○	○	○		○	○	○	목장조합	
저지리	○	○	○		○	○	○	새 생활 개선회, 작목반, 저지리새 마을영농조합법인.	
청수리	○	○	○		○	○	○	청수물영농조합법인	
용수리	○	○	○	○	○	○	○	농지계	
산양리	○	○	○		○	○	○		
조수1리	○	○	○		○	○			
조수2리	○	○	○		○	○	○		
고산1리	○	○	○	○	○	○	○		

추자면은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를 기본조직으로 하고 있다. 섬지역으로 어촌계는 신양1리와 신양2리가 합한 신양어촌계를 비롯해서 6개 모든 마을에 조직되어 있고 영농회와 수리계 조직은 없다. 마을동장은 대서리, 예초리, 신양1리 등 3개 마을에 조직되어 있다. 그 외 목리는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뉴딜300지역 추진협의회, 예초리는 채낚기협회, 신양1리와 신양2리가 합한 신양리발전협의회가 조직되어 있다. 그 현황은 <표 4-80>과 같다.

<표 4-80> 추자면 마을별 자치조직

마을명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어촌계 (해녀회)	영농회	수리계	마을동장	기타단체	참고 사항
대서리	○	○	○	○			○		
영흥리	○	○	○	○					
목리	○	○	○	○				뉴딜300지역추 진협의회	
예초리	○	○	○	○			○	채낚기협회	
신양1리	○	○	○	○			○	신양리발전협의회	
신양2리	○	○	○						

우도면은 섬지역이지만 추자면과는 달리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를 기본조직으로 수리계를 제외하고 어촌계, 영농회, 마을동장 조직이 4개 마을 모두 조직되어 있다. 그 외 서광리와 오봉리에는 해양수산부 국책사업인 어촌지역의 생활기반 정비를 위한 뉴딜300지역추진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그 현황은 <표 4-81>과 같다.

<표 4-81> 우도면 마을별 자치조직

마을명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어촌계 (해녀회)	영농회	수리계	마을동장	기타단체	참고 사항
천진리	○	○	○	○	○		○		
서광리	○	○	○	○	○		○	뉴딜300지역추진협의회	
조일리	○	○	○	○	○		○		
오봉리	○	○	○	○	○		○	뉴딜300지역추진협의회	

## 2) 서귀포시 읍·면지역별 마을 자치조직

대정읍은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조직을 기본으로 마라리를 제외하고 21개 마을에 영농회가 조직되어 있다. 어촌계는 상모1리, 상모2리, 상모3리가 합한 상모리어촌계, 하모1리, 하모2리, 하모3리가 합한 하모리어촌계, 무릉1리와 무릉2리가 합한 무릉리어촌계, 동일1리와 동일2리가 합한 동일리어촌계, 신도1리와 신도2리, 신도3리가 합한 신도리어촌계, 일과1리, 일과2리, 가파리, 마라리, 영락리 등 22개 마을에 10개의 어촌계가 조직되어 있다. 영농회는 섬지역인 마라리를 제외하고 21개 마을에 조직되어 있고, 수리계는 하모2리, 가파리, 마라리 등 3개 마을을 제외하고 19개 마을에 조직되어 있다. 마을동장은 하모1리, 안성리, 마라리, 동일2리 등 4개 마을을 제외한 18개 마을에 조직되어 있다.

그 외 추가조직으로 하모2리는 마을문고회, 무릉2리는 새생활개선회, 신평리는 폐교된 보성초등학교와 신평분교 터를 활용하여 만든 체험학습 제공을 위한 곳자왓생태체험학교운영협의체, 동일1리는 특우회, 영락리는 덕자리잡이 보존사업등을 추진하는 덕자리보존회, 신도3리는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하모3리는 대정읍에

서는 유일하게 마을에서 덕망이 있는 자를 향장으로 두어 특별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표 4-82>와 같다.

<표 4-82> 대정읍 마을별 자치조직

마을명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어촌계 (해녀회)	영농회	수리계	마을동장	기타단체	참고 사항
상모1리	○	○	○	○	○	○	○		
상모2리	○	○	○		○	○	○		
상모3리	○	○	○		○	○	○		
하모1리	○	○	○	○	○	○			
하모2리	○	○	○		○		○	마을문고회	
하모3리	○	○	○		○	○	○		향장
안성리	○	○	○		○	○			
인성리	○	○	○		○	○	○		
일과1리	○	○	○	○	○	○	○		
일과2리	○	○	○	○	○	○	○		
무릉1리	○	○	○	○	○	○	○		
무릉2리	○	○	○		○	○	○	새생활개선회	
가파리	○	○	○	○	○		○		
마라리	○	○	○	○					
신평리	○	○	○		○	○	○	곶자왓생태체험 학교운영협의체	
동일1리	○	○	○	○	○	○	○	특우회	
동일2리	○	○	○		○	○			
보성리	○	○	○		○	○	○		
영락리	○	○	○	○	○	○	○	덕자리보존회	
구역리	○	○	○		○	○	○		
신도1리	○	○	○	○	○	○	○		
신도3리	○	○	○		○	○	○	작목반	

남원읍은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조직을 기본으로 영농회와 수리계가 8개 모든 마을에 조직되어 있다. 어촌계는 해안마을을 중심으로 남원1리, 태흥2리, 태흥3리, 위미리 등 4개 마을, 마을동장은 태흥3리와 수망리를 제외한 6개 마을에 조직되어 있다. 그 외 도서회가 조직되어 있는 마을은 위미1리와 신례1리이나 위미1리는 주민자율방법대가 추가 조직되어 방법활동을 하고 있다. 목장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마을은 신례1리, 수망리, 의귀리 등 3개 마을이며 신흥2리는 동백나무 군락지를 중심으로 체험사업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동백고장보전연구회, 남원1리는 생

활개선회가 조직되어 있다. 그 현황은 <표 4-83>과 같다.

<표 4-83> 남원읍 마을별 자치조직

마을명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어촌계 (해녀회)	영농회	수리계	마을동장	기타단체	참고 사항
남원1리	○	○	○	○	○	○	○	생활개선회	
태흥2리	○	○	○	○	○	○	○		
태흥3리	○	○	○	○	○	○			
위미1리	○	○	○	○	○	○	○	새마을작은도서관, 주민자율방범대	
신례1리	○	○	○		○	○	○	목장조합, 예촌작은도서관	
수망리	○	○	○		○	○		목장조합	
의귀리	○	○	○		○	○	○	목장조합	
신흥2리	○	○	○		○	○	○	동백고장보전연구회	

성산읍은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조직을 기본으로 영농회가 모든 마을에 조직되어 있고 수리계는 성산리를 제외하여 11개 마을에 조직되어 있다. 어촌계는 해안마을을 중심으로 고성리와 신양리가 합한 고성신양어촌계를 비롯해서 성산리, 오조리, 시흥리, 온평리, 신산리, 신평리, 신천리 등 8개 마을에 7개의 어촌계가 조직되어 있고 마을동장은 수산2리를 제외한 11개 마을에 조직되어 있다. 농촌생활개선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생활개선회가 조직되어 있는 마을은 수산1리와 신산리이며 다른 마을과는 달리 체육관련 조직이 있는 마을은 수산1리, 신산리, 신천리, 신평리 등 4개 마을이다.

그 외 추가조직으로 성산리는 성산마을장학회, 성산포장년회, 역대이장협의회, 수산2리는 수산곶자왓환경감시단, 온평리는 문화유산보존회, 신산리는 의용소방대가 조직되어 있다. 어명아방잔치마을로 유명한 신평리는 신평리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어 동네의 특성에 맞춰 개성 넘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현황은 <표 4-84>와 같다.

<표 4-84> 성산읍 마을별 자치조직

마을명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어촌계 (해녀회)	영농회	수리계	마을동장	기타단체	참고 사항
성산리	○	○	○	○	○		○	성산마을장학회 성산포장년회 역대이장협의회	
오조리	○	○	○	○	○	○	○		
시흥리	○	○	○	○	○	○	○		
고성리	○	○	○	○	○	○	○		
신양리	○	○	○		○	○	○		
수산1리	○	○	○		○	○	○	생활개선회 수산축구회	
수산2리	○	○	○		○	○		수산곳자활환경사업단	
온평리	○	○	○	○	○	○	○	문화유산보존회	
신산리	○	○	○	○	○	○	○	생활개선회, 의용소 방대, 동호회(축구, 게이트볼)	
신흥리	○	○	○	○	○	○	○	신흥리농어촌체 험휴양마을협의 회, 체육회	
신천리	○	○	○	○	○	○	○	체육회	
난산리	○	○	○		○	○	○		

안덕면은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조직을 기본으로 영농회가 5개 마을 모두 조직되어 있다. 어촌계는 대평리와 사계리에 조직되어 있다. 수리계는 대평리를 제외한 창천리, 감산리, 사계리, 서광동리 등 4개 마을에 조직되어 있으며 마을동장은 감산리와 사계리에 조직되어 있다. 그 외 감산리는 새마을문고회, 새생활개선회, 작목반, 서광동리는 새마을문고회와 목장조합이 조직되어 있다. 그 현황은 <표 4-85>와 같다.

<표 4-85> 안덕면 마을별 자치조직

마을명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어촌계 (해녀회)	영농회	수리계	마을동장	기타단체	참고 사항
창천리	○	○	○		○	○			
대평리	○	○	○	○	○				
감산리	○	○	○		○	○	○	새마을문고회, 새생 활개선회, 작목반	
사계리	○	○	○	○	○	○	○		
서광동리	○	○	○		○	○		새마을문고회, 목장조합	

표선면은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조직외에 영농회와 수리계가 10개 마을 모두 조직되어 있고 다른 마을과는 달리 농촌생활개선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생활개선회가 조직되어 있는 마을이 많다. 어촌계는 표선리, 하천리, 세화2리, 토산2리 등 4개 마을, 마을동장은 세화3리와 토산2리를 제외한 8개 마을에 조직되어 있다.

그 외 생활개선회가 조직되어 있는 마을은 표선리, 하천리, 성읍1리, 가시리, 세화1리, 세화2리, 토산1리, 토산2리 등 8개 마을이며 문고회가 조직되어 있는 마을은 성읍2리, 가시리, 세화1리, 세화2리, 토산1리 등 5개 마을이다. 마을사업 집행을 위한 조합법인이 조직되어 있는 마을은 가시리, 세화1리, 세화3리, 토산1리 등 4개 마을이며 성읍1리는 민속마을 보존을 위한 의용소방대, 하천리는 축구회가 조직되어 있다. 그 현황은 <표 4-86>과 같다.



<표 4-86> 표선면 마을별 자치조직

마을명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어촌계 (해녀회)	영농회	수리계	마을동장	기타단체	참고 사항
표선리	○	○	○	○	○	○	○	생활개선회	
하천리	○	○	○	○	○	○	○	생활개선회 비호축구회	
성읍1리	○	○	○		○	○	○	소방대(남성, 여성) 생활개선회	
성읍2리	○	○	○		○	○	○	새마을작은문고회	
가시리	○	○	○		○	○	○	생활개선회 새마을문고회 협업목장조합법인	
세화1리	○	○	○		○	○	○	생활개선회 새마을문고회 도내오름영농조합법인	
세화2리	○	○	○	○	○	○	○	생활개선회 새마을문고회	
세화3리	○	○	○		○	○		허브마을영농조합법인	
토산1리	○	○	○		○	○	○	새마을작은문고회 생활개선회 감귤영농조합법인	
토산2리	○	○	○	○	○	○		생활개선회	

제주의 읍·면지역 마을별 자치조직을 종합해보면 리 단위 자치조직은 각 마을마다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조직을 기본으로 71개 마을에 어촌계가 조직되어 있다. 목장조합회가 조직되어 있는 마을은 23개 마을, 문고회는 20개 마을에 조직되어 있다. 그 외 각 마을의 특성에 맞는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생활개선회, 체육회등 88개 단체가 조직되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리 산하조직으로 영농회는 전체마을의 94.5%에 해당하는 138개 마을,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수리계는 전체마을의 87.7%인 128개 마을에 조직되어 있다. 그 외 향장을 두어 미풍양속을 전수하고 마을의 불화 등을 조정하는 마을은 7개 마을이다. 그 현황은 <표 4-87>과 같다.

<표 4-87>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마을별 자치조직

(단위 : 마을수)

구분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어촌계 · 해녀회	영농회	수리계	마을 동장	기타단체			향장
								목장 조합회	문고 회	기타	
계	146	146	146	71	138	128	113	23	20	88	7
제주시	89	89	89	43	82	76	68	19	10	51	6
서귀포시	57	57	57	28	56	52	45	4	10	37	1

## 6. 리장후보자 출마자격 및 선출방법

마을자치회 대표인 리장은 리민들이 무기명투표에 의한 직접선거, 개발위원회의 추대에 의해 총회에서 인준하는 추대형식, 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이 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방법 등이 있다. 리장 후보자 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5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 향약에서는 해당마을 거주기간, 나이, 출생지 등 후보자 자격 조건이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 정한 사항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무기명투표에 의해 직접선거를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시 기탁금을 받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에 의한 시·도의회의원선거 기탁금 300만원보다 많은 500만원을 납부하는 마을도 있다.

### 1) 제주시 읍·면지역 마을별 리장후보자 자격 및 선출방법

한림읍은 귀덕2리, 한수리, 동명리 등 3개 마을은 개발위원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으로 리장을 선출하고 있으며 그 외 18개 마을은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리장을 선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당마을 출생자만 후보자 자격이 있는 마을은 한림3리, 대림리, 상명리, 월림리 등 4개 마을이나 한림3리는 1년이상 거주한자, 대림리는 10년 이상 거주한자, 상명리는 상명리에 주소를 두고 한림읍내 거주자, 월림리는 15년이상 거주해야 후보자가 될 수 있다. 3년 이상 거주자에게 후보자 자격이 있는 마을

은 귀덕2리이며 5년 이상은 한림2리, 강구리, 수원리, 명월리, 비양리 등 5개마을이다. 10년 이상은 한림1리, 귀덕1리, 귀덕3리, 동명리, 월령리 등 5개 마을, 20년 이상은 상대리, 금능리, 금악리 등 3개 마을이나 금능리는 해당마을 출생자는 3년만 경과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30년 이상은 협재리와 옹포리이나 협재리는 해당마을 출생자는 5년만 경과하면 자격이 있다. 한수리는 명시된 규정이 없다.

후보자 자격중 나이기준은 19세 ~ 35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수리와 옹포리는 명시된 규정이 없다. 19세 이상이면 후보자 자격이 있는 마을은 상명리이며, 20세 이상은 한림3리, 강구리, 동명리 등 3개 마을, 25세 이상은 한림1리, 상대리, 명월리, 금악리 등 4개 마을, 30세 이상은 한림2리, 귀덕1리, 귀덕2리, 귀덕3리, 수원리, 대림리, 금능리, 월림리, 월령리, 비양리 등 10개 마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35세 이상은 협재리이다. 리장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받는 마을은 귀덕1리이다.

리장이 임기는 2년 ~ 3년으로 귀덕3리, 한수리, 상대리, 금능리, 동명리, 월령리, 비양리 등 7개 마을은 3년, 그 외 14개 마을은 2년이다. 리장이 임기제도는 한수리와 금능리는 중임제, 한림1리, 한림3리, 강구리, 귀덕2리, 명월리, 상명리, 비양리 등 7개 마을은 연임제, 옹포리는 2회까지 연임 가능하다. 그 외 11개 마을은 1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리장직무 대행은 다수의 마을이 개발위원장이 대행하고 있으나 운영위원회가 조직된 한림2리, 귀덕3리, 동명리, 월령리, 협재리 등 5개 마을은 운영위원장이 대행하고 있다. 리장이 개발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마을은 여러 행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귀덕1리와 대림리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옹포리는 직전리장, 비양리는 개발위원장과 새마을지도자 2명을 직무대행자로 정하고 있다. 그 외 12개 마을은 개발위원장이 대행하고 있다.

리장후보자에 대한 추가 요건으로 마을주민 또는 개발위원회 추천서가 필요한 마을은 귀덕2리, 귀덕3리, 수원리, 명월리 등 4개 마을이나 수원리는 농협조합원만 후보자 자격이 있다. 동명리는 총회에 5회이상 참석하고 마을회 임원 2회이상 역임자, 월령리는 개발위원 2년이상 역임자, 한림1리는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연체가 없고 재산세 80,000원 이상 납부자라야 후보자가 될 수 있다. 그 현황은 <표 4-88>과 같다.

<표 4-88> 한림읍 마을별 리장후보자 출마자격 및 선출방법

마을명	거주기간 (년)	나이 (세)	선 거 기탁금	임 기 (년)	임기 제도	추가요건	선출 방법	직 무 대 행자
한림1리	10	25		2	연임	금융기관 채무 연체 없고, 재산세 80,000 원이상 납부자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한림2리	5	30		2	1회연임		직접선거	운영위원장
한림3리	본리출생자 (1)	20		2	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강구리	5	20		2	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귀덕1리	10	30	있음	2	1회연임		직접선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귀덕2리	3	30		2	연임	리민 15인이상 추천	추대	개발위원장
귀덕3리	10	30		3	1회연임	리민 10명이상 추천	직접선거	운영위원장
수원리	5	30		2	1회연임	리민 20인이상 추천 농협회원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대림리	본리출생자 (10)	30		2	1회연임		직접선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수리	규정없음	규정 없음		3	중임		추대	개발위원장
상대리	20	25		3	1회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금능리	20 (본리출생3) (타리출생17)	30		3	중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동명리	10	20		3	1회연임	총회 5회이상 참석, 임원 2회 이상 역임	추대	운영위원장
명월리	5	25		2	연임	개발위원 3인이상추천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상명리	본리출생자 (상명리에 주 소를 둔 한림 읍내 거주자)	19		2	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월림리	본리출생자 (15)	30		2	1회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월령리	10	30		3	1회연임	개발위원 2인이상역임	직접선거	운영위원장
협재리	30 (본리출생5) (타리출생25)	35		2	1회연임		직접선거	운영위원장
비양리	5	30		3	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새마을지도자
금악리	20	25		2	1회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옹포리	30	규정 없음		2	2회연임		직접선거	직선리장

애월읍은 어음1리, 하가리, 상귀리, 광령3리 등 4개 마을은 개발원위원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으로 리장을 선출하며 그 외 22개 마을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당마을 출생자만 리장 후보자 자격이 있는 마을은 금성리, 상가리, 고내리 등 3개마을이나 금성리는 주민등록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자, 상가리는 5년이상 거주자, 고내리는 10년이상 거주자에게 자격이 있다.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자격을 주고 있는 마을은 어음1리, 2년 이상은 봉성리, 납읍리, 용흥리 등 3개 마을, 3년 이상은 상귀리와 고성2리, 5년 이상은 애월리, 어음2리, 장전리, 유수암리, 중엄리, 하귀1리, 수산리, 고성1리, 광령1리, 광령2리 등 10개 마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0년 이상은 소길리, 구엄리, 하귀2리, 광령3리 등 4개 마을, 15년 이상은 신엄리, 20년 이상은 팍지리이다. 하가리는 추대로 리장을 선출하고 있어서 거주기간이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후보자 자격 중 나이기준은 25세 이상이 9개 마을로 많다. 금성리는 나이제한 없고, 용흥리는 규정이 없다. 중엄리는 애월읍에서 유일하게 25세 ~ 60세로 상한을 두고 있다. 19세 이상자에게 후보자 자격을 주고 있는 마을은 납읍리와 유수암리이며, 20세 이상은 하귀1리, 25세 이상은 애월리, 팍지리, 봉성리, 어음2리, 상가리, 하가리, 신엄리, 구엄리, 수산리 등 9개 마을, 30세 이상은 어음1리, 장전리, 고내리, 하귀2리, 고성1리, 고성2리, 광령1리, 광령3리 등 8개 마을, 35세 이상은 소길리와 상귀리, 40세 이상은 광령2리이다. 리장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을 받는 마을은 중엄리이다.

리장이 임기는 고내리와 상귀리는 3년, 그 외 24개 마을은 2년이다. 리장이 임기제도는 봉성리와 상가리는 중임제, 금성리, 어음1리, 어음2리, 하가리, 유수암리, 용흥리, 신엄리, 중엄리, 고내리, 광령1리, 광령2리, 광령3리 등 12개 마을은 연임제, 그 외 12개 마을은 1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리장 직무대행은 광령2리와 광령3리는 운영위원장, 그 외 24개 마을은 개발위원장이 대행하고 있다. 리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요건으로 납읍리는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출마자격이 있다. 그 현황은 <표 4-89>와 같다.

<표 4-89> 애월읍 마을별 리장후보자 출마자격 및 선출방법

마을명	거주기간 (년)	나이 (세)	선 거 기탁금	임 기 (년)	임기 제도	추가요건	선출 방법	직 무 대 행자
애월리	5	25		2	1회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곽지리	20	25		2	1회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금성리	본리출생자 (2)	제한 없음		2	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봉성리	2	25		2	중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어음1리	1	30		2	연임		추대	개발위원장
어음2리	5	25		2	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납읍리	2	19		2	1회연임	본인 또는 배우자명 의 주택보유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상가리	본리출생자 (5)	25		2	중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하가리	-	25		2	연임		추대	개발위원장
소길리	10	35		2	1회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장전리	5	30		2	1회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유수암리	5	19		2	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용흥리	2	규정 없음		2	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신엄리	15	25		2	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중엄리	5	25-65	있음	2	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구엄리	10	25		2	1회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고내리	본리출생자 (10)	30		3	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하귀1리	5	20		2	1회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하귀2리	10	30		2	1회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상귀리	3	35		3	1회연임		추대	개발위원장
수산리	5	25		2	1회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고성1리	5	30		2	1회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고성2리	3	30		2	1회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광령1리	5	30		2	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광령2리	5	40		2	연임		직접선거	운영위원장
광령3리	10	30		2	연임		추대	운영위원장

구좌읍은 상도리를 제외하고 5개 마을이 주민들이 직접투표로 리장을 직접 선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당마을 출생자만 후보자 자격이 있는 마을은 월정리이나 10년이상 거주해야 자격이 있다. 그 외 김녕리, 평대리, 세화리, 상도리, 종달리 등 5개 마을은 10년이상 거주한 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나 종달리는 해당마을 출생자는 5년만 경과하면 자격이 있다.

후보자의 자격중 나이기준은 25세 이상이면 후보자 자격이 있는 마을은 월정리와 세화리이며, 30세 이상은 김녕리와 평대리, 35세 이상은 상도리, 40세 이상은 종달리이다. 리장 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받는 마을은 김녕리, 월정리, 평대리, 세화리, 종달리 등 5개 마을이다.

리장이 임기는 김녕리 3년, 그 외 5개 마을은 모두 2년이다. 리장 임기제도는 김녕리는 단임제, 월정리, 평대리, 종달리 등 3개 마을은 1회 연임, 세화리와 상도리는 연임이 가능하다. 리장 직무대행은 상도리는 자연마을 동장중 연장자, 그 외 5개 마을은 개발위원장이다. 리장후보자에 대한 추가요건으로 월정리는 농협조합원, 평대리는 주민 추천서, 종달리는 마을을 상대로 분쟁이 있었던 자는 후보자 자격이 없다. 그 현황은 <표 4-90>과 같다.

<표 4-90> 구좌읍 마을별 리장후보자 출마자격 및 선출방법

마을명	거주기간 (년)	나이 (세)	선 거 기탁금	임 기 (년)	임기 제도	추가요건	선출 방법	직 무 대행자
김녕리	10	30	있음	3	단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월정리	본리출생자 (10)	25	있음	2	1회연임	농협조합원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평대리	10	30	있음	2	1회연임	각동별10명이상 추천(합30명)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세화리	10	25	있음	2	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상도리	10	35		2	연임		추대	수석동장 (연장자)
종달리	10 (본리출생5) (타지역출생5)	40	있음	2	1회연임	마을 상대로 분쟁이 없는 자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조천읍은 12개 마을 모두 주민들이 직접투표로 리장을 선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당마을 출생자만 후보자 자격이 있는 마을은 신흥리이나 주민등록 전입 후 5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3년이상은 신흥2리, 5년이상은 함덕리, 교래리, 신흥1리 등 3개 마을, 10년이상은 신촌리, 조천리, 와산리, 대흘2리 등 4개 마을이나 조천리는 해당마을 출생자는 5년만 경과하면 자격이 있다. 20년 이상은 와흘리와 대흘1리이며 30년 이상은 북촌리이나 해당마을 출생자는 10년만 경과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후보자 자격중 나이기준은 와산리, 교래리, 와흘리 등 3개 마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25세 이상자에게 후보자 자격을 주고 있는 마을은 신촌리, 조천리, 대흘1리 등 3개 마을, 30세 이상은 신흥리, 선흘2리, 대흘2리 등 3개 마을, 35세 이상은 함덕리와 선흘1리이며 북촌리는 40세 이상 기혼자로 정하고 있다. 리장 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받는 마을은 신촌리, 조천리, 함덕리, 북촌리, 교래리, 대흘2리 등 6개 마을이다.

리장이 임기는 3년으로 모두 같다. 리장임기 제도는 신촌리, 와산리, 대흘1리, 대흘2리 등 4개 마을은 연임제, 조천리, 신흥리, 북촌리, 교래리, 와흘리, 선흘1리, 선흘2리 등 7개 마을은 1회 연임, 함덕리는 중임제를 택하고 있다.

리장직무대행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와산리, 와흘리, 대흘1리, 대흘2리 등 4개 마을은 개발위원장, 신촌리, 선흘1리, 선흘2리 등 3개 마을은 개발위원회 부위원장, 조천리는 자연마을의 동장중 연장자, 신흥리는 개발위원중 1인, 함덕리는 구장중 연장자, 북촌리는 수석 개발위원, 교래리는 직전리장이 대행하고 있다.

리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요건으로 마을을 상대로 분쟁을 있었던 자에게 후보자 자격을 제한하는 마을은 신촌리, 조천리, 신흥리, 함덕리, 선흘2리, 대흘1리, 대흘2리 등 7개 마을이나 신흥리는 이 외에 마을포제에 1회이상 제관 참여 및 마을총회에 3년 기준 1회 이상 참여해야 후보자 자격이 있다. 그 외 대흘2리와 교래리는 마을임원 역임자, 함덕리는 청년회장, 구장, 개발위원 등 선출직 임원이 해임·파면된 경우 7년 이내는 후보자 자격이 없다. 그 현황은 <표 4-91>과 같다.

<표 4-91> 조천읍 마을별 리장후보자 출마자격 및 선출방법

마을명	거주기간 (년)	나이 (세)	선 거 기탁금	임 기 (년)	임기 제도	추가요건	선출 방법	직 무 대행자
신촌리	10	25	있음	3	연임	마을 상대로 분쟁이 없는자	직접선거	개발위원회 부위원장
조천리	10 (본리출신5) (타지역출신5)	25	있음	3	1회연임	마을 상대로 분쟁이 없는자	직접선거	동장 (연장자)
신흥리	본리출생자 (5)	30		3	1회연임	마을 상대로 분쟁이 없는자, 마을포제 1회이 상 제관 필한자, 총회 3년기준 2회이상 불참자	직접선거	개발위원중 1인



함덕리	5	35	있음	3	중임	마을 상대로 분쟁이 없는자, 청년회장, 구장, 개발위원등 선출직임원이 해임·파면된 경우 7년 미경과자	직접선거	구장 (연장자)
북촌리	30 (본리출신10) (타지역출신20)	40 (기혼자)	있음	3	1회연임		직접선거	수석개발위원
와산리	10	규정 없음		3	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교래리	5	규정 없음	있음	3	1회연임	마을임원 2회이상 역임자	직접선거	직선리장
와흘리	20	규정 없음		3	1회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선흘1리	5	35		3	1회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회 부위원장
선흘2리	3	30		3	1회연임	마을 상대로 소송이 없는자	직접선거	개발위원회 부위원장
대흘1리	20	25		3	연임	마을 상대로 분쟁이 없는자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대흘2리	10	30	있음	3	연임	마을 상대로 분쟁이 없는자 마을임원 3년이상 역임자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한경면은 금등리와 산양리가 개발위원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으로 리장을 선출하고 있으나 산양리는 자연마을 단위로 돌아가면서 리장을 선출하고 있어서 거주기간과 나이는 규정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 외 12개 마을은 주민들이 직접투표로 리장을 선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당마을 출생자만 후보자 자격이 있는 마을은 조수1리이나 7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3년이상 거주자에게 후보자 자격이 있는 마을은 용수리와 조수2리, 5년이상은 금등리, 신창리, 두모리, 판포리, 용당리 등 5개 마을, 7년 이상은 한원리, 10년 이상은 낙천리, 저지리, 청수리, 고산1리 등 4개 마을이다.

후보자의 자격중 나이기준은 금등리, 판포리, 용당리, 산양리, 조수2리 등 5개 마을은 규정이 없고, 20세 이상 거주해야 자격이 있는 마을은 낙천리이며, 25세 이상은 신창리, 두모리, 한원리, 저지리, 용수리, 조수1리 등 6개 마을, 30세 이상은 청수

리와 고산1리이다. 리장 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받는 마을은 없다.

리장이 임기는 청수리와 조수2리는 3년, 그 외 12개 마을은 2년이다. 리장 임기제도는 저지리와 청수리는 1회만 연임 가능하고 그 외 12개 마을은 연임 가능하다.

직무대행자는 14개 마을 모두 개발위원장이 대행하고 있다. 리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요건으로 마을임원을 역임해야 후보자 자격이 있는 마을은 금등리, 저지리, 고산1리 등 3개 마을, 용당리는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연체가 없어야 하며 고산1리는 투표결과 동수의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 현황은 <표 4-92>와 같다.

<표 4-92> 한경면 마을별 리장후보자 출마자격 및 선출방법

마을명	거주기간 (년)	나이 (세)	선 거 기탁금	임 기 (년)	임기 제도	추가요건	선출 방법	직 무 대행자
금등리	5	규정 없음		2	연임	개발위원등 마을 임원 역임자	추대	개발위원장
신창리	5	25		2	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두모리	5	25		2	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판포리	5	규정 없음		2	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한원리	7	25		2	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용당리	5	규정 없음		2	연임	금융기관채무에 대 한 연체 없어야 함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낙천리	10	20		2	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저지리	10	25		2	1회연임	개발위원역임자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청수리	10	30		3	1회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용수리	3	25		2	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산양리	규정 없음	규정 없음		2	연임	동별로 윤선 추대	추대	개발위원장
조수1리	본리출생자 (7)	25		2	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조수2리	3	규정 없음		3	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고산1리	10	30		2	연임	마을회임원 2회 이상 역임자 투표결과 동수인 경우 재투표 실시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추자면은 6개 모든 마을이 주민들이 직접투표로 리장을 선출하고 있고 리장후보자의 나이와 임기 또한 같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년이상 거주자에게 후보자 자격이 있는 마을은 예초리이며, 7년 이상은 영흥리, 10년 이상은 대서리, 묵리, 신양1리, 신양2리 등 4개 마을이다.

후보자 자격중 나이기준은 6개 마을 모두 30세 이상이나 대서리는 30 ~ 70세로 상한을 두고 있다. 리장 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받는 마을은 없다. 리장이 임기는 모두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한데 예초리와 신양1리는 1회까지만 연임가능하다.

리장 직무대행은 묵리와 신양2리는 개발위원장, 예초리와 신양1리는 운영위원장이 하고 대행하고 있다. 대서리는 마을회 임원이 회장, 부회장, 감사등으로 구성되어 부회장이 대행하고 있고 영흥리는 회장, 이사, 감사형태로 임원이 구성되어 이사가 리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리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요건은 없다. 그 현황은 <표 4-93>과 같다.

<표 4-93> 추자면 마을별 리장후보자 출마자격 및 선출방법

마을명	거주기간 (년)	나이 (세)	선 거 기탁금	임 기 (년)	임기 제도	추가요건	선출 방법	직 무 대행자
대서리	10	30~70		3	연임		직접선거	부회장
영흥리	7	30		3	연임		직접선거	이사
묵리	10	30		3	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예초리	3	30		3	1회연임		직접선거	운영위원장
신양1리	10	30		3	1회연임		직접선거	운영위원장
신양2리	10	30		3	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우도면은 4개 마을 모두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리장을 선출하고 있으며 리장의 임기, 임기제도, 직무대행자, 선거유형 등도 동일하다. 선거 기탁금도 4개 마을 모두 납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당마을 출생자만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마을은 천진리이나 범위를 넓혀 우도면 출생자로 5년이상 거주하면 후보자가 될 수 있다. 후보자의 거주기간은 다른 마을에 비해 비교적 짧은 2년 ~ 5년만 거주하면 후보자 자격이 주어 지는데 조일리는 2년이상 거주자, 서광리는 3년이상 거주자, 오봉리는 5년이상 거주자에게 후보자 자격이 있다.

리장 후보자 자격중 나이기준은 서광리는 나이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 그 사유를 유권자가 선택할 사항이라 밝히고 있으며, 천진리는 25세, 오봉리는 30세, 조일리는 35세 이상자는 자격이 있다.

선거기탁금은 천진리, 서광리, 조일리, 오봉리 등 4개 마을 모두 납부하고 있다. 리장이 임기는 4개 마을 모두 3년이고 연임가능하다. 직무대행자도 4개 마을 모두 개발위원장이 대행하고 있다. 그 현황은 <표 4-94>와 같다.

<표 4-94> 우도면 마을별 리장후보자 출마자격 및 선출방법

마을명	거주기간 (년)	나이 (세)	선 거 기탁금	임 기 (년)	임기 제도	추가요건	선출 방법	직 무 대행자
천진리	우도면 출생자 (5)	25	있음	3	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서광리	3	제한 없음	있음	3	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조일리	2	35	있음	3	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오봉리	5	30	있음	3	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 2) 서귀포시 읍·면지역 마을별 리장후보자 자격 및 선출방법

대정읍은 리장이 임기가 3년으로 모두 같고 상모2리, 일과1리, 동일2리, 영락리, 구역리, 신도1리, 신도3리 등 7개 마을은 개발위원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으로 리장을 선출하고 있는데 상모2리는 자연마을 동별로 돌아가면서 리장을 추대하여 선출하고 있다. 그 외 15개 마을은 주민들이 직접투표로 리장을 선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당마을 출생자만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마을은 없다. 2년이상 거주자에게 후보자 자격이 있는 마을은 동일2리와 영락리이며, 3년 이상은 일과1리, 가파리, 신도3리 등 3개 마을, 5년 이상은 상모1리, 무릉1리, 동일1리, 신도1리, 마라리 등 5개 마을이나 마라리는 정리민 자격 취득후 5년이다. 마라리의 정리민 취득자격은 해당마을 출생자는 전입 후 본인소유의 집에 거주하면 2년, 타인의 집에 거주하면 5년이 경과해야 정리민이 되며, 타지역출생 전입자는 본인 소유의 주

택에 10년 이상 거주해야 정리민이 될 수 있으므로 리장 후보자가 되려면 해당마을 출생자는 최소한 7년, 타지역 거주자는 15년이상 거주해야 후보자가 될 수 있다.

10년 이상은 상모2리, 상모3리, 하모1리, 하모2리, 하모3리, 무릉2리, 구역리 등 7개 마을, 20년 이상은 보성리, 30년 이상은 안성리와 신평리이나 안성리는 회원(1950년 당시 해당마을 출생자 또는 배우자 및 후손, 당시 거주자와 배우자 및 후손) 자격을 갖춘 자는 후보자 자격이 주어지나 타지역출생 전입자는 30년이 경과해야 후보자 자격이 있다. 그 외 인성리와 일과2리는 거주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

후보자 자격중 나이기준은 25세 이상자에게 후보자 자격을 주고 있는 마을은 가파리이며 30세 이상은 일과1리와 마라리이나 마라리는 30세 ~ 70세로 상한을 두고 있다. 35세 이상은 하모1리, 동일1리, 영락리 등 3개 마을이나 하모1리는 35세 이상인 기혼자로 정하고 있다. 40세 이상은 하모2리와 구역리이며 그 외 상모1리 상모2리, 상모3리, 하모3리, 안성리, 인성리, 일과2리, 무릉1리, 무릉2리, 신평리, 동일2리, 보성리, 신도1리, 신도3리 등 14개 마을은 나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선거기탁금은 일과1리만 납부하고 있으며 리장이 임기는 22개 모든 마을이 3년으로 같다.

리장이 임기제도는 일과2리만 연임이 가능하고 상모1리, 상모2리, 가파리 등 3개 마을은 1회 연임, 그 외 18개 마을은 단임제를 택하고 있다.

리장 직무대행은 하모1리, 일과1리, 가파리 등 3개 마을은 개발위원장이 대행하고 있고 그 외 마을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안성리, 인성리, 보성리, 구역리 등 4개 마을은 부이장, 무릉1리는 감사, 일과2리와 영락리는 자연마을의 동장, 무릉2리, 동일1리, 신도3리 등 3개 마을은 개발위원 중 수석개발위원 또는 연장자, 상모2리는 직전리장, 하모3리는 임원회의에서 대행자 선정, 마라리는 잔여기간이 1년미만이면 개발위원장, 1년이상이면 재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그 외 상모1리, 상모3리, 하모2리, 신평리, 동일2리, 신도1리 등 6개 마을은 규정된 내용이 없다.

리장후보자에 대한 추가 요건으로 일정규모 이상이 리민 추천서가 필요한 마을은 상모3리이며 마을임원을 역임해야 자격 있는 마을은 보성리, 구역리, 신평리 등 3개 마을이다. 단독후보라도 마을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마을은 하모1리, 일과1리, 무릉1리, 가파리, 마라리, 신도3리 등 6개 마을이나 가파리는 마을재산 파손 및 손해를 가한자는 후보자 자격이 없고 마라리는 리장 투표결과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현황은 <표 4-95>와 같다.

<표 4-95> 대정읍 마을별 리장후보자 출마자격 및 선출방법

마을명	거주기간 (년)	나이 (세)	선 거 기탁금	임 기 (년)	임기 제도	추가요건	선출 방법	직 무 대행자
상모1리	5	규정 없음		3	1회연임		직접선거	규정없음
상모2리	10	규정 없음		3	1회연임	동별로 윤선 추대 로 선출	추대	직전리장
상모3리	10	규정 없음		3	단임	리민 5인이상 추천	직접선거	규정없음
하모1리	10	35 (기혼자)		3	단임	단독후보도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하모2리	10	40		3	단임		직접선거	규정없음
하모3리	10	규정 없음		3	단임		직접선거	임원회의에 서대행자 선출
안성리	30 (회원자격을 갖춘 자) (타지역출신)	규정 없음 (회 원 자격을 갖춘 자)		3	단임		직접선거	부이사
인성리	규정 없음	규정 없음		3	단임		직접선거	부이사
일과1리	3	30	있음	3	단임	단독후보도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	추대	개발위원장
일과2리	규정 없음	규정 없음		3	연임		직접선거	동장 (상동장)
무릉1리	5	규정 없음		3	단임	단독후보도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	직접선거	감사
무릉2리	10	규정 없음		3	단임		직접선거	수석 개발위원
가파리	3	25		3	1회연임	단독후보도 총회에서 32 이상 찬성 마을재산 파손 및 손해를 가한 자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마라리	5 (정리민자격 취득 후)	30~70		3	단임	단독후보도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재선거 실시	직접선거	1년 미만: 개발위원장 1년이상: 재선거
신평리	30	규정 없음		3	단임	마을임원 역임자	직접선거	규정없음
동일1리	5	35		3	단임		직접선거	수석 개발위원

동일2리	2	규정 없음		3	단임		추대	규정없음
보성리	20	규정 없음		3	단임	개발위원 역임자	직접선거	부이사장
영락리	2	35		3	단임		추대	동장 (수석동장)
구역리	10	40		3	단임	마을임원역임자	추대	부이사장
신도1리	5	규정 없음		3	단임		추대	규정없음
신도3리	3	규정 없음		3	단임	마을총회에서 추 대하고 주민찬반 투표로 결정.	추대	개발위원 중 연장자

남원읍은 남원1리와 태흥3리가 개발위원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으로 리장을 선출하고 있으나 남원1리는 자연마을별로 운선에 의해 선출하고 있고 태흥3리는 현재 리장이 다음리장을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하는 형태로 선출되고 있는데 거주기간과 나이는 명시된 규정이 없다. 그 외 6개 마을은 주민들이 투표에 의해 리장을 선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당마을 출생자만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마을은 없다. 5년 이상 거주자에게 자격이 주고 있는 마을은 남원1리, 신례1리, 의귀리 등 3개 마을, 10년 이상은 수망리와 신흥2리, 15년 이상은 위미1리이나 해당마을 출생자는 5년만 경과하면 후보자 자격이 있다. 태흥2리와 태흥3리는 거주기간에 대한 명시된 내용이 없다.

후보자 자격중 나이기준은 태흥2리가 19세 이상자로 가장 낮으며 35세 이상은 남원1리, 수망리, 의귀리, 신흥2리 등 4개 마을, 40세 이상은 위미1리와 신례1리이다. 리장 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받는 마을은 남원1리, 태흥2리, 위미1리 등 3개 마을이다. 리장이 임기는 8개 마을 모두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리장 직무대행은 태흥3리와 신흥2리는 개발위원장, 남원1리, 태흥2리, 수망리 등 3개 마을은 수석개발위원, 위미1리, 신례1리, 의귀리 등 3개 마을은 새마을지도자중 연장자가 대행하고 있다. 리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요건으로 신례1리는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는 회원 20명의 추천서, 의귀리는 마을회 임원을 역임하고 선거권자 10명 이상 추천서, 수망리의 리장후보자는 마을회 회원이나 배우자가 아니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현황은 <표 4-96>과 같다.

<표 4-96> 남원읍 마을별 리장후보자 출마자격 및 선출방법

마을명	거주기간 (년)	나이 (세)	선 거 기탁금	임 기 (년)	임기 제도	추가요건	선출 방법	직 무 대행자
남원1리	5	35	있음	2	연임	동별로 윤선 리장 추천	추대	수석 개발위원
태흥2리	규정 없음	19	있음	2	연임		직접선거	수석 개발위원
태흥3리	규정 없음	규정 없음		2	연임	현리장이 다음 리장 추천 총회에서 인준	추대	개발위원장
위미리	15 (본리출산5) (타지역출산10)	40	있음	2	연임		직접선거	새마을지도 자중 연장자
신례리	5	40		2	연임	리 운영비 납부회 원 20명 추천	직접선거	새마을지도 자중 연장자
수망리	10	35		2	연임	마을회 회원 및 배 우자에 한함	직접선거	수석 개발위원
의귀리	5	35		2	연임	마을회 임원 역안자, 선거권자 10명이상 추천	직접선거	새마을지도 자중 연장자
신흥2리	10	35		2	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성산읍은 수산1리, 수산2리, 온평리 등 3개 마을은 개발위원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으로 리장을 선출하며 그 외 9개 마을은 주민들이 투표에 의해 리장을 선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당마을 출생자만 후보자 자격이 있는 마을은 없다. 난산리는 3년 이상 거주자에게 후보자 자격이 있고 5년 이상은 시흥리와 신양리, 10년 이상은 오조리, 고성리, 수산1리, 신산리 등 4개 마을이나 오조리는 해당마을 출생자는 3년만 경과하면 자격을 주어지나 부부가 같이 거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5년 이상은 신평리, 20년 이상은 성산리와 온평리이나 온평리는 해당마을 출생자는 10년만 경과하면 자격이 있다. 30년 이상은 수산2리와 신천리이나 신천리는 해당마을 출생자는 10년만 경과하면 후보자 자격이 있다.

리장 후보자 자격중 나이기준은 난산리가 18세로 가장 낮고 30세 이상은 신산리와 신천리, 35세 이상은 시흥리, 40세 이상은 신양리, 45세 이상은 성산리이다. 그 외 오조리, 고성리, 수산1리, 수산2리, 온평리, 신평리 등 6개 마을은 나이에 대한 규정된 내용이 없다. 리장 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받는 마을은 성산리, 오조리, 시흥



리, 고성리, 신양리, 신산리, 신천리, 난산리 등 8개 마을이다. 리장이 임기는 고성리, 신양리, 수산1리, 수산2리, 난산리 등 5개 마을은 2년 그 외 7개 마을은 3년이다.

리장이 임기제도는 성산리, 오조리, 시흥리, 신산리, 신평리, 신천리 등 6개 마을은 단임제를 택하고 있으나 오조리는 리장 희망자가 없으면 1년 유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수산2리, 온평리, 난산리 등 3개 마을은 연임이 가능하며 그 외 고성리, 신양리, 수산1리 등 3개 마을은 1회 연임이다.

리장 직무대행은 고성리는 개발위원회 부위원장, 온평리는 새마을지도자중 연장자, 신산리는 리부위원장과 사무국장제를 두고 있어서 리부위원장이 대행하고 있다. 그 외 성산리, 오조리, 시흥리, 신양리, 수산1리, 수산2리, 신천리, 난산리 등 8개 마을은 개발위원장, 신평리는 운영위원장이 대행하고 있다. 그 현황은 <표 4-97>과 같다.

<표 4-97> 성산읍 마을별 리장후보자 출마자격 및 선출방법

마을명	거주기간 (년)	나이 (세)	선 거 기탁금	임 기 (년)	임기 제도	추가요건	선출 방법	직 무 대행자
성산리	20	45	있음	3	단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오조리	10 (본리출신3) (타지역출신7) *부부합산거주	규정 없음	있음	3	단임	희망자 없을시 1년 유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시흥리	5	35	있음	3	단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고성리	10	규정 없음	있음	2	1회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회 부위원장
신양리	5	40	있음	2	1회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수산리	10	규정 없음		2	1회연임		추대	개발위원장
수산2리	30	규정 없음		2	연임		추대	개발위원장
온평리	20 (본리출신10) (타지역출신10)	규정 없음		3	연임		추대	새마을지도 자중 연장자
신산리	10	30	있음	3	단임		직접선거	리부위원장
신평리	15	규정 없음		3	단임		직접선거	운영위원장

신천리	30 (본리출선10) (타리출선3)	30	있음	3	단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난산리	3	18	있음	2	연임		직접선거	개발위원장

안덕면은 5개 마을 모두 주민들이 투표로 리장을 직접 선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당마을 출생자만 후보자 자격이 있는 마을은 서광동리이나 15년 이상 거주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5년이상 거주자에게 후보자 자격이 있는 마을은 대평리이며, 7년 이상은 창천리, 10년 이상은 감산리와 사계리이다.

후보자의 자격중 나이기준은 25세 이상자에게 자격이 있는 마을은 감산리, 30세 이상은 창천리, 40세 이상은 사계리이다. 대평리와 서광동리는 규정된 내용이 없다. 리장 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받는 마을은 없다. 리장이 임기는 5개 마을 모두 2년이며 사계리와 서광동리는 연임이 가능하며 그 외 창천리, 대평리, 감산리 등 3개 마을은 1회 연임이다.

리장직무대행은 창천리, 대평리, 감산리 등 3개 마을은 새마을지도자, 사계리는 부이장, 서광동리는 마을회 총무가 대행하고 있다. 리장 후보자의 추가요건으로 서광동리는 마을총회에 3회 이상 불참하면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그 현황은 <표 4-98>과 같다.

<표 4-98> 안덕면 마을별 리장후보자 출마자격 및 선출방법

마을명	거주기간 (년)	나이 (세)	선 거 기탁금	임 기 (년)	임기 제도	추가 요건	선출 방법	직 무 대행자
창천리	7	30		2	1회연임		직접선거	새마을지도자
대평리	5	규정 없음		2	1회연임		직접선거	새마을지도자
감산리	10	25		2	1회연임		직접선거	새마을지도자
사계리	10	40		2	연임		직접선거	부이장
서광동리	본리출생자 (15)	규정 없음		2	연임	마을총회 3회 이상 불참자	직접선거	마을회 총무

표선면은 10개 마을 모두 주민들이 투표로 리장을 직접 선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당마을 출생자만 후보자 자격이 있는 마을은 없다. 5년이상 거주자

에게 후보자 자격이 있는 마을은 하천리와 세화3리이며, 10년 이상은 표선리, 성읍1리, 성읍2리, 가시리, 세화1리, 세화2리, 토산1리 등 7개 마을로 가장 많고, 20년 이상은 토산2리이다.

후보자 자격 중 나이기준은 20세 이상자에게 후보자 자격 있는 마을은 토산1리이며, 25세 이상은 표선리, 30세 이상은 하천리와 세화3리, 35세 이상은 가시리, 세화1리, 세화2리, 토산2리 등 4개 마을, 40세 이상은 성읍1리, 성읍2리는 후보자 나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리장 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받는 마을은 표선리, 하천리, 성읍1리, 가시리, 세화2리, 토산1리 등 6개 마을이다.

리장이 임기는 표선리, 성읍1리, 가시리, 세화1리, 세화3리 등 5개 마을은 3년이고 그 외 5개 마을은 2년이다. 리장이 임기제도는 하천리, 성읍2리, 세화3리 등 3개 마을은 연임, 표선리, 성읍1리, 가시리, 세화1리 등 4개 마을은 단임제, 세화2리, 토산1리, 토산2리 등 3개 마을은 1회 연임이다.

리장 직무대행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천리와 성읍1리는 개발위원회 부위원장, 성읍2리, 세화2리, 토산2리 등 3개 마을은 새마을지도자, 표선리는 자연마을의 동장 중 수석동장, 가시리는 선출직 개발위원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그리고 리장이 잔여임기에 따라 대행자를 달리하고 있는 마을은 세화1리, 세화3리, 토산2리 등 3개 마을이나 세화1리와 세화3리는 잔여기간이 6개월이상이면 총회에서 대행자를 선출하고 6개월미만이면 개발위원회에서 대행자를 선출하며, 토산2리는 잔여기간이 6개월이상이면 총회에서 선출하고 6개월미만이면 새마을지도자가 대행한다.

리장 후보자의 추가요건으로 마을회 임원을 역임해야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마을은 표선리, 하천리, 성읍1리, 성읍2리 등 4개 마을이나, 성읍1리는 이에 더하여 자문위원, 성읍민속마을보존회 임원 및 임기내 사퇴·해임된 임원과 마을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했던 자는 후보자 자격이 없고, 리장 투표시 투표인수가 40명 미만이면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 현황은 <표 4-99>와 같다.

<표 4-99> 표선면 마을별 리장후보자 출마자격 및 선출방법

마을명	거주기간 (년)	나이 (세)	선 거 기탁금	임 기 (년)	임기 제도	추가요건	선출 방법	직 무 대행자
표선리	10	25	있음	3	단임	마을임원 역임자	직접선거	수석동장 (연장자)
하천리	5	30	있음	2	연임	마을임원 역임자	직접선거	개발위원회 부위원장
성읍1리	10	40	있음	3	단임	반장포함 임원직 3 년이상 역임자, 자문위원, 성읍민 속마을보존회 임원 및 임기내 사퇴·해 임된 임원, 마을 상대로 소송 이 없는 자, 40인미만 투표시 선거무효.	직접선거	개발위원회 부위원장
성읍2리	10	규정 없음		2	연임	마을임원 역임자	직접선거	새마을지도자
가시리	10	35	있음	3	단임		직접선거	선출직개발위 원총연장자
세화1리	10	35		3	단임		직접선거	잔여기 6개 월상: 총회 6개월미만 : 개발위원회
세화2리	10	35	있음	2	1회연임		직접선거	새마을지도자
세화3리	5	30		3	연임		직접선거	잔여기 6개 월상: 총회 6개월미만: 개발위원회
토산1리	10	20	있음	2	1회연임		직접선거	잔여기 6개 월상: 총회 6개월미만 : 새마을지도자
토산2리	20	35		2	1회연임		직접선거	새마을지도자

제주의 읍·면지역 마을별 리장후보자의 자격 및 선출방법등을 종합해보면 마을에서 출생한자가 아니면 리장후보자 자격이 없는 마을은 12개 마을로 전체마을의 8.2%를 차지한다. 그리고 전입자를 기준으로 10년이상 거주해야 리장 후보자 자격이 있는 마을은 48개 마을로 전체 마을의 32.9%로 비중이 크고 5년 이상 37개 마

을, 3년 이상 12개 마을 순이다. 해당마을 출생자가 아니면 길게는 30년 이상 거주해야 후보자 자격이 있는 마을도 6개 마을이나 되며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후보자 자격이 있는 마을은 6개 마을뿐이다. 이는 마을 대표자는 마을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자가 선출되어야 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 현황은 <표 4-100>과 같다.

<표 4-100>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리장후보자 거주기간

(단위 : 마을수)

구분	계	마을 출생자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30년	규정 없음
계	146	12	1	6	12	37	3	48	3	10	6	8
제주시	89	11	1	4	8	24	2	26	1	6	3	3
서귀포시	57	1	0	2	4	13	1	22	2	4	3	5

리장 후보자 자격중 나이규정을 살펴보면 30세 이상자에게 자격이 있는 마을이 40개 마을로 전체 읍·면지역 마을의 27.4%로 가장 많고, 25세 이상은 36개 마을, 35세 이상 20개 마을 순이다. 그리고 제주시 읍·면지역의 경우 나이제한을 두지 않은 마을이 2개 마을이며 서귀포시 읍·면지역은 17개 마을이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리장 후보자 등록시 공탁금을 납부하는 마을은 전체마을의 24%인 35개 마을이다. 제주시 읍·면지역이 17개 마을,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18개 마을로 비율로 보면 서귀포시 읍·면지역 31.6%로 제주시 읍·면지역보다 많다. 공탁금은 리에 소속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책정하며 20만원 ~ 500만원까지 납부하고 있는데 200만원 이하 납부하는 마을이 32개 마을로 다수이나 공직선거법에 의한 시·도의회의원선거 기탁금보다 많은 500만원을 납부하는 마을도 3개 마을이나 된다.

공탁금은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마을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등 선거사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며 잔액은 마을로 귀속된다. 제주시 지역은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지역, 서귀포시 지역은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지역에서 공탁금을 납부하는 마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선거관리 규정 또한 선거인과 피선거인의 자격, 후보자 기호결정,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합동 소견 발표회,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 위반자에 대한 징계, 투표소 설치, 참관인 선정, 당선인 결정, 취임식까지 시·도의회의원선거에 버금가는 방식으로 마을 대표를 선출하고 있다. 그 현황은 <표 4-101>과 같다.

<표 4-101>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리장후보자 나이

(단위 : 마을수)

구분	계	18세	19세	20세	25세	30세	35세	40세	45세	제한 없음	규정 없음	공탁금
계	146	1	4	7	36	40	20	10	1	2	25	35
제주시	89	0	3	5	29	32	7	3	0	2	8	17
서귀포시	57	1	1	2	7	8	13	7	1	0	17	18

리장이 임기는 2년을 택하고 있는 마을이 77개 마을, 3년 69개 마을로 비슷하다. 임기제도는 연임제를 택하고 있는 마을이 전체마을의 43.2%인 63개 마을로 가장 많고, 1회 연임 48개 마을, 단임제 29개 마을순이다. 두 지역을 비교해 볼 때 제주시 읍·면지역은 연임제를 택하고 있는 마을이 많고 서귀포시 읍·면지역은 전체 마을의 49%에 해당하는 28개 마을이 단임제를 택하고 있다.

리장 선출방법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직접선출이 124개 마을, 개발위원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인준하는 형식이 22개 마을로 직접선출방식이 많다. 리장 직무대행은 개발위원장이 대행하는 마을이 78개 마을로 전체마을이 53.4%를 차지하고 있으나 서귀포시 읍·면지역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개발위원장이 대행하는 마을은 13개 마을로 전체 마을의 22.8%, 개발위원회 관련자 10개 마을, 새마을지도자 관련자 9개 마을, 부이장 5개 마을, 기타 규정이 없거나 자연마을의 동장이 대행하고 있는 마을이 19개 마을이다. 그 현황은 <표 4-102>와 같다.

<표 4-102>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리장 임기 및 선출방법

(단위 : 마을수)

구분	임기		임기제도					선출방법		직무대행자						
	2년	3년	단임	중임	연임	1회연임	기타	추대	직접선출	개발위원장	운영위원장	개발위원장	발원관련자	새마을도관자	마지자관자	부이사관
계	77	69	29	5	63	48	1	22	124	78	10	15	10	5	28	
제주시	55	34	1	5	46	36	1	10	79	65	9	5	1	0	9	
서귀포시	22	35	28	0	17	12	0	12	45	13	1	10	9	5	19	

## 7. 향약 제·개정 현황

마을별 향약은 맨 앞장 전문이나 총칙 목적조항에 마을의 설촌 유래와 함께 원활한 리정 운영 및 주민화합, 리정의 발전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제정취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행정구조개편으로 행정리가 새롭게 분리되고 통합되면서 새롭게 제정되고 있는데 개정시 또한 개정사유와 마을총회를 거쳐 개정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부칙으로 제·개정일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집된 향약은 제·개정 원본이 아닌 마을주민 회람 및 회의용으로 이용된 향약으로 제·개정일이 누락되어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 1) 제주시 읍·면지역 마을 향약 제·개정 현황

한림읍은 1990년대 제정된 마을향약이 8개 마을로 가장 많다. 제정시기가 가장 오래된 향약은 1963년 제정된 강구리와 금능리 향약이며, 가장 늦게 제정된 향약은 한림3리 향약으로 2010년 2월 19일 제정되었다. 개정횟수가 가장 많은 향약은 대림리와 금능리 향약으로 9회 개정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림1리 향약은 1991년 2월 27일 제정 이후 1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0년 2월 22일이다. 한림2리 향약은 1998년 1월 23일 제정 이후 5회

개정되었고 최종개정일은 2018년 1월 27일이다. 한림3리 향약은 2010년 2월 19일 제정 이후 3회 개정되었는데 최종개정일은 2015년 1월 23일이다. 강구리 향약은 1963년 제정 이후 2회 개정되었고 최종개정일은 2013년 2월 15일이다.

귀덕1리 향약은 1982년 12월 18일 제정 이후 8회 개정되었는데 최종개정일은 2018년 2월 2일이다. 귀덕2리 향약은 1999년 1월 20일 제정 이후 2회 개정되었고 최종개정일은 2008년 1월 18일이다. 귀덕3리 향약은 2006년 12월 21일 제정 이후 3회 개정되었고 최종개정일은 2017년 1월 1일이다. 수원리 향약은 1998년 2월 제정 이후 4회 개정되었는데 최종개정일은 2017년 2월 10일이다. 대림리 향약은 1998년 2월 27일 제정 이후 9회 개정되었는데 최종개정일은 2016년 1월 22일이다. 한수리의 향약은 1974년 1월 제정 이후 1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1996년 1월 1일이다. 상대리 향약은 2002년 2월 1일 제정되었으나 최종개정일은 명시되지 않았다. 금능리의 향약은 1963년 2월 13일 제정 이후 9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1년 1월 28일이다.

동명리의 향약은 1995년 2월 1일 제정 이후 7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7년 11월 24일이다. 명월리의 향약은 제정일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2017년 1월 20일 최종 개정 되었다. 상명리의 향약은 1995년 2월 23일 제정 이후 6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8년 3월 6일이다. 월림리의 향약은 1981년 1월 26일 제정 이후 2회 개정되었고 최종개정일은 2013년 1월 31일이다. 월령리의 향약은 제정일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2002년 2월 28일 개정기록 이후 6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9년 1월 26일이다.

협재리의 향약은 1974년 6월 24일 제정 이후 4회 개정되었고 최종개정일은 2014년 10월 24일이다. 비양리 향약은 1999년 10월 제정 이후 1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0년 2월 1일이다. 금악리의 향약은 2002년 2월 1일 제정 이후 6회 개정되었는데 최종개정일은 2013년 12월 15일이다. 용포리의 향약은 1972년 2월 9일 제정 이후 5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5년 1월 31일이다. 그 현황은 <표 4-103>과 같다.



<표 4-103> 한림읍 마을별 향약 제·개정 현황

마을명	1959 년이전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대	제정일	최종 개정일	개정 회수
한림1리					○			1991. 2. 27	2010. 2. 22	1
한림2리					○			1998. 1. 23	2018. 1. 27	5
한림3리							○	2010. 2. 19	2015. 1. 23	3
강구리		○						1963.	2013. 2. 15	2
귀덕1리				○				1982.12. 18	2018. 2. 2	8
귀덕2리					○			1999. 1. 20	2008. 1. 18	2
귀덕3리						○		2006.12. 21	2017. 1. 1	3
수원리					○			1998. 2.	2017. 2. 10	4
대림리					○			1998. 2. 27	2016. 1. 22	9
한수리			○					1974. 1.	1996. 1. 1	1
상대리						○		2002. 2. 1	-	
금능리		○						1963. 2. 13	2011. 1. 28	9
동명리					○			1995. 2. 1	2017. 11. 24	7
명월리								-	2017. 1. 20	
상명리					○			1995. 2. 23	2018. 3. 6	6
월림리				○				1981. 1. 26	2013. 1. 31	2
월령리								-	2019. 1. 26	6
협재리			○					1974. 6. 24	2014. 10. 24	4
비양리					○			1999. 10.	2010. 2. 1	1
금악리						○		2002. 2. 1	2013.12. 15	6
옹포리			○					1972. 2. 9	2015. 1. 31	5

애월읍은 한림읍과는 달리 1980년대에 제정된 향약이 8개 마을로 많다. 제정시기가 오래된 향약은 1960년 2월 1일 제정된 광령1리 향약이며 가장 늦게 제정된 향약은 2005년 12월 21일에 제정된 장진리 향약이다. 개정횟수가 가장 많은 향약은 고내리 향약으로 9회 개정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애월리 향약은 1981년 2월 4일 제정 이후 7회 개정되어 최종 개정일은 2017년 12월 24일이다. 광지리 향약은 1983년 1월 22일 제정 이후 8회 개정되어 최종 개정일은 2018년 12월 22일이다. 금성리 향약은 1974년 6월 10일 제정되었고 최종 개정일은 2008년 12월 24일이다. 봉성리 향약은 1980년 2월 14일 제정되었으나 최종 개정일은 명시되지 않았다. 어음1리 향약은 1982년 12월 30일 제정되었고 최종 개정일은 2018년 11월 1일이다. 어음2리 향약은 2003년 3월 12일 제정 이후 5회 개정되어 최종 개정일은 2018년 12월 31일이다.

남읍리 향약은 1994년 1월 25일 제정 이후 4회 개정되어 2016년 12월 22일 최종 개정되었다. 상가리 향약은 1972년 10월 제정 이후 3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7년 12월 23일이다. 하가리 향약은 1999년 1월 1일, 소길리 향약은 1998년 1월 제정 기록이 있으나 최종개정일은 명시되지 않았다. 장전리 향약은 2005년 12월 21일 제정 이후 6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8년 12월 25일이다.

유수암리 향약은 1980년 1월 10일 제정 이후 4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5년 12월 20일이다. 용흥리 향약은 1984년 5월 8일 제정 이후 2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5년 1월 2일이다. 신엄리 향약은 1981년 2월 28일 제정되었고 6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7년 1월 1일이다. 중엄리 향약은 1965년 1월 10일 제정 이후 3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1년 1월 16일이다. 구엄리 향약은 1999년 1월 1일 제정되었으나 최종개정일은 명시되지 않았다.

고내리 향약은 1980년 4월 28일 제정 이후 9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5년 12월 28일이다. 하귀1리 향약은 1975년 2월 2일 제정 이후 3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7년 12월 31일이다. 하귀2리 향약은 1973년 2월 20일 제정되었고 8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3년 12월 29일이다. 상귀리 향약은 1960년 제정 이후 3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7년 12월 24일이다. 수산리 향약은 1996년 12월 20일 제정되었으나 최종개정일은 명시되지 않았다.

고성1리 향약은 1978년 1월 20일 제정 이후 4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1년 12월 25일이다. 고성2리 향약은 제정일과 개정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광령1리 향약은 1960년 2월 1일 제정 이후 1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1998년 1월 1일이다. 광령2리 향약은 제정일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최종개정일은 2017년 12월 27일이다. 광령3리 향약은 1990년 6월 1일 제정되었으나 최종개정일은 명시되지 않았다. 현황은 <표 4-104>와 같다.

<표 4-104> 애월읍 마을별 향약 제·개정 현황

마을명	1959 년 이전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대	제정일	최종 개정일	개정 회수
애월리				○				1981. 2. 4	2017. 12. 24	7
곽지리				○				1983. 1. 22	2018. 12. 22	8
금성리			○					1974. 6. 10	2008. 12. 24	

봉성리				○			1980. 2. 14	-	
어음리				○			1982. 12. 30	2018. 11. 1	
어음2리						○	2003. 3. 12	2018. 12. 31	5
납읍리					○		1994. 1. 25	2016. 12. 22	4
상가리			○				1972. 10.	2017. 12. 23	3
하가리					○		1999. 1. 1	-	
소길리					○		1998. 1.	-	
장전리						○	2005. 12. 21	2018. 12. 25	6
유수암리				○			1980. 1. 10	2015. 12. 20	4
용흥리				○			1984. 5. 8	2015. 1. 2	2
신엄리				○			1981. 2. 28	2017. 1. 1	6
중엄리		○					1965. 1. 10	2011. 1. 16	3
구엄리					○		1999. 1. 1	-	
고내리				○			1980. 4. 28	2015. 12. 28	9
하귀1리			○				1975. 2. 2	2017. 12. 31	3
하귀2리			○				1973. 2. 20	2013. 12. 29	8
상귀리		○					1960.	2017. 12. 24	3
수산리					○		1996. 12. 20	-	
고성1리			○				1978. 1. 20	2011. 12. 25	4
고성2리							-	-	
광령1리		○					1960. 2. 1	1998. 1. 1	1
광령2리							-	2017. 12. 27	
광령3리					○		1990. 6. 1	-	

구좌읍은 6개 마을 중 3개 마을향약이 1990년대 제정되었고 가장 늦게 제정된 향약은 1998년 2월 1일 제정된 평대리 향약이다. 6개 마을 중 개정횟수가 가장 많은 향약은 종달리 향약으로 14회 개정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김녕리 향약은 제정일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2018년 1월 31일 최종개정일이 명시되어 있다. 월정리 향약은 1996년 1월 15일 제정 이후 4회 개정되었는데 최종개정일은 2019년 1월 25일이다. 평대리 향약은 1998년 2월 1일 제정 이후 4회 개정되었고 최종개정일은 2019년 1월 29일이다. 세화리 향약은 1980년 9월 제정 이후 13회 개정되었는데 최종개정일은 2019년 6월 15일이다. 상도리 향약은 1989년 3월 13일 제정 이후 2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08년 12월 28일이다. 종달리 향약은 1990년 1월 23일 제정 이후 14회 개정되었고 최종개정일은 2016년 3월 18일이다. 그 현황은 <표 4-105>와 같다.

<표 4-105> 구좌읍 마을별 향약 제·개정 현황

마을명	1959 년이전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대	제정일	최종 개정일	개정 회수
김녕리								-	2018. 1. 30	
월정리					○			1996. 1. 15	2019. 1. 25	4
평대리					○			1998. 2. 1	2019. 1. 29	4
세화리				○				1980. 9.	2019. 6. 15	13
상도리				○				1989. 3. 13	2008. 12. 28	2
종달리					○			1990. 1. 23	2016. 3. 18	14

조천읍은 와흘리 향약이 1960년 1월 26일 제정되어 제정시기가 가장 오래된 향약이다. 가장 늦게 제정된 향약은 선흥2리 향약으로 2003년 6월 19일 제정되었다. 개정횟수가 가장 많은 향약은 신촌리 향약으로 20회 개정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촌리 향약은 1979년 1월 26일 제정 이후 20회 개정되었고 최종개정일은 2019년 2월 28일이다. 조천리 향약은 1991년 4월 16일 제정 이후 4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3년 1월 25일이다. 선흥리 향약은 2000년 1월 제정 이후 6회 개정되었고 최종개정일은 2019년 2월 2일이다.

함덕리 향약은 제정일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1981년 12월 15일 1회 개정을 시작으로 7회 개정기록이 명시되었고 최종개정일은 2012년 2월 28일이다. 북촌리 향약은 1983년 8월 23일 제정 이후 5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8년 11월 6일이다. 와산리 향약은 1994년 12월 26일 제정 이후 6회 개정되었고 최종개정일은 2017년 1월 17일이다.

교래리 향약은 2000년 1월 31일 제정 이후 3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08년 1월 24일이다. 와흘리 향약은 1960년 1월 26일 제정 이후 6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6년 2월 12일이다. 선흥1리 향약은 1998년 1월 제정 이후 5회 개정되었고 최종개정일은 2019년 1월 31일이다. 선흥2리 향약은 2003년 6월 19일 제정 이후 4회 개정되었고 최종개정일은 2017년 1월 20일이다. 대흘1리 향약은 제정일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2013년 1월 개정 이후 3회 개정기록이 명시되어 있는데 최종개정일은 2017년 2월 15일이다. 대흘2리 향약은 1983년 1월 11일 제정 이후 3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8년 2월 1일이다. 그 현황은 <표 4-106>과 같다.

<표 4-106> 조천읍 마을별 향약 제·개정 현황

마을명	1959 년이전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대	제정일	최종 개정일	개정 회수
신촌리			○					1979. 1. 26	2019. 2. 28	20
조천리					○			1991. 4. 16	2013. 1. 25	4
신흥리						○		2000. 1.	2019. 2. 2	6
함덕리								-	2012. 2. 28	7
북촌리				○				1983. 8. 23	2018. 11. 6	5
와산리					○			1994. 12. 26	2017. 1. 17	6
교래리						○		2000. 1. 31	2008. 1. 24	3
와흘리		○						1960. 1. 26	2016. 2. 12	6
선흘1리					○			1998. 1.	2019. 1. 31	5
선흘2리						○		2003. 6. 19	2017. 1. 20	4
대흘1리								-	2017. 2. 15	3
대흘2리				○				1983. 1. 11	2018. 2. 1	3

한경면은 신창리 향약이 1960년 1월 1일 제정되어 제정시기가 가장 오래된 향약이다. 가장 늦게 제정된 향약은 판포리 향약으로 2011년 1월 15일 제정되었다. 개정 횟수가 가장 많은 향약은 용당리 향약으로 11회 개정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등리 향약은 제정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2016년 12월 9일 개정일이 명시되어 있고 그 후 2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8년 12월 28일이다. 신창리 향약은 1960년 1월 5일 제정 이후 개정기록은 없으나 2007년 1월 15일 최종개정일이 명시되어 있다. 두모리 향약은 제정일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2016년 1월 1일 최종 개정기록이 명시되었다.

판포리 향약은 2011년 1월 15일 제정 이후 3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4년 1월 28일이다. 한원리 향약은 제정일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2019년 1월 15일 최종 개정 기록이 명시되었다. 용당리 향약은 제정일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1998년 1월 20일 개정기록 이후 11회 개정기록이 명시되었는데 최종개정일은 2018년 12월 31일이다.

낙천리 향약은 제정일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최종개정일은 2018년 1월 13일이다. 저지리 향약은 1985년 1월 15일 제정 이후 7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9년 1월 15일이다. 청수리 향약은 제정일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최종개정일은 2019년 1월 19

일이다. 용수리 향약은 1982년 2월 12일 제정 이후 8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09년 12월 31일이다.

산양리 향약은 1984년 1월 18일 제정 이후 1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4년 12월 31일이다. 조수1리 향약은 2001년 1월 15일 제정 이후 2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9년 1월 15일이다. 조수2리 향약은 2002년 1월 15일 제정 이후 2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3년 1월 13일이다. 고산1리 향약은 1991년 2월 21일 제정 이후 7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6년 12월 31일이다. 그 현황은 <표 4-107>과 같다.

<표 4-107> 한경면 마을별 향약 제·개정 현황

마을명	1959 년 이전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대	제정일	최종 개정일	개정 회수
금등리								-	2018. 12. 28	2
신창리		○						1960. 1. 5	2007. 1. 15	
두모리								-	2016. 1. 1	
관포리							○	2011. 1. 15	2014. 1. 28	3
한원리								-	2019. 1. 15	
용당리								-	2018. 12. 31	11
낙천리								-	2018. 1. 13	
저지리				○				1985. 1. 15	2019. 1. 15	7
청수리								-	2019. 1. 19	
용수리				○				1982. 2. 12	2009. 12. 31	8
산양리				○				1984. 1. 18	2014. 12. 31	1
조수1리						○		2001. 1. 15	2019. 1. 15	2
조수2리						○		2002. 1. 15	2013. 1. 13	2
고산1리					○			1991. 2. 21	2016. 12. 30	7

추자면은 신양2리 향약이 1988년 11월 5일 제정되어 제정시기가 가장 오랜 향약이다. 가장 늦게 제정된 향약은 예초리 향약으로 2010년 8월 5일 제정되었다. 향약 개정일은 6개 마을 모두 명시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서리 향약은 1990년 4월 1일, 영흥리 향약은 2006년 10월 20일, 묵리 향약은 1990년 1월 10일, 예초리 향약은 2010년 8월 5일, 신양2리 향약은 1988년 11월 5일 제정되었으나 5개 마을 모두 개정일은 명시되지 않았다. 신양1리 향약은 제·개정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 현황은 <표 4-108>과 같다.

<표 4-108> 추자면 마을별 향약 제·개정 현황

마을명	1959 년이전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대	제정일	최종 개정일	개정 회수
대서리					○			1990. 4. 1	-	
영흥리						○		2006. 10. 20	-	
묵리					○			1990. 1. 10	-	
예초리							○	2010. 8. 5	-	
신양1리								-	-	
신양2리				○				1988. 11. 5	-	

우도면은 1986년 구좌읍 연평리에서 우도면으로 승격되면서 행정구역 변경으로 4개 마을 향약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천진리 향약은 1986년 제정 이후 1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1996년 12월 20일이다. 서광리 향약도 1986년 제정 이후 2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3년 12월이다. 조일리 향약은 1986년 12월 제정 이후 1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2년 1월 1일이다. 오봉리 향약은 1986년 1월 1일 제정되었으나 개정일은 명시되지 않았다. 그 현황은 <표 4-109>와 같다.

<표 4-109> 우도면 마을별 향약 제·개정 현황

마을명	1959 년이전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대	제정일	최종 개정일	개정 회수
천진리				○				1986.	1996. 12. 20	1
서광리				○				1986.	2013. 12.	2
조일리				○				1986. 12.	2012. 1. 1	1
오봉리				○				1986. 1. 1	-	

## 2) 서귀포시 읍·면지역 마을 향약 제·개정 현황

대정읍은 다수의 마을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제정되었다. 제정시기가 가장 오랜 향약은 신평리 향약으로 1977년 1월 25일 제정되었고 가장 늦게 제정된 향약은

신도1리 향약으로 2006년 2월 14일 제정되었다. 개정횟수가 가장 많은 향약은 하모3리와 신평리 향약으로 제정 이후 9회 개정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모1리 향약은 1985년 9월 7일 제정 이후 3회 개정되어 최종 개정일은 2016년 12월 12일이다. 상모2리 향약은 1985년 7월 1일 제정 이후 5회 개정되어 최종 개정일은 2005년 3월 3일이다. 상모3리 향약은 1985년 9월 5일 제정 이후 6회 개정되어 최종 개정일은 2019년 2월 21일이다. 하모1리 향약은 1997년 8월 1일 제정 이후 4회 개정되어 최종 개정일은 2014년 1월 17일이다. 하모2리 향약은 1997년 4월 1일 제정 이후 5회 개정되어 최종 개정일은 2012년 1월 31일이다. 하모3리 향약은 1986년 5월 20일 제정 이후 9회 개정되었고 최종 개정일은 2019년 1월 20일이다.

안성리 향약은 1998년 2월 25일 제정 이후 4회 개정되어 최종 개정일은 2019년 1월 15일이다. 인성리 향약은 1985년 2월 28일 제정 이후 3회 개정되어 최종 개정일은 2012년 2월 25일이다. 일과1리 향약은 제·개정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일과2리 향약은 1997년 1월 29일 제정 이후 3회 개정되어 최종 개정일은 2017년 1월 19일이다. 무릉1리 향약은 1999년 4월 13일 제정 이후 3회 개정되어 최종 개정일은 2010년 2월 18일이다. 무릉2리 향약은 1984년 7월 25일 제정 이후 5회 개정되었고 최종 개정일은 2019년 2월 13일이다.

가파리와 마라리 향약은 제정일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가파리 향약은 2018년 7월 23일, 마라리 향약은 2018년 3월 22일 최종 개정되었다. 신평리 향약은 1977년 1월 25일 제정 이후 9회 개정되었고 최종 개정일은 2017년 1월 21일이다. 동일1리 향약은 1999년 2월 25일 제정되었으나 개정일은 명시되지 않았다. 동일2리 향약은 제·개정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보성리 향약은 제정일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1997년 3월 10일 1회 개정을 시작으로 이후 8회 개정되어 최종 개정일은 2018년 1월 15일이다. 영락리 향약은 1933년 1월 10일 제정된 향약을 2004년 1월 1일 전문개정 이후 4회 개정되었고 2015년 최종 개정 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제정일은 전문개정일인 2004년으로 분류하였다.

구역리 향약은 제·개정일이 명시되지 않았고 신도1리 향약은 2006년 2월 14일 제정 이후 1회 개정되어 최종 개정일은 2018년 3월 2일이다. 신도3리 향약은 제정일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2000년 3월 1일 개정 기록 이후 4회 개정되어 최종 개정일은 2018년 1월 12일이며 그 현황은 <표 4-110>과 같다.



<표 4-110> 대정읍 마을별 향약 제·개정 현황

마을명	1959 년이전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대	제정일	최종 개정일	개정 회수
상모1리				○				1985. 9. 7	2016. 12. 12	3
상모2리				○				1985. 7. 1	2005. 3. 3	5
상모3리				○				1985. 9. 5	2019. 2. 21	6
하모1리					○			1997. 8. 1	2014. 1. 17	4
하모2리					○			1997. 4. 1	2012. 1. 31	5
하모3리				○				1986. 5. 20	2019. 1. 20	9
안성리					○			1998. 2. 25	2019. 1. 15	4
인성리				○				1985. 2. 28	2012. 2. 25	3
일과1리								-	-	
일과2리					○			1997. 1. 29	2017. 1. 19	3
무릉1리					○			1999. 4. 13	2010. 2. 18	3
무릉2리				○				1984. 7. 25	2019. 2. 13	5
가파리								-	2018. 7. 23	
마라리								-	2018. 3. 22	
신평리			○					1977. 1. 25	2017. 1. 21	9
동일1리					○			1999. 2. 25	-	
동일2리								-	-	
보성리								-	2018. 1. 15	8
영락리						○		2004. 1. 9	2015.	4
구역리								-	-	
신도1리						○		2006. 2. 14	2018. 3. 2	1
신도3리								-	2018. 1. 12	4

남원읍은 남원1리 향약이 1977년 2월에 제정되어 제정시기가 가장 오래된 향약이며 개정횟수도 12회로 가장 많다. 가장 늦게 제정된 향약은 위미1리 향약으로 1999년 1월 30일 제정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원1리 향약은 1977년 2월 제정 이후 12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5년 1월 22일이다. 태흥2리 향약은 1998년 1월 1일 제정 이후 7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9년 1월 26일이다. 태흥3리 향약은 1990년 2월 1일 제정 이후 7회 개정되었고 최종개정일은 2010년 2월 4일이다. 위미1리 향약은 1999년 1월 30일 제정 이후 4회 개정되었고 최종개정일은 2014년 1월 18일이다.

신례1리 향약은 제정일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1997년 1월 25일 개정 이후 4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8년 1월 24일이다. 수망리 향약은 1982년 2월 18일 제정 이후 6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9년 1월 21일이다. 의귀리 향약은 1987년 8월 10일 제정 이후 4회 개정되었고 최종개정일은 2017년 1월 18일이다. 신흥2리 향약은 1985년 1월 1일 제정 이후 8회 개정되었고 최종개정일은 2018년 2월 12일이다. 그 현황은 <표 4-111>과 같다.

<표 4-111> 남원읍 마을별 향약 제·개정 현황

마을명	1959 년 이전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대	제정일	최종 개정일	개정 회수
남원1리			○					1977. 2	2015. 1. 22	12
태흥2리					○			1998. 1. 1	2019. 1. 26	7
태흥3리					○			1990. 2. 1	2010. 2. 4	7
위미1리					○			1999. 1. 30	2014. 1. 18	4
신례1리								-	2018. 1. 24	4
수망리				○				1982. 2. 18	2019. 1. 21	6
의귀리				○				1987. 8. 10	2017. 1. 18	6
신흥2리				○				1985. 1. 1	2018. 2. 12	8

성산읍은 온평리 향약이 1964년에 제정되어 제정시기가 가장 오래된 향약이며 개정횟수도 11회로 가장 많다. 가장 늦게 제정된 향약은 2008년 1월 24일 제정된 난산리 향약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산리 향약은 1990년 11월 20일 제정 이후 5회 개정되었고 최종개정일은 2017년 1월 14일이다. 오조리 향약은 2004년 1월 1일 제정 이후 5회 개정되었는데 최종개정일은 2019년 4월 6일이다. 시흥리 향약은 1972년 1월 1일 제정되었고 10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7년 2월 23일이다. 고성리와 신양리 향약은 제정일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고성리는 2015년 3월 5일, 신양리는 2015년 1월 27일 최종 개정되었다.

수산1리 향약은 1991년 4월 16일 제정 이후 5회 개정되었고 최종개정일은 2015년 1월 16일이다. 수산2리 향약은 제정일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2000년 2월 1일 개정 이후 6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09년 2월 8일이다. 온평리 향약은 1964년 5월 1일 제정 이후 11회 개정되었고 최종개정일은 2018년 1월 18일이다. 신산리 향약은 제·

개정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신흥리 향약은 1987년 1월 26일 제정 이후 5회 개정되었고 최종개정일은 2018년 2월 8일이다. 신천리 향약은 제정일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최종개정일은 2019년 1월 16일이다. 난산리 향약은 2008년 1월 24일 제정 이후 2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8년 1월 22일이다. 그 현황은 <표 4-112>와 같다.

<표 4-112> 성산읍 마을별 향약 제·개정 현황

마을명	1959 년 이전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대	제정일	최종 개정일	개정 회수
성산리					○			1990.11. 20	2017. 1. 14	5
오조리						○		2004. 1. 1	2019. 4. 6	5
시흥리			○					1972. 1. 1	2017. 2. 23	10
고성리								-	2015. 3. 5	
신양리								-	2015. 1. 27	
수산1리					○			1991. 4. 16	2015. 1. 16	5
수산2리								-	2009. 2. 8	6
온평리		○						1964. 5. 1	2018. 1. 18	11
신산리								-	-	
신흥리				○				1987. 1. 26	2018. 2. 8	5
신천리								-	2019. 1. 16	
난산리						○		2008. 1. 24	2018. 1. 22	2

안덕면은 5개 마을 중 대평리 향약이 1993년 2월 17일 제정되어 제정시기가 가장 오래된 향약이며 가장 늦게 제정된 향약은 창천리 향약으로 2006년 1월 15일 제정되었다. 개정횟수가 가장 많은 향약은 감산리와 사계리 향약으로 7회 개정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창천리 향약은 2006년 1월 15일 제정 이후 6회 개정되었고 최종개정일은 2018년 12월 9일이다. 대평리 향약은 1993년 2월 17일 제정 이후 3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2년 12월 22일이다. 감산리 향약은 1994년 1월 4일 제정 이후 7회 개정되었고 최종개정일은 2012년 1월 15일이다. 사계리 향약은 1989년 5월 11일 제정 이후 7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5년 1월 18일이다. 서광동리 향약은 2001년 7월 19일 제정 이후 4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6년 1월 31일이다. 그 현황은 <표 4-113>과 같다.

<표 4-113> 안덕면 마을별 향약 제·개정 현황

마을명	1959 년이전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대	제정일	최종 개정일	개정 회수
창천리						○		2006. 1. 15	2018. 12. 9	6
대평리					○			1993. 2. 17	2012. 12. 22	3
감산리					○			1994. 1. 4	2012. 1. 15	7
사계리				○				1989. 5. 11	2015. 1. 18	7
서광동리						○		2001. 7. 19	2016. 1. 31	4

표선면은 세화1리 향약이 1988년 1월 1일 제정되어 제정시기가 가장 오래된 향약이며 가장 늦게 제정된 향약은 성읍2리 향약으로 2005년 2월 17일 제정되었다. 개정횟수가 가장 많은 향약은 표선리, 성읍1리, 가시리 향약이 8회로 많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선리 향약은 2001년 1월 29일 제정 이후 8회 개정되었는데 최종개정일은 2017년 8월 26일이다. 하천리 향약은 1994년 2월 22일 제정 이후 6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4년 7월 31일이다. 성읍1리 향약은 제정일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1986년 1차 개정 이후 8회 개정되었으며 최종개정일은 2016년 1월 25일이다. 성읍2리 향약은 2005년 2월 17일 제정 이후 1회 개정되었는데 최종개정일은 2007년 2월 17일이다. 가시리 향약은 1992년 12월 20일 제정되었는데 4·3사태로 인하여 리정에 관한 기록이 전소되어 늦었으나 생존해 계신 지역원로의 고증과 옛 문헌을 통하여 향약을 복원하여 마을총회의 의결을 거쳐 복원 제정한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고 8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8년 1월 30일이다. 세화1리 향약은 1988년 1월 1일 제정 이후 4회 개정되었고 최종개정일은 2008년 6월 24일이다. 세화2리 향약은 제정일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최종개정일은 2019년 1월 12일이다. 세화3리 향약은 1988년 3월 제정 이후 6회 개정되었고 최종개정일은 2018년 12월 30일이다.

토산1리와 토산2리 향약은 제정일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토산1리 향약은 1999년 1월 1일 개정기록 이후 3회 개정되어 최종개정일은 2018년 1월 1일이며, 토산2리 향약은 2002년 1월 31일 개정기록 이후 2회 개정되어 2017년 1월 11일이다. 그 현황은 <표 4-114>와 같다.

<표 4-114> 표선면 마을별 향약 제·개정 현황

(단위 : 마을수)

마을명	1959 년이전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대	제정일	최종 개정일	개정 회수
표선리						○		2001. 1. 29	2017. 8. 26	8
하천리					○			1994. 2. 22	2014. 7. 31	6
성읍1리								-	2016. 1. 25	8
성읍2리						○		2005. 2. 17	2007. 2. 17	1
가시리					○			1992. 12. 20	2018. 1. 30	8
세화1리				○				1988. 1. 1	2008. 6. 24	4
세화2리								-	2019. 1. 12	
세화3리				○				1988. 3.	2018. 12. 30	6
토산1리								-	2018. 1. 1	3
토산2리								-	2017. 1. 11	2

제주의 읍·면지역 마을별 향약 제·개정시기를 종합해보면 73개 마을이 1980년대와 1990년대 제정되어 전체마을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19개 마을은 2000년대, 4개 마을은 10여년전에 제정되었다. 이는 전래되고 있는 향약이 행정구역이 개편되고 마을공동체 운영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향약의 명칭도 마을회 규약, 마을회 정관, 마을회 규칙등으로 변경되고 새롭게 제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외 제정기록이 없는 30개 마을의 향약은 총회 등 회의용 또는 마을주민회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향약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다. 수집된 향약 중 제정시기가 가장 오래된 향약은 영락리 향약으로 1933년 1월 10일 제정기록이 있으나 2004년 1월 9일 전문 개정한다는 기록이 있어 본 연구에서의 제정시기는 2004년으로 분류하였다.

향약 개정시기는 최근 10년간 개정기록이 있는 마을은 113개 마을로 전체 마을의 77.4%이며 5년간 개정기록이 있는 마을은 87개 마을이다. 개정기록이 없는 마을은 20개 마을로 이 또한 향약 제정시기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향약 수집당시 회의용 또는 주민회람용으로 사용되었던 향약으로 기재가 누락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차후 자산청구권등 분쟁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개정기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개정기록 횟수가 가장 많은 향약은 신촌리 향약으로 1979년 제정 이후 20회 개정되었다. 그 현황은 <표 4-115>와 같다.

<표 4-115>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마을향약 제·개정 현황

(단위 : 마을수)

구분	계	제정시기								개정시기			
		1959 년 이전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대	기록 없음	2009 년 이전	2010 ~ 2014	2015 ~ 2019	기록 없음
계	146	0	8	12	35	38	19	4	30	13	26	87	20
제주시	89	0	7	9	22	23	11	4	13	9	17	48	15
서귀포시	57	0	1	3	13	15	8	0	17	4	9	39	5

## 8. 제주지역 마을자치 특성

선진국의 마을자치 특성은 시민단체 혹은 협의회 방식으로 시 정부와 연계하여 지역의 문제를 건의하고 자문역할을 수행하며 일본의 경우는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의 사무를 위탁받아 건강보험 또는 연금증서를 교부하는등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제주의 읍·면지역 행정리의 마을자치는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마을자치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제주의 마을자치 특성은 국가의 운영형태를 띤 가장 작은 정부라 할 수 있다. 국가에서 일정 나이가 되면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듯이 제주의 읍·면지역 마을에서도 일정기간 거주하면 리민의 자격을 부여하여 마을재산에 대한 청구권 및 공동재산의 수익에 관한 권리를 갖게 하고 일정나이가 되면 마을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을 부여받음은 물론 피선거권에 대한 자격도 주어진다. 그 뿐만 아니다. 정부가 사업추진을 위해 세금을 징수하듯 제주의 읍·면지역 마을에서도 마을운영을 위한 재원이 필요한 경우 리 운영비를 납부하도록 하여 리 사무장 인건비등을 지원하고 마을 재원으로 활용하며 마을발전을 위해 각종사업을 유치하여 마을공동체를 유지해 간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재산청구권등 모든 권리가 주어지는 리민의 자격을 부여하는 일은 마을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마을출생자가 아니면 일정기간 마을에 거주하면서 마을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봉사하면서 마을의 풍습과 제도를 익혀야 리민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마을소유의 공유재산이 있는 마을은 자격부여 요건이 더욱 강하여 20년이상 거주해야 마을주민의 자격을 부여하는 마을도 있다.

그리고 마을출생자가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준리민이라는 제도를 두어 권리는 부여하지는 않지만 마을출신이라는 소속감을 갖고 마을발전을 위한 자문과 애향심을 갖도록 하고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리민이 자격이 부여되면 향약준수, 총회 등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 이행, 리 운영비 납부등의 의무를 부여하여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부여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주어진 권리가 박탈되는 것 또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마을자치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리의 하위조직인 자연마을의 수장을 '동장'으로 인준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작은 단위에서 또 다른 자치활동을 하고 있다. 동장은 상위조직인 행정리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사업을 홍보하고 동민의 여론을 상위조직인 리 행정에 반영시킴은 물론 리장이 대외활동을 지원하며 일부지역에서는 리장유고시 직무를 대행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마을에서는 마을에서 태어나 거주하고 있는 덕망이 있는 자를 향장(鄕長)으로 인준하여 마을의 미풍양속을 전수하기도 하고 마을의 불화를 조정하며 자치활동을 하는 마을도 있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자치조직이 구성되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가 대표적인 조직인데 이들은 마을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기능도 하고 마을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되고 있다. 이 외에도 농업인들에게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영농회,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수리계, 공동어장을 관리하고 수산업 활동을 하는 어촌계와 해녀회, 목장조합회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단체들의 조직되어 마을주민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마을의 일을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해결해 가는 조직으로 규모는 작지만 국가의 운영형태를 띤 마을자치를 실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주의 마을운영이 기초가 되고 있는 향약은 입법, 사법, 행정이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하나의 법률이나 마찬가지다. 공간을 규정하는 구역에서부터 리민의 권리와 의무, 의사결정 기구, 마을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규정, 마을재산 관리규정, 마을회의 및 임원의 구성, 마을발전을 저해한 경우 권리의 제한 등 마을별로 차이는 있으나 큰 맥락에서 동일한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향약의 취지를 잘 보존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을 통해 마을운영이 기초로 삼아 운영된다면 마을 안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마을공동체의 토론과 조율을 통해 법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뽑은 마을리장을 놓고 고소·맞고소로 지역주민들이 양분화되는 일도 줄어 마을이 위상 또한 높아질 것이다.

## 제 5 장 제주지역 마을자치 실증 조사

### 제 1 절 제주형 마을자치 운영전문가 리장 심층면접

#### 1. 조사개요

면접조사는 향약분석 및 문헌연구를 통해 자치행정 요소를 보완하여 제주형 마을자치 모형의 근간을 유형화하고 이 모형에 해당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마을자치모형은 마을의 특성, 인구규모, 마을회의 구조, 마을운영 자원, 리장선출 형태 등을 종합하여 협력형 마을자치 모형, 위임형 마을자치 모형, 통합형 마을자치 모형의 세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협력형 마을자치 모형은 마을거주 인원이 2,000명 이상 되는 비교적 규모가 큰 마을로 마을운영을 위한 일정한 소득원이 있고 마을회의 구조 또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리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기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마을자치회 대표인 리장은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위임형 마을자치 모형은 마을거주 인원이 2,000명 미만 500명 이상인 마을로 마을의 모든 권한을 마을자치회 대표인 리장에게 위임하는 형태의 마을이다. 리장 선출은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는 리장이 업무처리 능력에 따라 계속하여 추대로 리장직을 연임하여 수행하기도 하고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형태를 병행하고 있다. 마을회의 구조는 심의기능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갖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형 모형은 마을거주 인원이 500명 미만인 마을로 마을 규모도 작고 마을회의 구조 또한 발의·심의·집행기능을 통합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마을자치회 대표인 리장은 추대로 선출하는 방식을 지니고 있다.

면접항목은 제주형 마을자치 모형에 대한 의견과 전문가의 텔파이 조사에 의한 마을자치 제도화에 관한 질문으로 6개 항목 8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제주형 마을자치 모형에 대한 의견으로 면접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림모형으로 표현하여 실시하였다. 둘째,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이다. 셋째, 마을자치에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의견이다. 넷째, 마을자치



에 청년 및 여성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한 의견이다. 다섯째, 마을에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조직(청년회·부녀회·노인회 등) 활성화를 위한 의견이다. 여섯째, 마을운영을 위한 재정보호방안이다. 일곱째, 마을자치에 이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여덟째, 행정에서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이다.

심층면접은 녹음기를 활용하여 녹음 후 전사화 하였다. 면접 참여자에게 녹음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설명한 후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녹음하였다. 면접 일지는 모든 면접마다 일시, 소요시간, 내용 등을 기록하였다. 면접 참여자와 연구자 그리고 박사급 이상의 연구보조자가 참여하여 각각의 질문에 대한 왜곡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면접대상은 제주의 읍·면지역 행정리의 마을 중 제안 모형에 해당하는 마을을 기준으로 2019년 11월 ~ 2019년 12월까지 30개 마을 대표인 리장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협력형 마을자치 모형은 7개 마을 대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위임형 마을자치 모형은 16개 마을 대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중 신평리 마을은 직전 마을리장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통합형 마을자치 모형은 7개 마을 대표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다음 <표 5-1>과 같다.

<표 5-1> 면접조사 대상지역 및 대상

구분	읍·면	마을명	면담자	직책	리장선출방법	특이사항
협력형 마을자치 모형	애월읍	애월리	강 00	리장	경선	
	구좌읍	김녕리	강 00	리장	경선	
	조천읍	조천리	강 00	리장	경선	
	대정읍	하모3리	김 00	리장	경선	
	남원읍	남원1리	김 00	리장	경선	
	안덕면	사계리	강 00	리장	경선	
	표선면	표선리	박 00	리장	경선	
	한림읍	귀덕1리	이 00	리장	추대	
	한림읍	금능리	김 00	리장	경선	
	한림읍	금악리	이 00	리장	경선	
	애월읍	하가리	장 00	리장	추대	
	애월읍	소길리	이 00	리장	경선	

위임형 마을자치 모형	구좌읍	행원리	이 00	리장	경선 - 추대	
	구좌읍	동복리	김 00	리장	경선	
	조천읍	선흥1리	오 00	리장	경선	
	한경면	청수리	문 00	리장	경선	
	한경면	저지리	김 00	리장	경선	
	남원읍	위미1리	김 00	리장	경선	
	성산읍	성산리	김 00	리장	경선	
	성산읍	신평리	김 00	직전리장	추대	
	안덕면	서광서리	송 00	리장	경선	
	표선면	가시리	정 00	리장	경선	
표선면	하천리	강 00	리장	경선		
통합형 마을자치 모형	조천읍	신흥리	손 00	리장	경선	
	한경면	금등리	고 00	리장	추대	여성/이주민
	우도면	오봉리	고 00	리장	경선	
	대정읍	인성리	오 00	리장	경선	
	대정읍	영락리	홍 00	리장	추대	
	남원읍	수망리	현 00	리장	경선	
	성산읍	수산2리	양 00	리장	추대	

## 2. 면접조사 결과

### 1) 협력형 마을자치 모형 마을 분석 결과<sup>8)</sup>

#### (1) 협력형 마을자치 모형에 대한 의견 수렴 분석

협력형 마을자치 모형은 마을거주 인구가 2,000명 이상 되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마을에 공유재산이 있어 일정 수입원이 있는 마을이다. 마을자치회 대표인 리장은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마을이다. 면접 조사는 이에 해당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모형에 대한 의견은 달리 제시되지 않았으나 집행기구와 심의기구를 분리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세부의견이 제시되었다.

각 마을에서 오랫동안 존속되어 온 마을 운영기구 명칭을 개발위원회에서 운영위

8) 협력형 마을자치 모형에 해당하는 7개 마을 리장과의 면접내용을 요약한 결과임.

원회로 변경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제주시 일부마을에서는 개발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리장이 겸직하고 부이장 제도를 신설하여 리장의 권한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문기구에 전직 리장을 위원으로 두어 자문역할을 하도록 하여 신임 리장이 원만한 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2) 마을자치 활성화 의견수렴 분석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주민들의 참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었다. 실제 여러 마을에서 과거와 달리 마을행사에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하다고 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젊은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지역이 고령화되고 지역에 들어온 이주민들은 마을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리장들은 마을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달라진 환경에서 마을자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을주민에 대한 교육과 마을행사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마을주민을 행정의 동반자로 인식하기를 원하고 있다.

둘째, 리장 권한 강화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리장이 권한을 견제할 대상이 있어야 하지만 개발위원이나 운영위원들의 과도한 견제로 마을자치 활동을 저해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리장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마을의 감사 권한을 확대하여 감사가 리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통해 마을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셋째, 리장 출마 자격을 엄격히 하여 통솔력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리장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마을의 역사와 마을의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마을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리장은 마을행사 및 마을을 운영해야 하는 자리다. 마을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한다고 했다. 마을리장으로 선택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개발위원회 위원 및 마을임원을 역임하는 것이라고 했다. 각 마을의 특성이 서로 조금씩 다르지만 개발위원 및 마을임원은 각 마을별 자생단체 및 각 마을에 소속되어 있는 자연마을의 임원을 거치고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

에 대부분 10년 이상 마을에 거주하고 봉사해야 개발위원 및 마을임원으로 임명된다. 이러한 인원들은 마을의 미풍양속에 대한 전문성과 애향정신이 몸에 배어 있으므로 마을을 위해 봉사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했다. 최근 마을임원을 거치지 않고 선출된 리장으로 인해 마을 자생단체와의 갈등은 물론 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례가 있어 마을의 자치규약인 향약을 정비하는 마을도 많다고 했다.

넷째, 리민의 자격과 관련하여 마을을 상대로 분쟁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을에서 규정하는 리민은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하나는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리민을 말하며 다른 하나는 주민등록상 리에 거주하면서 리 운영비를 납부하는 향약상의 회원을 말하는 것이다. 향약상의 회원은 조상 대대로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각 향약에 규정된 전입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경과해야 회원이 된다. 마을로 들어오는 이주민이 많아지면서 기존 향원과 이주민간에 마을재산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마을자치 규약인 향약 규정을 보완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노력이 마을의 화합과 마을재산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마을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다섯째, 향약에 기반한 주민참여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을 주민의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으로 인정한 만큼 권리까지 보장하자는 말이다. 마을공동체 사업 등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소속감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다. 마을 활성화는 곧 사람이기 때문에 마을의 규약을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3) 마을자치에 주민참여 활성화 의견 수렴 분석

마을자치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권당문화가 있고 지역주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수놓음 문화가 남아 있다고 했다. 이러한 문화는 오랜 세월동안 지속되어 온 서로의 믿음이 그 바탕을 형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첫째, 마을자생단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역주민들은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어촌계, 영농회 등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 활동은 주민참여 계기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결속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므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마을에 있는 자생단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둘째, 총회 등 각종 회의 참석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즉 마을총회 등 각종 회의시 세대당 1명의 회의 참석 권한을 리민 또는 성인인자 등으로 확대이다. 보통 세대주가 회의에 참석하여 마을의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다. 세대당 1명 참석으로 인해 부모가 참석하는 경우 자식은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없어 주민참여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단점도 있다. 실제로 김녕리 마을청년 김00 추가 면접에서는 부모가 참석하는 회의에 자식이 참여하여 반대의 입장을 고수할 시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마을자치 활동에 부모와 대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참여를 꺼리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총회 등 각종 회의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참석기준을 확대하여 마을의 일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4) 마을자치에 청년 및 여성 참여비율 확대 의견 수렴 분석

마을자치에 참여하는 연령이 대부분 높아 각 마을별로 마을회의 참여연령을 낮추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마을리장 및 마을회 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했고 공동 대응을 주문하고 있었다. 자연마을의 동장과 반장은 마을회의에 청년과 여성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었고, 리 단위의 청년회나 부녀회에 소속회원들의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성세대들이 자기권위 혹은 결정권 확대를 위해 마을회 임원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세대교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마을의 리장들은 첫째, 리장이 재량으로 임명되는 개발위원 혹은 운영위원 지명 비율을 확대하고 있었다. 마을 임원선출은 향약에 근거하여 자생단체장을 비롯하여 자연마을별로 균등하게 마을을 대표하는 인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외에 리장이 재량으로 선출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고 했다. 이 인원에 리장들이 젊은 세대와 여성 등 소외된 분야의 참여비율을 높여 마을자치 운영에 동력도 얻고 세대교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둘째, 동에 속해 있는 자연마을의 임원을 리 단위의 임원으로 위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각 동 및 반에 속해 있는 청년회장, 부녀회장을 리 단위의 개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하게 함으로써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마을에서는 세대교체를 위한 필요인력을 양성하는 계기도 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감소와 각 동 및 반에서 봉사하며 노력하는 인원이 많지 않아 마을자치에 여성 및 청년비율 확대가 어렵다고 했다. 참여비율은 적지만 차츰 개선하며 마을행정이 세대 간 전수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셋째, 자치규약인 향약에 임원 위촉시 일정 부분을 청년 및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었으나 개발위원회 구성시 각 마을별 1명 이상은 반드시 여성위원을 추천하게 한다든지 전체 개발위원의 25%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 및 여성을 마을자치에 참여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마을에서는 마을회 향약에 임원위촉시 일정나이 이상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나이제한을 두어 세대교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마을도 있다고 했다.

#### (5) 마을공동체 활성화 의견 수렴 분석

마을자치에서 공동체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 중요한 요소인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을단위 자치 조직인 단체를 활성화하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대표적인 단체가 청년회와 부녀회라고 했는데 이 단체들은 마을의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 해결하는 봉사단체이기도 하고 누구보다 마을자치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라고 했다.

이러한 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자생단체 활동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마을자생단체 활동 지원금은 각 마을별로 다르기는 하나 마을에서 보조해주는 비용이 주요재원이고 단체별 마을 체육대회나 행사 등을 주관하여 얻는 수익금을 통해 활동재원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재원은 일시적 재원으로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정비율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거나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낮추어 단체 및 공동체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둘째, 마을행사 지원금을 확대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에서는 연말연시 행사를 비롯해서 어버이날, 어린이날등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 (6) 마을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분석

마을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을을 운영하는 재원확보이다. 마을규모가 커지고 마을운영이 복잡해짐에 따라 마을에 필요한 재원도 많아지고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첫째, 향약에 리민의 권리와 의무 명시하고 있다. 향약의 규정에 의해 마을일원이 되면 재산청구권을 비롯해서 참여권, 의결권, 선거권 등 권리가 주어지는 반면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리 운영비 납부를 의무로 정해서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리 운영비는 재정확보 차원이기보다는 마을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그러나 일부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납부한 리 운영비를 활용하여 매해 8월에 납부하는 균등분 주민세와 적십자 회비를 마을에서 대신 납부해 줌으로써 행정에도 기여하고 주민들에게도 소속감을 높여주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적십자 회비를 대신 납부해 주는 마을은 없다고 했다.

둘째, 마을 소득사업을 확대해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영농법인을 조직하여 마을의 농산물을 판매하는가 하면 마을 소유의 공동주택 임대사업, 공동목장 임대료, 마을 유희자산 사용료, 마을만들기 사업 등 사업 종류를 다각화하여 재원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펴하고 있다. 특히 일부마을에서는 부녀회에서 마을 경·조사시 음식을 조리하여 얻은 비용을 사업재원으로 활용하는 마을도 있었다. 마을주민들의 서로 협력하여 마을사업을 결정하고 사업 확대를 통해 마을 재정이 확대되고 이를 마을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다시 투자되는 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많은 마을들이 노력하고 있다.

#### (7) 마을자치에 이주민 참여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분석

각 마을별로 이주민을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주민의 행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했다. 하나는 투기를 목적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마을에서 행해지고 있는 마을자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했다. 또 다른 하나는 제주에 정착을 위해 들어온 이주민이다. 지금은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정착을 위해 마을로 전입한 이주민들은 리민의 의무를 다하기 전에 권리부터 주장해서 기존 마을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장들은 첫째, 마을향약에 회원규정을 명확히 명시하여 분쟁소지도 없애고 전입 후 일정기간 각 동 및 반에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시 마을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둘째, 마을리장들이 헌신적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에서 정착하기 가장 어렵고 힘든 곳이 제주라고 할 정도로 이주민들은 제주문화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각종 행사 시 초청하여 마을의 정서를 알리는 등 마을주민과 적극적인 교류를 독려하고 마을사업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주민들의 마을자치에 참여하는 인원도 늘고 있고 기존 주민과의 마찰도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셋째, 마을공동체를 개방하여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주로 이주해온 이주민들은 다른 지역 이주민과는 달리 귀농귀촌이 아닌 환경이 좋아서 정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이주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마을공동체를 개방하여 그들의 갖고 있는 재능도 기부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고 청년회나 부녀회의 활동에도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마을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넷째, 마을 공동사업에 이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마을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해안마을에서 시행하고 있는 톳채취 사업 등의 참여유도를 통해 마을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마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톳채취 등의 사업은 공동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특성이 강해 이주민들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 (8) 마을자치 제도개선 의견 수렴 분석

마을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마을단위 제도를 보완하고 자치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각 마을이 운영제도가 상이하어 마을 실정에 맞춰 개선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리장들은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에 대해 차등지급 체계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는 각 마을별로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율을 일정하게 적용하다 보니 재원이 있는 마을만 사업에 참여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보조사업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보조금 비율을 마을의 규모 등을 감안해 차등 적용하고 복지사업에 대한 자부담 비율 낮추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단위별로 차등해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동단위에서는 현재 제도가 맞을지 모르나 읍·면에서는 마을리장이나 마을회 임원들이 지역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 마을별로 리장 추천에 의해 임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마을대표로 누가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되었는지도 모르고 마을자치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 선정된 위원임에도 마을 현실도 잘 모르는 위원이 선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마을에 거주한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적용하여 진짜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행정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주민자치위원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마을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이 생기기 이전에는 행정과 마을이 직접연계 되어 마을자치가 더 잘 되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이 행정과 마을의 중간에 위치하여 마을의 역할이 좁아져서 오히려 마을자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실질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2) 위임형 마을자치 모형 마을 분석 결과<sup>9)</sup>

### (1) 위임형 마을자치 모형에 대한 의견 수렴 분석

위임형 마을자치 모형은 마을 거주 인원이 2,000명 미만 500명 이상인 마을로 마을지도자 또한 추대와 직접선거를 병행하는 마을이다. 마을의 모든 권한을 마을지

9) 위임형 마을자치 모형에 해당하는 16개 마을 리장과의 면접내용을 요약한 결과를 반영한 결과임.

도자에게 위임하는 형태로 마을자치가 이뤄지는 곳이다. 면접조사는 이에 해당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협력형 마을자치 모형 마을과 같이 1960년대 이후 존속되어온 개발위원회의 명칭을 시대에 맞게 운영위원회 혹은 다른 명칭의 위원회로 변경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리고 향약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동장회의는 리장을 보좌하는 기구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 그 외에 자생단체 성격이 마을별로 한계가 있어 마을 여건에 맞는 중간조직 기능을 강화하여 자생단체의 위상을 격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

## (2) 마을자치 활성화 의견수렴 분석

마을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협력형 마을자치 모형 마을과 같이 주민참여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마을규모가 크지 않아 이주민 참여가 주민참여에 큰 힘이 되고 있는데 생활방식과 문화차이로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리장들은 첫째, 이주민에 대한 교육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주민들의 이주 동기는 다양하다. 새로운 직업과 사업에 대한 도전, 회사 이직 또는 파견, 새로운 주거 환경을 찾아 이주를 하지만 크게 투자성격의 이주와 새로운 거주환경을 찾아 정착형으로 이주하는 경우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투자를 목적으로 이주한 이주민들은 마을행사에 전혀 참석하지 않고 개인주의적 성향 때문에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 주변환경 문제 등 마을 민원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했다.

정착형 이주민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일종의 텃세도 있겠지만 도시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이라 지역정서와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마을공동체 규약인 향약을 중심으로 마을이 운영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주민 참여를 위한 재정지원 및 마을자치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정착 이주민들도 제주에서 제2의 삶을 일구고 마을주민들도 부정적인 상황만이 아닌 마을의 조력자로 서로 윈윈하며 진정한 제주인이 되기를 기대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둘째, 공동체조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마을내 공동체조직은 청년회, 부녀회, 영농회, 문고회, 어촌계 등이 조직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마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청년회와 부녀회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었다. 청년회와 부녀회가 이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행사시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회원가입과 행사참여를 독려

하는 등 마을회 일원으로 받아들여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 (3) 마을자치에 주민참여 활성화 의견 수렴 분석

마을자치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마을자치 활성화 의견수렴 분석에서도 제시되었지만 마을의 중심조직인 청년회와 부녀회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다. 청년회는 야간 자율방법 활동을 비롯해서 마을 주변 잡초제거 및 정화활동, 마을안길 방역, 마을행사시 교통정리, 자원봉사활동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이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보조사업지원등을 통해 회원을 확대하여 활동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주민참여의 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았다. 부녀회 또한 마을 행사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부녀회원들 간의 단합을 도모하고 각종 마을행사에 참여하여 마을의 내부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봉사의 역할이 증대되는 만큼 참여 동기를 부여하여 회원을 확대하다 보면 마을자치에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 (4) 마을자치에 청년 및 여성 참여비율 확대 의견 수렴 분석

마을자치에 참여하는 연령이 높아 협력형 마을자치 모형 마을과 같이 각 마을별로 마을회의 참여연령을 낮추고 소외되었던 여성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 여성 참여비율 확대를 위해서는 위원회 위촉시 일정범위 내에서 반드시 여성을 위촉하도록 하는 등 여성위원 참여비율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미미한 상태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높아진 마을자치 참여연령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마을회의에 청년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마을간 세대교체의 과정이라고도 했다. 마을일에 청년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으나, 마을원로들과 협의하여 개발위원회에 청년할당제를 시행하여 마을회의에 청년참여비율을 높이고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자치 규약인 향약에 청년할당비율을 명시하여 이를 통해 세대교체를 하고 있다고 했다.

#### (5) 마을공동체 활성화 의견 수렴 분석

마을자치에서 공동체는 중요한 요소로 공동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구성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공동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공동체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마을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마을에서 공동체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 조직이 청년회와 부녀회라 할 수 있는데 최근 이주민이 들어오면서 마을문고와 연계한 도서회가 조직되어 이주민과 지역주민과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고 했다. 마을 정화 및 선도 활동, 지역내 어려운 세대 지원등 마을 청년회와 부녀회 없이는 마을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협력형 마을자치 모형 마을과 같이 자생단체 지원금과 마을행사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자생단체 지원금은 마을에서 보조해 주는 비용이 주요 활동재원이다. 재원이 넉넉한 마을에서는 단체 지원금도 넉넉하기 마련인데 그렇지 못한 마을이 더 많다고 했다. 일부마을에서는 활동재원 마련을 위해 바자회 형태의 사업을 운영해서 그 이익금을 재원으로 단체 활동을 하기도 한다고 했다. 전문가 면접시 몇몇 마을에서는 몸으로 하는 봉사활동은 얼마든지 하지만 자부담할 비용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봉사하지 못한다는 말도 했다. 행정에서 투명성이 전제된 일정비율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낮춰 단체 활성화를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유치하여 좋은 결과를 낳고 있으나 마을재원 만으로는 역부족이라 행정에서 마을행사 지원금을 확대하여 공동체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 (6) 마을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분석

한 마을을 잘 살기 위한 마을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재원이라고 하고 있다.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필요한 재원도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재원확보 방법의 하나로 현재는 리 운영비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나 마을총회를 거쳐 리 운영비를 징수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

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방법은 마을 소득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라 했다. 현재 마을 주요 수입원은 마을 공동목장 임대료,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이 주요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마을만들기 사업등을 통해 마을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꾀하고 있다고 하였다.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다.

#### (7) 마을자치에 이주민 참여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분석

각 마을별로 이주민을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일부마을에서는 학교 살리기와 연계한 임대주택 입주자들을 마을회 임원으로 위촉하고 각종 행사에 초청하여 마을의 정서와 문화를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제주사람들이 배타적이라 육지에서 전입해 온 이주민들을 몰아내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마을 일원으로 같이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 퇴직 후 좋은 환경에서 조용하게 살고 싶어 이주를 했는데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함께 하는 게 부담이 된다는 사람도 많다고 했다. 마을자치 참여 이전에 우선 지역주민들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8) 마을자치 제도개선 의견 수렴 분석

마을자치는 ‘행정’이라는 조력자를 발판으로 마을주민들의 추진력을 얻어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행정에서는 마을의 불편사항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보완하고 자치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협력형 마을자치 모형 마을이나 위임형 마을자치 모형에 해당하는 모든 마을 리장들이 모두 같은 불만과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그 중 하나가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 비율 개선 요구이다. 각 마을별 일률적인 자부담 비율로 재원이 있는 마을만 참여하게 되고 자부담 비율이 높아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마을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 비율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개선사항

을 요구했다. 공공중심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중심의 마을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다. 주민커뮤니티 공간만 조성되었지 프로그램 진행도 안되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관리비만 들어가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성과에만 치중하다보니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고민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 3) 통합형 마을자치 모형 마을 분석 결과<sup>10)</sup>

#### (1) 통합형 마을자치 모형에 대한 의견 수렴 분석

통합형 마을자치 모형은 마을 거주 인원이 500명 미만이고 마을리장은 개발위원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인준하는 형태로 선출하는 등 규모가 작은 마을로 개발위원회가 주도해서 마을자치가 이뤄지는 곳이다. 면접조사는 이에 해당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규모가 작다보니 일부 마을은 리장 지원자가 없어 개발위원회에서 추대하여 마을지도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의견으로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마을동장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리에 속해 있는 자연마을의 동장회의를 모형에 추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2) 마을자치 활성화 의견수렴 분석

마을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체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마을규모도 작고 마을 거주인구 또한 고령화로 마을전체가 활력을 못 찾고 있다고 했다. 마을의 주 수입원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수입금과 리민들이 납부하는 리 운영비로 단체활동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수입금은 사용 제한이 많아 일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다고 했다. 리 산하 단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보조금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10) 통합형 마을자치 모형에 해당하는 7개 마을 리장과의 면접내용을 요약한 결과를 반영한 결과임.

### (3) 마을자치에 주민참여 활성화 의견 수렴 분석

마을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필수인데 마을인구가 적다보니 마을 자생단체를 활용한 참여는 어렵고 자연마을의 동장을 활용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동장은 동을 대표하여 리 단위의 각종 행사에 대·내외적으로 참석하며 동민의 이익과 여론을 리정에 수시 반영하고 각동의 사업계획을 리장에게 알려 협조를 얻는다고 했다. 그리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약자, 장애인, 결식아동 등 소외된 주민을 항상 파악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자연마을을 책임진다고 했다. 이렇게 지역 여건상 자연마을의 동장들이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고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했다.

### (4) 마을자치에 청년 및 여성 참여비율 확대 의견 수렴 분석

마을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발위원회 등 마을 임원 선출시 나이 및 성별 안배를 통해 마을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마을 규모가 작다보니 청년이나 여성인구가 적어 한계를 느낀다고 했다. 한 번 마을회 임원으로 임명되면 교체할 젊은 세대가 없어 오랜 기간 임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 (5) 마을공동체 활성화 의견 수렴 분석

농촌에서는 이웃집이 바쁠 때 일손을 도와주는 것이 공동체 협동의 기본이다. 그러나 이 모형에 속해 있는 다수의 마을은 고령화, 과소화되어 있는 마을이 많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특히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려면 마을에 조직되어 있는 단체 활성화가 먼저 되어야 하는데 활동재원 및 참여인원 부족으로 단체 활동도 미진하다고 했다. 행정에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펴주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 (6) 마을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분석

마을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을 운영하는 재원확보라고 했다. 이 모형에 해당하는 마을 대부분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수입금이 전부인 마을로, 마을 규모가 작아 상징적인 리 운영비 징수를 통해 재원도 확보하고 마을주민과 마을 회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원의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 (7) 마을자치에 이주민 참여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분석

마을규모가 작다보니 이주민은 그리 많지 않다고 했다. 이 모형 해당마을 역시 협력형 마을자치 모형 마을과 위임형 마을자치 모형 마을과 마찬가지로 이주민을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협조가 잘 안된다고 하고 있다. 여유가 있어 마을로 전입 온 이주민들은 공동체적 마을의 정서를 이해 못하고 마을을 지켜온 토착민들은 도시적 개인주의를 이해하지 못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행정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간 화합 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 (8) 마을자치 제도개선 의견 수렴 분석

이 모형에 해당하는 마을 역시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으로 협력형 마을자치 모형과 위임형 마을자치 모형 마을과 마찬가지로 보조금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많이 했다. 앞서 협력형 마을자치 모형과 위임형 마을자치 모형 마을에서 제시했듯이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율 차등지원, 그리고 마을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율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서 마을단체가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 3. 합의

마을자치회 대표인 리장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가지 형태의 마을자치 모형간의 공통된 의견은 마을자치 공간에서 사무기구와 집행기구의 역할



은 서로 분리되어 있으나 서로 협력하고 보조해주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을에 조직되어 있는 자생단체들은 소속단체의 활동은 물론 이주민을 비롯해서 각각의 위원회와 마을에 조직되어 있는 소그룹 단체들이 공동체를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마을의 중심에 있는 조직으로 더욱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세가지 형태의 마을자치 모형간의 차이점은 협력형 마을자치 모형은 마을회의 체계가 심의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자문위원회, 자생단체, 동장,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별도로 운영위원회와 협력 및 자문역할을 하고 있었다. 위임형 마을자치 모형은 자문위원회 및 자생단체장이 개발위원회와 협력하여 마을을 운영하고 있고 마을회의 체계는 하나의 기구가 심의기능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통합형 마을자치 모형에서는 리장을 보좌해주는 기구로 동장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회의체계는 하나의 기구가 발의·심의·집행이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러한 마을자치모형은 크게 마을규모, 마을재원에 따라 결정하고 있었다.

그 외 마을자치 제도화에 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주의 읍·면지역 마을은 향약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마을로 전입해 오는 이주민이 많아지고 일부마을은 고령화, 과소화로 마을공동체가 위협받고 있어 마을자치회 대표인 리장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역량의 한계로 다음과 같이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첫째,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시행시 행정에서 지원되는 자부담을 개선이다. 각 마을의 여건도 다르고 사업규모도 다르지만 사업시행시 지원되는 보조금 보조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재원이 있는 마을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보조금 자부담 비율을 낮춰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복지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마을의 규모와 현실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마을만들기사업은 최종 목적이나 성과물이 아니라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는 과정이라 인식해야 한다. 어렵게 사업을 유치하여 완성이 되었는데 공동체 활동을 위한 주민조직도 없고 체계적이지 못한 행정지원에 지속가능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실적이 아닌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공동체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행정지원 서비스 확대이다. 마을마다 가장 작은 단위에서 자치행정을 하고

있다. 행정의 힘이 미치는 가장 말단조직으로 행정홍보는 물론 행정에서의 협조사  
항을 수행하는 곳이기도 하다. 리 사무장에 대한 지원,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재정  
지원 및 마을자치에 대한 교육지원을 통해 마을자치의 근간인 풀뿌리민주주의를 확  
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주민과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제주로 이주해 오는 이  
주민은 투기와 정착목적으로 이주해온 경우로 투기목적으로 이주한 이주민들은 목  
적 달성을 위해 개인에게 득이 되는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정착형 이주민은  
향약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마을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해 기존 마을주민들과 마찰  
을 빚고 있다. 이주민과 지역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  
하다.

넷째,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개선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 내 중요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다. 그러  
나 지역을 잘 알지 못하는 위원이 공개모집으로 위촉이 되어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  
고 있다. 일정규모의 인원은 마을회에서 추천방식을 통해 위촉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제주지역의 각 마을은 하나의 자치규약인 향약을 기준으로 마을자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외국사례에서도 보여지고 있듯이 마을자치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주  
민들 스스로 마을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마을 복지체계를 개선하여 이를 통해 마  
을 화합을 이끌어 내고 있다.

제주지역 마을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그 속에 자리잡고 있는 권당문화, 수  
눌음 문화는 공동체 원형을 복원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화의 이면에 마을의 자치규약인 향약이 있다.

## 제 2 절 제주형 마을운영 및 마을자치 설문조사

### 1. 조사개요

일반적인 설문조사는 표본을 조사하여 모집단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실시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마을자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제언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3개 항목 24개 문항으로 첫째, 마을운영에 대한 기준으로 마을회의 필요성, 총회 참석연령, 리장 선출방법, 마을 운영기금, 리 운영비 필요성 등 9개 문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둘째, 마을자치 활성화에 대한 내용으로 마을자생조직 단체 소속여부, 자생조직단체 활성화 방안, 마을자치 관련 개선방안, 향약 개선방안 등 12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셋째, 주민자치 관련 내용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제도 및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확대 방안 등 3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읍·면지역 행정리의 마을자생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1월 13일 ~ 2020년 2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12개 읍·면 172개 행정리에 각 3부씩 총 516부를 배부하여 478부가 회수되었다. 이는 다음 <표 5-2>와 같다.

<표 5-2>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구분	마을수	배부매수	회수매수	수집비율
합계	172	516	478	92.6
제주시	96	288	250	86.8
한림읍	21	63	52	82.5
애월읍	26	78	64	82.1
구좌읍	12	36	30	83.3
조천읍	12	36	36	100
한경면	15	45	38	84.4
추자면	6	18	18	100
우도면	4	12	12	100
서귀포시	76	228	228	100
대정읍	23	69	69	100
성산읍	14	42	42	100

남원읍	17	51	51	100
안덕면	12	36	36	100
표선면	10	30	30	100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327명(68.4%), 여성 151명(31.6%)으로 남성의 분포가 높다. 연령은 20대 이상 ~ 40대 미만 39명(8.2%), 40대 이상 ~ 50대 미만 111명(23.2%), 50대 이상 ~ 60대 미만 250명(52.3%), 60대 이상 78명(16.3%)순으로 조사되고 있다.

거주지역은 제주시 250명(52.3%), 서귀포시 228명(47.7%) 순으로 조사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거주년수는 10년 미만 66명(13.8%), 10년 이상 ~ 20년 미만 71명(14.9%), 20년 이상 341명(71.3%) 순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다음 <표 5-3>과 같다.

<표 5-3>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유효 퍼센트
성별	남성	327	68.4
	여성	151	31.6
연령	20대 이상~40대 미만	39	8.2
	40대 이상~50대 미만	111	23.2
	50대 이상~60대 미만	250	52.3
	60대 이상	78	16.3
거주지역	제주시	250	52.3
	서귀포시	228	47.7
거주년수	10년 미만	66	13.8
	10년 이상 ~ 20년 미만	71	14.9
	20년 이상	341	71.3
합계		478	100.0

## 2. 내용 분석

### 1) 마을총회 참석연령 확대에 대한 의견

마을총회 참석자는 대부분 19세 이상자, 세대주, 대의원 등인데 지역사회 구성원인 청소년도 마을의 주요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총회 참석연령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다. 이를 살펴보면 ‘좋다’ 307명(64.4%), ‘좋지 않다’ 170명(35.6%) 순으로 청소년이 마을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연령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정부에서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마을의 주요의사결정 참여 연령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며 면접조사에서도 리장들 의견의 정부의 방침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 <표 5-4>와 같다.

<표 5-4> 마을총회 참석연령 확대

문항	현재 마을총회 참석자는 대부분 19세 이상자, 세대주, 대의원 등인데 지역사회 구성원인 청소년도 마을의 주요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회 참석연령을 확대 하는 것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빈도	유효퍼센트	비고
좋다	307	64.4	
좋지 않다	170	35.6	
합계	477	100.0	

### 2) 마을 주요의사 결정 참여연령 확대시 적정 나이

마을의 주요 의사 결정에 청소년 참여 적정 나이에 대한 의견에 ‘18세 이상’ 231명(88.2%), ‘17세 이상’ 21명(8.0%), ‘16세 이상’ 10명(3.8%) 순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선거연령 하향조정으로 마을주민들 또한 정부의 방침에 순응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 <표 5-5>와 같다.

<표 5-5> 마을 주요의사결정 청소년 참여 적정나이

문항	마을의 주요의사 결정에 청소년의 참여연령을 확대한다면 귀하께서는 몇 세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빈도	유효퍼센트	비고
16세 이상	10	3.8	
17세 이상	21	8.0	
18세 이상	231	88.2	
합계	262	100.0	

3) 마을리장의 개발위원장 겸직에 대한 의견

마을회 운영은 리장과 개발위원장을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마을에서 리장이 개발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리장 겸직에 대한 의견은 ‘좋지 않다’ 283명(59.6%), ‘좋다’ 192명(40.4%) 순으로 조사되고 있다.

리장 겸직과 관련해서는 리 운영 및 정보에 대한 독점으로 리정을 운영함에 있어 독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우려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3-2문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좋다’는 의견은 리장이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결정된 사업을 혼선 없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 <표 5-6>과 같다.

<표 5-6> 마을리장 겸직의견

문항	마을회 운영은 리장과 개발위원장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마을에서는 리장이 개발위원장을 겸직하고, 부이장을 두어서 리장유고시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유효퍼센트	비고
좋다	192	40.4	
좋지 않다	283	59.6	
합계	475	100.0	

### 3)-1 마을리장이 개발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이 좋은 이유

마을자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회의에 참석한 개발위원장이 과도한 견제로 인하여 마을운영에 불필요한 요소가 작용되는 것이다.. 이런 갈등으로 인한 마을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마을리장을 견제하기 위하여 마을안건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함으로써 마을자치가 훼손되는 결과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리장 및 개발위원장의 겸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원만한 회의 진행이다. 마을 리장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의사결정 빠르다는 것이다. 둘째, 혼선 없는 마을사업이다. 마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발위원장과 대립 없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일처리 효율성과 일관성이다. 마을 행정처리가 빨라지고 마을사무장들의 업무수행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이는 마을리장이 빠른 의사결정으로 능률적인 마을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넷째, 마을과제의 숙지 정도이다. 마을리장은 마을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비용절감이다. 의견충돌로 일어날 수 있는 마을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을리장의 개발위원장 겸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이 마을자치 규약인 향약을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하고 있다. 겸직은 향약에 명시되어 있는 마을직제를 개편하고 이를 마을총회에 승인받아야 하는 민주적인 절차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3)-2 마을리장이 개발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이 좋지 않은 이유

마을자치를 시행함에 있어 마을리장의 개발위원장 겸직이 좋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단이다. 마을리장이 반대의견을 무시하여 독단적인 일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의사결정체계 무시다. 마을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혼자 결정할 수 있어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을발전을 위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장이 독선으로 의사결정체계를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업무대행이다. 리장이 유고시 개발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마을 자치의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넷째, 마을정책 혼선이다. 마을총회나 마을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올바르게 집행하고 이를 감시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어 나타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마을리장의 개발위원장 겸직을 반대하고 있었다.

#### 4) 마을로 이주하는 이주민의 자격부여 기준에 대한 의견

마을로 이주하는 이주민의 리민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에 대한 물음에서는 ‘주민등록 전입 후 3년 이상 거주자’ 151명(35.5%), ‘주민등록 전입 및 실거주자’ 118명(27.8%), ‘주민등록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자’ 90명(21.2%), ‘주민등록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자’ 38명(8.9%), ‘주민등록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자’ 28명(6.6%) 순으로 조사되고 있다.

현재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대부분은 이주민에 대한 반감 혹은 마을재산으로 인한 갈등 요소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 면접조사에서도 최소 3년 이상 마을 일에 참여하고 마을주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다음 <표 5-7>과 같다.

<표 5-7> 이주민 리민자격부여 기준

문항	마을로 이사 오게 되면 리민의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이 마을별로 다양합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느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비고
전입 및 실거주자	118	27.8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자	38	8.9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자	90	21.2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자	28	6.6	
전입 후 3년 이상 거주자	151	35.5	
합계	425	100.0	



5) 마을리장 선출방법에 대한 의견

마을리장 선출방법에 대한 의견은 향약에 정한 일정 나이 이상이 된 경우 ‘1인 1표’ 221명(47.4%), ‘세대를 대표하여 세대원 중 1표’ 122명(26.2%), ‘개발위원회 추대 후 총회에서 인준’ 97명(20.8%), ‘마을주민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 투표’ 26명(5.6%) 순으로 조사되고 있다.

각 마을의 리장 선출은 세대당 1표제를 시행하는 마을이 많이 있다. 이러한 요소는 참정권에 대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제주의 가부장적 문화로 여성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면접조사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마을마다 공감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의 반영된 결과는 다음 <표 5-8>과 같다.

<표 5-8> 마을리장 선출방법

문항	앞으로 리장은 어떻게 선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빈도	유효퍼센트	비고
1인 1표	221	47.4	
세대원중 1인투표	122	26.2	
대의원 투표	26	5.6	
개발위원회추대 총회인준	97	20.8	
합계	466	100.0	

6) 마을리장 임기제도에 대한 의견

마을리장의 임기는 2~3년으로 각 마을마다 임기제도(중임 및 연임제 등)를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임기제도에 대한 의견은 ‘1회 연임’ 177명(38.5%), ‘단임제’ 및 ‘연임제’가 각각 129명(28.0%), ‘중임제’ 25명(5.4%) 순으로 조사되고 있다.

리장 임기제도는 마을마다 향약에 선거관리규정을 두어 시행하고 있다. 1회 연임은 리정을 운영함에 있어 연속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리장이 선출되어 초반 의욕적으로 시행한 정책들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러한 내용은 면접조사에서도 1회 연임을 통해 마을사업의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 <표 5-9>와 같다.

<표 5-9> 마을리장 임기제도

문항	리장의 임기는 2-3년으로 각 마을마다 임기제도(중임·연임제 등)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제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유효퍼센트	비고
구분			
단임제	129	28.0	
중임제	25	5.4	
연임제	129	28.0	
1회연임	177	38.5	
합계	460	100.0	

#### 7) 마을총회 및 리장선거 1인 1표제 개정에 대한 의견

마을총회 및 리장선거시 일부마을에서 세대를 대표하여 1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여성이 의사가 미반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인 1표제 개정에 대한 의견은 ‘개정이 필요하다’ 217명(45.6%),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 135명(28.4%), ‘개정 필요없다’ 72명(15.1%), ‘전혀 개정필요없다’ 14명(2.9%) 순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다음 <표 5-10>과 같다.

<표 5-10> 마을총회 및 리장선거 1인 1표제 개정

문항	마을총회 및 리장선거시 일부 마을에서는 세대를 대표한 1인이 의사결정 및 선거로 여성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되고 있다며 관련단체에서 마을마다 이런 조항을 개정해 달라고 공론화 사업을 펼치고 있고, 여성들의 의사반영 및 의사결정권 확보를 위해서도 1인 1표제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비고
반드시 개정필요	135	28.4	긍정 74.0%
개정필요	217	45.6	
그저그렇다	38	8.0	
개정 필요없다	72	15.1	부정 18%
전혀 개정필요없다	14	2.9	
합계	476	100.0	

8) 마을운영을 위한 기금확보 필요성에 대한 의견

마을운영(리사무소 운영 및 마을사업)을 위한 기금(자금) 확보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반드시 필요하다’ 242명(50.6%), ‘필요하다’ 218명(45.6%), ‘그저 그렇다’ 16명(3.3%), ‘필요없다’ 2명(0.4%) 순으로 조사되고 있다. 기금은 마을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이다. 리 사무소 운영 및 마을사업 자부담을 위해 필요한 자금 등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 <표 5-11>과 같다.

<표 5-11> 마을운영기금 확보 필요성

문항	귀하께서는 마을운영(리사무소 운영 및 마을사업)을 위한 기금(자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비고
반드시 필요하다	242	50.6	긍정 (96.2%)
필요하다	218	45.6	
그저그렇다	16	3.3	
필요없다	2	0.4	
합계	478	100.0	

9) 마을운영을 위한 기금마련 방법에 대한 의견

마을운영(리사무소 운영 및 마을사업)을 위한 기금(자금)필요시 재원마련 방법에 대한 의견은 ‘일부는 마을주민들이 부담하고 일부는 정부가 보조하는 형태’ 288명 (60.3%),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 97명(20.3%), ‘마을주민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 85명(17.8%) 순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들 스스로 마을 자치를 위해 일정 부분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마을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마을 부역 혹은 마을의 공동체 사업을 통해 마을 운영자금을 만들어 오고 있다. 즉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의 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다음 <표 5-12>와 같다.

<표 5-12> 마을운영 기금마련 방법

문항	마을운영(리사무소 운영 및 마을사업)을 위한 기금(자금)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마련하는게 좋겠습니까?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비고
주민 스스로 확보	85	17.8	
정부제공	97	20.3	
정부가 일부 보조	288	60.3	
합계	470	100.0	

10) 마을재정을 위한 리 운영비 납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

마을재정을 위해 일부마을에서 리 운영비(리정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은 ‘필요하다’ 246명(51.6%), ‘반드시 필요하다’ 142명(29.8%), ‘그저 그렇다’ 44명 (9.1%), ‘필요없다’ 38명(8.0%), ‘전혀 필요없다’ 7명(1.5%) 순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면접조사에서도 리장들은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리 운영을 위해 리에서 부과한 리 운영비를 납부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반영 결과는 다음 <표 5-13>과 같다.

<표 5-13> 리 운영비 납부 필요성

문항	마을재정을 위해 일부 마을에서 리 운영비(리정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귀하께서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비고
반드시 필요하다	142	29.8	긍정 81.4%
필요하다	246	51.6	
그저 그렇다	44	9.1	부정 9.5%
필요없다	38	8.0	
전혀 필요없다	7	1.5	
합계	477	100.0	

11) 마을재정을 위한 리 운영비 납부 의향에 대한 의견

마을재정 확보를 위한 리 운영비(리정세) 납부 의향에 대한 의견에는 납부 의향 ‘있다’ 410명(85.8%), 납부 의향 ‘없다’ 68명(14.2%) 순으로 조사되고 있다. 주민들이 마을 자치를 위해 리 운영비를 부담하고 리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반영결과는 다음 <표 5-14>와 같다.

<표 5-14> 리 운영비 납부의향

문항	향후 귀하가 거주하는 마을에서 마을재정을 위해 리운영비(리정세)를 납부하도록 하면 납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비고
있다	410	85.8	
없다	68	14.2	
합계	478	100.0	

12)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개선분야에 대한 의견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해 마을에서 좀 더 개선되어야 할 분야에 대한 의견은 ‘마을운영 재원 확보’ 118명(24.8%), ‘주민복지 기능 강화’ 110명(23.2%), ‘마을자생단체 활동 강화’ 64명(13.5%), ‘마을회의 구조개선’ 60명(12.6%),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생활자치’ 49명(10.3%), ‘청년 참여비율 확대’ 29명(6.1%), ‘이주민 참여비율 확대’ 23명(4.8%), ‘여성 참여비율확대’ 22명(4.6%) 순으로 조사되고 있다.

마을주민들이 마을 구성원으로서 마을을 바라보는 시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마을이 경우 리 운영비를 통해 마을이 운영되고 있고, 주민복지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재정 여건상 주민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내용의 반영된 결과는 다음 <표 5-15>와 같다.

<표 5-15> 마을자치 활성화 개선분야

문항	귀하께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분야가 좀 더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빈도	유효퍼센트	비고
마을회의 구조개선	60	12.6	
주민복지기능 강화	110	23.2	
마을운영 재원확보	118	24.8	
자생단체 활동강화	64	13.5	
생활자치	49	10.3	
이주민 참여확대	23	4.8	
여성 참여확대	22	4.6	
청년 참여확대	29	6.1	
합계	475	100.0	

13) 기존 마을주민과 마을로 이주해온 이주민들간의 갈등 해결 및 정책 개선 사항

문항 : 최근 제주지역은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기존 지역주민들과 이주해 온 주민들간의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주해 온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 13)-1 갈등해결 방안

지역주민들과 이주민들의 갈등요인을 설문조사를 토대로 살펴보면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갈등이 대부분이었다. 각 마을에서는 소통 부재와 더불어 문화적인 차이등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이주민과 지역주민의 문화차이 이해이다. 이는 서로의 문화가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열린 자세로 다가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 주민과 소통체계 마련이다. 행정에서 지역주민과 이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축제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셋째, 마을문화 이해이다. 이주민의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마을공동체가 훼손되고 있으며, 잦은 민원으로 마을주민들이 피로도가 높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 전 제주문화 및 전입하고자 하는 지역의 문화를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 13)-2 정책개선 방안

마을로 전입하는 이주민들을 알기란 쉽지 않다. 마을주민들은 마을로 누가 오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마을주민들과 소통이 없어 힘들어 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첫째, 전입신고이다. 이주민들이 전입신고시 마을대표자를 직접 만나 마을의 문화 및 마을정책 배경 등을 소통할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귀촌교육이다.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교육 병행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셋째, 마을주민 동의다. 마을리장 및 마을회의 동의를 거쳐 마을에 이주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이주민 지원정책 개선이다.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에서 귀농귀촌에 대한 과도한 지원정책으로 기존 지역주민들은 역차별을 받는다고 토로한다. 농촌지역의 고령화가구 독신가구등 기존 지역주민들 중에도 지원대상이 많음에도 귀농귀촌에 상당 부분 예산이 치우쳐

있다고 했다. 귀농인 지원금이 부정하게 사용되면서 회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고 투기형 목적인 귀촌인들에게도 지원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은 이주민 지원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금이 ‘눈 먼 돈’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행정에서는 귀농인과 귀촌인을 분류하여 정말 필요한 귀농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 14) 마을자생단체(청년회·부녀회·노인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문항: 귀하께서는 마을 자생단체(청년회·부녀회·노인회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제주의 읍·면지역 마을은 청년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점점 쇠퇴해 가고 있고 마을임원 및 지역주민들은 마을에 조직되어 있는 자생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자생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첫째, 이주민의 참여정책 유도이다. 이를 위해 마을자생단체 이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마을에 보조금 차등 지원으로 이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이주민이 마을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둘째, 보조사업 활성화이다. 마을자생단체는 마을의 봉사단체. 마을복지체계의 근간이 되는 조직이다. 자생단체 보조사업의 자부담율을 줄이고, 봉사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자생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셋째, 교육이다. 행정에서 다양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자생단체가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 15) 거주지역에 마을자치와 관련하여 개선사항

문항 : 귀하께서 거주하는 지역(리·동(반))에 마을자치와 관련하여 개선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제주의 읍·면지역 마을자치의 근간은 향약이다. 이를 토대로 마을별로 자치활동을 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을자치 개선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생단체 활성화다. 마을자치의 근간인 자생단체 활성화를 통해 행정공백을 최소화 해야 된다고 보았다.

둘째, 소통이다. 이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셋째, 마을발전계획이다. 마을별 특색에 맞는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원하고 있다. 일률적이고 형식적인 마을발전계획이 아니라 마을문화를 투영하고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넷째, 마을환경을 고려한 사업선정이다. 보여주기식 공동체 사업이 아니라 마을의 지리적 환경과 문화를 고려하여 마을 정체성이 녹아 있는 공동체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자치역량강화이다. 지역주민들이 마을자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역실정에 맞는 마을자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여섯째, 행정과 소통이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읍·면장과 정기적인 소통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와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던 개발사업의 일괄처리과 제도를 마을자치 실정에 맞는 마을별 전담공무원제를 도입하여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복지사업, 마을자치사업 등 마을주민들이 어려워하는 행정처리를 보조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일곱째, 특색 있는 정주환경 개선이다. 마을별 문화를 살려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인구유입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 16) 마을자치규약인 향약 개선사항

문항 : 귀하께서 거주하는 지역 마을자치는 마을회 향약(규약, 회칙)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향약은 마을에서 발생하는 일을 해결하는 하나의 자치규약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마을 자치규약인 향약의 내용중 개선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마을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각 마을에 향약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약 수정보완이다. 향약 개정을 각 마을별로 시행하고 있으나 마을자치를 수행함에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개선은 리장선거제도, 마을어촌계의 권리권한 명시, 마을공동목장 운영, 지역주민의 권리 등이다. 둘째, 향약의 공개이다. 향약은 마을의 자치규약이다. 마을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주민과 지역주민들이 마을규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각 세대에 배포하여 마을운영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리고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셋째, 향약에 준거한 마을번호사제 도입이다. 향약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분쟁의 소지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을번호사제 도입이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17)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해 행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

문항 :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행정에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마을행정을 시행함에 있어 마을여건에 맞는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마을과 행정의 소통이다. 행정과 소통 부재로 마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이다. 행정에서 마을 의견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둘째,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 비율조정이다. 리장과의 면접조사에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조금 지원시 마을의 여건에 따라 자부담 비율을 조정하여 마을주민 스스로 정주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셋째, 마을재정지원이다. 마을주민이 늘고 공동체 지원사업이 많아짐에 따라 행정절차도 복잡해지고 사무장 수요가 늘고 있다. 마을운영에 따른 리 사무장 인건비 및 복리후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넷째, 리 유지 활용이다. 마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리유지를 마을주민들 스스로 개발사업을 유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

셋째, 마을사업 사후관리이다. 행정에서 마을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인 마을사업 추진으로 마을 건물 운영에 대한 비용적인 측면이 늘어나 마을별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사업 추진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추진을 통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사후관리체계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 3. 연령 및 거주년수 교차분석

#### 1) 연령에 따른 교차분석

##### (1) 연령에 따른 마을총회 참석연령 확대

연령에 따른 분포에 있어서 마을총회 참석연령 확대하는 방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hi^2 = 0.306$ ,  $p=0.969$ 로 연령에 따른 마을총회 참석연령 확대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상 ~ 40대 미만은 ‘좋다’ 24명(61.5%), ‘좋지 않다’ 15명(38.5%) 순으로 빈도를 보이고 있고, 40대 이상 ~ 50대 미만은 ‘좋다’ 70명(63.1%), ‘좋지 않다’ 41명(36.9%) 순이다. 50대 이상 ~ 60대 미만은 ‘좋다’ 162명(65.1%), ‘좋지 않다’ 87명(34.9%) 순으로 빈도를 보이고 있고, 60대 이상은 ‘좋다’ 51명(65.4%), ‘좋지 않다’ 27명(34.6%) 순으로 빈도를 보였다.

각 연령별로 확인결과 마을총회 참석연령 확대는 긍정적인 비율이 60% 이상 높은 선호를 보였다. 전 연령에서 ‘좋다’라는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며 그 중에도 60대 이상에서 ‘좋다’는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는 <표 5-16>과 같다.

<표 5-16> 연령에 따른 마을총회 참석연령 확대

연령	마을총회 참석연령 확대		계	$\chi^2$ (p)
	좋다	좋지않다		
20대 이상~40대 미만	24(61.5%)	15(38.5%)	39(100.0%)	0.306 (0.969)
40대 이상~50대 미만	70(63.1%)	41(36.9)	111(100.0%)	
50대 이상~60대 미만	162(65.1%)	87(34.9%)	249(100.0%)	
60대 이상	51(65.4%)	27(34.6%)	78(100.0%)	

\* p < 0.1, \*\* p < 0.05, \*\*\* p < 0.01

(2) 연령에 따른 마을 주요의사결정 청소년 참여 적정나이

연령에 따른 분포에 있어서 마을의 주요의사 결정에 청소년 참여 적정나이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 11.730, p=0.068로 연령에 따른 마을의 주요의사결정에 청소년 참여 나이를 확대하는 것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상 ~ 40대 미만은 ‘18세 이상’ 19명(86.4%), ‘17세 이상’ 2명(9.1%), ‘16세 이상’ 1명(4.5%) 순으로 빈도를 보이고 있고, 40대 이상 ~ 50대 미만은 ‘18세 이상’ 44명(75.9%), ‘17세 이상’ 10명(17.2%), ‘16세 이상’ 4명(6.9%) 순이다. 50대 이상 ~ 60대 미만은 ‘18세 이상’ 129명(92.1%), ‘17세 이상’ 7명(5.0%), ‘16세 이상’ 4명(2.9%) 순으로 빈도를 보이고 있고, 60대 이상은 ‘18세 이상’ 39명(92.9%), ‘17세 이상’ 2명(4.8%), ‘16세 이상’ 1명(2.4%) 순으로 빈도를 보였다.

각 연령별로 확인결과 전 연령에서 마을의 주요의사결정 참여 연령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비율은 ‘18세 이상’에서 긍정적인 비율이 75% 이상 높은 선호를 보였다. 이는 최근 정부에서 선거연령 하향조정으로 인한 결과가 주민들의 설문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각 마을리장 면접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표 5-17>과 같다.

<표 5-17> 연령에 따른 마을 주요의사결정 청소년 참여 적정나이

연령	마을의 주요의사결정에 청소년 참여 적정나이			계	$\chi^2$ (p)
	16세 이상	17세 이상	18세 이상		
20대 이상~40대 미만	1(4.5%)	2(9.1%)	19(86.4%)	22(100.0%)	11.730* (0.068)
40대 이상~50대 미만	4(6.9%)	10(17.2%)	44(75.9%)	58(100.0%)	
50대 이상~60대 미만	4(2.9%)	7(5.0%)	129(92.1%)	140(100.0%)	
60대 이상	1(2.4%)	2(4.8%)	39(92.9%)	42(100.0%)	

\* p < 0.1, \*\* p < 0.05, \*\*\* p < 0.01

### (3) 연령에 따른 마을리장의 개발위원장 겸직

연령에 따른 분포에 있어서 마을리장의 개발위원장 겸직하는 방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 6.575, p=0.087로 연령에 따른 마을리장 개발위원장 겸직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상 ~ 40대 미만은 ‘좋지 않다’ 21명(53.8%), ‘좋다’ 18명(46.2%) 순으로 빈도를 보이고 있고, 40대 이상 ~ 50대 미만은 ‘좋지 않다’ 58명(52.7%), ‘좋다’ 52명(47.3%) 순이다. 50대 이상 ~ 60대 미만은 ‘좋지 않다’ 149명(60.1%), ‘좋다’ 99명(39.9%) 순으로 빈도를 보이고 있고, 60대 이상은 ‘좋지 않다’ 55명(70.5%), ‘좋다’ 23명(29.5%) 순으로 빈도를 보였다.

각 연령별로 확인결과 전 연령에서 마을리장이 개발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비율이 50% 이상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5-18>과 같다.

<표 5-18> 연령에 따른 마을리장 겸직의견

연령	마을리장이 개발위원장 겸직		계	$\chi^2$ (p)
	좋다	좋지않다		
20대 이상~40대 미만	18(46.2%)	21(53.8%)	39(100.0%)	6.575* (0.087)
40대 이상~50대 미만	52(47.3%)	58(52.7%)	110(100.0%)	
50대 이상~60대 미만	99(39.9%)	149(60.1%)	248(100.0%)	
60대 이상	23(29.5%)	55(70.5%)	78(100.0%)	

\* p < 0.1, \*\* p < 0.05, \*\*\* p < 0.01

#### (4) 연령에 따른 이주민 리민자격 부여 기준

연령에 따른 분포에 있어서 마을로 이주한 이주민에 대한 리민자격 부여 기준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 19.169,  $p=0.085$ 로 연령에 따른 마을이주 리민의 자격 부여하는 방안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상 ~ 40대 미만은 ‘전입 후 1년이상 거주자’ 11명(28.9%), ‘전입 및 실거주자’와 ‘전입 후 3년 이상 거주자’가 각각 8명(21.1%),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자’ 6명(15.8%),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자’ 5명(13.2%)순으로 빈도를 보이고 있다.

40대 이상 ~ 50대 미만은 ‘전입 후 3년 이상 거주자’ 38명(36.9%), ‘전입 및 실거주자’ 30명(29.1%),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자’ 24명(23.3%),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자’ 8명(7.8%),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자’ 3명(2.9%) 순으로 빈도를 보이고 있다.

50대 이상 ~ 60대 미만은 ‘전입 후 3년 이상 거주자’ 81명(37.5%), ‘전입 및 실거주자’ 65명(30.1%),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자’ 39명(18.1%),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자’ 19명(8.8%),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자’ 12명(5.6%) 순으로 빈도를 보이고 있다.

60대 이상은 ‘전입 후 3년 이상 거주자’ 24명(35.3%),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자’ 16명(23.5%), ‘전입 및 실거주자’ 15명(22.1%),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자’ 10명(14.7%),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자’ 3명(4.4%) 순으로 빈도를 보였다.

각 연령별로 확인결과 마을로 이주한 이주민에 대한 리민자격 부여 기준에 대한 비율은 20대 이상 ~ 40대 미만에서는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자’가 높게 나타났고, 40대 이상 ~ 50대 미만에서는 ‘전입 후 3년이상 거주자’, 50대 이상 ~ 60대 미만은 ‘전입 및 실거주자’, 60대 이상은 ‘전입 후 3년 이상 거주자’가 높은 선호를 보였다. 그 결과는 <표 5-19>와 같다.

<표 5-19> 연령에 따른 이주민 리민자격부여 기준

연령	마을이주 리민의 자격 부여					계	$\chi^2$ (p)
	전입 및 실거주	전입 후 6개월	전입 후 1년	전입 후 2년	전입 후 3년		
20대 이상~40대 미만	8(21.1%)	6(15.8%)	11(28.9%)	5(13.2%)	8(21.1%)	38(100.0%)	19.16* (0.085)
40대 이상~50대 미만	30(29.1%)	3(2.9%)	24(23.3%)	8(7.8%)	38(36.9%)	108(100.0%)	
50대 이상~60대 미만	65(30.1%)	19(8.8%)	39(18.1%)	12(5.6%)	81(37.5%)	216(100.0%)	
60대 이상	15(22.1%)	10(14.7%)	16(23.5%)	3(4.4%)	24(35.3%)	68(100.0%)	

\* p < 0.1, \*\* p < 0.05, \*\*\* p < 0.01

(5) 연령에 따른 마을리장 선출 방법

연령에 따른 분포에 있어서 마을리장 선출하는 방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 19.910, p=0.018로 연령에 따른 마을리장 선출방법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상 ~ 40대 미만은 ‘향약에 정한 일정한 나이 이상 1인 1투표’ 27명(69.2%), ‘세대원을 대표하여 세대원 중 1인 투표’ 7명(17.9%), ‘마을주민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 투표’ 4명(10.3%), ‘개발위원회 추대 후 총회에서 인준’ 1명(2.6%) 순으로 빈도를 보이고 있고, 40대 이상 ~ 50대 미만은 ‘향약에 정한 일정한 나이 이상 1인 1투표’ 58명(52.7%), ‘세대원을 대표하여 세대원 중 1인 투표’ 29명(26.4%), ‘개발위원회 추대 후 총회에서 인준’ 18명(16.4%), ‘마을주민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 투표’ 5명(4.5%) 순이다.

50대 이상 ~ 60대 미만은 ‘향약에 정한 일정한 나이 이상 1인 1투표’ 107명(44.0%), ‘세대원을 대표하여 세대원 중 1인 투표’ 62명(25.5%), ‘개발위원회 추대 후 총회에서 인준’ 60명(24.7%), ‘마을주민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 투표’ 14명(5.8%) 순으로 빈도를 보이고 있고, 60대 이상은 ‘향약에 정한 일정한 나이 이상 1인 1투표’ 29명(39.2%), ‘세대원을 대표하여 세대원 중 1인 투표’ 24명(32.4%), ‘개발위원회 추대 후 총회에서 인준’ 18명(24.3%), ‘마을주민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 투표’ 3명(4.1%) 순으로 빈도를 보였다.

각 연령별로 확인결과 마을리장을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 연령에서 ‘향약

에 정한 일정한 나이 이상 1인 1투표'하는 것이 높은 선호를 보였다. 그 결과는 <표 5-20>과 같다.

<표 5-20> 연령에 따른 마을리장 선출 방법

연령	마을리장 선출 방법				계	$\chi^2$ (p)
	1인 1표	세대 1표	대의원 투표	총회인준		
20대 이상-40대 미만	27(69.2%)	7(17.9%)	4(10.3%)	1(2.6%)	39(100%)	19.910** (0.018)
40대 이상-50대 미만	58(52.7%)	29(26.4%)	5(4.5%)	18(16.4%)	110(100%)	
50대 이상-60대 미만	107(44.0%)	62(25.5%)	14(5.8%)	60(24.7%)	243(100%)	
60대 이상	29(39.2%)	24(32.4%)	3(4.1%)	18(24.3%)	74(100%)	

\* p < 0.1, \*\* p < 0.05, \*\*\* p < 0.01

#### (6) 연령에 따른 마을리장 임기제도

연령에 따른 분포에 있어서 마을리장 임기제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 12.998, p=0.163으로 연령에 따른 마을리장 임기제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상 ~ 40대 미만은 '1회 연임' 14명(36.8%), '단임제' 11명(28.9%), '연임제' 8명(21.1%), '중임제' 5명(13.2%) 순으로 빈도를 보이고 있고, 40대 이상 ~ 50대 미만은 '1회 연임' 51명(46.8%), '연임제' 28명(25.7%), '단임제' 24명(22.0%), '중임제' 6명(5.5%) 순이다. 50대 이상 ~ 60대 미만은 '1회 연임' 89명(37.4%), '단임제' 71명(29.8%), '연임제' 66명(27.7%), '중임제' 12명(5.0%) 순이며, 60대 이상은 '연임제' 27명(36.0%), '단임제' 및 '1회 연임'이 각각 23명(30.7%), '중임제' 2명(2.7%) 순으로 빈도를 보였다.

각 연령별로 확인결과 마을리장 임기제도에 대해서는 20대 이상 ~ 60대 미만인 연령에서는 '1회 연임' 높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60대 이상에서는 '연임제'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는 <표 5-21>과 같다.



<표 5-21> 연령에 따른 마을리장 임기제도

연령	마을리장 임기제도				계	$\chi^2$ (p)
	단임제	중임제	연임제	1회 연임		
20대 이상~40대 미만	11(28.9%)	5(13.2%)	8(21.1%)	14(36.8%)	38(100.0%)	12.998 (0.163)
40대 이상~50대 미만	24(22.0%)	6(5.5%)	28(25.7%)	51(46.8%)	109(100.0%)	
50대 이상~60대 미만	71(29.8%)	12(5.0%)	66(27.7%)	89(37.4%)	238(100.0%)	
60대 이상	23(30.7%)	2(2.7%)	27(36.0%)	23(30.7%)	75(100.0%)	

\* p < 0.1, \*\* p < 0.05, \*\*\* p < 0.01

(7) 연령에 따른 마을운영을 위한 기금마련 방법

연령에 따른 분포에 있어서 마을운영을 위한 기금마련 방법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 7.017, p=0.319로 연령에 따른 마을 운영을 위한 기금마련 방법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상 ~ 40대 미만은 ‘정부가 일부 보조’ 21명(58.3%), ‘주민스스로 확보’ 11명(30.6%), ‘정부가 모두 제공’ 4명(11.1%) 순으로 빈도를 보이고 있고, 40대 이상 ~ 50대 미만은 ‘정부가 일부 보조’ 73명(65.8%), ‘정부가 모두 제공’ 20명(18.0%), ‘주민 스스로 확보’ 18명(16.2%) 순이다.

50대 이상 ~ 60대 미만은 ‘정부가 일부 보조’ 147명(59.5%), ‘정부가 모두 제공’ 55명(22.3%), ‘주민 스스로 확보’ 45명(18.2%) 순이며, 60대 이상은 ‘정부가 일부 보조’ 47명(61.8%), ‘정부가 모두 제공’ 18명(23.7%), ‘주민 스스로 확보’ 11명(14.5%) 순으로 빈도를 보였다.

각 연령별로 확인결과 마을운영을 위한 기금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전 연령에서 ‘일부는 마을주민이 부담하고 일부는 정부가 보조’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는 <표 5-22>와 같다.

<표 5-22> 연령에 따른 마을운영 기금마련 방법

연령	마을 운영을 위한 기금 마련			계	$\chi^2$ (p)
	주민 스스로 확보	정부가 모두 제공	정부가 일부 보조		
20대 이상~40대 미만	11(30.6%)	4(11.1%)	21(58.3%)	36(100.0%)	7.017 (0.319)
40대 이상~50대 미만	18(16.2%)	20(18.0%)	73(65.8%)	111(100.0%)	
50대 이상~60대 미만	45(18.2%)	55(22.3%)	147(59.5%)	247(100.0%)	
60대 이상	11(14.5%)	18(23.7%)	47(61.8%)	76(100.0%)	

\* p < 0.1, \*\* p < 0.05, \*\*\* p < 0.01

(8) 연령에 따른 리 운영비 납부 의향

연령에 따른 분포에 있어서 마을운영을 위한 리 운영비 납부의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 5.351, p=0.148로 연령에 따른 리 운영비 납부의향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상 ~ 40대 미만은 ‘있다’ 30명(76.9%), ‘없다’ 9명(23.1%) 순이며, 40대 이상 ~ 50대 미만은 ‘있다’ 91명(82.0%), ‘없다’ 20명(18.0%), 50대 이상 ~ 60대 미만은 ‘있다’ 221명(88.4%), ‘없다’ 29명(11.6%), 60대 이상은 ‘있다’ 68명(82.7%), ‘없다’ 10명(12.8%) 순으로 빈도를 보였다.

각 연령별로 확인결과 전 연령에서 마을운영을 위한 리 운영비 납부의향은 ‘있다’는 의견이 높은 선호를 보였다. 그 결과는 <표 5-23>과 같다.

<표 5-23> 연령에 따른 리 운영비 납부 의향

연령	마을 리 운영비 납부 의향		계	$\chi^2$ (p)
	있다	없다		
20대 이상~40대 미만	30(76.9%)	9(23.1%)	39(100.0%)	5.351 (0.148)
40대 이상~50대 미만	91(82.0%)	20(18.0%)	111(100.0%)	
50대 이상~60대미만	221(88.4%)	29(11.6%)	250(100.0%)	
60대 이상	68(87.2%)	10(12.8%)	78(100.0%)	

\* p < 0.1, \*\* p < 0.05, \*\*\* p < 0.01

(9) 연령에 따른 마을자치 활성화 개선분야

연령에 따른 분포에 있어서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분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 30.710,  $p=0.079$ 로 연령에 따른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분야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상 ~ 40대 미만은 ‘주민복지 기능강화’ 8명(21.1%), ‘마을운영 재원확보’ 7명(18.4%), ‘마을회의 구조개선’ 및 ‘마을자생단체 활동 강화’ 각각 5명(13.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생활자치’ 및 ‘이주민 참여비율 확대’ 각각 4명(10.5%), ‘청년 참여비율 확대’ 3명(7.9%), ‘여성 참여비율 확대’ 2명(5.3%) 순으로 빈도를 보이고 있다.

40대 이상 ~ 50대 미만은 ‘주민복지기능 강화’ 및 ‘마을운영 재원확보’ 각각 23명(20.9%), ‘마을자생단체 활동강화’ 16명(14.5%), ‘청년 참여비율 확대’ 14명(12.7%), ‘마을회의 구조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생활자치’ 각각 13명(11.8%), ‘이주민 참여비율 확대’ 5명(4.5%), ‘여성 참여비율 확대’ 3명(2.7%) 순이다.

50대 이상 ~ 60대 미만은 ‘주민복지 기능 강화’ 67명(26.9%), ‘마을운영 재원확보’ 63명(25.3%), ‘마을자생단체 활동강화’ 34명(13.7%),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생활자치’ 27명(10.8%), ‘마을회의 구조개선’ 25명(10.0%), ‘여성 참여비율 확대’ 13명(5.2%), ‘이주민 참여비율 확대’ 및 ‘청년 참여비율 확대’ 각각 10명(4.0%) 순으로 빈도를 보이고 있다.

60대 이상은 ‘마을운영 재원확보’ 25명(32.1%), ‘마을회의 구조개선’ 17명(21.8%), ‘주민복지 기능 강화’ 12명(15.4%), ‘마을자생단체 활동 강화’ 9명(11.5%),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생활자치’ 5명(6.4%), ‘이주민 참여비율 확대’ 및 ‘여성 참여비율 확대’ 각각 4명(5.1%), ‘청년 참여비율 확대’ 2명(2.6%), 순으로 빈도를 보였다.

각 연령별로 확인결과 20대 이상 ~ 40대 미만은 ‘주민복지 기능 강화’가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40대 이상 ~ 50대 미만은 ‘주민복지 기능 강화’ 및 ‘마을운영 재원확보’가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50대 이상 ~ 60대 미만에서는 ‘주민복지기능 강화’가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60대 이상에서는 ‘마을운영 재원확보’가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그 결과는 <표 5-24>와 같다.

<표 5-24> 연령에 따른 마을자치 활성화 개선분야 선호 차이

연령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분야								계	$\chi^2$ (p)
	회의 개선	주민 복지 강화	마을 재원 확보	자생 단체 강화	생활 자치	아주민 참여 확대	여성 참여 확대	청년 참여 확대		
20대이상 ~ 40대 미만	5 (32%)	8 (21%)	7 (84%)	5 (32%)	4 (10%)	4 (10%)	2 (5%)	3 (7%)	38(100.0%)	30.710* (0.079)
40대이상 ~ 50대 미만	13 (118%)	23 (29%)	23 (29%)	16 (14%)	13 (118%)	5 (4%)	3 (2%)	14 (12%)	110(100.0%)	
50대이상 ~ 60대 미만	25 (100%)	67 (26%)	63 (23%)	34 (37%)	27 (108%)	10 (40%)	13 (52%)	10 (40%)	249(100.0%)	
60대 이상	17 (28%)	12 (54%)	25 (32%)	9 (11%)	5 (64%)	4 (51%)	4 (51%)	2 (29%)	78(100.0%)	

\* p < 0.1, \*\* p < 0.05, \*\*\* p < 0.01

## 2) 거주년수에 따른 교차분석

### (1) 거주년수에 따른 마을총회 참석연령 확대

거주년수에 따른 분포에 있어서 마을총회 참석연령 확대하는 방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 1.568, p=0.457로 거주년수에 따른 마을총회 참석연령 확대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미만은 ‘좋다’ 47명(71.2%), ‘좋지 않다’ 19명(28.8%) 순이며, 10년 이상 ~ 20년 미만은 ‘좋다’ 45명(63.4%), ‘좋지 않다’ 26명(36.6%) 순이다. 20년 이상은 ‘좋다’ 215명(63.2%), ‘좋지 않다’ 125명(34.9%) 순으로 빈도를 보였다.

각 거주년수별로 확인결과 마을총회 참석연령 확대는 ‘좋다’는 긍정적인 비율이 60% 이상 높은 선호를 보였다. 그 결과는 <표 5-25>와 같다.

<표 5-25> 거주년수에 따른 마을총회 참석연령 확대

거주년수	마을총회 참석연령 확대		계	$\chi^2$ (p)
	좋다	좋지 않다		
10년 미만	47(71.2%)	19(28.8%)	66(100.0%)	1.568 (0.457)
10년 이상~20년 미만	45(63.4%)	26(36.6%)	71(100.0%)	
20년 이상	215(63.2%)	125(36.8%)	340(100.0%)	

\* p < 0.1, \*\* p < 0.05, \*\*\* p < 0.01

(2) 거주년수에 따른 마을의 주요 의사결정 청소년 참여 적정나이

거주년수에 따른 분포에 있어서 마을의 주요의사 결정에 청소년 참여 적정나이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 4.150, p=0.386으로 거주년수에 따른 마을의 주요 의사결정에 청소년 참여 나이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미만은 ‘18세 이상’ 39명(90.7%), ‘17세 이상’ 3명(7.0%), ‘16세 이상’ 1명(2.3%)순이며, 10년 이상 ~ 20년 미만은 ‘18세이상’ 31명(81.6%), ‘17세 이상’ 6명(15.8%), ‘16세 이상’ 1명(2.6%)순이다. 20년 이상은 ‘18세 이상’ 161명(89.0%), ‘17세 이상’ 12명(6.6%), ‘16세 이상’ 8명(4.4%) 순으로 빈도를 보였다.

각 거주년수 별로 확인결과 마을의 주요의사결정 참여 연령 나이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비율은 ‘18세 이상’에서 긍정적인 비율이 80% 이상 높은 선호를 보였다. 그 결과는 <표 5-26>과 같다.

<표 5-26> 거주년수에 따른 마을 주요의사결정 청소년 참여 적정나이

거주년수	마을의 주요의사결정 청소년 적정나이			계	χ <sup>2</sup> (p)
	16세 이상	17세 이상	18세 이상		
10년 미만	1(2.3%)	3(7.0%)	39(90.7%)	43(100.0%)	4.150 (0.386)
10년 이상~20년미만	1(2.6%)	6(15.8%)	31(81.6%)	38(100.0%)	
20년 이상	8(4.4%)	12(6.6%)	161(89.0%)	181(100.0%)	

\* p < 0.1, \*\* p < 0.05, \*\*\* p < 0.01

(3) 거주년수에 따른 마을리장의 개발위원장 겸직 의견

거주년수에 따른 분포에 있어서 마을리장의 개발위원장 겸직하는 방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 1.514, p=0.469로 거주년수에 따른 마을리장 개발위원장 겸직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미만은 ‘좋지 않다’ 35명(53.0%), ‘좋다’ 31명(47.0%) 순이며, 10년 이상 ~ 20

년 미만은 ‘좋지 않다’ 41명(58.6%), ‘좋다’ 29명(41.4%) 순이다. 20년 이상은 ‘좋지 않다’ 207명(61.1%), ‘좋다’ 132명(38.9%) 순으로 빈도를 보였다.

각 거주년수별로 확인결과 마을리장이 개발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부정적인 비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5-27>과 같다.

<표 5-27> 거주년수에 따른 마을리장 겸직 의견

연령	마을리장이 개발위원장 겸직		계	$\chi^2$ (p)
	좋다	좋지않다		
10년 미만	31(47.0%)	35(53.0%)	66(100.0%)	1.514 (0.469)
10년 이상~20년 미만	29(41.4%)	41(58.6%)	70(100.0%)	
20년 이상	132(38.9%)	207(61.1%)	339(100.0%)	

\* p < 0.1, \*\* p < 0.05, \*\*\* p < 0.01

#### (4) 거주년수에 따른 이주민 리민자격 부여 기준

거주년수에 따른 분포에 있어서 마을이주 리민의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 6.191, p=0.626으로 거주년수에 따른 마을이주 리민의 자격 부여하는 기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미만은 ‘전입 후 3년 이상 거주자’ 23명(35.8%), ‘전입 및 실거주자’ 14명(21.9%),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자’ 12명(18.8%),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자’ 8명(12.5%),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자’ 7명(10.9%) 순이며, 10년 이상 ~ 20년 미만은 ‘전입 후 3년 이상 거주자’ 25명(36.8%), ‘전입 및 실거주자’ 19명(27.9%),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자’ 14명(20.6%),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자’ 6명(8.8%),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자’ 4명(5.9%) 순이다. 20년 이상은 ‘전입 후 3년 이상 거주자’ 103명(35.2%), ‘전입 및 실거주자’ 85명(29.0%),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자’ 64명(21.8%),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자’ 26명(8.9%),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자’ 15명(5.1%) 순으로 빈도를 보였다.

각 거주년수별로 확인결과 마을로 이주한 이주민에 대한 리민자격 부여 기준에 대한 비율은 ‘전입 후 3년 이상 거주자’가 높은 선호를 보였다. 그 결과는 <표 5-28>과 같다.

<표 5-28> 거주년수에 따른 이주민 리민자격부여 기준

거주년수	마을이주 리민의 자격 부여					계	$\chi^2$ (p)
	전입 및 실거주	전입후 6개월	전입후 1년	전입후 2년	전입후 3년		
10년 미만	14 (21.9%)	8 (12.5%)	12 (18.8%)	7 (10.9%)	23 (35.9%)	64(100.0%)	6.191 (0.626)
10년 이상~ 20년미만	19 (27.9%)	4 (5.9%)	14 (20.6%)	6 (8.8%)	25 (36.8%)	68(100.0%)	
20년 이상	85 (29.0%)	26 (8.9%)	64 (21.8%)	15 (5.1%)	103 (35.2%)	293(100.0%)	

\* p < 0.1, \*\* p < 0.05, \*\*\* p < 0.01

#### (5) 거주년수에 따른 마을리장 선출 방법

거주년수에 따른 분포에 있어서 마을리장 선출하는 방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hi^2 = 14.978$ ,  $p=0.020$ 으로 거주년수에 따른 리장 선출 방법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미만은 ‘향약에 정한 일정한 나이 이상 1인 1투표’ 39명(59.1%), ‘세대원을 대표하여 세대원 중 1인 투표’ 15명(22.7%), ‘개발위원회 추대 후 총회에서 인준’ 7명(10.6%), ‘마을주민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 투표’ 5명(7.6%) 순이며, 10년 이상 ~ 20년 미만은 ‘향약에 정한 일정한 나이 이상 1인 1투표’ 42명(60.0%), ‘세대원을 대표하여 세대원 중 1인 투표’ 14명(20.0%), ‘개발위원회 추대 후 총회에서 인준’ 10명(14.3%), ‘마을주민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 투표’ 4명(5.7%) 순이다. 20년 이상은 ‘향약에 정한 일정한 나이 이상 1인 1투표’ 140명(42.4%), ‘세대원을 대표하여 세대원 중 1인 투표’ 93명(28.2%), ‘개발위원회 추대 후 총회에서 인준’ 80명(24.2%), ‘마을주민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 투표’ 17명(5.2%) 순으로 빈도를 보였다.

각 거주년수별로 확인결과 마을리장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향약에 정한 일정한 나이 이상 1인 1투표 하는 것’이 높은 선호를 보였다. 그 결과는 <표 5-29>와 같다.

<표 5-29> 거주년수에 따른 마을리장 선출 방법

거주년수	마을리장 선출				계	$\chi^2$ (p)
	1인 1표	세대 1표	대의원 투표	총회인준		
10년 미만	39 (59.1%)	15 (22.7%)	5 (7.6%)	7 (10.6%)	66 (100.0%)	14.978** (0.020)
10년 이상~20년 미만	42 (60.0%)	14 (20.0%)	4 (5.7%)	10 (14.3%)	70 (100.0%)	
20년 이상	140 (42.4%)	93 (28.2%)	17 (5.2%)	80 (24.2%)	330 (100.0%)	

\* p < 0.1, \*\* p < 0.05, \*\*\* p < 0.01

(6) 거주년수에 따른 마을리장 임기제도

거주년수에 따른 분포에 있어서 마을리장 임기제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 24.773, p=0.000으로 거주년수에 따른 마을리장 임기 제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미만은 마을리장 임기제도에 대해서 ‘1회 연임’ 29명(44.6%), ‘연임제’ 13명(20.0%), ‘단임제’ 12명(18.5%), ‘중임제’ 11명(16.9%) 순이며, 10년 이상 ~ 20년 미만은 ‘1회 연임’ 29명(43.9%), ‘단임제’ 18명(27.3%), ‘연임제’ 17명(25.8%), ‘중임제’ 2명(3.0%) 순이다. 20년 이상은 ‘1회 연임’ 119명(36.2%), ‘단임제’ 및 ‘연임제’가 각각 99명(30.1%), ‘중임제’ 12명(3.6%) 순으로 빈도를 보였다.

각 거주년수별로 확인결과 마을리장 임기제도에 대해서는 ‘1회 연임’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는 <표 5-30>과 같다.

<표 5-30> 거주년수에 따른 마을리장 임기제도

거주년수	마을리장 임기제도				계	$\chi^2$ (p)
	단임제	중임제	연임제	1회 연임		
10년 미만	12 (18.5%)	11 (16.9%)	13 (20.0%)	29 (44.6%)	65 (100.0%)	24.773*** (0.000)
10년 이상~20년 미만	18 (27.3%)	2 (3.0%)	17 (25.8%)	29 (43.9%)	66 (100.0%)	
20년 이상	99 (30.1%)	12 (3.6%)	99 (30.1%)	119 (36.2%)	329 (100.0%)	

\* p < 0.1, \*\* p < 0.05, \*\*\* p < 0.01



(7) 거주년수에 따른 마을운영 기금마련 방법

거주년수에 따른 분포에 있어서 마을운영을 위한 기금마련 방법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 5.308, p=0.257로 거주년수에 따른 마을운영을 위한 기금마련 방법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미만은 ‘정부가 일부보조’ 43명(67.2%), ‘주민 스스로 확보’ 13명(20.3%), ‘정부가 모두 제공’ 8명(12.5%) 순이며, 10년 이상 ~ 20년 미만은 ‘정부가 일부 보조’ 44명(62.9%), ‘주민 스스로 확보’ 15명(21.4%), ‘정부가 모두 제공’ 11명(15.7%) 순이다. 20년 이상은 ‘정부가 일부 보조’ 201명(59.8%), ‘정부가 모두 제공’ 78명(23.2%), ‘주민 스스로 확보’ 57명(17.0%) 순으로 빈도를 보였다.

각 거주년수별로 확인결과 마을운영을 위한 기금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일부는 마을주민이 부담하고 일부는 정부가 보조’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는 <표 5-31>과 같다.

<표 5-31> 거주년수에 따른 마을운영 기금마련 방법

거주년수	마을운영을 위한 기금 마련			계	$\chi^2$ (p)
	주민 스스로 확보	정부가 모두 제공	정부가 일부 보조		
10년 미만	13 (20.3%)	8 (12.5%)	43 (67.2%)	64 (100.0%)	5.308 (0.257)
10년이상~20년미만	15 (21.4%)	11 (15.7%)	44 (62.9%)	70 (100.0%)	
20년 이상	57 (17.0%)	78 (23.2%)	201 (59.8%)	336 (100.0%)	

\* p < 0.1, \*\* p < 0.05, \*\*\* p < 0.01

(8) 거주년수에 따른 리 운영비 납부의향

거주년수에 따른 분포에 있어서 리 운영비 납부 의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 0.468, p=0.791로 거주년수에 따른 리 운영비 납부 의향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미만은 ‘있다’ 55명(83.3%), ‘없다’ 11명(16.7%) 순이며, 10년 이상 ~ 20년 미

만은 ‘있다’ 62명(87.3%), ‘없다’ 9명(12.7%) 순이다. 20년 이상은 ‘있다’ 293명(85.9%), ‘없다’ 48명(14.1%) 순으로 빈도를 보였다.

각 거주년수별로 확인결과 리 운영비 납부의향은 ‘있다’는 의견이 높은 선호를 보였다. 그 결과는 <표 5-32>와 같다.

<표 5-32> 거주년수에 따른 리 운영비 납부의향

거주년수	마을리운영비 납부의향		계	$\chi^2$ (p)
	있다	없다		
10년 미만	55(83.3%)	11(16.7%)	66(100.0%)	0.468 (0.791)
10년 이상~20년 미만	62(87.3%)	9(12.7%)	71(100.0%)	
20년이상	293(85.9%)	48(14.1%)	341(100.0%)	

\* p < 0.1, \*\* p < 0.05, \*\*\* p < 0.01

#### (9) 거주년수에 따른 마을자치 활성화 개선분야 선호 차이

거주년수에 따른 분포에 있어서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분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 20.015, p=0.130으로 거주년수에 따른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분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미만은 ‘주민복지 기능 강화’ 19명(29.7%), ‘마을운영 재원확보’ 13명(20.3%),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생활자치’ 12명(18.8%), ‘마을회의 구조개선’ 8명(12.5%), ‘청년 참여 비율확대’ 5명(7.8%), ‘마을자생단체 활동 강화’ 4명(6.3%), ‘이주민 참여 비율확대’ 3명(4.7%) 순으로 빈도를 보이고 있고, 10년 이상 ~ 20년 미만은 ‘마을운영 재원 확보’ 15명(21.1%), ‘주민복지기능 강화’ 13명(18.3%), ‘마을자생단체 활동 강화’ 10명(14.1%), ‘마을회의 구조개선’ 9명(12.7%), ‘청년 참여비율 확대’ 8명(11.3%),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생활자치’ 7명(9.9%), ‘이주민 참여비율 확대’ 5명(7.0%), ‘여성 참여비율 확대’ 4명(5.6%) 순이다.

20년 이상은 ‘마을운영 재원확보’ 90명(26.5%), ‘주민복지 기능 강화’ 78명(22.9%), ‘마을자생단체 활동 강화’ 50명(14.7%), ‘마을회의 구조개선’ 43명(12.6%),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생활자치’ 30명(8.8%), ‘여성 참여비율 확대’ 18명(5.3%), ‘청년 참

여비율 확대' 16명(4.7%), '이주민 참여비율 확대' 15명(4.4%) 순으로 빈도를 보였다.

각 거주년수 별로 확인결과 마을자치 활성화 개선분야 선호 차이는 10년 미만은 '주민복지 기능 강화'가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10년 ~ 20년 이상은 '마을운영 재원 확보'가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그 결과는 <표 5-33>과 같다.

<표 5-33> 거주년수에 따른 마을자치 활성화 개선분야 선호 차이

거주년수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분야								계	$\chi^2$ (p)
	회의 개선	주민 복지 강화	마을 재원 확보	자생 단체 강화	생활 자치	이주민 참여 확대	여성 참여 확대	청년 참여 확대		
10년 미만	8 (12%)	19 (27%)	13 (19%)	4 (6%)	12 (18%)	3 (4%)	0 (0%)	5 (7%)	64 (100%)	200.5 (0.00)
10년 이상~ 20년 미만	9 (12%)	13 (18%)	15 (21%)	10 (14%)	7 (9%)	5 (7%)	4 (5%)	8 (11%)	71 (100%)	
20년 이상	43 (12%)	78 (22%)	90 (26%)	50 (14%)	30 (8%)	15 (4%)	18 (5%)	16 (4%)	340 (100%)	

\* p < 0.1, \*\* p < 0.05, \*\*\* p < 0.01

#### 4. 성별, 거주지역 집단별 차이 분석

##### 1) 응답자 특성별 마을총회 및 리장선거 1인 1표제 개정에 대한 인식 차이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마을총회 및 리장선거 1인 1표제 개정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별(t=29.915, p=0.000), 거주지역 (t=2.087, p=0.03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개정이 더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서귀포시와 제주시 모두 개정 필요하다고 나타났고, 제주시보다는 서귀포시가 개정이 필요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는 <표 5-34>와 같다.

<표 5-34> 지역별 응답자 특성별 마을총회 및 리장선거 1인 1표제 개정 차이

문항		마을총회 및 리장선거시 일부 마을에서는 세대를 대표한 1인이 의사 결정 및 선거로 여성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되고 있다며 관련단체에서 마을마다 이런 조항을 개정해 달라고 공론화사업을 펼치고 있고, 여성들의 의사반영 및 의사 결정권 확보를 위해서도 1인 1표제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t값	P값
성별	남성	325	2.30	1.156	29.915	0.000***
	여성	151	1.92	0.902		
거주지역	제주시	248	2.29	1.085	2.087	0.032**
	서귀포시	228	2.07	1.098		

\* p < 0.1, \*\* p < 0.05, \*\*\* p < 0.01

2) 응답자 특성별 마을운영 기금확보 필요성에 대한 차이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마을운영을 위한 기금 필요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별(t=1.285, p=0.983)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지역 (t=2.988, p=0.014)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제주시 및 서귀포시 두 지역 모두 필요하다는 편으로 조사되고 있고, 이는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는 <표 5-35>와 같다.

<표 5-35> 지역별 응답자 특성별 마을운영기금 확보 필요성 차이

항목		귀하께서는 마을운영(리사무소 운영 및 마을사업)을 위한 기금(자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t값	P값
성별	남성	327	1.53	0.599	1.285	0.983
	여성	151	1.53	0.551		
거주지역	제주시	250	1.59	0.545	2.988	0.014**
	서귀포시	228	1.46	0.617		

\* p < 0.1, \*\* p < 0.05, \*\*\* p < 0.01

### 3) 응답자 특성별 리 운영비 납부 필요성에 대한 차이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마을운영을 위한 리 운영비 납부 필요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별( $t=3.543$ ,  $p=0.615$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지역 ( $t=3.444$ ,  $p=0.080$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제주시 및 서귀포시 두 지역 모두 리 운영비 납부가 필요하다고 나타났고, 이는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는 <표 5-36>과 같다.

<표 5-36> 지역별 응답자 특성별 리 운영비 납부 필요성 차이

항목		마을재정을 위해 일부마을에서 리운영비(리정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귀하께서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성별	남성	327	2.01	0.962	3.543	0.615
	여성	150	1.96	0.814		
거주지역	제주시	249	2.06	0.876	3.444	0.080*
	서귀포시	228	1.92	0.956		

\*  $p < 0.1$ , \*\*  $p < 0.05$ , \*\*\*  $p < 0.01$

## 5. 함의

마을자치 및 마을운영에 대한 분석결과 마을총회 참석연령을 확대 해야된다는 의견은 64.4%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마을 주요 의사결정 참여연령 확대시 적정한 연령은 18세 이상이 88.2%였다. 이는 기존에 선거법이 개정되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마을리장이 개발위원장 겸직에 대한 의견은 59.6%가 부정적인 의견이다. 이는 주관식 문항에서도 나타났듯이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일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다.

리민의 자격부여 기준으로는 전입 후 3년 이상 거주자가 35.5%로 가장 높게 나타

나고 있다. 마을리장 선출방법에 대한 의견은 일부마을에서 세대당 1표제를 하고 있으나 설문에서는 1인 1표제가 47.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가 많은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총회 및 리장 투표시 세대당 1표로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을총회 및 리장선거를 1인 1표로 개선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74%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마을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제주지역에 이주민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주민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예전의 관습들은 변화를 해야한다는 의견이다. 기존의 마을자치 규약에서 정하는 세대당 1표제의 산물은 주민들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결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지고 가부장적인 제도가 사라짐에 따라 참정권에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마을리장 임기제도에서는 1회 연임이 38.5%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마을운영을 위한 기금확보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는 96.2%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을운영을 위한 기금마련 방법에 대한 의견에서는 60.3%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보조해 주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마을운영을 위한 리 운영비 납부 필요성에 대해 81.4%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리 운영비 납부의향을 묻는 질문에 85.8%가 납부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마을주민들의 마을운영 주체로서 마을자치를 스스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제주의 읍·면지역 마을의 재정여건은 마을소유의 공유재산 여부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공유재산이 없는 마을에서는 마을 스스로 마을만들기 사업, 농업직불제사업, 리 운영비 납부제도 등을 통해 마을재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마을 재원 여부가 마을자치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에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개선분야에 대한 의견은 첫째, 마을운영 재원 확보, 둘째, 주민복지 기능강화, 셋째, 자생단체 활동강화, 넷째, 마을회의 구조 개선, 다섯째, 생활자치, 여섯째, 청년 참여확대, 일곱째, 이주민 참여확대, 여덟째, 여성 참여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분석을 토대로 제주 마을별로 마을운영과 마을자치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소통이다. 마을주민, 이주민, 행정과의 소통이다. 마을주민과 이주민의 소통은 이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행사와 이

주민의 지역문화 교육을 통하여 제주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행정과 마을의 소통은 경청이다. 마을자치를 위해 마을주민들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이다. 마을에서 필요한 정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마을의 체계적인 발전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마을자치규약 개선 및 홍보이다. 제주마을은 마을자치규약인 향약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주민들간이 약속인 것이다. 이를 위해 마을별 향약이 현실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향약을 홍보하는 행정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을번호사제 도입을 통해 마을주민들의 향약개선 과정을 도와줄 필요성이 있다.

셋째, 마을전담공무원의 필요성이다.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복지사업, 마을정주환경 개선사업 등 마을에 산적한 사업들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전담공무원제 시행이다. 이를 통하여 마을이 균형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내고 행정과 마을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갈등관리다. 마을을 이해하고 마을자치 근간을 이해할 수 있는 조직을 통하여 마을별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마을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마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집단간 차이 분석에 대한 설문결과는 첫째,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마을총회 및 리장선거 1인 1표제 개정 차이, 마을운영기금 필요 차이, 마을운영을 위한 리 운영비 납부 필요 차이 등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성별로 살펴보면 마을총회 및 리장선거 1인 1표제 개정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

## 제 6 장 정책제언 및 결론

### 제 1 절 제주형 마을자치 모형 설정 안 제안

제주형 마을자치모형은 제주의 읍·면지역 마을향약 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성인 마을 주민수, 마을의 의사결정 체계, 마을운영 재원, 마을자치회 대표인 리장 선출 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모형으로 협력형 마을자치 모형<sup>11)</sup>, 위임형 마을자치 모형<sup>12)</sup>, 통합형 마을자치 모형<sup>13)</sup>등 세가지 유형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은 마을의 일반화 및 표준화 마을자치 모형으로 각 마을의 특성을 모두 담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문헌연구, 전문가 조사, 마을리장 면접조사를 통해 일반화된 표준모형을 제시할 수 있었다.

#### 1. 협력형 마을자치 모형

협력형 마을자치 모형은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마을을 운영하는 형태의 모형이다. 마을거주 인구가 2,000명 이상 되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마을 소유의 공유재산이 있어 마을운영에 필요한 소득원이 있는 마을자치 모형이다. 그리고 마을자치회 대표인 리장도 무기명 투표로 주민들의 직접 선출하는 모형이다.

마을운영 재원인 공유재산이 있어 마을자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율도 높고 마을회의구조 또한 비교적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리장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기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마을자치회 대표인 리장을 중심으로 심의기구와 집행기구를 분리하여 운영되며 기능별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한다.

심의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리장을 포함하여 각 동을 대표하는 선출직 개발위원(각동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 선발할 수 있음), 자생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 
- 11) 큰 마을에 해당하는 모형으로 마을거주 인원이 2,000명 이상이고 마을운영을 위한 일정한 소득원이 있고 회의구조 또한 비교적 체계적인 마을자치 모형임.
  - 12) 중간 정도 규모의 마을에 해당하는 모형으로 마을거주 인원이 2,000명 미만 500명이상인 마을로 제주의 읍·면지역 마을에 가장 많이 분포된 마을자치 모형임
  - 13) 작은 마을에 해당하는 모형으로 마을거주 인원인 500명 미만이고 마을자치회 대표인 리장도 추대에 의해 선출되는 마을자치 모형임.



다. 운영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향약 및 규정안 심의, 선거관리위원 위촉, 리 운영비 수납요령 심의, 각 자생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심의 등 총회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총회 상정안건 및 논의를 위해 자연마을의 각 동장과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으며 운영한다.

집행기구인 개발위원회는 마을개발 관련사항 및 운영위원회 상정안건을 검토하여 운영위원회로 상정하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개발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로 재산관리위원회, 복지추진 위원회, 자치사업 추진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 위원은 일정부분 전문가 및 관심 있는 리민 중에 선임하며 소위원회별로 자체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소위원회별 기능을 살펴보면 재산관리위원회는 마을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로 각종 임대수익금, 각종예탁금의 이자 수입금, 독지가의 기부금 및 찬조금, 행정기관의 상금 또는 사업비, 리 운영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마을은 재무위원을 두어 마을재산을 관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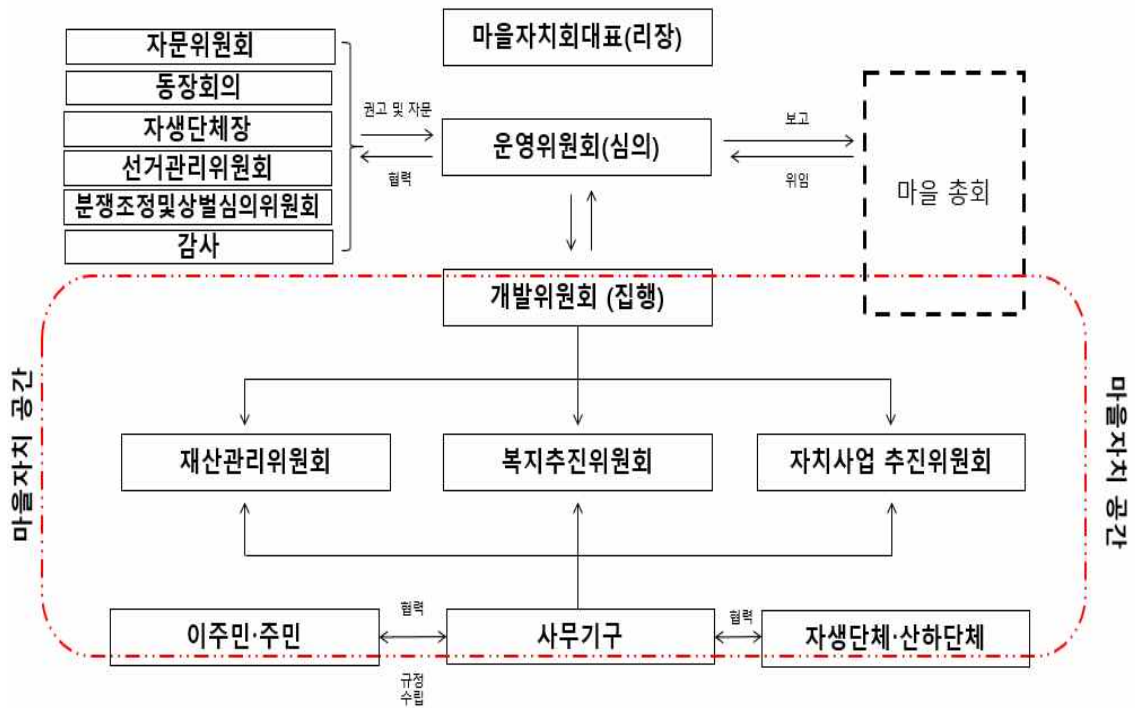
복지추진위원회는 마을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위원회로 노인, 장애인등 소외계층 지원사업, 장학사업, 정보화마을 및 마을문고 운영, 마을소식지 발간 사업 등을 추진한다.

자치사업추진위원회는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주관 행사, 마을 강좌등 주민화합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

이와 별개로 리장 선출규정 등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마을 분쟁을 조정하고 마을발전 기여자 및 저해자에 대한 포상과 징계를 위한 분쟁조정 및 상·벌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리 사업 및 업무의 집행과 재산관리 상황 등 모든 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와 검사를 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 단, 감사는 다른 임원과 그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그리고 마을자치회를 보조하고 마을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 사무기구를 두어 운영한다. 사무기구는 리 사무장을 중심으로 각 위원회 활동을 보조하며 농업용수 관리 등 산하단체 업무와 마을 자생단체의 행정홍보 사항 등을 협조한다. 그리고 마을로 전입해 오는 이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건의사항을 해소하고 협력방안을 수립하여 마을자치회 대표인 리장에게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다음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협력형 마을자치 모형



## 2. 위임형 마을자치 모형

마을거주 인원이 2,000명 미만 500명 이상인 마을로 마을의 모든 권한을 마을자치회 대표인 리장에게 위임하는 형태의 마을자치모형이다. 제주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한 모형으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는 리장이 업무처리 능력에 따라 개발위원회의 추대로 계속하여 리장직을 연임하여 수행하기도 하고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형태를 병행하고 있는 마을 모형이다.

마을자치회 대표인 리장을 중심으로 심의기능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갖춘 개발위원회를 두어 운영한다. 그리고 마을자치회 대표인 리장을 보좌하는 기구로 동장회의를 두며 개발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등을 위해 임원회의를 두어서 리장의 권한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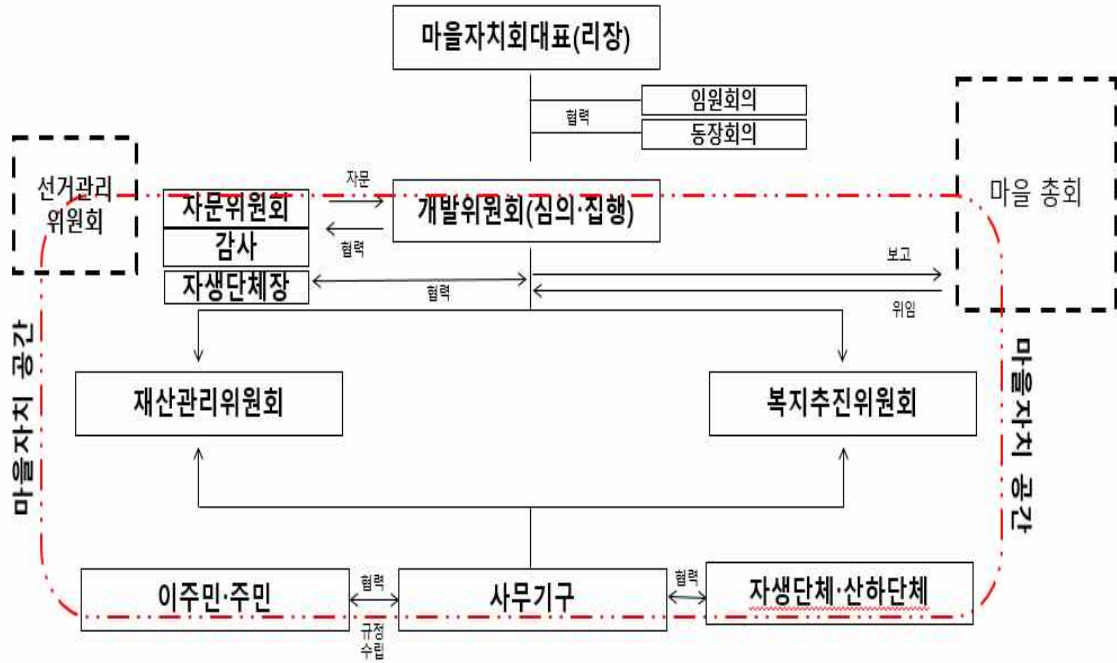
심의·의결기구인 개발위원회 위원은 리장을 포함하여 자연마을 대표(자연마을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 선발할 수 있음)와 자생단체장 등으로 구성한다. 주요기능은 향약 및 규정 제·개정 심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 재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 선출 등 총회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 외에 리민의 여론을 리정에 반영하고 장학사업, 상·벌심의, 마을행사 및 마을자치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개발위원회 산하에 재산관리위원회와 복지추진위원회를 두며 총회 상정안건 논의를 위해 자문위원회와 마을 자생단체장들과 협의하며 추진한다.

재산관리 위원회는 각종 임대수익금, 각종 예탁금의 이자 수입금, 독지가의 기부금 및 찬조금, 행정기관의 상금 또는 사업비, 리 운영비 등 마을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재무위원을 두어 관리한다.

복지추진위원회는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 정보화마을 및 마을 문고회 운영 등 마을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재산관리 위원회와 복지추진위원회등 각 위원회는 별도의 자체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그 외 선거관리 위원회를 두어 리장 선거에 관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하며 감사를 두어 마을사업 및 재산관리 상황 등 마을의 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와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단, 감사는 다른 임원과 그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리사무장을 중심으로 한 사무기구는 마을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위원회를 보조하며 영농회와 수리계등 산하단체의 업무와 자생단체의 행정협조 사항 등을 처리한다. 이 외에도 사무기구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마을로 전입해 오는 이주민들의 협조사항 등 협력방안을 수립하여 마을자치회 대표인 리장에게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다음(그림 5-2)과 같다.

(그림 5-2) 위임형 마을자치 모형



### 3. 통합형 마을자치 모형

통합형 마을자치 모형은 개발위원회가 발의·심의·집행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사무기구는 복지사업 추진 및 개발위원회를 보좌하여 마을을 운영하는 형태의 마을자치 모형이다. 마을거주 인원이 500명 미만인 마을자치 모형으로 마을자치회 대표인 리장도 개발위원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인준하는 형태로 선출하는 등 마을 규모가 작고 인구 또한 고령화된 지역의 마을자치 모형이다.

개발위원회가 주도하여 마을자치가 이뤄지는 곳으로 사무기구와 협조하며 마을을 운영한다. 각 마을의 동장이 마을자치회 대표인 리장을 보좌하며 감사를 두어 마을 사업 및 업무의 집행과 재산관리 상황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와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단, 감사는 다른 임원과 그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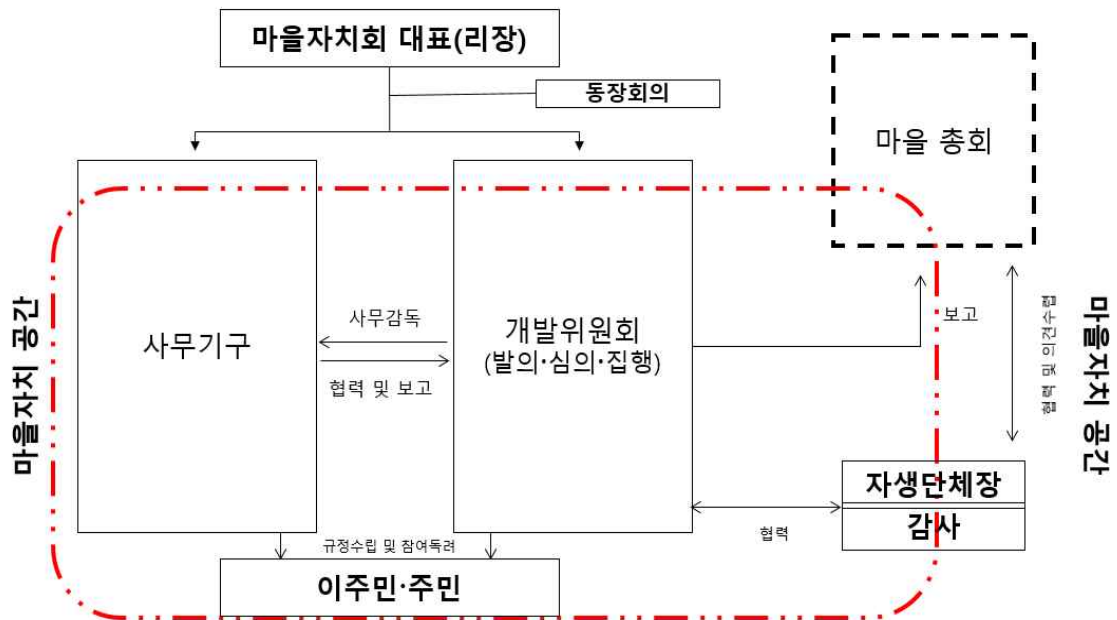
개발위원회 위원은 리장을 포함하여 자연마을 대표와 지역단체장 등으로 구성하

며 심의·의결기능뿐 아니라 마을회 안건 발의 기능까지 수행한다. 개발위원회의 주요기능은 향약 및 규정 제·개정 심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 마을행사 및 마을자치사업 추진, 재산관리, 선거관리, 상·별심의 등 총회 상정안건을 자생단체장과 감사와 협의하며 추진한다.

사무기구는 리 사무장을 중심으로 개발위원회를 보조하며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 등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산하단체와 마을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며 행정협조 사항을 전파하고 이행을 돕는다.

마을로 전입해 오는 이주민과 지역주민은 사무기구와 개발위원회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이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주민과의 협력방안을 수립하여 마을자치회 대표인 리장에게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다음(그림 5-3)과 같다.

(그림 5-3) 통합형 마을자치 모형



## 제 2 절 마을자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 1. 통·리 단위 주민자치회 설치를 위한 주민자치 관련법 제·개정

제주지역의 주민자치는 읍·면·동보다 작은 단위인 행정리에서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정리는 마을자치 규약인 향약에 근거하여 풀뿌리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지도자를 선출하는 규정, 마을회를 운영하는 규정, 리민의 권리 등 가장 작은 단위에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향약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회를 주민자치회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개정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공동체 문제를 논의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자생적 민·관협력의 근린자치모델로 행정안전부가 2013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9년 11월 기준 전국 408개 읍·면·동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2019년 1월 28일 행정안전부가 공지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의하면 주민자치회는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주민자치회 구성단위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 단위보다 하위인 통·리 단위 주민자치회는 설치할 수 없다. 통·리 단위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경우 난립의 우려가 있기는 하나 자율적 조직으로 두어 주민의 선택과 자율에 맡겨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기본법은 지방자치법에는 관련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나 전문가들은 개별법 제정을 선호하고 있고 일부 학자들은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조직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담당하던 기능을 포함해서 주민자치회 구성단위가 통·리 단위에서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되면 행·재정적 지원체계 등 실체적 요소가 부가되어 주민자치 활성화의 계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2.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마을단체 지원 등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보조금에 대한 자부담 비율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침으로 사업유형별로 구분하여 자부담이 없는 사업부터 최대 50%까지 부담하는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있다. 마을여건과 관계없이 기준보조율로 사업을 지원을 하다 보니 마을 재원여부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도가 비례하고 있다. 마을의 재원은 공유재산 임대수익금, 독지가의 기부금 및 찬조금, 리 운영비, 행정기관의 상금 또는 사업비가 전부다. 일부마을의 경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수입금을 마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마을도 있고 리 운영비가 재원 전부인 마을도 있다. 마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이 수입금으로 리 사무장 보수를 지원하고 자생단체 활동 재원을 보조하고 있다. 자생단체에서는 마을지원 보조금이 부족하여 마을 체육대회나 행사 등을 주관하여 얻은 수익금을 통해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마을사업 또한 마찬가지다. 마을재원이 없는 마을은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보조율이 높은 경우는 보조 재원이 없어 참여할 수 없고 재원이 있는 마을만 사업에 참여하는 일종의 부익부 빈익빈의 형태로 마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리장과의 면담에서도 주민참여와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생단체 활동지원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이고 마을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마을재정을 위한 리 운영비 납부 필요성에 대해 81.4%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리 운영비 납부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도 85.8%가 납부의향이 있다고 하고 있고 전 연령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마을공동체를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액을 납부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여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행정이 도움 없이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자치를 활성화하고 공동체를 이끌어 가기는 부족한 실정이다. 마을은 ‘행정’이라는 조력자를 발판으로 마을자치를 활성화 하는데 추진력을 얻고 행정은 지역주민과 윈윈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마을단체와 마을자치사업 지원을 통해 마을자치와 공동체가 활성화 되도록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을 마을의 규모와 실정 등을 감안하여 차등적용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3.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부서 일원화 및 공동체지원 중간조직 설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2006년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정책이 추진되면서 참여정부의 분권 및 균형발전과 연계하여 새로운 지역발전의 모델로 행정안전부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시작으로 개별법에 의해 각 부처가 제각각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당실국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각종 사업이 중복지원되어 자원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통일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도 어렵게 만들고 있고 전체적인 마을단위 사업에 대한 운영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침체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부의 농촌체험마을,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마을, 행정안전부의 정보화마을, 농촌진흥청의 농촌건강장수마을, 농촌전통 테마마을 등 여러 부서에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스스로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는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농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등도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제주의 경우 개별법에 의해 마을만들기사업을 지원하는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 내 균등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등 마을과 행정의 중간조직도 운영되고 있다.

마을에서는 정부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의 정체성을 살리며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기도 어렵고 사업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면서 투자된 인프라에 대한 유지관리의 부담만 가중될 뿐 지속적 관리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그리고 마을자치회 대표인 리장과의 면담에서도 사라져가는 공동체 문화의 회복과 공동체의 자치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귀농귀촌에 대한 과도한 지원으로 이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마을자치회 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마을 문화 이해교육을 통해 마을주민과 갈등을 해소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마을사업에 대해서도 전담공무원의 필요성과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실국별로 산재 되어있는 마을지원 기능을 통합하는 도 단위의 마을공동체



지원부서를 신설하고 개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중간조직을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마을공동체 지원조직이 필요하다. 이 마을공동체 중간조직은 정부의 각 부처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공모사업 선정을 돕는 기능을 하도록 한다. 즉 공동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특성과 정서를 고려한 마을공동체 교육을 지원하고 마을사업을 추진하기 전 타당성 검토부터 시작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마을총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사업으로 최종 확정될 때 까지 공동체 사업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한다. 광범위한 행정정보를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지원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 복원과 마을활성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마을 만들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 4. 향약표준안 마련

제주의 읍·면지역 마을은 마을회 규약인 향약에 의해 마을자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제정된 지 오래되고 현재 상황에 맞지 않은 조항들이 많아 마을 주민 간 갈등 및 분쟁의 소지를 키우고 있어 표준화된 향약정비가 필요하다. 향약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전체마을의 22.6%에 해당하는 33개 마을은 개정기록이 없거나 10여년전 개정 하였고 최근 5년 이내 개정기록이 있는 마을은 87개 마을로 전체마을의 59.6%다. 이는 전체마을 중 절반 정도는 향약에 관심을 갖고 마을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마을총회에 상정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개정하며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마을은 문제가 발생해야 향약을 들여다보는 마을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을회 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마을 총회참석 연령을 확대하자는 의견에 전체 응답자의 64.4%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고 전 연령층에서 총회참석자를 18세 이상으로 하자는 비율이 7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의결권 및 선거권에서도 1세대 1표제를 1인 1표제로 개정하자는 의견에 74%가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고 전 연령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마을규약인 향약을 제때 개정하지 못하여 주민들의 뽑은 마을 리장을 놓고 해임과 선거무효 등 선거 이후 갈등이 발생하는가 하면 마을로 전입해 오는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재산처분시 청구권을 놓고 문제가 되기도 한다. 향약표준

안을 제시하는 것은 각 마을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나 연구자의 입장에서 마을주민의 권리와 의무, 의결권, 선거권, 청구권, 회계처리, 성평등 조항 등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할 수 있도록 표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의 읍·면지역 마을향약 표준(안)을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 00리 마을향약(마을자치규약)표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향약(마을자치규약)은 00리 향약(마을자치규약)이라 칭한다.(이하 “향약”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향약은 주민 스스로 민주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마을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마을자치를 구현하고 공동체 정신의 회복을 통해 남녀노소 모두가 평등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마을주민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향약은 00읍·면 00리 공간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향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읍·면의 리 단위 행정구역을 말한다.
2. “리민”이란 마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마을회”란 마을과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 조직을 말한다.
4. “마을총회”란 마을회의 모든 리민을 대상으로 한 회의를 말한다.
5. “개발위원회”란 마을운영계획 수립 및 마을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를 말한다.
6. “동장회의”란 리(里) 단위 행정구역의 하위조직인 자연마을의 동장을 대상으로 한 회의를 말한다.
7. “자생단체”란 마을에 소속된 단체로 마을공동체를 위해 활동하는 봉사단체를 말한다.

제5조(제 규정) 향약에 근거하여 리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 제2장 리민의 자격과 권리·의무

제6조(리민의 자격) 본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실제 거주하는 모든 남녀노소를 총칭한다.

제7조(명예리민) 본리 출생자중 타지역 거주자나 마을발전 및 명예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는 마을총회의 의결로 명예리민이 될 수 있다.(단, 명예리민은 리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각종행사 초청 및 마을 출판물 발송 등의 특전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8조(리민의 권리) 모든 리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마을의 의사결정에 배제되지 않고 발언기회를 평등하게 가지며, 의결권, 청구권을 가진다.(단, 마을재산에 대한 청구권은 재산관리규정을 따른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단, 선거권은 1인 1표제를 기본으로 하되 선거관리규정을 따른다)
3. 마을공동재산·공동시설물·공동장비와 물품 이용권을 가진다.
4. 기타 리민 총회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를 가진다.

제9조(리민의 의무) 마을의 모든 리민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향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각종 회의 의결사항 이행 의무
2. 연령, 성별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의무
3. 자치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리 운영비) 납부 의무

제10조(리민의 권리제한) 리민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자와 리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자에 대해서는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리민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자는 리민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리민의 자격을 가진 자가 타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주민등록법상 전출한 자
2. 자치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리 운영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제3장 마을회

제12조(임원의 구성) 마을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며 회장은 당연직 리장이 된다.

1. 회장(리장) 1명
2. 감사 ○명
3. 운영위원 ○○명, 개발위원○○명, 자문위원 ○명, 자치사업추진위원 ○명, 복지추진위원 ○명, 재산관리 위원 ○명, 선거관리 위원 ○명, 분쟁조정 및 상·벌심의위원 ○명 (단, 분야별 위원은 마을의 규모에 따라 자율선택)
4. 리 사무장

제13조 (임원의 선출)

1. 리장은 본리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고 읍·면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2. 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개별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되 성별·연령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남녀 평등한 참여를 위해 각 위원회의 위원중 30% 이상 여성위원으로 구성한다.(단, 개별규정에 따라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3. 감사는 다른 임원과 그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4. 리 사무장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개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리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선출된 다음날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해 정기총회 일까지 임기로 보며 연임 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책무) ① 리장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리장 : 본리를 대표하고 본리 행정을 총괄하며 회계 및 재산관리의 책무를 진다.
  2.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에 따른 임무에 대한 책무를 진다.
- ② 리장이 유고나 면직, 궐위 시에는 ○○○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그 외 임원은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책무를 진다.

제16조(임원의 해촉 및 사임) ① 총회를 통해 선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 할 수 있다.

1. 선출 과정에서 향약에 위배된 행위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2. 회비, 기금 등 공금을 목적 외 사용 또는 유용하였을 때
3. 적법한 절차 없이 마을재산을 매각 등 처분하였을 때
4. 건강 등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
5. 지도자로서 품위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6.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② 리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임되거나, 총회로 선출되지 않은 자가 소속된 조직이나 단체에서 그 직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마을회 임원의 자격 또한 자동으로 상실한다.

③ 리장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마을회에 사임 의사를 표명한 후 읍·면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리장이 아닌 임원은 리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임원의 보궐) ① 임원이 해촉 또는 사임으로 궐위 된 경우에는 그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통해 다시 선출한다. 단, 리장이 아닌 임원인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근거하여 선출한다.

② 궐위로 인해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150일 미만일 경우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장 마을회의

제18조 (회의의 구분) 본리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개발위원회, 동장회의로 구분한다.

제19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개월 이내에 리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2. 총회 성원은 리민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 일 때는 리장이 결정한다.
3. 정기총회는 개최일 1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마을회

관등에 공고해야 하며, 회원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마을방송 등을 통해 공지 하여야 한다.

4. 리장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감사가 정기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정기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향약 및 제 규정의 제·개정 또는 승인권

나. 예·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다.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의 건

라. 자산취득과 처분의 건

마. 마을운영 계획 및 사업보고

바. 마을자치회 자치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리 운영비) 납부에 관한 사항

사. 감사 보고

아. 기타 마을의 중요 현안사항

제20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리장의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1. 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2. 개발위원회 요구시

3. 리민 1/3 이상 소집사유를 서면으로 요구시

4. 2호·3호의 경우 리장이 15일 이내 소집에 응하지 않을 때는 감사가 소집한다. 감사가 소집한 임시총회에서는 선임감사가 의장을 대신한다.

제21조(개발위원회) 마을의 여론을 리정에 반영시키고 마을운영 계획 수립 및 마을의 안전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회의 구성은 ○○명으로 한다.(단, 성별·연령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 중 30% 이상 여성위원으로 구성한다.)

2. 개발위원장은 개발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리장은 개발위원장이 될 수 없다.

3. 개발위원회는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성원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4. 개발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처리
- 나. 총회에 부의할 사항 심의(항약, 예·결산, 사업계획 등)
- 다. 리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 라. 마을사업 협의 및 토론
- 마. 명예리민 위·해촉 및 상·벌 심의
- 바. 각 위원회의 위원 선출 등의 협조
- 사. 기타 마을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

제22조(동장회의) 동장회의는 리 산하 자연마을의 동장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동장회의 의장은 리장이 되며 소집일 10일 전까지 통보한다.
2. 리 행정 및 사업, 업무전반에 대한 공지·홍보·협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5장 자생단체

제23조(조직 목적) 자생단체는 본리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직된 봉사 단체를 말한다.

제24조(자생단체 및 역할) 자생단체는 마을자치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자주적인 활동을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회 : 노인회 회칙에 준하며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2. 청년회 : 청년회 회칙에 준하며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3. 부녀회 : 부녀회 회칙에 준하며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지원 및 감독) ① 본리에 속한 각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시 자금 및 사업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자금 및 사업을 지원받은 단체는 당해 사업에 대한 집행 결과를 개발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제6장 재정운영

제26조(회계연도) 마을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재정관리) 리장은 마을회의 재정을 반드시 마을회 명의의 통장으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보조금이 있을 경우 마을회 명의의 보조금 전용통장을 별도로 개설할 수 있으며 재정관리위원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28조(재정수입) 본리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각종 임대수익금
2. 각종예탁금의 이자수입금
3. 독지가의 기부금 및 찬조금
4. 사업수익금
5. 행정기관의 상금 또는 상 사업비
6. 리 운영비
7. 기타

제29조(회계처리)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계업무는 수입·지출 결의에 의하여 회계 처리한다.
2. 회계분류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집행한다.
3. 각각의 수입 및 지출결의서, 현금출납부, 예금통장, 각종계약서, 기타회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리 운영비) ① 리민의 자격을 가진 세대주는 자치운영에 필요한 리 운영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은 총회 의결에 따른다. (단, 리의 재정여건에 따라 징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자에 대해서는 관련위원회의 결정으로 리 운영비 납입을 면제 할 수 있다.)

② 리장은 리 운영비의 수입과 지출 현황을 납부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예산 및 결산보고) 리장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당해년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회계결산 자료를 보고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한다.



## 제7장 재산관리

제32조(재산관리) ① 리장은 마을공동재산을 반드시 마을회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위원회를 두어 관리할 수 있다.

② 리장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재산관리 및 변동내역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재산취득·매각) 마을공동재산의 취득·매각 등 처분과 마을 공동시설물 등 훼손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를 거쳐 결정하며 재산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은 재산관리규정을 두어 운영 할 수 있다.

## 제8장 자료관리

제34조(회의록) ① 리장은 총회 등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발언내용과 의결사항을 명확히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가 작성하며 총회에서 선출된 ○인 이상의 서명위원이 기록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문서보존 절차에 따라 리사무소에 보관한다.

제35조(회의공개) 리장은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을 마을게시판 등에 7일 이상 공시하고, 각 동장을 통해 리민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36조(자료보관) 리장은 마을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록 등 행정서류 3년
2. 회계지출 관련 서류 5년
3. 재산변동 관련 서류 영구

제37조(인계인수) 리장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다음 리장에게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1. 자생단체 임원등 조직현황
2. 통장 및 회계관련 서류

- 3. 재산 및 비품명세서
- 4. 공인 및 보존문서 목록
- 5. 기타 회의록 및 행정서류 일체

제38조(기타) 본 향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 부칙

이 향약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 5. 읍·면·동장 주민 추천제 확대 시행

마을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읍·면·동장을 주민들의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확대해야 한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주민이 투표를 통해 추천한 후보를 자치단체장이 읍·면·동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로, 공모한 내부 공무원을 주민들이 면접 및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추천하면 임명권자인 자치단체장이 읍·면·동장에 임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7기 혁신과제로 제시되어 2020년 1월부터 제주시 이도2동과 서귀포시 대정읍이 시행되고 있다. 인사권자의 인사권 독점을 막는 장점도 있지만 임명 과정에 주민 직선제를 가미해 마을발전을 이끌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지금은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도 읍·면·동장으로 임명이 가능하도록 개방형 직위로 대상자도 확대하고 시행지역 또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도의원 출마를 위한 사전단계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임기가 보장되고 읍·면·동의 비전과 운영계획을 갖고 자신이 선택한 동네이니만큼 지역사회와의 소통에도 더욱 힘쓰게 될 것이고 지역주민 또한 행정만족도도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

## 6. 주민자치회 도입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읍·면·동단위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조직으로 행정안전부가 2013년부터 시범 실시 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도입 이전에도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자 읍·면·동의 기능전환과 함께 주민자치센터를 도입하여 운영해 왔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문화와 여가 활동중심의 프로그램운영으로 자치기능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지역주민들이 읍·면·동 행정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련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이 개정되지 않아 전국 16개 시도 408개 읍·면·동에서 시범운영 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시범운영을 시작한지 7년여가 지났는데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아 주민자치회 도입을 못하고 있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시범운영에 따른 표준조례안을 제시하여 전면시행에 대비하고 있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뿐만 아니라 마을계획·지역개발·복지·주민화합 등 주민생활에 대한 협의·심의기능까지 함께 수행하도록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 외에 직장인들의 지역사회활동 및 참여 강화를 위해 근로자가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 ‘공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주민자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마을지도자 면담시에도 역할이 없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주민자치회로 변경 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해 가면서 전면시행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의 기초는 주민자치이고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자치회라고 할 정도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대가 크다. 조속히 도입하여 지방분권을 위한 큰 도약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7. 마을 변호사제도 활용 및 적극 홍보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읍·면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2013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행정과 연계하여 시행되고 있다. 법무부에 의하면 2020년 2월 기준 전국 1,413개 읍·면지역에 1,995명이 마을변호사가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12개 읍·면지역에 41명이 위촉되어 있다. 그러나 읍·면지역 주민들은 마을변호사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다. 지역에서는 리장선출과 관련된 문제로 해임과 선거무효 소송등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으며 마을로 진입해 오는 이주민들이 많아지면서 공동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의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읍·면지역은 법률서비스 접근권 보장이 미흡하여 공동체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향약을 기반으로 마을이 운영되고 있어서 공동체에 대한 문제 발생시 향약·규정 등 분쟁소청 심의위원회와 같은 마을 자체내에서 법리 해석을 하고 있어서 신빙성이 부족하다. 지난해에는 마을향약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내 최대 로펌에 의뢰해 문제를 더욱 키운 적도 있었다.

이에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마을 안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마을공동체에서 토론과 조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갈등의 중재자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에서는 이 제도를 알리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비용이나 거리상의 문제로 변호사를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법률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 제 3 절 마을내부 정비를 위한 정책제언

#### 1. 여성 및 청년 참여비율 제도화

사회구성원 절반이 여성임에도 여성들의 진정한 참여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마을회 역시 마찬가지다. 수집된 향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총회 참여권, 선거권 등 마을의 상당수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세대주 혹은 1세대 1표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선거권에서는 전체마을의 35.6%에 해당하는 52개 마을이 1세대 1표제로 시행되고 있고 총회 참여권도 세대주와 회원등 특정거주자만 가능한 마을이 50개 마을이나 된다. 세대주가 대부분 남성으로 여성들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제주여성들이 경제활동 참여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는데 ‘여다의 섬’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가장 가깝게 접촉하고 있는 공적 공간인 마을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것이다. 향약은 마을의 헌법이나 마찬가지다. 마을 발전 목표와 방향뿐 아니라 마을 일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기구, 마을회 임원 구성 및 운영, 마을 재산관리, 리장 선출 등의 실질적인 절차가 들어있다.

의결기구인 개발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 여성 참여비율을 보장하고, 선거권 및 의결권에 1세대 1표제가 아닌 1인 1표제로 바꿔 마을 문제에 성평등한 참여를 명문화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읍·면지역 마을이 고령화로 마을자치에 참여하는 연령이 높고 기성세대들이 자기권위 혹은 결정권 확대를 위해 마을회 임원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세대교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일부 읍·면지역은 활동성이 강한 40대를 기준으로 리장을 선출하고 있는데 마을자치에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에 청년할당 비율을 명시하여 마을자치 운영에 동력도 얻고 세대교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 2. 마을총회 참여권 확대

마을총회는 마을향약개정,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예·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승인, 기타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는 마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논의되는 기구다. 그러나

수집된 향약 분석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마을주민이면 누구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을은 33개 마을로 전체마을의 22.6%이고 마을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마을은 14개 마을로 9.6%다. 즉 전체 마을의 32.2%에 해당하는 47개 마을은 마을총회 참석자가 개방되어 있으나 67.8%에 해당하는 99개 마을은 총회 참석대상을 세대주, 회원, 리운영비 납부자, 나이를 기준하여 전입 후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 등 마을마다 다양한 잣대로 총회참여권을 제한하고 있다. 마을 여건상 전체주민이 참석할 공간도 부족하고 총회준비 등 집행부의 고충이 이해가 되나 마을 구성원으로써 마을의 주요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게 당연하다. 마을회 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청소년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연령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64.4%로 많았고 참여연령도 18세 이상 231명(88.2%), 17세 이상 21명(8.0%), 16세 이상 10명(3.8%) 순으로 조사되었다. 공동체는 이주민, 지역복지, 청소년 등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다. 총회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마을공동체의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3. 리민의 권리 중 자산청구권 규정 명시

마을향약은 마을공동체를 유지시키는 근간이 되고 있고 크고 작은 사항들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의 자치규정이다. 마을주민 자격이 주어지면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여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마을로 전입해 오는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리민이 권리 중 자산청구권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산처분시 분배와 관련하여 마을주민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향약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마을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마을은 전체마을의 26.7%인 39개 마을이고 73.3%에 해당하는 107개 마을이 청구권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청구권이 가능한 마을은 일정시점 이전 거주자만 청구권이 있거나 전입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청구가 가능한 등 향약에 명확히 명시하여 분쟁이 소지를 없애고 있다. 리민의 자격이 소멸되면 권리도 소멸되지만 자산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 4 이주민에 대한 마을참여권 부여

2000년 이후 제주로의 이주 열풍은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착주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담당부서를 설치하는 등 이주민들의 제주정착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주민들이 정착한 마을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갈등이 커지면서 2017년 7월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로 전면 개정하여 제주로 이주한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지역주민과 상생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이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고방식 등의 차이로 마을주민들 간에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읍·면지역의 마을은 주민들간 서로 면식관계를 바탕으로 마을의 자치규범인 향약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유지해 왔다. 마을 구성원들도 1차산업인 농업, 어업, 임업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어 이와 연관된 어촌계, 영농회, 수리계등이 조직되어 생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제주로 이주해온 이주민들은 기존 마을 주민들과는 성격이 다른 전원생활이나 취미생활,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이나 힐링, 회사 이직 또는 파견, 은퇴 후 노후생활을 위하여 제주에서 생활하고 있다. 다름을 인정하고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밖에 없다. 마을행사에 초청하고 리장이 주관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공동체에 융화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이주민에 대한 참여권 부여를 제안한다. 참여권은 리민의 자격을 얻은 후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주는 것이나 일정부분 개방하여 이주민들에게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향약분석에 의하면 마을로 전입 후 일정기간 거주해야 리민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마을은 35개 마을이나 된다. 리민의 자격을 갖기 전 마을의 사업 또는 총회 등에 참여하여 이주민들이 갖고 있는 재능도 기부하고 공동사업으로 얻어진 이익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해안마을의 경우 톳채취사업 참여,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재능기부, 마을운영 조직에 이주민을 위원으로 임명하여 이주민의 의견청취, 마을문고를 활용한 독서모임 주관 등 마을에 봉사하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리민의 자격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주민들이 얼마나 마을공동체에 적응하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가. 그리고 마

을 주민들은 얼마나 이주민을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협조하는가에 따라 마을의 아이덴티티(identity)와 농촌성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주민과 지역주민간 소통과 협력으로 제주라는 삶의 울타리에서 지역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할 수 있는 화합의 분위기 조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 5. 향약의 정비 및 정보공개

제주의 읍·면지역 마을의 향약은 그 시대의 문화와 시대상을 대변하는 자치규약이다. 마을마다 고유한 문화와 관습을 향약에 내포하고 이를 근간으로 마을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집된 향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개정기록이 없는 마을이 50개 마을로 전체 수집마을의 34.2%에 달하며 10여 년 전부터 이주열풍이 본격화되면서 향약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마을의 실태를 이해하지 못해 기존 지역주민과의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마을에서는 향약 개정을 통해 마을의 갈등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리민의 자격을 비롯해서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마을회 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전입 후 3년 이상 거주자에게 리민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리민과 회원을 구분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기존 지역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리장 선출방법에 대한 불평등 요소, 해당마을 출생자가 아니면 리장 후보자가 될 수 없는 리장 후보자의 자격, 리민의 의무 등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마을자치가 정착되려면 향약을 비롯해서 회의결과, 예산집행 등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마을주민간 신뢰도 구축하고 참여도 확대 될 것이다. 자신들끼리 자조하고 도울 수 있는 봉사수준에서의 자발성과 열심을 강조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마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향약을 공개하여 이주민들의 제주의 문화를 아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참여를 유도하며 공동체의 문제를 최소화해 간다면 이주민들도 마을에 건강한 뿌리를 내려 진정한 ‘제주인’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 제 4 절 결 론

마을자치는 지방분권에만 초점을 맞춘 지방자치 노력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지방민주주의 차원의 노력으로 거주지 주변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조직화를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복원하고 생활을 변화시키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을자치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의 읍·면지역 마을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마을의 대표인 리장의 권한과 역할을 둘러싼 갈등, 기존 지역주민과 마을로 전입해 오는 이주민과의 갈등, 마을소유 공동재산에 대한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마을운영이 기초가 되고 있는 자치규약(향약)이라고 하고 있다.

마을향약은 근대국가가 형성되기 이전 중앙권력이 지방까지 통제하지 못하는 공간적 범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제도로 각 지역단위에서 마을규약인 향약을 제정하여 그 향약을 근간으로 마을자치를 시행하고 있었다.

특히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의 특수성으로 마을마다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읍·면지역에 속해 있는 행정리의 마을들은 전통적인 마을규약인 향약을 마을운영의 기초로 삼고 있다.

제주의 읍·면지역 향약은 시대가 변하면서 마을회 규약, 마을회 회칙, 마을회 정관, 마을회 규칙, 마을회 향약 등 다양한 명칭으로 그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고 마을 운영을 위한 자치규약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문헌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근린자치의 원형이며 이 향약에는 제정취지를 비롯해서 마을단위 조직, 마을주민의 구성, 권리와 의무, 선거권, 피선거권, 재산관리, 회의체계, 상·벌규정, 회계규정 등 세부적인 마을운영 규칙을 망라하고 있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구성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을향약이 어떤 논의구조를 거치며 어떻게 정당화되고, 운영 방식은 어떤지, 마을마다 그 구조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마을단위의 자치행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을자치 모형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시작하였다.

마을향약 수집은 각 마을에서 매해 1월 ~ 2월에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전반기 임시총회에서 향약 개정안이 다뤄지는 점을 감안하여 2019년 1월 ~ 2019년 8월까지로 한

정하여 읍·면지역 172개 마을중 146개 마을의 향약을 수집하였다.

연구방법은 마을자치의 개념과 형태, 해외의 마을자치 사례, 마을자치 선행연구 등 마을단위 자치행정에서의 주요요인을 파악하는 문헌연구와 향약 내용분석, 마을리장을 대상으로 마을자치 제도화를 위한 심층면접 조사 등 질적연구와 마을회 임원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마을운영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설문조사인 양적 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향약 내용분석은 리민의 자격, 리민의 권리와 의무, 마을의사 결정구조, 마을의 자치조직, 리장 선거, 향약정비 현황 등 마을자치 제도 및 체계, 의사결정 구조를 분석하여 제주지역 마을자치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제주지역 마을자치의 특성은 국가의 운영형태를 띤 가장 작은 정부라 할 수 있다. 국가에서 일정나이가 되면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세금을 징수하듯 제주의 읍·면지역 마을에서도 일정기간 거주하여 리민의 자격이 주어지면 마을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 피선거권, 참여권, 청구권등 권리와 리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그리고 마을운영을 위한 재원이 필요한 경우 리 운영비를 징수하고 마을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유치하여 공동체를 유지해 간다. 그 외에도 마을출생자가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준리민이라는 제도를 두어 마을발전을 위한 자문과 애향심을 갖도록 하고 있고 각 마을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조직과 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즉 마을의 일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해결해 가는 규모가 작은 정부라 할 수 있다.

마을자치 모형은 향약 내용분석 및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마을 주민수, 의사결정 체계, 마을운영 재원, 리장 선출방법 등 지역적 특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협력형 마을자치 모형, 위임형 마을자치 모형, 통합형 마을자치 모형 등 세가지 유형을 제안하였다. 이는 마을의 일반화 및 표준화 마을자치 모형으로 각 마을의 특성을 모두 담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문헌연구, 전문가 조사, 마을리장 면접조사를 통해 일반화된 표준모형을 제시할 수 있었다.

첫째, 협력형 마을자치 모형으로 마을거주 인구가 2,000명 이상 되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마을에 공유재산이 있어 일정 수입원이 있는 마을자치 모형이다. 마을자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율도 높고 마을 회의구조 또한 집행기능과 심의기능을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리장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기능이 강

하다고 할 수 있다. 마을자치회 대표인 리장은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형태이다.

둘째, 위임형 마을자치 모형으로 마을거주 인구가 2,000명 미만 500명 이상인 마을로 마을의 모든 권한을 마을자치회 대표인 리장에게 위임하는 형태의 마을자치모형이다. 마을회의 구조는 심의와 집행기능을 동시에 갖춘 형태이며 마을자치회 대표인 리장은 직접선거와 추대를 병행하고 있는 마을이다.

셋째, 통합형 마을자치 모형으로 마을거주 인구가 500명 미만인 마을로 마을회의 구조는 발의·심의·집행기능을 통합한 형태의 마을자치 모형이다. 마을규모가 작고 인구 또한 고령화된 지역이다 보니 마을자치회 대표인 리장도 개발위원회에서 추대로 선출하는 방식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모형은 지방자치에서 마을별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작은 단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자치 모형을 제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의 읍·면지역 마을향약 분석 및 마을자치 전문가와 설문조사내용을 종합한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에서의 제도개선 사항이다. 첫째, 주민자치회 도입 및 주민자치회 설치 단위 조정을 제안하였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공동체 문제를 논의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자생적 민·관협력의 근린자치모델로 2013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408개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다.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며 주민자치회 설치단위가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리단위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통·리단위에서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되면 행·재정적 지원체계등 실체적 요소가 부가되어 주민자치 활성화의 계기가 형성될 것이다.

둘째,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이는 마을여건과 관계없이 기준보조율로 사업을 지원하다 보니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의 형태로 마을간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마을의 규모와 실정을 감안해 보조금이 차등 지원 될 수 있도록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개정을 제안하였다.

셋째,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부서 일원화 및 공동체지원 중간조직 설치를 제안하였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중앙부처 주도로 시행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당 실국별로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마을에서는 여건에 맞는 사업

찾기가 쉽지 않다. 이에 실국별로 산재되어 있는 마을지원 기능을 통합하는 도단위의 지원부서를 신설하고 개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중간조직을 통합하여 마을공동체 교육 및 공동체 사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마을공동체 지원조직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넷째, 향약표준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풀뿌리 주민자치는 획일화된 제도 적용보다 마을간 서로 다른 여건과 환경에 따라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므로 향약표준안 제시가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러나 향약분석 결과에서도 보여지고 있듯이 향약제정이 후 개정기록이 없거나 현실과 많이 많은 조항들이 있어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향약표준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확대를 제안하였다. 마을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읍·면·동장을 지역주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로 대상자도 확대하고 시행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마을 변호사제도 활용 및 홍보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제주의 읍·면지역은 변호사의 수가 증가함에도 법률서비스 접근권이 미흡하여 공동체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법적다툼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마을 안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마을공동체에서 토론과 조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갈등의 중재자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변호사를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법률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다음은 마을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즉 향약의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여성 및 청년참여비율 제도화를 제안하였다. 마을 일을 논의하기 위한 의결기구에 여성 참여비율을 보장하고 선거권 및 의결권에서도 1세대 1표제가 아닌 1인 1표제로 개정하여 마을문제에 성평등한 참여를 명문화하고 각종 위원회에 청년할당비율을 명시하여 마을자치에 젊은 세대가 참여하여 마을에 대한 관심과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둘째, 마을총회 참여권 확대를 제안하였다. 총회는 향약개정, 예·결산 및 사업계획승인 등을 논의하는 마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논의되는 기구다. 그러나 다양한 잣대로 참여권을 제한하고 있어서 지역복지·청소년·이주민 문제 등 마을공동체의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

가 논의될 수 있도록 총회 참여권 확대를 제안하였다.

셋째, 리민의 권리중 자산청구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제안하였다. 이는 마을로 전입해 오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마을재산 처분 및 이익금 발생시 분배와 관련하여 갈등을 빚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 분쟁이 소지를 없애기 위함이다.

넷째, 이주민에 대한 참여권 부여를 제안하였다. 참여권은 리민의 자격을 얻은 후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주는 것이나 리민의 자격을 갖기 전 일정부분을 개방하여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주민들이 공동체 적응과 참여의 정도, 지역주민들이 이주민을 수용하고 협조하는 정도에 따라 마을의 아이덴티티(identity)와 농촌성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다섯째, 향약을 재정비하고 정보공개를 제안하였다. 향약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마을운영의 근간으로 삼고 있지만 앞서 제시한 개선사항 외에도 불평등한 요소, 시대에 맞지 않은 의무부여 등 정비가 필요하며 마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향약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주로의 이주 열풍으로 제주의 마을은 서로 다른 배경과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향약 내용은 물론 마을회의 결과, 예·결산 사항등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제주의 문화를 아는 계기를 만들어가면 이주민들도 마을에 건강한 뿌리를 내려 진정한 '제주인'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연구는 제주의 읍·면지역 마을향약을 분석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을자치 모형을 제안하고자 시작된 연구이다. 제주의 읍·면지역 172개 마을 중 146개 지역 마을향약을 수집하여 향약내용 분석을 통해 마을자치 모형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마을자치 모형 제안을 위해 외국의 사례, 학계, 담당공무원, 전문가조사의 의견과 사례 추가를 통해 마을자치 모형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

첫째, 향약수집이 한계다. 마을향약이 공개되지 않아 동지역 마을을 제외한 분석으로 제주의 전체적인 향약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둘째, 마을향약 내용분석이 한계다. 마을향약 분석에 대한 연구사례도 없고 제도주의적 입장의 분석으로 지역주민 복지사업, 마을발전 사업등 공동체를 영위해가는 다양한 내용 등을 분석하지 못했다.

셋째, 일반설문 조사대상의 한계다. 마을자치 관련 설문내용 중 마을 자치활동 참

여경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마을회 임원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마을 자치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주민을 포함하지 않음에 따라 두 집단간의 마을자치 활성화에 대한 상관관계 연구는 진행하지 못했다.

넷째, 마을자치모형 일반화에 대한 한계다. 마을자치 모형을 유형화하여 표준안을 제안하였지만 그 제안이 폭넓은 의미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마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마을자치는 획일화된 제도 적용보다 마을의 여건에 따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마을자치모형 일반화에 한계를 갖고 있다.

향약은 입법, 사법, 행정이 기능을 갖춘 마을의 규범으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마을의 행태, 환경, 역사와 향약과의 상관성을 연구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마을문화를 복원하고 지역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1) 단행본

- 김병준(2009). 「지방자치론」, 경기: 법문사.
- 김찬동(2017). 「주민자치제도의 재설계」, 대전: 궁미디어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남궁근(2009). 「행정조사방법론」, 경기: 법문사.
- 박병헌(2010). 「사회복지의 역사」, 경기도: 공동체.
- 소진광(2006).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서울: 박영사.
- 송지준(2015).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 방법」, 경기: 21세기사.
- 오석홍(2014). 「조직이론」, 서울: 박영사.
- 이기우(1996). 「지방자치이론」, 서울: 학현사.
- 이달근(2004). 「지방정부론」, 서울: 박영사.
- 이승중·김대욱·김혜정·노승용·모설문·서재호·안성호·오승은·유희숙·최영출(2015). 「  
근린자치제도론」, 서울: 박영사.
- 임승빈(2017). 「지방자치론」, 경기: 법문사.
- 최봉기(2009). 「한국지방자치론」, 경기: 법문사.  
—— (2014).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 홍정선(2018). 「신 지방자치법」, 서울: 박영사

#### 2) 논문

- 강기홍(2018). 선진 지방자치를 위한 법제 발전방향(소제목 : 주민자치활성화와 주민자치회  
제도의 모색),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제10호(2018). \*국회입법조  
사처 공동세미나 자료, pp.63-66.
- 고경훈·김보은(2015).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제24권 제2호, pp.126-128.
- 곽진주(2008). 향약의 지역공동체 평생교육적 분석, 석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평생  
교육학과」, p.28.

- 곽현근(2005). 동네조직 참여의 영향요인 및 심리적 효과,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제8권 제4호, pp.381-405.
- (2011). 특집 : 근린지방자치와 공동거버넌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제60권 제696호, pp.18-21.
- (2011). 근린지방자치와 읍·면·동 주민자치의 발전방향,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제60권 제698호, pp.28-31.
- (2011). 근린거버넌스 관점을 통해 본 읍·면·동 주민자치회 제도설계의 방향,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제10호, pp.811-830.
- (2012). 동네자치를 위한 동네거버넌스 형성의 방향과 과제 - 영국 동네거버넌스 제도 실험의 교훈,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2(단일호), pp.1-24.
- (2016). 주민자치회와 읍·면·동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제65권 제750호, pp.20-23.
- (2017). 지방자치 원리로서의 “주민자치”재해석을 통한 생활자치 개념화와 제도모형 구성,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제27권 제2호, pp.1-29.
- 곽효문(2003). 조선조 향약의 복지행정기능과 의의,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논총」, 제41권 제1호, pp.23-45.
- 권병욱·이준우(2014). 마을의 자치조직과 공공성: 한나 아렌트의 이론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1호, pp.149-166.
- 권병욱(2008). 농촌지역의 자치조직을 통해 본 협동관계의 변용: 한일 농촌마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일본문화학회, 「일본문화학보」, 제39호, pp.177-191.
- 김광남(2015). 마을공동체로서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 주민자치회, 다양한 조직 지원하는 중심체, 한국자치학회, 「월간 주민자치」, 제49권, pp.30-33.
- 김광수(1999).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총」, 제15권, pp.217-236.
- 김덕호(1997). ‘빈곤과의 전쟁’을 통해서 본 1960년대 미국의 복지정책, 한국서양사학회, 「서양사론」, 제55권, pp.171-201.
- 김명진(1978). 우리나라 향약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대학원 정치학과」, pp.122-123.
- 김병국·최철호(2012). 지방자치제도하의 주민주권 확보방안: 시론적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제26권 제1호, pp.31-52.



- 김병국(2011). 일본의 근린주민자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제60권 제 696호, pp.22-25.
- 김상민(2016). 주민자치와 협력적 마을만들기: 협력적 마을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8권 제1호(통권제93호), p.181.
- 김상봉·권일·이향수(2016). 단층제 행정체제의 자치단체 행정운영 효율화 방안: 책임읍·면·동제를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p.135-168.
- 김수연(2019). 주민자치회에 관한 입법의 주요쟁점,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제19권 제1호(통권제61호), p.5.
- 김순은(2011). 일본의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참여: 주민투표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3권 제2호, pp.187-214.
- (2012). 주민주권론과 지방자치의 발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제26권 제1호, pp.3-30.
- (2016). 분권형 거버넌스: 주민자치의 실현방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제65권 제751호, pp.32-35.
- 김신열(2009). 율곡의 향약을 통해 본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의미, 한국유교학회, 「유교사상문화 연구」, 제37권, pp.67-88.
- 김영돈(1995). 율곡향약의 정신과 그 영향에 대한 고찰, 율곡학회, 「율곡학연구」, 제2권, pp.125-139.
- 김영인(2005). 주민자치의식의 변화와 전망,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제 54권 제622호 pp.34-42.
- 김익식(2011). 근린주민자치의 현주소와 향후 바람직한 발전방향,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제60권 제696호, pp.2-7.
- 김일순·황경수·양정철(2015). 제주도 마을향약(규약)의 내용과 특성 분석, 제주학회, 「제주도연구」, 제44집, pp.113-146.
- 김준석(2013). 근린주민자치 조직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주민자치회 도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pp.57-59.
- 김진수(2017). 우리 사회를 치유할 조선 향약 정신, 04월 16일 서울경제신문.
- 김찬동(2015). [토론: 주민자치제도와 법령, 바람직한 제도와 법령의 방향] “행정조직화된 마을을 주민자치 체계로 복원시켜야 한다.” 한국자치학회, 「월간 주민자치」, 제40권, p.97.

- (2019). 지방분권개헌과 주민자치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1권 제1호(통권제105호) pp.1-25.
- 김필동(2000). 차별과 연대-조선 사회의 신분과 조직,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34권 pp.198-205.
- 김필두(2013). 읍면동의 근린자치기능 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07(제476권), pp.1-173.
- (2015). [마을의 규범문화-전통문화 되살리기 방안] 덕망 있는 어른을 중심으로 ‘신향약’ 만들자, 한국자치학회, 「월간 주민자치」, 제41권, pp.26-35.
- (2018).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자치(개헌안 121조등 관련),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제67권 제776호, pp.40-43.
- 김필두·김병국(2011).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2011), pp.557-576.
- 김필두·유영아(2008).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12(제413권), pp.1-3.
- 김필두·한부영(2016). 생활자치의 개념과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제558권, p.17.
- 김홍주(2013). 조선 향약규약에 나타난 마을공동체 운영 특성: 고현향약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제79권, pp.77-89.
- 김홍식(2005). 주민자치와 민주시민교육: 초일류 지방자치를 위한 평생학습,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제54권 제617호, pp.41-51.
- 나병균(1986). 향약과 사회보장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7권, pp.21-50.
- 남재걸(2014). 우리나라와 일본의 근린자치 제도의 경로진화 비교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제28권 제3호, pp.87-127.
- 류호익(2017). [정읍시 2017년 주민자치역량 강화교육 집합과정] 강의/주민자치사업의 기획과 추진: "주민자치사업은 마을성, 주민성, 자치성이 중요하다.", 한국자치학회, 「월간 주민자치」, 제69권, pp.74-79.
- 문황진(2017). 근린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pp.18-19.

- 박 철(2015). 이젠 마을복지 자치 시대, 한국자치학회, 「월간 주민자치」, 제39권, pp.17-18.
- 박혜자(2002). 지방의 시대를 선도하는 지도자와 주민: 자치시대 바람직한 주민상,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제51권 제585호, pp.46-56.
- 배용규(2007). 도시계획·개발과정에서 주민참여시스템으로서 뉴욕시 커뮤니티보드의 운영특성 및 시사점 연구,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제8권 제2호, pp.1-26.
- 배준구(2011). 프랑스의 근린주민자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제60권 제696호, pp.26-29.
- 소진광(2011). 근린주민자치의 경제적 효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제60권 제696호 pp.14-17.
- (2012). 한국의 근린자치 현황과 대안모색, 「충남발전연구원, 충남 근린자치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제1차 워크숍」, pp.1-39.
- 소진광·곽현근·배준구·이종수(2011). 읍·면·동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연구 최종 보고서, 「한국지방자치학회」, pp.1-208.
- 송광태(2013). 지방의회론,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지방의회의 지위 p.15, 창원대학교, <http://www.kocw.net/home/cview>.
- (2016). 경남지역의 주민자치: 창원시 용지동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제65권 제750호, pp.28-31.
- 서인석·홍성만(2017). 한국형 근린자치 모형 탐색연구: AHP를 통한 경합적 주민자치 모형들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국정관리연구」, 제12권 제4호, pp.1-24.
- 서울특별시의회(2017). 주민자치회의 도입을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연구,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한국지방자치학회연구보고서」, pp.18-19.
- 서태성(2002). 지역발전과 주민참여형 거버넌스체제 구축방안, 국토연구원, 「국토:planning and policy」, 제252권, pp.20-27.
- 신병주(2011). 역사의 향기: 조선시대 지방자치 규약-향약의 역사와 운영,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제60권 제694호, pp.70-71.
- 신용인(2018). 주민자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제18권 제3호, pp.87-111.
- 신윤창·손진아(2017).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

- 구: 협력형 모델의 시범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회, 「한국비교정부학보」, 제21권 제4호, pp.93-116.
- 심광택(2009). 촌락지역의 사회적 공간성 변화, 경상남도 촌락의 인구 구조와 영역자산 활용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 「대한지리학회지」, 제44권 제4호, pp.510-531.
- 심익섭(2005). 주민자치와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 교육의 기본논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제54권 제617호, pp.16-24.
- (2012). 주민자치회의 제도화 방안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제26권 제4호, pp.57-84.
- (2017). 왜 한국형주민자치회인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제66권 제762호, pp.20-21.
- (2018).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제67권 제771호, pp.36-39.
- 안성호(2011). 읍·면·동 주민자치의 발전방향,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제60권 제697호, pp.28-31.
- (2014). 충남이 제안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세계화 시대의 동네자치, 충남발전연구원, 「열린충남(The Chungnam review)」, 제66권, pp.11-18.
- 안성호·곽현근(2013). 충청남도 주민자치 기반조성을 위한 동네거버넌스 실천모형과 전략, 「공주: 충남발전연구원」, 전략연구 2013-22, p.15.
- 양기호(2010). 일본의 정부간 관계의 변화와 지역주권론, 동의대학교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pp.64-85.
- 양석진(2005).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와 국민주권의 실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18권, pp.149-172.
- 오재일(2016). 전남지역의 주민자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제65권 제750호, pp.32-35.
- 오환일(1989). 읍곡의 향약관과 사회계약속의 성격, 한국중앙사학회, 「중앙사론」, 제6권, pp.100-133.
- 우홍준(2012). 조선조 자치제도인 향약의 기능,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제31권, pp.233-258.
- 유영훈·전상직·김태철·박철(2013). 주민자치는 가장 작은 정부이며 의회다, 한국자치학회, 「월간 주민자치」, 제22권, pp.40-43.

- 유정선(2005). 율곡향약에 나타난 사회사상 연구, 중앙대학교부설 중앙철학연구소, 「철학탐구」, 제18권, pp.5-28.
- 윤인숙(2011). 16세기 전반의 향약의 성격과 이해: ‘소학실천자들’의 향약론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회, 「한국사상사학」, 제39호, pp.61-99.
- 이광모(2010). 조선조 향촌사회 복지공동체의 사회자본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p.121.
- 이근명(2002). 주희의 <증손려씨향약>과 조선사회: 조선향약의 특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중국학회, 「중국학보」, 제45권, pp.275-293.
- 이명호(2016). 공동체의 위기와 복원에 관한 탐색적 연구: 향촌공동체와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동양사회사상학회, 「사회사상과 문화」, 제19권 제1호, pp.87-115.
- 이성근(2011). 근린주민자치와 지역사회발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제60권 제696호, pp.10-13.
- 이세정(2018). 선진 지방자치를 위한 법제 발전방향(소제목 : 선진 지방자치로 도약하기 위한 지방자치관련 법제의 발전방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제10호(2018).\*국회입법조사처 공동세미나 자료. pp.122-124.
- 이수형(2018). 향약과 두레의 공동체정신과 새마을정신 비교 분석: 상황이론, 구조기능론, 인식론, 사회통합론적 관점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p.32.
- 이승중(2017). 한국지방자치의 접근방법과 정책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제31권 제4호(통권제111호), pp.61-84.
- 이완영(2000). 율곡향약의 성립과 향촌 자치적 기능에 관한 연구, 영동대학교 「연구농촌」, 제6권 제1호, pp.167-180.
- 이연(2000). 향약공동체운동에 나타난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 「서울: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599-614.
- 이준건(2012). 충남 근린자치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비상임연구위원 공동참여연구 제2차 발표·토론회 「공주 : CDi(충남발전연구원)」 CDI 세미나 2012-47. p.18.
- 이훈(1986). 조선시대 향약의 지방자치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p.42.
- 이해준(2016). 조선시대 향촌자치와 마을자율 문화: 자치·자율, 주민참여제의 현대적 조명, 한국자치학회, 「월간 주민자치」, 제57권, pp.25-33.

- 임승빈(2016). 읍·면·동제도의 역사성과 주민자치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제65권 제750호 pp.16-19.
- (2016). 읍·면·동 주민자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제65권 제750호 pp.14-15.
- 장교식(2018).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검토,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84권, pp.195-196.
- 장동표(2016). 조선시기와 명청대의 향약 시행과 그 성격 비교 연구, 부산대학교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제58권, pp.237-263.
- 장재천(2007). 조선시대 향약의 정치적 이념과 도덕 공동체 의식 강화, 용인대학교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논총」, 제14호, p.2.
- 장치근(1997).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에 대한 고찰, 광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7권, pp.25-35.
- 전대욱(2017). [발제 1 지역-주민과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는 의사결정체이자 결사체 역할 수행해야”, 한국자치학회, 「월간 주민자치」, 제74권, pp.52-58.
- 전상직(2015). [제2강]대한민국 주민자치 방법론 “읍·면·동 일이 내 일이 되는 마을자치 중요하다”, 한국자치학회, 「월간 주민자치」, 제44권, pp.146-147.
- 정원식(2003). 독일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참여와 로컬거버넌스,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7권 제3호, pp.223-242.
- 정윤수(2000).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동서연구」, 제12권 제1호, pp.115-131.
- 조순재(1999).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근린조직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6권 제2호, pp.349-369.
- 지방자치발전위원회(2017).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마을자치(읍·면·동)제도화 방안, 「서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7」, pp.98-115.
- 진동섭(2019). 주민자치회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법제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법학과」, pp.211-212.
- 제주특별자치도(2019). 2019 주요행정통계, pp.1-60.
- 제주특별자치도(2019). 2018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pp.3-15.
- 제주특별자치도(2019). 2019년 통계연보, pp.39-101.

- 차홍봉(2015). 사회복지의 현주소와 지역복지 주민자치의 과제: 복지는 마을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한국자치학회, 「월간 주민자치」, 제44권, pp.110-113.
- 최문형(2002). 읍곡향약의 현대적 조명: 공동체주의와 관련하여, 동양철학연구회, 「동양철학연구」 제30권, pp.27-52.
- 최병학 외(2013).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공주 : CDi(충남발전연구원)」, 전략연구 2013-08, pp.112-116.
- 최재송(2007). 근린 주민조직의 특성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제21권 제2호, pp.95-115.
- 최진혁(2012).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주민주권의 강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제26권 제1호, pp.53-80.
- 하정봉·길종백(2013). 주민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익, 제도, 이념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제2권(2013) pp.67-89.
- 한미라(2015). 일제의 식민정책과 향약 인식: 192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역사민속학회, 「한국민속학」, 제49권, pp.59-86.
- 한상우(2013). 지역공동체 주민자치의 중요성,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제62권 제715호 pp.12-15.
- 황종규(2019). [토론] “다양한 풀뿌리 자치제 연계하는 마을자치 복원 필요”, 한국자치학회, 「월간 주민자치」, 제88권, pp.72-72.

## 2. 국외문헌

- Blockland, T. (2003), *Urban Bonds*. Cambridge: Polity Press.
- Cars, G., Allen, J., van Kempen, E., and Madanipour, A. (2004). *Neighbourhood Governance: Capacity for Social Integration*. European Commission DG Research.
- Conn(2011), *Community engagement in the social eco-system dance*. TSRC,(Third Sedor Research Centre Discussion Paper), pp.1-23.
- Downs, A. (1981). *Neighbourhoods and Urban Development*.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 Davies, W. K., and Herbert, D. T. (1993). *Communities within Cities: An Urban*

- Social Geography. London. Belhaven Press.
- Galster, George. (2001). "On the Nature of Neighborhood." *Urban Studies* 38(12): pp.2111-2124.
- Hallman, H. W. (1984). *Neighbourhoods: Their Place in Urban Life*.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Jacob, Betty M., Krzystof Ostrowski, and Henry Teune, eds., (1993). *Democracy and Local Governance: Ten Empirical Studies*, Honolulu: Matsunaga Institute for Peace, University of Hawaii.
- Keller, S. *The Urban Neighbourhood*. New York: Random House, 1968 pp. 53-74.
- Kooiman. (2000). *Societal Governance: Levels, Modes, and Orders of Social-Political Interaction*. in Pierre, J. (ed). *Debating Governance*. Oxford University Press.
- Lowndes and Sullivan. (2008). *How Low Can You Go? Rationales and Challenges for neighbourhood Governance*. *Public Administration*. pp.53-74.
- Lancaster, Kelvin J. (1966). "A New Approach to Consumer Theory."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4(2) pp.132-157.
- Morris, D. & Hess K. (1975). *Neighbourhood Power*. Boston, MA: Beacon Press.
- Pratchett, L. (2001, 6-11 April 2001). *Towards a separation of local autonomy and local democracy*. Paper presented at the ECPR Joint Sessions of Workshops.
-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l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omerville, P. (2011). *Multiscalarity and Neighbourhood Governance*.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26(10): 81-105.
- Warren, D. (1981). *Helping Networks*. South Bend, IN: Notre Dame University Press

### 3. 웹사이트

풀뿌리민주주의,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2020.01.05. 검색)  
<http://www.jeju.go.kr>  
<https://www.mois.go.kr>



<https://www.pcad.go.kr>

<http://www.jeu.go.kr>

<http://www.jeusi.go.kr>

<https://www.seogwipo.go.kr>

<https://www.sedaily.com>

<http://www.kocw.net>

## ABSTRACT

Prior to the formation of the modern nation, central power had spatial limitations being unable to control rural areas in all of Korea's political systems. In order to supplement such limitations, village codes were enacted in each local administrative unit and self-governing of villages was carried out based on such village code. Such village code makes up the original form of neighborhood local government. In particular Jeju has unique features in each of its village due to its special geographical environmental features as it is an island. Furthermore, villages in administrative ri (administrative units) within eup and myeon districts use the traditional village codes as the basis for village operation.

Village codes of eup and myeon districts of Jeju have continued through various names such as village regulations, bylaws, articles, rules, etc. It includes detailed village operation rules including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as well as the composition of village unit organizations and village resident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suffrage, qualification for elections, asset management, meeting systems, reward and punishment regulations, etc., and the regulations of such village code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hat the village residents voluntarily observe such codes.

This study began in order to investigate what kind of discussion structure is passed for village codes, how it is justified, what its operation method is, and how the structure is different for each village and how they change, and believing the need for systematic research for the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of villages in order to present a village local government model to revitalize the region.

Considering that the village code revisions are dealt with at regular general meetings and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s held from January to February every year at each village, 146 village codes from 172 eup and myeon districts from January 2019 to August 2019 were collected for research.

The method of research included literary research and village code content analysis to identify the major factors of village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such

as the concept and mode of village local government, cases overseas village local government, and preceding studies on village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a qualitative study through in-depth interview studies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village local government with village foremen, and quantitative studies in the form of a survey to provide a systematic device for efficient village operation.

Village code contents analysis included analysis of the village local government institution, system and decision-making structure such as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village residents, village decision-making structure, self-governing organization of the village, election of the village foreman who is the representative of the village local government, status of revising the village codes, etc. in order to present the features of village local governments in Jeju.

The feature of village local government in Jeju can be said to resemble a small government in the form of national government. Just as the state gives its citizens certai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when he or she comes to age and collects taxes from them, when a person lives in a village in one of the eup or myeon of Jeju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he or she is given the right as a citizen of the ri and is give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hat must be kept as a citizen of the ri such as voting rights to select a representative of the village, eligibility to be elected, participation rights, claim rights, etc. And when financial resources for operating the village is needed, operation costs for the ri are collected and various projects for the development of the village are invited and the community is maintained. Also, in the event that a person who was born in the village resides in a different area, the semi-ri-citizen system allows them to provide consultation and instills a love for their hometown for the sake of village development. There are also various organizations and activiti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village to promote the village community and efforts are made to improve the profits of the entire village community. In other words, it is a small government where the residents participate directly in and solve the issues of the village.

The village local government model was proposed in the three different types of

the cooperative village self-rule model, consigned village self-rule model, and integrated village self-rule model that comprehensively reflects regional features such as the number of village residents, decision-making system, financial resources for operating the village, village foreman election method, etc.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village code an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The cooperative village self-rule model has a function for checks and balances to prevent excessive authority being given to the village foreman for villages that are relatively large with 2,000 people or more with a certain income source for operating the village and that has a systematically built village council structure. The village foreman who represents the village local government is elected through direct elections by the residents of the village. Consigned village self-rule model are usually villages with residents of 500 to 2,000 people and all authorities of the village are delegated to the village foreman who represents the village local government. The village foreman who is consigned the duties can continue to serve as the village foreman depending on his or her work performance, and can also be elected new through the direct elections of residents. The village council structure is made up to have both review functions and executive functions. Integrated village self-rule models usually have less than 500 residents and the structure of the village council integrates motioning, reviewing and executive functions, and the village foreman that represents the village local government is also elected through recommendations. The village local government model proposed in this study is a generalized and standardized village local government model and does not includ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and every village, but it can present a generalized standard model through literary research, expert surveys, and interviews by village foreman.

The policy proposal by combining village codes, village local government experts, and survey contents was proposed by categorizing into improvements for administration and village. For the first system reform in administration, it is proposed to enact/revise the relevant laws to promptly implement a community

self-government association, which is the model for neighborhood autonomy, and to allow the community self-government association that is currently being installed in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of eup, myeon and dong also for tong and ri selectively. Second, in order to allow subsidies considering the scope and situation of the village, it is proposed to revise the civil subsidy standard assistance rate that is determined as a guideline by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every year. Third, as village community support projects are being pursued separately by each agency according to individual laws,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unified support system that prevents redundant support, and therefore, it is proposed to unify support agencies and to install a new type of middle organization that integrates the middle organizations that are being operated by individual laws. Fourth, a village code standard plan is proposed to address unreasonable articles in the village codes. Fifth, it is proposed to give an open position for eup/myeon/dong representatives for supporting the village and operation and to expand the eup/myeon/dong resident recommendation system that can extend the region. Sixth, the need for assertive PR and utilization of village attorneys is proposed in order to resolve disputes and conflicts that occur within the village through discussions and coordination with the village community.

For reforms to the village itself, it is first proposed to institutionalize female and youth participation rates in the organization for discussing village issues. Second, it is proposed to expand participation rights in the general assembly to allow a bigger variety of residents including youths to participate in the general assembly, which is the uppermost decision-making organization in the village. Third, it is proposed to clarify the regulations for asset claim rights in order to prevent disputes related to village assets. Fourth, it is proposed to give participation rights to those moving into the community so that they make donate their talents and participate in community activities before they are given eligibility as a citizen of the ri. Fifth, it is proposed to eliminated inequalities in the village code and to transparently disclose all village information so that new residents can understand the culture of

Jeju and to revise and disclose the village code to minimize community issues.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the village codes of all villages in Jeju including eastern villages were not collected, that only the institutional aspect related to village local government were analyzed, that surveys were not conducted for general residents, and that there were limitations for generalization of the village local government model.

It is anticipated that various studies related to the correlation of the village's form, environment and history with village codes will be carried out to restore the village culture and to contribute to regional revitalization.

Keywords: Village code, Village local government, Cooperative (large village) village self-rule model, Consigned (medium village) village self-rule model, Integrated (Small village) village self-rule model

<부 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마을자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자치 모형 제안 및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응답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또한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김일순 (☎ 010-7765-5256)

✉iskim2859@gmail.com

지도교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황경수 (☎ 010-3697-5912)















8. 정부에서는 경제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서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 ①번 응답자는 8-1문항으로 ②번 응답자는 9번 문항으로.

① 시행한 적이 있다.

② 시행한 적이 없다.

8-1. 마을만들기 지원사업[국가·지자체·공기업사회환원사업 모두포함]을 시행한 적이 있다면 이 사업의 장·단점 및 개선방안을 기재해 주십시오.

<p>■ 장점 및 단점</p>          <p>■ 개선방안</p>
-----------------------------------------------------------------------

9. 귀하께서는 마을 자생단체(청년·부녀회·노인회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0. 귀하께서 거주하는 지역[리, 동(반)]에 마을자치와 관련하여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기재해 주십시오.

------------------------------------------

11. 귀하께서 거주하는 지역 마을자치는 마을회 향약(규약, 회칙)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향약은 마을에서 발생하는 일을 해결하는 하나의 자치규약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마을 자치규약인 향약 내용 중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기재해 주십시오.

12. 귀하께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 마을회 운영체계의 장·단점 및 개선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예) 회의체계, 의결기구, 사업체계 등등

■ 마을회의 운영체계 장 · 단점

■ 개선사항

13.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해 어떤점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행정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